



2021
농식품 해외인증
·
등록정보
종합가이드

Contents

목차

2

*항목(인증명) 선택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 해외 식품인증 현황

1. 해외 식품 인증 별 Trend	3
2. 해외 식품 인증 유형	5
3. 해외 식품 인증 별 요약	7

II .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01 공통 16

FSSC 22000 인증	18
ISO 22000 인증	23
SQF 인증	27
HACCP 인증	33
GMP 인증	40
IFS 인증	45
BRCGS 인증	49
GLOBAL G.A.P.	55
스마트 HACCP 등록	59

02 아시아권 62

일본	63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64
JAS 유기인증	78

중국 89

AQSIQ 인증	90
중국 유기산품 인증	96
중국 신 원료 등록	104
China HACCP	109

베트남 114

베트남 VFA 적합성 공표 등록	115
-------------------	-----

홍콩 121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122
------------------------	-----

태국 127

태국 식약청(FDA) 등록	128
----------------	-----

대만 134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TFDA) 등록	135
----------------------	-----

인도네시아 142

인도네시아 BPOM 등록	143
인도네시아 SNI 인증	149

필리핀 154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155
---------------	-----

싱가포르 162

싱가포르 식품청(SFA) 등록	163
------------------	-----

*항목(인증명) 선택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3 북미권 175

미국 176

미국 FDA 등록	177
공정무역 인증	190
USDA Organic 인증	195

캐나다 199

SFC 라이선스	200
노블푸드	206

04 유럽권 211

유럽 공통 212

유럽 식품안전관리제도	213
유럽 노블푸드 등록	217
EURO LEAF 인증	221

05 기타 권역 227

유라시아 228

TRCU(EAC) 인증	229
국가위생등록(SGR)	235
우즈베키스탄 인증	241

호주 249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250
-------------	-----

III. 인증별 식품인증 가이드

할랄 259

말레이시아 JAKIM	260
인도네시아 MUI(BPJPH)	264
아랍에미리트 ESMA	268
싱가포르 Warees(MUIS)	273
미국 IFANCA	278
한국 KMF	281
카자흐스탄 AHIK	287

코셔 291

OU	292
OK	296
COR	300

비건(Vegan) 인증 303

Vegan Society	304
V-Label	307
EVE VEGAN	311

글루텐프리 인증 317

GFCO	318
------	-----

Non-GMO 인증 322

Non-GMO Project	323
-----------------	-----

IV. 해외인증 상호교차인증 (동등성 협약) 현황

해외인증 상호교차인증 (동등성 협약) 현황	328
-------------------------	-----



해외 식품인증 현황

1. 해외 식품 인증 별 트렌드

□ 할랄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5 %에 해당하며 세계 할랄시장 규모는 연평균 6% 증가하고 있다. 할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식품이다. ◦ 최근 무슬림 소비자뿐 아니라 비무슬림 소비자에게도 할랄 제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져 할랄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슬림 및 할랄 제품에 관심이 있는 비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할랄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 할랄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며, 터키,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순으로 많았다.
<p>주요 인증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 면류 ◦ 유제품 등 음료류 ◦ 유아식 ◦ 김스낵 등 과자류 ◦ 간편식

□ 코셔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태인 및 이슬람 인구의 증가, 도시화되고 있는 생활방식의 변화로 코셔 식품 시장이 성장세이다. 코셔 식품 시장은 2020-2024년 동안 120억 2000만 미국 달러로 2024년까지 연평균수익률 7%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¹⁾ 또한 유당 불내증의 높은 유병률과 비유대인 중에서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북미권, 유럽권에서는 코셔 식품이 높은 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코셔 인증은 북미와 유럽 식품 업계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
<p>주요 인증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류 ◦ 스낵류 ◦ 건강식품 ◦ 김치 ◦ 소스류

1) 참조: Global Kosher Foods Market 2020-2024

□ 비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채식을 하는 비건 캠페인의 수가 2021년 582,000명²⁾ 이상이 가입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건강, 환경, 동물 복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대체육 소비, 비건 식품, 유기농 식품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내 식품성 식품 및 음료 제품의 매출은 2018년 24억 유로에서 2020년 36억 유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식물성 식품 소매 시장의 매출이 2019년 55억 달러에서 2021년 7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식물성 우유가 전체 우유 카테고리의 15%, 전체 식물성 식품 시장의 35%를 구성할 정도로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인증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우유 ◦ 대체육 제품

□ 글루텐프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채식, 유기농, 친환경과 같은 키워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건강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며, 글루텐프리 식품과 인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글루텐프리 식품 시장은 2019년부터 연간 약 9.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밀 기반 식단을 주로 섭취하는 북미권, 유럽권 시장 규모가 크다.
주요 인증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커리류 ◦ 주류

□ Non-GMO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GMO 식품은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식품 소비자, 특히 비건 소비자에게 수요가 높다. ◦ 전 세계 Non-GMO 식품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 평균 1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곡물류가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요 인증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류 ◦ 육류 ◦ 식용유

2) 참조: <https://www.vegansociety.com/news/media/statistics/worldwide>

2. 해외 식품인증 유형

인증 유형	세부내용
수출 시 필수인증	식약청 등록 등 국가별로 수입식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 등록 ◦ 중국 AQSIQ 인증 ◦ 베트남 VFA 적합성 공표 등록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 태국 식약청 등록 ◦ 대만 식품약품관리서(TFDA) 인증 ◦ 인도네시아 BPOM 등록 ◦ 인도네시아 SNI 인증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 싱가포르 식품청 등록 ◦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 캄보디아 ISC 제품 인증 ◦ 미국 FDA 등록 ◦ 캐나다 SFC 라이선스 발급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 EEU 회원국(러시아 등) TR CU 인증 ◦ 우즈베키스탄 국가 인증 ◦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시스템/제품 인증 (적합성평가) 또는 시스템 인증/적합성 평가	식품안전관리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SC 22000 인증 ◦ ISO 22000 인증 ◦ SQF 인증 ◦ HACCP 인증 ◦ GMP 인증 ◦ IFS 인증 ◦ GLOBALG.A.P. 인증 ◦ BRCGS 인증 ◦ 스마트 HACCP 인증

종교·문화적 인증	특정 종교권 국가 수출 시 취득해야 할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 싱가포르 WAREES(MUIS) 할랄 인증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 미국 IFANCA 할랄 인증 ◦ 미국 OU 코셔 인증 ◦ 미국 Star-K 코셔 인증 ◦ 유럽 V-Label 인증 ◦ UAE ESMA 할랄 인증 ◦ 카자흐스탄 AHIK 할랄 인증 ◦ 한국 KMF 할랄 인증
기능성 인증	특정 성분 또는 기능적 요소에 관한 규정 준수 시 취득할 수 있는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JAS 유기인증 ◦ 중국 유기산품 인증 ◦ 미국 글루텐프리 인증 ◦ 미국 NON-GMO 인증 ◦ 미국 USDA Organic 인증 ◦ 캐나다 노블푸드 등록 ◦ 유럽 노블푸드 등록 ◦ 유럽 EURO LEAF 인증

3. 해외 식품 인증 별 요약

국가명	인증명	세부내용	구분
공통	FSSC 22000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국제식품안전협회 ISO 22000 인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식품의 품질 및 안전 보장에 관해 인증을 발급함 2021년 4월 V5.1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인증 전환을 진행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ISO 22000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국제표준화기구 ISO 9001 시스템과 HACCP 원칙을 통합한 것으로 식품공급사슬 전반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식품공급사슬 내 위해요인을 파악 및 관리하여 제품,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SQF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SQFI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인증체계로, 북미 지역에서 선호됨 업체 시스템 구현 정도에 따라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SQF Food Safety Program이 GFSI 승인 규격임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HACCP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가별 관할기관 상이함) 식품 생산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체계에 관한 인증으로,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해 시험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GMP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별 관할기관 상이함)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부여함 원자재 구입에서부터 제조, 포장, 보관,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의 품질관리에 대해 인증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IFS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IFS 2003년 International Food Standard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6가지 범위를 확장하여 통일된 식품, 제품 및 서비스 표준을 제공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BRCGS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BRCGS 제조업자, 가공업자, 포장업자 등이 식품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공통	Global G.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Global G.A.P.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 에 대한 표준 ◦ 식품 분류별로 요구사항이 다름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스마트 HACCP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 일본의 식품 제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입 가공 식품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 일본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의 기준 규격 적합 여부와 시설 및 식품 등의 위생 관리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JAS 유기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 일본으로 유기 농산물 및 유기 가공 식품 수출 시 권장됨 ◦ 토양 상태, 화학 합성 비료 및 농약 사용, 유전자 재조합 기술 사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발급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중국	AQSIQ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수입식품은 온라인 시스템에 회사를 등록하고 사전 검험을 실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기산품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중국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지정한 23개 공인인증기관 통해 진행. 예시: 중국품질인증센터(CQC) ◦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식품에 대해 이를 인증함 ◦ 유기산품 인증코드를 발급하여 유기 농식품의 이력을 추적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신식품원료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중국CNCA에서 인정한 공인 인증기관에서 진행 ◦ 예시: 중국품질인증센터(CQC) ◦ 중국은 수산물, 육류, 냉동 야채, 과일, 야채주스, 고기 및 수산물을 함유한 냉동식품, 통조림 제품 등 6개 식품군의 수출기업에 대해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중국	China HA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FPC) 신 식품 원료는 식품 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독성이 없고 무해해야 하며 급성, 아급성, 만성 또는 기타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베트남	VFA 식품 적합성 공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보건 부 산하 식약청에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하여 등록하여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FEHD)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홍콩 내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며, 획득 시 이에 대한 수입 허가증을 발급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태국	식약청(FDA)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태국 식약청 태국 내 수입식품 위험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이를 식약청에 등록함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를 발급받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대만	식품의약청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대만 위생복지부 산하 식품약품관리서(TFDA) 특정 식품(건강 식품,식품첨가물등)의 안정성 및 기능에 대한 심사 후 인증을 발급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인도네시아	BPOM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도네시아는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의약품 및 식품 관리·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SNI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기관: 국가표준화기관 (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인증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진행. 해외 업체의 경우 수입업체 등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자를 통해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 2019년 10월부터 할랄 담당기관이 종교부산하 할랄인증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할랄인증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도입함 ◦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등록 시스템, 식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한 등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싱가포르	식품청(SFA)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 ◦ 수입 면허를 취득한 싱가포르 수입 업체는 싱가포르 식품청에 업체 정보를 등록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WAREES(MUIS)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Warees Halal ◦ 원재료, 생산방식, 생산시설 등은 할랄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한국 KMF과 교차인증 인정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 육류 및 육류 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그 외 식품은 권고사항임 ◦ 식품 및 그 원재료를 비롯해 생산공정이 할랄표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인증을 발급함 ◦ 한국 KMF, KHA, 카자흐스탄 AHİK 인증에 대한 상호동등성 인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아랍에미리트	ESMA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UAE 표준측량청 ◦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은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GCC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있어 통용 가능함 ◦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한국 KOHAS, IHCC에서 인증 발급 가능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카자흐스탄	AHIK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Association Halal Industry of Kazakhstan (AHIK) ◦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Haram), 음료 및 재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 인증 가능 ◦ 할랄 식품의 원재료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및 관련사항이 할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인증을 발급함 ◦ 2016년부터 JAKIM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인증에 대한 상호동등성 협약을 체결함. 유라시아 국가에서 인증서 통용 가능 ◦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하여 인증 가능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대한민국	KMF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식음료 및 원재료, 제조공정 등이 할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하람(HARAM)으로 규정되는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싱가포르 MUIS 인증, 대만 THIDA, 태국 CICOT 인증과 상호 동등성 협약 체결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미국	FDA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미국 식품의약국(FDA)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전 FDA에 FFR(식품시설등록)을 제출해야 함 ◦ 미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FFR을 온라인으로 제출 ◦ 산성화 및 저산성 식품은 별도로 FDA에 FCE(식품제조시설등록) 및 SID(공정등록)을 제출해야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공정무역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국제공정무역기구 (Fairtrade International) ◦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한 식품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공정무역 식품은 원재료 사용에서부터 공정무역 기준이 적용됨 ◦ 인증 취득과 별개로 인증마크 사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USDA Organic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미국 농무부 (USDA) ◦ 유기농 원료를 최소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재배하는 동안 화학합성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 조사도 허용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IFANCA 할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 식품 원재료 및 가공 과정에서 할랄 규정을 준수한 경우 부여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코셔 인증 - OU - 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OU/OK ◦ 유대교 율법에 기반한 식품 및 그 생산·유통과정에 관한 인증 ◦ 코셔 규정은 육류, 유제품, 중성식품 등에 적용되며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가 코셔 요건에 부합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미국	글루텐프리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글루텐프리인증기관(GFCO) ◦ 글루텐 성분을 일정기준 이하로 함유한 식품에 대한 인증 ◦ 민간인증이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 제조시설 및 완제품은 정기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아야 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NON-GMO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 Non-GMO Project ◦ 유전자 변형 성분이 일정수준 이상 함유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인증기관과 기술관리기관에 각각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취득 후 마케팅활동을 지원함 ◦ 유전자 변형 정도에 따라 식품의 위험수준을 구분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캐나다	SFC 라이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 캐나다로의 식품 수입을 위해 캐나다 수입업체가 발급받으며,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 전 바이어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노블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캐나다 보건부(HC) ◦ 노블푸드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판 전 HC에 노블푸드 판매 및 판촉활동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코셔 인증 - C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COR ◦ 유대교 율법에 기반한 식품 및 그 생산·유통과정에 관한 인증 ◦ 코셔 규정은 육류, 유제품, 중성식품 등에 적용되며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가 코셔 요건에 부합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럽 공통	유럽 식품안전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유럽 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U 내 식품 유통을 위해 준수해야하는 규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노블푸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유럽 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제 3국에서 수입된 노블 푸드를 포함한 EU 내에서 시장 출시되는 모든 노블 푸드는 출시 전 반드시 허가 필요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럽 공통	EURO LEAF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유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발급함 ◦ 식품 생산 및 가공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방사선 조사 및 유전자 변형 성분 사용을 금함 ◦ 상호 동등성 협정 체결로 한국 유기인증을 취득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한 대우를 받음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V-Lab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유럽채식협회 ◦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인증을 부여함 ◦ 사용된 원재료 및 함유 성분에 따라 완전채식식품과 일반 채식 식품으로 구분함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Vegan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Vegan Society(영국) ◦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인증을 부여함 ◦ 비동물성 증명서류, 동물실험 및 교차오염에 대한 확인서 등 제출 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EVE VEG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EXPERTISE VEGANE EUROPE S.A.S. ◦ 식품 및 서비스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발급함 ◦ 동물성 성분(식품 첨가물, 향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성 가공 보존제가 제조과정, 준비, 처리 중에 추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식품이 취득 대상임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EEU 회원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TR CU (EAC)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기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식품과 관련된 12개 규정을 기반으로 적합성을 증명하여 TR CU 인증을 발행함 ◦ 식품은 기존의 러시아 인증제도였던 GOST-R에서 TR CU 인증 제도로 통합되었으며, 적합성 선언서 (DoC)로 인증서 발행 ◦ TR CU 인증 등록 위하여 현지 대리인 필수 ◦ TR CU 인증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라벨지에 EAC 마크 부착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국가 등록증 (State registration 인증, SGR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기관: Rospotrebnadzor (러시아) ◦ 특수 식품 (이유식용 식품, 다이어트 식품, 미네랄 수, 운동선수,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을 위한 식품,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BAA))에 해당됨 ◦ SGR 인증은 회원국 5개 중 1개 국가 관할 기관에서 발행 가능 ◦ SGR 인증 등록 위하여 현지 대리인 필수 조건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우즈베키스탄	국가 인증 (National cert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기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자무역부 산하 기술 규제 기관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 근거규정: 1997년 8월 30일자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 No. №483-I (최신 개정판: 2021년 4월 26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No. 3PY-685에 따름) ◦ 인증은 일반적으로 2단계로 수행됨: 위생허가 발행 ◦ 적합성 인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 선택
호주	수입식품 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호주 농업수자원부 ◦ 호주 내 판매되는 식품은 반드시 식품 관련 규정 및 식품 기준 코드를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 선택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1.

공통인증

공통인증

FSSC 22000 인증	18
ISO 22000 인증	23
SQF 인증	27
HACCP 인증	33
GMP 인증	40
IFS 인증	45
BRCGS 인증	49
GLOBAL G.A.P.....	55
스마트 HACCP 등록	59

FSSC 22000 인증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FSSC 22000 인증	국가명	공통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Foundation FSSC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시스템 인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0년
		유효기간	3년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범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규격 ISO 22000을 접목하여 도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7021-1:2015 - ISO/TS 22003:2013 - FSSC 22000 Scheme Version 5.1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22000을 기반으로 품질경영 시스템을 인증함 ◦ 선행요건프로그램과 추가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면 인증이 부여됨
적용 품목	식품 전반 및 경영시스템

현황

취득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7000여개 (2021년 11월 기준)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인증으로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6~9개월 소요	인증비용	약 400만원~1200만원

* 소요기간과 비용은 업체, 인증 기관에 따라 상이함

2. 세부정보

- FSSC22000은 식품안전인증재단(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이 FSSC를 설립하여 2010년 GFSI에 의해 승인됨
 - GFSI는 유럽에 보급되던 BRC 인증을 벤치마킹하여 PAS220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220)을 구축함
 - 범용성 제고의 목적으로 ISO 22000을 접목하여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FSSC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22000)을 개발함

- ISO 22000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선행요건프로그램(PRPs), 추가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ISO 22000 인증은 사육, 식품제조, 동물사료 제조, 케이터링, 리테일, 운송 및 보관, (생)화학 제품의 생산 등 산업별로 구분하여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ISO는 HACCP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식품안전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ISO/TS 22002-x에 규정된 식품제조, 식품유통, 동물용 사료, 포장재 제조 등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 (PRPs)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최소 3년마다 비고지 심사(Unannounced Audit) 가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함
 - 인증은 취득 후 3년까지 유효하나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증명 받아야 함

- 2020년 11월 FSSC 22000 (Version 5.1)이 발간됨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기 취득 업체도 사후 및 갱신심사를 통해 규격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함³⁾

□ FSSC 22000 점검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ISO 22000:2018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상황 ◦ 리더십 ◦ 기획 ◦ 지원 ◦ 운용 ◦ 성과평가 ◦ 개선

3) 참조: Requirements v5.1 upgrade process 2.1항

<p>선행요건 프로그램 (PRPs)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건축 및 배치 ◦ 시설물 및 작업공간의 배치 ◦ 유틸리티 - 공기, 용수, 에너지 ◦ 폐기물 처리 ◦ 장비 적절성, 세척 및 유지보수 ◦ 구매자재의 관리 ◦ 교차오염 예방수단 ◦ 세척과 위생처리 ◦ 위해생물 관리 ◦ 개인위생과 종업원 시설 ◦ 재작업 ◦ 제품 회수 절차 ◦ 창고 보관 ◦ 제품 정보와 소비자 인식 ◦ 식품 방어(food defense), 생물학적 경계(biovigilance) 및 생물학적 테러
<p>FSSC 추가 요구사항 (Version 5.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관리 및 구매 자재 ◦ 제품 라벨링 ◦ 식품 방어 ◦ 식품 사기 방지 ◦ 로고 사용 ◦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 환경 모니터링 ◦ 제품 배합 (카테고리 D에 해당) ◦ 운송 및 배송 (카테고리 FI에 해당) ◦ 보관 및 창고 보관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및 대책 (카테고리 C, I에 해당) ◦ PRP 검증 (카테고리 C, D, G, I, K에 해당) ◦ 제품 개발 (카테고리 C, D, E, F, I, K에 해당) ◦ 건강 상태 (카테고리 D에 해당) ◦ 복수사업장 인증을 받은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카테고리 A, E, FI, G에 해당)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Foundation FSSC	
홈페이지	https://www.fssc22000.com	
연락처	전화번호	+31-1-8364-5028
	팩스번호	+31-1-8362-1161
	이메일	info@fssc22000.com

3. 취득절차

절차	단계	주체	준비사항
1	인증신청	제조업체	-
2	1단계 심사(문서 심사)	공인인증기관	-
3	2단계 심사(현장 심사)	공인인증기관	-
4	인증발급	공인인증기관	-

- 인증절차는 ISO 22000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시설 수준에 따라 6~9개월이 소요됨
- 제조업체가 인증 심사를 신청한 공인인증기관은 인정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심사가 진행됨
- 1단계 심사는 신청업체의 문서화된 자료를 검토하여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며 2단계 심사는 현장심사를 통해 FSSC 22000의 표준 준수여부 등을 판단함
- 매년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지속 여부를 평가하며 인증 취득 후 3년째 되는 해 갱신심사를 받아야 함

4. 필요 서류

□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 경영시스템 인증은 특정한 증명서류가 아닌 경영시스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준비가 요구됨

구분	서류 목록
1단계 심사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 ◦ 관련 법률 및 규제, 준수에 관한 필요한 정보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2단계 심사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 ◦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 ◦ 이전 심사 기록

ISO 22000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ISO 22000 인증	국가명	공통
로고	-	인증기관 (관할기관)	국제 표준화 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시스템 인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5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HACCP의 원칙에 근거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7021-1:2015 - ISO/TS 22003:2013
인증 내용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이 아닌 식품업계 경영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농·축·수산업, 식품 및 사료가공, 케이터링, 소매·운송·보관·포장 및 장비제조, (생)화학제품의 생산

□ 현황

취득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인증으로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조건에 따라 상이	인증비용	약 300만원~700만원

* 소요기간과 비용은 업체, 인증 기관에 따라 상이함

2. 세부정보

□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함

- ISO 22000은 HACCP 시스템에 경영시스템 요소를 결합하여 식품안전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함
- 기존의 ISO 9001와 HACCP의 요구사항들을 취합한 내용으로 구성됨
 - ISO 9001은 ISO에서 제정, 시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임
 - HACCP는 식품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인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임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리더십 및 의사소통, 자원, 일반사항,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타당성 확인, 검증, 개선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ISO 22000은 ISO 경영시스템 표준의 통상적인 원칙에 근거함
 - 해당 원칙은 고객중심, 리더십, 조직원의 참여, 프로세스 접근 방법, 개선,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및 관계 관리임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4대원칙은 상호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 위해요인 분석과 HACCP 원칙으로 구성됨
 - 4대원칙은 효과적으로 식품안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호의사소통과 시스템 경영, 적절하게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요건 프로그램과 위해요인 분석 및 HACCP 원칙임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식품공급사슬 내의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식품안전방침을 개발하고 해당 방침 달성을 위한 목표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성과를 개선함

□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주요 심사관점은 다음과 같음⁴⁾

ISO 22000 조항	내용	ISO 22000 조항	내용
4.1/4.2	조직 상황분석과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 니즈 파악	8.3/8.9.5	이력추적시스템, 회수, 모의회수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7.4.2/7.4.3	조직 내 외부 의사소통
5.2/6.2	식품안전방침 및 목표	6.3	변경관리
7.1.6	외주처리 프로세스	9.3	경영검토
8.5.2/8.5.4	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소 관리계획(HACCP 계획), 운용PRP	8.2	선행요건 프로그램
8.4	비상시 대비 및 대응	8.9	부적합관리
8.5.3	타당성 확인	10.2	지속적개선
8.8	검증	-	-

4) 참조: 한국식품연구원, 국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가이드라인 제1권

□ 2018년 6월 ISO 22000:2018 국제표준이 발행되면서 기존 ISO 22000:2005를 기(既)취득한 기업도 인증 전환이 필요함

- 2021.06.29부터 구버전(ISO 22000:2005)의 인증 효력은 상실되며, 그 전에 신버전(ISO 22000:2018) 인증으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함⁵⁾
- 22000:2018의 발행일 이후 ISO 22000:2005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2021년 6월 29일의 만료일을 명시해야 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홈페이지		https://www.iso.org
연락처	전화번호	+41-22-749-0111
	팩스번호	+41-22-749-3430
	이메일	central@iso.org

3. 취득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인증신청	제조업체	-
2	1단계 심사(문서 심사)	공인인증기관	-
3	2단계 심사(현장 심사)	공인인증기관	-
4	인증발급	공인인증기관	-

- ISO 22000의 인증절차는 인증 신청 및 계약,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인증 등록의 단계로 진행됨
 -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신청 및 계약을 완료하면 인증절차가 진행됨
 - 1단계 심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며 프로세스(공정, 업무) 확인, 경영시스템 문서 및 2단계 심사관련 정보의 확인, 2단계 심사의 착안사항 및 우려사항을 확인함
 - 2단계 심사는 심사준비, 시작회의, 현장순회, 경영자면담, 심사 실시, 심사결과정리, 종결회의 단계로 진행됨
 - 심사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인증이 등록됨

5) 참조: Transitional Arrangement for ISO 22000:2018

4. 필요 서류

-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부합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 경영시스템 인증은 특정한 증명서류가 아닌 경영시스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준비가 요구됨

구분	서류 목록
1단계 심사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 ◦ 관련 법률 및 규제, 준수에 관한 필요한 정보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2단계 심사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 ◦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 ◦ 이전 심사 기록

SQF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SQF 인증	국가명	공통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SQFI (Safe Quality Food Institute)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적합성 평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4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안전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7065:2012 - SQF Fundamentals, Edition 1 - SQF Food Safety Code, Edition 9 - SQF Quality Code, Edition 9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기업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 요구사항은 시스템 요구사항과 분야별 GMP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동물 생산 ◦ 1차 식물 생산 ◦ 양식업 ◦ 식품 제조 ◦ 동물성 제품 제조 ◦ 건강 보조 식품 제조 ◦ 애완 동물 식품 제조 ◦ 동물 사료 제조 ◦ 식품 포장 제조 ◦ 저장 및 유통 ◦ 식품 소매 ◦ 식품 서비스

□ 현황

취득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 2927개 시설이 SQF 인증을 취득 (2021. 10. 19, SQF Food Safety Program Edition 9 기준)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공인규격으로 타국가에서 통용 가능하나 북미, 대만을 중심으로 확산		
소요기간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인증비용 (등록비용)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2. 세부 정보

□ 식품의 안전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식품안전관리 인증체계임

- 1994년 호주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에 의해 개발되어 2003년 미국의 FMI(Food Marketing Institute)가 SQF 인증 권리를 인수함
 - 현재 북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선호되는 인증으로 2004년부터 인증으로 채택됨
 - SQF는 GFSI(국제식품안전협회)에서 승인한 규격임

□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기업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 SQF Fundamentals Program
 - 중소 식품 공급 업체 및 1차 생산자를 위한 프로그램
 - 생산자가 기본적인 식품의 안전통제를 인지하고 구현할 것을 요구하며, GMP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함
 - GFSI 승인 규격이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함
- SQF Food Safety Program
 - 식품의 안전을 증명하는 인증 수준으로 HACCP을 기반으로 한 식품 안전 계획을 요구
 - 기본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준수와 HACCP에서 요구하는 위해요인 분석 및 중요 관리 포인트의 실행까지 충족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GFSI 벤치마킹 식품 안전 표준임
- SQF Food Safety Program
 - 식품 자체의 안전 뿐 아니라 경영시스템의 확립 및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HACCP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과 품질경영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SQF Food Safety Program과 함께 시행할 수 있음

□ SQF 점검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⁶⁾

구분	세부내용
시스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의지 ◦ 문서 관리 및 기록 ◦ 사양, 제형, 실현 및 공급업체 승인 ◦ 식품안전 시스템 ◦ SQF 시스템 검증 ◦ 제품 추적성 및 위험 관리 ◦ 식품 방어 및 사기 ◦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 교육훈련
분야별 GMP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위치 및 사업장 ◦ 현장 운영 ◦ 개인 위생 및 복지 ◦ 직원 처리 관행 ◦ 물, 얼음 및 공기 공급 ◦ 수령, 보관 및 운송 ◦ 기능의 분리 ◦ 폐기물 처리

□ 신청업체의 SQF 담당자가 있어야 함

- SQF 담당자의 역할
 - SQF 시스템의 개발, 구현, 검토 및 유지를 감독
 - SQF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SQF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를 관련 직원에게 전달
- SQF 담당자 요구사항
 - 신청업체의 정규직(Full-time basis)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업체의 SQF 시스템 관리책임에 관계되어 있는 직위에 위치하여야 함
 - HACCP 교육과정을 완료하여야 함
 - HACCP 기반의 식품안전계획을 실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 SQF 식품안전코드(Food Safety Code)와 SQF 시스템의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 SQFI에서 “SQF 시스템의 구현”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선택 사항임

6) 참조: SQF Food Safety Code: Food Manufacturing, Edition 9 (Part B, Module 11)

□ 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Safe Quality Food Institute (SQFI)
홈페이지		https://sqfi.com
연락처	전화번호	+1 202-220-0635
	이메일	info@sqfi.com

3. 취득절차⁷⁾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SQFI 평가 데이터베이스 등록	제조업체	-
2	SQF 담당자 지정	제조업체	-
3	인증 범위 결정	제조업체	-
4	SQF 시스템 문서화	제조업체	-
5	SQF 시스템 시행	제조업체	-
6	평가 전 심사 (선택사항)	승인 인증기관	-
7	인증 기관 선택	승인 인증기관	-
8	최초 인증 심사	승인 인증기관	-
9	심사 보고 및 종료	승인 인증기관	-
10	인증 발행	승인 인증기관	-

□ 인증 획득 절차

- 심사 시 발견되는 부적합 사항을 바탕으로 점수로 등급을 매긴다. 항목 별 점수는 다음과 같음
 - 0 - 기준을 충족함
 - 1 - 사소한 변형으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경부적합)
 - 5 -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중부적합)
 - 50 -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치명적 부적합)
- 총 점수는 (100-N)으로 계산하고, N은 항목 별 점수의 합계이다. 점수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점수	등급	인증	심사 주기
96 - 100	E - Excellent	인증서 발행	12개월 후 갱신심사
86 - 95	G - Good	인증서 발행	12개월 후 갱신심사
70 - 85	C - Complies	인증서 발행	6개월 후 사후심사
0 - 69	F - Fails to comply	인증서 미발행	SQF 심사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

* 최초 인증심사에서 “C - complies” 이상의 심사 등급을 받았을 경우 인증 획득이 가능함

- 사후 요구사항
 - 최초 인증 심사 또는 갱신 심사에서 “C - complies” 등급을 받은 경우 6개월 후 사후심사를 진행함. 사후 심사에서 새로운 점수와 등급이 부여되지만, 갱신심사 일정은 영향을 받지 않음
 - 갱신 심사는 최초 인증 심사의 12개월 후 실시하며, 최초 인증 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선정함. 최초 인증 심사와 마찬가지로 “C - complies”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인증 갱신이 가능함

7) 참조: SQF Food Safety Code: Food Manufacturing, Edition 9 (Part A)

4. 필요 서류

□ SQF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부합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 경영시스템 인증은 특정한 증명서류가 아닌 경영시스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준비가 요구됨

구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목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회사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HACCP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인증명	HACCP 인증	국가명	공통
마크		인정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각 국가별로 인증기관이 상이함)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권장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권장 인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5년*
		유효기간	3년

* 주: 도입시기는 우리나라 기준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됨 ◦ 국가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로 마련된 법적체계에 의해 위생적인 식품관리체계를 인증 받아야 함 ◦ 평가(심사)방식 등은 국제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음
적용품목	식품 및 축산물

□ 현황

취득 유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021년 7월 기준 8,400개 한국 업체 취득(식품 기준)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국가의 개별적 법률체계에 기반을 둔 인증 취득이 필요함		
소요기간	약 40일	인증비용 (등록비용)	업체별 상이

* 주: 소요기간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1960년대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전 단계에 걸쳐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됨
 -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 등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생관리체계임
 - 195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에 의해 Pilsbury 社가 우주비행용 식품 개발을 위한 위생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이 HACCP의 시작임
 - 1980년대 일반화되어 1993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HACCP를 식품 위생 관리지침으로 채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식품위생법 제32조 2에 근거하여 HACCP 인증이 도입됨

- HA(Hazard Analysis, 위해요소분석)과 CCP(Critical Control Point, 중요 관리점)을 규명하여 7원칙 12절차에 따라 인증함
 - 위해요소분석은 원료,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 관리점은 규명된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HACCP는 7원칙 12절차에 따라 인증체계가 적용
 - 7원칙은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계별로 적용되는 주요 원칙임
 - 12절차는 5개의 준비단계와 7원칙의 본 단계로 구성됨
 - 준비단계는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으로 진행됨
 - 7원칙은 위해요소분석, 중요 관리점(CCP) 결정, CCP 한계기준 설정,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방법 수립,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기록유지방법 설정으로 진행됨

- HACCP는 국가별로 법적체계를 마련하여 품목에 대해 필수와 자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필수품목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미국은 수산식품, 식육 및 가공류, 주스 등의 품목에 HACCP를 의무적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1차 생산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HACCP을 의무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HACCP 인증을 자율적 제도로 활용하고 있어 의무화 품목은 없음

- 2021년 7월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 시행으로 해외제조업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3. 취득절차⁸⁾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조업체	약 40일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서류검토	인증기관		-
3	현장실사	인증기관		-
4	평가 및 판정	인증기관		-
5	인증서 작성	인증기관		-
6	인증서 교부	인증기관		-

* 주: 취득단계는 국내 HACCP 인증 취득절차이며, 식품을 기준으로 작성

- 국내 HACCP 인증 취득은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됨
 - 신청업체가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인증업체에 제출하여 인증 취득절차가 진행됨
 - 인증기관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단계를 거쳐 신청업체의 적부 여부를 심사함
 - 신청업체가 HACCP 인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서 작성 후 인증서가 교부됨

□ 소요비용

구분	유형		인사심사비용		
취득비	식품	전품목 전업종	20만 원		
	축산물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대	90만 원	
			중	81만 원	
			소	70만 원	
		보관·운반업		71만 원	
		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대	59만 원	
			소	35만 원	
			가축사육업, 종축업 및 부화업	대	42만 원
	중	38만 원			
	소	33만 원			
	사료공장	배합사료공장	지정심사	정기심사	
			70만 원	35만 원	
		TMR사료공장	지정심사	정기심사	
약 54만 원			약 27만 원		

8) 참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site/haccp/sub.do?key=721)

□ 필요 서류

- HACCP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영업신고필증	대표자, 업체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면적 확인
HACCP 교육수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인과정(대표자) ◦ 종업원과정(종업원 중 1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위생점검 기록 ◦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관련 서류 ◦ 기타 식품별 영업을 위한 법적 서류
HACCP 관리기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요건관리 기준 서류 ◦ 작업장 환경 점검 기록 ◦ 조도기준 확인 기록 ◦ 용수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용수탱크관리 서류(용수탱크 사용 시) ◦ 제조시설 점검기록 ◦ 작업 개선사항 기록 ◦ 원료 입고검사 기록 ◦ 포장자재 법적규격 확인서류 ◦ 원료, 부자재, 완제품에 대한 정기적 검사 서류 ◦ 계측기구 관리 서류 등 ◦ 기타 관리기준 기록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관리 서류 ◦ CCP 모니터링 기록 ◦ 한계기준 이탈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기록 ◦ CCP 검증관련 서류 ◦ HACCP 교육기록 등 ◦ 기타 관리기준 기록문서

[별첨] HACCP 인증 신청 관련서류⁹⁾

□ 인증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인증: 40일 연장: 60일
영업신고(등록) 번호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E-mail :		
신청인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휴대전화	
HACCP팀장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HACCP적용 식품명(유형)		인증번호		
HACCP적용 규모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 소규모 HACCP : 해당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경우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신청 내용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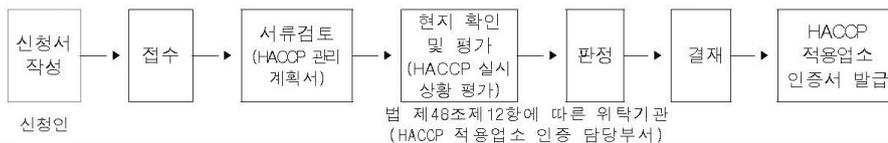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2.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원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00,000원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9)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site/haccp/sub.do?key=7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 등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의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함.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수집근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업소명 인허가번호, 사업지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수집목적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44조, 「사료관리법」 제16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유기간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제공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제공목적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실적 보고
제공항목	업소명 인허가번호, 사업지등록번호, 대표자(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보유기간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 HACCP 관련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집·이용 내역

항 목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주소,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번호,
수집목적	국내·외 식품·축산물 안전 정책 동향, HACCP 관련 뉴스, 전문정보, 교육(행사)알림 등
보유기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동의자 업체명(농장명)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연 락 처 : _____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 HACCP 계획서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HACCP 적용 유형(특성포함): 예) 과자(유당처리제품)

해당제품: 예) ○○링, ○○과자 등

(1) 중요 관리점	(2) 주요 위해	(3) 한계기준	(5) 모니터링				(7) 담당자	(8) 개선조치	(9) 기록물	(10) 검증
			(4) 대상	(5) 방법	(6) 주기	(7) 담당자				
예) 1B 가열(유당) 공정	예) 병원성 미생물 잔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 강출혈성 대장균 등)	예) 가열 온도 (유당온도): 000~000℃	예) 가열기 설정 온도 또는 가열기 표시 온도	예) 설정온도(표 시온도) 육안 확인	예) 작업 시작 시, 작업 중 0시간 마다, 작업 종료 시	예) 가열 담당 홍길동	예) 1. 작업 중단 2. 온도 미달: - 가열기 이상 확인 - 온도 도달 시 작업 재개 - 재가열(또는 폐기) 3. 온도 초과: - 가열기 이상 확인 - 냉각 후 작업 재개 - 제품 이상 확인 후 다음공정(또는 폐기)	예) 중요관리점 점검표	예) 공정 검증 작업 전 온도계측 장치 정확도 확인, 1회/년 검교정 월 1회 모니터링, 개선조치방법, 실행성 검증	
		가열 시간 (유당시간): 00분00초 ~00분00초	가열기 설정 시간 또는 투입 후 경과시간	설정시간 육 안확인 또는 가열시간 타 이머 측정	1. 작업 중단 2. 시간 미달: - 가열기 이상 확인(또는 담당자 확인) - 재가열(또는 폐기) 3. 시간 초과: - 가열기 이상 확인(또는 담당자 확인) - 제품 이상 확인 후 다음공정(또는 폐기)					
		가열(유당) 후 제품온도: 00℃ 이상	제품온도 또는 제품품온	제품온도 ○ 온도계 측 정	1. 작업 중단 2. 온도 미달: - 가열기 이상(온도, 시간) 확인 - 제품 상태 확인 - 재가열(또는 폐기)					

GMP 인증

1. 개요

기본정보

인증명	GMP 인증	국가명	공통
마크		관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 경우) *국가 별로 관할기관 상이함
		승인인증기관	국가별 인증기관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권 장 <input type="checkbox"/> 선 택	유형	권장 인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 제 <input type="checkbox"/> 국 가 <input type="checkbox"/> 민 간	도입시기	1969년
		유효기간	기준 준수여부를 1년마다 평가

* GMP 마크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표시한 마크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GMP 마크임

* 건강기능식품 GMP의 필수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유의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제 2016-127호, 16.11.23)
인증 (등록)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자재 구입부터 제조, 포장, 보관, 출하 까지 전체 공정에 걸친 품질관리에 대한 인증
적용 품목	건강기능식품

현황

취득 유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020년 12월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업체 391개		
타국가 통용여부	국가별로 자체적인 GMP 규정이 존재하여 개별적인 인증 취득 필요		
소요기간	약 14~20일 (한국 기준)	인증비용 (등록비용)	5만원 ~ 20만원 (한국 기준, 컨설팅 비용 별도)

* 소요 기간 및 비용은 업체, 국가 별로 상이함

2. 세부정보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969년 GMP를 발표하고 회원국에 이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인증으로 우수식품 및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임
 -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건강기능식품(혹은 식이보충제) 분야에도 적용되는 인증임
 - 우리나라는 식품 GMP와 관련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관련 법령이 제정됨
 - GMP라는 용어는 1962년 미국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개정안에 최초 등장하여, 美 FDA가 1963년 세계 최초로 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함¹⁰⁾
 - 1950년대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라 미국, 독일 등에서 의약품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GMP의 필요성이 대두됨
 - GMP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현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자리매김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도입하였으며,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에 KGMP를 규정하면서 의무화됨¹¹⁾

- 국내에서 GMP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에 따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MP의 공통되는 주요내용은 3가지로 인위적 착오의 최소화, 오염으로 인한 품질변화 방지, 품질보증 시스템 설계임
 - GMP 근거법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국제적 유사성을 띄고 있으므로 국내의 GMP 기준을 통해 준수규격을 살펴봄

10) 참조: 우리나라 GMP 변천사, 백우현, 2014

11) 참조: 미국 및 유럽의 의약품 GMP 실사 동향 연구, 반은미 외 3명, 2019

구분	세부내용
시설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구역의 분리, 배수 및 환기 시설, 조명 등 ◦ 보관시설: 구역의 분리, 보관조건 등 ◦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시설 및 기구, 배치 등
기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표준서 ◦ 제조관리기준서: 제조공정, 평면도, 계통도 등 ◦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청소 대상 및 방법, 주기 등 ◦ 품질관리기준서: 시험항목, 검사시설 및 기구 관리 등
구성 및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책임자의 GMP 이해도 ◦ 책임자의 지정 ◦ 제조지시서의 발행 ◦ 적절한 인원 배치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관리: 출입제한, 청결상태 관리, 공정검사 등 ◦ 제조위생관리: 시설 및 인원의 위생, 폐기물 처리 등 ◦ 보관관리: 구분 보관, 출납기록서 작성 등 ◦ 품질관리: 시험기록서 작성, 보존기준/유통기한 설정 등 ◦ 시설관리: 청결상태, 정기점검, 기록관리 등 ◦ 공통사항 관리: GMP실시여부 확인, 정기적 교육훈련 등 ◦ 소비자보호: 소비자 불만신고에 대한 대응 등

* 참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별표 1 <GMP 적용실시 상황평가표>

□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각 국가에서의 개별적인 GMP 인증 취득이 요구되며, 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GMP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마련된 인증제도이나 각 국가별로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국가에서 요구되는 GMP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로 명명되며, 국가별로 이에 대한 GMP 인증 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 GMP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임
 -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는 2020년 12월까지 2017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GMP 인증을 의무화함

3. 취득절차¹²⁾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준비사항
1	GMP 지정신청서 접수	제조업체	지방 식약처에 제출
2	서류검토	지방 식약처	일반위생관리기준 및 GMP관리 기준서
3	현지 확인 및 평가	지방 식약처	GMP 실시상황 평가
4	판정	지방 식약처	-
5	GMP 적용업소 지정서 발급	지방 식약처	-

- 국내 GMP 인증의 취득절차는 5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됨
 - 신청업체는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 식약처에 GMP 지정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함
 - 지방 식약처는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해당 시설이 GMP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함
 - 지방 식약처에 의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GMP 적용업소 지정서가 발급됨
- GMP 인증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 20일, 신규 제조업체의 경우 14일이 소요됨

□ 소요비용

- 국내 식약처를 통해 식품기업 자체적으로 GMP 인증을 신청할 경우 하기와 같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GMP 요건에 부합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함

구분	업체 구분	비용
수수료(수입인지)	종전 제조업체	20만 원
	신규 제조업체	5만 원

12)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업무지침

□ 필요 서류

기존 제조업체	신규 제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 제조공장의 건물 배치도와 작업장 평면도 (기계·기구류 배치 내역을 포함) ◦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사본 ◦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 GMP 확인을 위한 4대 GMP 관리 기준서

IFS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IFS 인증	국가명	공통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IFS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적합성 평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3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공급망에서 소비자에게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급업체와 소매업체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S Food (Version 7) - IFS HPC - IFS Wholesale / Cash & Carry - IFS Logistics - IFS Broker - IFS PACsecure (Version 2)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종류의 분야별 인증이 구분되어 있음 ◦ 일반 시스템 부분 요구사항과 필수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제조 ◦ 가정용품 및 개인 위생용품 제조 ◦ 식품, 가정용품 및 개인 위생용품, 포장재 도매 ◦ 물류 서비스 ◦ 중개업 ◦ 1차 및 2차 포장재 제조

□ 현황

취득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연간 26000개 이상의 인증서가 발행됨 (IFS 홈페이지 기준)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공인규격으로 타국가에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인증비용 (등록비용)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2. 세부정보

□ 제조업체의 가공활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고객 사양을 준수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인증

- 2003년 International Food Standard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6가지 범위를 확장하여 통일된 식품, 제품 및 서비스 표준을 제공하고 있음
 - 식품, HPC(가정용품 및 개인 위생용품), 물류, 포장재 등 총 6종류에서 인증이 가능함
 - IFS는 GFSI(국제식품안전협회)에서 승인한 규격임 (IFS Food, IFS Broker, IFS Logistic, IFS PACsecure)
- 일반 요구사항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KO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KO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됨

□ IFS 인증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¹³⁾

구분	세부내용
일반 요구사항 (IFS Food Version 7, Part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ance and commitment (경영 및 의지) ◦ Food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식품안전 및 품질 경영시스템) ◦ Resource management (자원 관리) ◦ Operational processes (운영 프로세스) ◦ Measurements, analysis, improvements (측정, 분석, 개선) ◦ Food defense plan (식품 방어 계획)
KO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 Governance and commitment (거버넌스 및 약속) ◦ 2.2.3.8.1 Monitoring system of each CCP (각 CCP의 모니터링 시스템) ◦ 3.2.2 Personal hygiene (개인 위생) ◦ 4.2.1.3 Raw materials specification (원자재 규격) ◦ 4.2.2.1 Product and recipe compliance (제품 및 레시피 준수) ◦ 4.12.2 Foreign material risk mitigation (이물질 위험 완화) ◦ 4.18.1 Traceability (추적성) ◦ 5.1.1 Internal audits (내부 심사) ◦ 5.9.2 Procedures of withdrawals and recalls (철회 및 회수 절차) ◦ 5.11.2 Corrective actions (시정조치)

13) 참조: IFS Food Version 7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IFS)	
홈페이지	https://www.ifs-certification.com	
연락처	전화번호	+49 (0)30 72 61 053 74
	팩스번호	-
	이메일	info@ifs-certification.com

3. 취득절차¹⁴⁾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해당 IFS 표준 확인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체 평가	제조업체	-
2	IFS 승인 인증기관 선택	제조업체	-
3	인증범위 결정	제조업체 승인 인증기관	-
4	기간 결정	제조업체 승인 인증기관	-
5	평가 날짜 결정	제조업체 승인 인증기관	-
6	IFS 평가 진행	승인 인증기관	-
7	평가일정 결정	승인 인증기관	-

□ 인증 획득 절차

◦ IFS Scoring System: 일반 요구사항 및 KO 요구사항을 평가하여 채점 시스템을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

결과	설명	점수
A	완전한 준수	20점
B (주의점)	향후 일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15점
C (일탈)	요구사항의 일부가 실현되지 않음	5점

14) 참조: IFS Food Version 7 (Annex 2)

D (일탈)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않음	-20점
Major (부적합)	KO 요구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일반 요구사항에 주어질 수 있음 ◦ 식품 안전 및/또는 생산 및/또는 도착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 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이 통제 불능 상태인 경우	가능한 총 점수의 15% 감점: 인증서 발행 불가
KO 요구사항에서의 D (부적합)	KO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않음	가능한 총 점수의 50% 감점: 인증서 발행 불가

- 총 점수 및 부적합 유무에 따라 인증 발행 유무가 결정되며, 7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12개월 유효한 인증서가 발행됨
- 총 점수가 75% 이상이지만 일반 요구사항에서 Major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후속 심사를 통해 부적합이 해결된 경우에 인증서가 발행됨
- 사후 요구사항
 - 갱신 평가: 생산 현장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평가로,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됨. 갱신 평가 일정은 최초 평가의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 후(8주 이전 ~ 2주 이후)에 수립함

4. 필요 서류

- IF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부합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 경영시스템 인증은 특정한 증명서류가 아닌 경영시스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준비가 요구됨

구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목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회사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BRCGS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BRCGS (구 BRC) 인증	국가명	공통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BRCGS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적합성 평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6년
		유효기간	6개월/12개월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C 글로벌 식품안전표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 및 식품 성분 제조, 가공 및 포장 산업에서 안전, 무결성, 합법성 및 품질과 식품업체의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CGS Global standard food safety issue 8
인증 (등록) 내용	제조업자, 가공업자, 포장업자 등이 식품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이를 통해 기관 또는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품질 및 안전 요건을 충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w products of animal or vegetable origin that require cooking prior to consumption ◦ Fruit, vegetables and nuts ◦ Processed foods and liquids with pasteurisation or UHT as heat treatment or similar technology ◦ Processed foods, ready-to-eat or heat ◦ Ambient stable products with pasteurization or sterilization as heat treatment ◦ Ambient stable products not involving sterilization as heat treatment

□ 현황

취득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공인규격으로 타국가에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	인증비용 (등록비용)	-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주요 요구사항은 9개 섹션으로 구분됨

<BRC 주요 요구사항>

항목	세부내용
Senior management commi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의 책무와 지속적 개선 ◦ 조직적 구조, 책임 및 관리권한
The food safety plan - HA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식품안전팀 ◦ 선형요건프로그램 ◦ 제품설명 ◦ 사용목적의 식별 ◦ 공정도 구성 ◦ 공정흐름도 검증 ◦ 각 공정 단계 별 잠재적 위해요소 ◦ 위해요소 분석 및 식별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 CCP의 결정 ◦ 각 CCP의 한계기준 설정 ◦ 각 CCP의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 ◦ 시정조치 계획의 수립 ◦ 검증절차의 수립 ◦ HACCP 문서, 기록 유지 및 관리 ◦ HACCP 플랜 검토
Food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 품질 매뉴얼 ◦ 문서 관리 ◦ 기록의 완성 및 유지 ◦ 내부심사 ◦ 공급업체와 원재료의 승인 // 성과 모니터링 ◦ 설명서 ◦ 시정 및 예방조치 ◦ 부적합품 관리 ◦ 추적성 ◦ 불만 처리 ◦ 사고 및 폐기, 제품 리콜에 대한 관리

<p>Site standar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표준 ◦ 현장 보안 및 식품 방어 ◦ 레이아웃, 제품 이동 및 구분 ◦ 설계 구조, 원재료 관리, 전처리, 가공, 포장, 보관 구역 ◦ 용수, 열음, 공기 및 기타 가스 ◦ 장비 ◦ 유지보수 ◦ 직원 시설 ◦ 화학, 물리적 제품 오염 관리: 원재료 관리, 전처리, 가공, 포장, 보관 구역 ◦ 이물 검출 및 제거 장비 ◦ 시설 관리 및 위생 ◦ 폐기물 관리 ◦ 잉여제품 및 동물 사료 제품의 관리 ◦ 해충 관리 ◦ 창고 시설 ◦ 발송 및 운송
<p>Product contro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연구 및 개발 ◦ 제품 라벨링 ◦ 알러지원 관리 ◦ 제품의 진위, 클레임, 사슬에서의 보호 ◦ 제품 포장 ◦ 제품 검사 및 시험 ◦ 제품 출하 ◦ 애완용 식품
<p>Process contro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 라벨링 및 포장 관리 ◦ 양: 중량, 용량, 개수 관리 ◦ 측정, 모니터링 장비의 교정 및 관리
<p>Personn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원재료 관리, 전처리, 가공, 포장, 보관 구역 ◦ 개인 위생: 원재료 관리, 전처리, 가공, 포장, 보관 구역 ◦ 건강진단 ◦ 보호구: 작업자 또는 생산 구역 방문자

High-risk, high care and ambient high-care production risk zo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risk, high care, ambient high-care 구역의 레이아웃, product flow and segregation ◦ High risk, high care 구역의 설계 구조 ◦ High risk, high care, ambient high-care zone 에서의 유지보수 ◦ High risk, high care, ambient high-care zone 을 위한 직원 시설 ◦ High risk, high care, ambient high-care zone 에서의 시설 관리 및 위생 ◦ High risk, high care, ambient high-care zone 에서의 폐기물 관리 ◦ High risk, high care, ambient high-care zone 에서의 보호구
Requirements for traded produ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d 식품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성과 모니터링과 승인 ◦ 설명서 ◦ 제품 검사 및 시험 ◦ 제품의 합법성 ◦ 추적성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BRCGS	
홈페이지	https://www.brcgs.com	
연락처	전화번호	+44 (0)20 3931 8150
	이메일	enquiries@brcgs.com

3. 취득 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1	적절한 가이드라인 검토	제조업체
2	고지 또는 비고지 감사 (추가 모듈 적용 여부 선택) 선택	제조업체
3	Self - assessment 수행	제조업체
4	인증기관 선택	제조업체
5	인증범위 결정	제조업체
6	심사 준비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제조업체

7	심사 일자, 시간 조율	제조업체 & 인증기관
8	심사 수행	인증기관
9	부적합 처리 (28일 이내) // 인증기관은 부적합 처리 결과 검토 (14일 이내)	제조업체 & 인증기관
10	인증 발행	인증기관

□ 심사 결과 별 등급 분류를 통한 인증 결정 및 갱신 심사 주기

고지심사 등급	비고지 심사 등급	인증	부적합수	심사 주기
AA	AA+	O	경부적합 5건 미만	12개월
A	A+	O	경부적합 6~10건	12개월
B	B+	O	경부적합 11~16건 // 중부적합 1건, 경부적합 10건 미만	6개월
C	C+	O	경부적합 17~24건 // 중부적합 1건, 경부적합 11~16건 // 중부적합 2건, 경부적합 10건 미만	6개월
D	D+	O	경부적합 25~30건 // 중부적합 1건, 경부적합 17~24건 // 중부적합 2건, 경부적합 11~16건	6개월 (부적합 검증을 위한 재방문 시행)
-	-	X	치명적 부적합 1건 이상	인증발행이 되지 않으며 재심사 요구
-	-	X	경부적합 31건 이상	
-	-	X	중부적합 1건, 경부적합 25건 이상	
-	-	X	중부적합 2건, 경부적합 17건 이상	
-	-	X	중부적합 3건 이상	

* 비고지 심사를 통한 신청기업은 등급에 +가 표기됨

4. 필요 서류

- BRCGS 식품안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표준 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등)를 준비하여야 함

필요 서류 목록 예시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제반 문서
- 경영검토 및 자체 평가 결과
- HACCP 운영 기록 및 PRP 운영 기록
- 제품설명서, 원부재료 및 완제품 시험성적서
- 설계 구조 및 구획 관리, 직원 시설, 제조 및 측정 장비 관리 기록
- 제품 연구 개발서, 라벨링, 알러지원 관리
- 개인 위생 및 건강 진단 기록, 교육훈련 자료
- 추적성 이력, 제품의 합법성, 성과 모니터링
- 등 각 요구사항에 충족함을 증빙하기 위한 다양한 문서 및 기록 등이 요구됨

GLOBALG.A.P.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GLOBALG.A.P. 인증	국가명	공통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GLOBALG.A.P.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적합성 평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7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적으로 함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Part I – General Requirements -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Part II – Quality Management System Rules -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 Certification Body and Accreditation Rules
인증 (등록) 내용	일반적인 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각 식품 분류에 대한 별도 요구사항이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 기반: 과일 & 채소, 꽃 & 장식품, 조합 작물, 차, 식물 번식 재료, 흙 양식 기준: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가축 기반: 소 & 양 (유제품, 송아지), 돼지, 가금류, 칠면조 (Integrated Farm Assurance 규격 기준)

□ 현황

취득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공인규격으로 타국가에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인증비용 (등록비용)	약 500만원 ~ 3000만원

* 소요기간과 비용은 기관 및 업체 별로 상이함

2. 세부정보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에 대한 인증임
 - 1997년 EUREPGAP에서 시작되어, 2007년 국제적인 GAP 표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름을 GLOBALG.A.P로 변경함
 - 공급망 전체에서 인정되는 농장 보증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함으로써 농부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5년 V5로 업데이트되었으며, GFSI 승인을 받은 규격인 Integrated Farm Assurance (IFA) V5.3-GFS가 표준 규격임

- 식품 분류 별로 요구사항이 구분되어 있음
 - Integrated Farm Assurance (IFA) 규격에서의 식품 유형 분류는 아래와 같음
 - Crop Base (농작물 기반): Fruit & Vegetables (과일 & 채소), Flowers & Ornamentals (꽃 & 장식품), Combinable Crops (조합 작물), Tea (차), Plant Propagation Material (식물 번식 재료), Hops (홉)
 - Aquaculture Standard (양식 기준): Finfish, Crustaceans & Molluscs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 Livestock Base (가축 기반): Cattle & Sheep (소 & 양) – Dairy (유제품), Calf/Young Beef (송아지), Pigs (돼지), Poultry (가금류), Turkey (칠면조)

- 일반 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식품 분류 별 CPCC (Control Point and Compliance Criteria)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세부내용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ality, Administration, and Structure (적법성, 행정 및 구조) ◦ Management and Organization (경영 및 조직) ◦ Document Control (문서 관리) ◦ Complaint Handling (불만 처리) ◦ Inter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Audit (내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 Internal Producer and Production Site Inspections (내부 생산자 및 생산 현장 검사) ◦ Non-compliances, Corrective Action, and Sanctions (비준수, 시정 조치 및 제재) ◦ Product Traceability and Segregation (제품 추적성 및 분리) ◦ Withdrawal of Product (제품의 회수) ◦ Subcontractors (협력업체) ◦ Registration of Additional Producers or Production sites to the Certificate (인증서의 추가 생산자 또는 생산 현장 등록) ◦ Logo Use (로고 사용)

15) 참조: GLOBALG.A.P. Code Ref: IFA V5.3-GFS; English Version / General Regulations Part II - Quality Management System Rules

CPCC 요구사항 ¹⁶⁾	<p>All Farm Base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te History and Site Management (현장 이력 및 현장 관리) ◦ Record Keeping and Internal Self-assessment/Internal Inspection (기록 보존 및 내부 자체 평가/내부 점검) ◦ Hygiene (위생) ◦ Workers' Health, Safety, and Welfare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 ◦ Subcontractors (협력업체) ◦ Waste and Pollution Management, Recycling, and Re-use (폐기물 및 오염 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 ◦ Conservation (보존) ◦ Complaints (불만) ◦ Recall/Withdrawal Procedure (회수/철회 절차) ◦ Food Defense (N/A for Flowers and Ornamentals and Plant Propagation Material) (식품 방어) ◦ GLOBALG.A.P. Status (GLOBALG.A.P. 상태) ◦ Logo Use (로고 사용) ◦ Traceability and Segregation (추적성 및 분리) ◦ Mass Balance (질량 균형) ◦ Food Safety Policy Declaration (N/A for Flowers and Ornamentals) (식품 안전 방침 선언) ◦ Food Fraud Mitigation (N/A for Flowers and Ornamentals) (식품 사기 완화) ◦ Specifications, Non-conforming Products, and Product Release (사양, 부적합 제품 및 제품 출시) <p>The Scope Modu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p Base, Aquaculture Standard, Livestock 별도 요구사항 <p>The Sub-Scope Modu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 & Vegetable, Flowers & Ornamentals, Combinable Crops 등 별도 요구사항
--------------------------	--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GLOBALG.A.P. c/o FoodPLUS GmbH	
홈페이지	https://www.globalgap.org	
연락처	전화번호	+49 221 57776 -0
	이메일	info@globalgap.org

16) 참조: GLOBALG.A.P. Code Ref: IFA V5.3-GFS; English Version / All Farm Base Checklist

3. 취득 절차¹⁷⁾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표준 문서에서 요구사항 확인	제조업체	-
2	인증기관 선택하여 등록 GGN (GLOBALG.A.P. Number) 받기	제조업체	-
3	자체평가 진행	제조업체	-
4	인증기관과 심사 일정 조율 현장 심사 실시	제조업체 승인 인증기관	-
5	인증서 발행	승인 인증기관	-

□ 인증 획득 절차

- 신청 조직 형태에 따른 절차가 구분되어 있음
 - 옵션 1 - 개인 인증
 - 옵션 1 - 품질경영시스템을 제외한 복수사업장
 - 옵션 1 - 품질경영시스템을 포함한 복수사업장
 - 옵션 2 (생산자 그룹)
- 등록 이후 자체 평가 또는 내부 심사를 수행하고 선택한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 절차는 Off-site Module, On-site Module로 구분됨
 - Off-site Module: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 심사로, On-site Module의 4주 전까지 수행함
 - On-site Module: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한 현장 평가
- 사후 요구사항
 - 각 생산자는 최초 평가 시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1회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받아야 함

4. 필요 서류

- GLOBAPG.A.P.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부합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 경영시스템 인증은 특정한 증명서류가 아닌 경영시스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의 준비가 요구됨

구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목록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절차서 등 경영시스템 문서류 ◦ 회사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17) 참조: https://www.globalgap.org/uk_en/what-we-do/globalg.a.p.-certification/five-steps-to-get-certified/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HACCP)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스마트 HACCP)	국가명	공통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	인증기관 (관할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권장 인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8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식품 안전관리 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 HACCP 관리를 위해 도입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11조 2
인증(등록) 내용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시 등록 가능함
적용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 현황

취득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등록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		
소요기간	-	인증비용 (등록비용)	-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스마트 HACCP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 HACCP관리를 위해 도입됨
 - 스마트 HACCP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생산 환경 자동화·디지털화에 발맞춰 식품·축산 제조 공장에 IoT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등 HACCP관련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을 총망라한 디지털기반 HACCP 종합 관리 시스템임

- 스마트 HACCP 등록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 등록 평가표에 따름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후 등록 가능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www.haccp.or.kr/
연락처	전화번호	1599-1102
	팩스번호	043-928-0019

3. 취득 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준비사항
1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접수	HACCP인증 업체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서류검토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
3	현장실사		-
4	평가 및 판정		-
5	인증서 작성		-
6	인증서 교부		-

- 스마트 HACCP 등록은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됨
 - 신청업체가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 등록 취득 절차가 진행됨
 - 인증원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단계를 거쳐 신청업체의 적부 여부를 심사함
 - 신청업체가 스마트HACCP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서 작성 후 인증서가 교부됨

4. 필요 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HACCP 적용 업소에 한함), HACCP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The image features a vertical split background. The left side is white with a light gray grid pattern. The right side is a solid blue color. A large, semi-transparent gray circle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verlapping the grid. The text '2.' is written in white on the blue background.

2.

아시아권 인증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 64

JAS 유기인증 78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 등록	국가명	일본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 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 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
		유효기간	3년

* 일본 후생노동성은 인증기관이 아닌 등록 관할 기관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식품위생법에 반하는 식품 등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했으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식품위생법 (소화 22 <1947>년 법률 제 233호) - 일본 후생노동성 생활위생국장 통지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 실시에 관한 통지” - 식품표시법 (평성 25 <2013>년 법률 제 70호) - 식품표시기준 (2015년 내각 부령 제 10호) -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 70호) -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 (1959년 후생성 고지 제 370호) - 식물 방역법 (농림 수산 식품 부령 제 56호)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소화 26 <1951>년 법률 제 166호) - 관세법 (소화 26 <1951>년 법률 제 166호)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 59호)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식품 제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입 가공 식품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 일본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의 기준 규격 적합 여부와 시설 및 식품 등의 위생 관리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음
적용 품목	농축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단순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 식품 및 식품

□ 현황

취득 방법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 담당 기관을 통해 등록 가능 ¹⁸⁾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일본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일본 후생노동성의 업무 처리에 따라 업체 별로 상이함	인증(등록) 비용	없음*

* 시험 비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함¹⁹⁾

18) 참조: 해양수산 해외 산업 정보 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key=%EC%8B%B1%EA%B0%80%ED%8F%AC%EB%A5%B4&rbsIdx2=0&viewVal=0&idx=22141>)

19) 참조: 일본식품분석센터(<https://www.jfri.or.jp/service?genle=confirmation>)

2. 세부정보

- 모든 수입 식품은 일본 후생노동성 위생 허가 대상이며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가공 식품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법에 위반하는 식품 등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리 제도임
 - 해외의 제조 업체가 일본에 수출하는 식품의 품목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식임
 - 기존 수입 식품 검사는 의무적으로 1년마다 시행했으나,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해 3년 주기로 완화되었음

- 2021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
 - 수입 식품의 효과적인 감시 지도를 실시하고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을 책정함. (2021-03-26)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 식품 안전 대책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대일 수입 식품류 위반 건수는 70건이 발생함. (식기류 제외)
 - 7월 중 한국산 식품 위반 사례는 냉동 구운 봉장어에서 세균 수 초과 및 대장균 양성으로 1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함
 - 위생 관리가 중요시되는 식품은 수입 신고 내용과 실제 식품의 동일성을 철저히 확인하며, 식품 성분 규격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함
 - 수출국은 제품 생산 시 일본의 ‘식품용 기구 및 포장 용기 안전성 확보에 관한 가이드 라인 (2017년)’을 준수해야 함

- 수출업체는 일본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설 및 식품 등의 위생 관리 기준의 적합 여부도 살펴보아야 함
 - 식품위생법 제 4조 (의약품을 제외한 식품)과 제 9조 (질병 · 이상이 있거나 폐사한 짐승 및 가금류의 육류, 장기, 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따른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 식품 등 사전 확인 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증류주, 브랜디는 메탄올 함유율이 0.1%를 넘지 않을 것
 -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가공품은 기존 Pheophorbide 양이 100mg%를 초과하거나 총 Pheophorbide 양이 160mg%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유지로 처리한 과자는 제품 중에 함유된 유지의 산가가 5를 초과하거나 또는 과산화물가가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해파리 가공품, 캐비아는 붕소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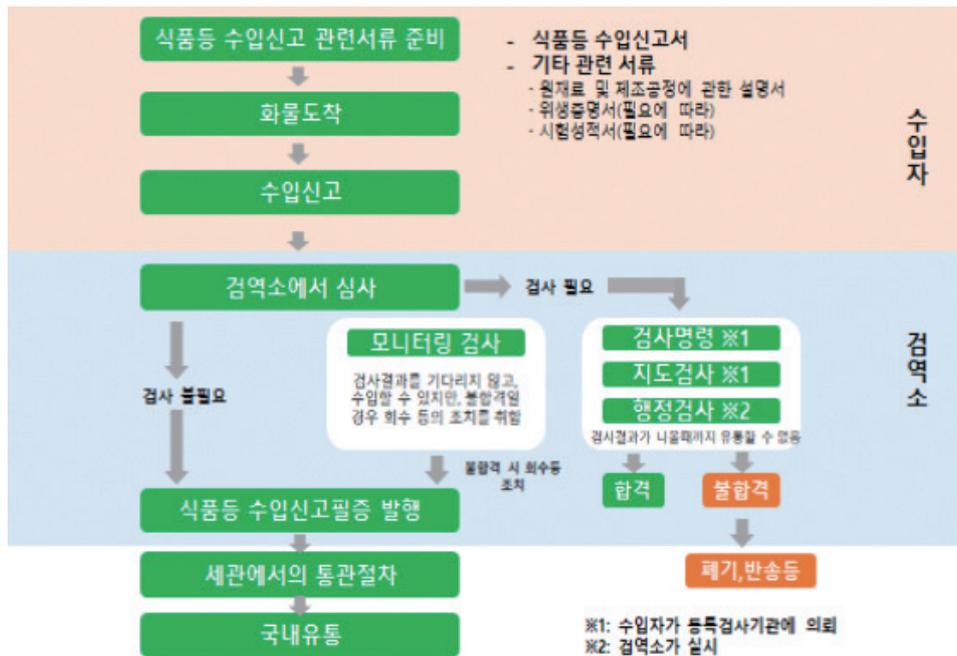
- 사전 등록 제도는 자사 공장 또는 OEM 생산을 통하여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농축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단순 가공품 등을 제외한 가공식품이 해당됨

□ 사전 등록 제도는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 식품국 식품 안전부에서 담당하며 국내 담당 기관을 통해 해당 부서에 사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 전 사전 확인 필요²⁰⁾
 - ① 일본 식품 위생 기준 확인
 - ② 위생 증명서 발행 (필요 품목의 경우)
 - ③ 수출 전 검사서
 - ④ 현장 검역 필수 품목 확인 (2020.01.29 적용)
 - 대상 품목: 루바브,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 제출 서류: 위생 증명서

□ 수입 식품 검사 제도²¹⁾

-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설정되는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검사 명령, 지도 검사 (자주 검사), 모니터링 검사, 행정 검사 (모니터링 검사 제외) 등을 실시함



22)

20) 참조: 해양수산 해외 산업 정보 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ldx=1&key=%EC%88%98%EC%9E%85&idx=22357>)
참조: 수입 식품 사전 확인 제도 개정본 (2018 개정된 일본 식품 위생법 반영)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5866&dataType=1&pageNo=1)

21) 참조: 수입 식품 감시 관련 내용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topics_150902__138.html)
참조: 2021년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0505_00003.html)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28P 수입 식품 검사 제도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12월 발간)

22) 참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수출정보부, 2019 수출국가정보zip, 2020.1, p.34

검사 제도	주요 내용	비고
검사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검역소가 수입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명하는 검사 대상 ◦ 품목, 검사 항목, 검체 채취 방법, 검사 방법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 및 검사: 등록검사기관 ◦ 검사 비용: 수입자 부담 ◦ 검사 결과 판명 전 수입 불가
지도 검사 (자주 검사)	수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입자에 대해서 최초 수입 시와 정기 실시를 지도하는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 및 검사: 등록검사기관 ◦ 검사 비용: 수입자 부담 ◦ 검사 결과 판명 전 수입 불가
모니터링 검사	식품 위생 상황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목적으로 정부가 연간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 및 검사: 검역소 ◦ 검사 비용: 국가 부담 ◦ 검사 결과 판명 전 수입 가능
행정 검사 (모니터링 검사 제외)	모니터링 이외의 행정 검사로, 최초 수입 시나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수송 도중 사고 발생 시 필요에 따라 검역소의 식품 위생 감시원에 의한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기관: 검역소 ◦ 검사 비용: 국가 부담 ◦ 검사 결과 판명 전 수입 불가

□ 기관 정보

구분	세부 내용	
기관명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	
연락처	전화번호	+81 03-5253-1111
	팩스번호	-
	이메일	www-admin@mhlw.go.jp

3. 등록 절차

절차	단계	주체	준비사항
1	사전 확인	제조 및 수출 업체	사전 확인 신청서 제출
2	수입 신고 서류 준비	제조 및 수출 업체	상업 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및 보험 증명서, 수입 신고서, 원재료 및 제조 공정 설명서, 위생 증명서 (육류 제품, 복어 등 필요 시), 시험 성적서 (필요 시)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시	일본 후생노동성	-
4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 부여	일본 후생노동성	-
5	라벨 제작	제조 및 수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기 언어: 일본어 표기 사항: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한, 보존 방법, 제조업자 정보, 원산국명 영양 정보 의무 표기사항: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6	적하 정보 제출/수입 신고 선적/도착	제조 및 수출업체	NACCS를 통한 전자 신고 또는 관할 세관에 직접 신고 가능하며, 통관 대리인 사업장 소재지는 일본이어야 함
7	검역 심사	일본 후생노동성 검역소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역 대상 동물성 제품 - 육류 (장기류 포함), 껍질 포함한 계란, 뼈, 지방, 혈액, 뿔, 깃털 등 동물 부산물, 우유 및 유제품 검역 대상 식물성 제품 - 유해 해충이 발견된 신선 채소 및 과일류
8	관세 납부	-	-
9	반출 (합격 시)	-	-

□ 필요서류

-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시험성적증명서의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전등록을 위한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제품 목록, 위생검사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등이 있으며 수입업체가 발급받은 시험성적 증명서 또한 제출할 수 있음
- 가공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상이하며, 국내 검사기관 등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와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시설·식품 등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는 공통으로 구비하여야 함

23) 참조: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37757&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37757&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KATI 농식품수출정보))

구분	서류 목록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원재료의 종류, 성분조성에 관한 서류 ◦ 제조 또는 가공 방법에 관한 서류 ◦ 사용하고 있는 첨가물의 종류, 제조방법, 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 사용원재료나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등에서 발행한 분석 증명서 ◦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시설·식품 등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
식품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명(해당첨가물이 화학적합성품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성분),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서류 ◦ 해당 첨가물이 식품 등의 기준규격 등 별도로 정한 사항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등에서 발행한 분석증명서 ◦ 식품위생책임자가 작성한 시설·식품 등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

- 검역 신청서
- 식품 수입 신고서
-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 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 위생 증명서 및 시험 성적서
- 수출국 식품 방역 기관이 발행한 식품 검역 증명서
- 수입 허가 증명서 (금지 품목의 경우)
- 수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 (2개 품목 이상의 경우)

□ 후생노동성 사전 등록 방법 (후생노동성 검역소)

- 판매 또는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수입에 대한 수입 신고의 의무가 있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의 목적을 띠고 사용할 수 없음
- 수입 신고는 후생노동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때 대상이 되는 식품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임. 후생노동성 검역소 창구에 준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식품 수입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식품 위생 감시원이 제출 서류를 통해 해당 식품이 적법한 식품인지와 심사 및 검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
- 식품 수입 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 식품 수입 신고서
 - 원재료 및 제조 공정에 관한 설명서
 - 위생 증명서
 - 시험 성적서
- 후생노동성 검역소 창구에 서류 제출 및 수입 신고
- 제출 서류를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식품 위생 감시원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식품인지와 심사 및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 제출 서류에 기재된 생산국, 제조자, 제조 품목, 원재료, 첨가물 사용 여부, 제조법 등을 바탕으로 이하 확인
 - 식품 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기준에 적합한지
 -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적절한지
 - 유독 및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
 - 과거에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제조사 또는 제조소인지²⁴⁾
- 심사 결과,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예: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이 많았던 화물, 수입 복어 등)은 검사 명령, 행정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심사 및 검사 결과 적법 (= 합격) 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후 통관을 진행함
 - 위반 (= 불합격) 판단된 식품은 일본 내로 수입될 수 없음. 위반 내용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업자에게 통지되며, 이후의 취급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지시에 따름
- 식품 분류별 추가 절차

절차	구분	내용
1	축산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식품: 생축 (동물)이나 식육, 햄, 소시지 등 ◦ 농림수산성의 동물 검역소에서 동물 검역을 받아야 함
2	신선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농산물: 곡물, 야채, 과일 등 ◦ 농림수산성의 식물 검역소에서 병충해 등에 대한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함
3	클레라에 오염된 지역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어패류	후생노동성의 방역관리검역소에서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함
4	가공 식품과 검역이 필요한 식품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검역소에서 수입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함

24) 참조: 주한 일본 기관_JETRO 홈페이지의 식품 및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정보 (<http://www.jetro.go.jp/jpn/regulations/guidebook/index.html>)

◦ 식품 분류별 필요 서류

구분	대상 품목	필요 서류
가공 식품	모든 가공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상품명, 품번 등), 제조자 명칭과 소재지, 제조 장소,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원재료 표 ◦ 제조 공정 표
	품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제조자의 서류 ◦ 원재료에 소고기, 소 유래 성분을 포함한 경우, 소 육성과 도축 및 원산지, 원료 소의 사용 부위를 서면으로 확인한 것 ◦ 원재료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률이 정한 의약품 성분의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
	가공 식품일 경우 (레토르트 식품, 과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명, 소재지, 제조 장소) ◦ 원재료 표 (제품 완성까지의 흐름을 그린 그림) ◦ 개별 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시험 성적서
	육축 짐승 (소, 말, 돼지, 양, 염소, 물 소) 및 가금류, 이를 원료로 한 육류 제품	수출국 정부 기관의 위생 증명서
	우유 및 유제품	수출국 정부 기관의 위생 증명서
	우유 가공품 등 (소해면상뇌증 관련)	우유 가공품 등의 소에서 유래하는 원재료의 원산국에 관한 보고 (젤라틴 포함)
	복어	수출국 공적 기관의 어종 및 채취 해역 등에 관한 위생 증명서
	시안 화합물 함유 잡곡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 성적서
	타르 색소	제품 검사 신청서
	수출국 공적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목록」 수록 기관의 검사 성적서
	가공 식품으로 처음 수입되는 것	제조자명이 기재된 상품 설명, 또는 수입자 확인을 거쳐 작성한 서류

가공 식품	같은 식품 등을 계속 수입	1년 이내에 실시한 등록 검사기관의 자주 검사 성적서 또는 행정 검사에 합격했을 시의 수입 신고서 사본
	생식용 굴	수출국 정부 기관의 위생 증명서
신선 식품 (육류, 채소, 어패류 및 기타 간이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포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명 및 품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진 ◦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재료 표와 첨가물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품명, 생산국에 따라 수출 측 정부 기관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및 혼합 제제의 경우, 배합비,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설명서	

□ 인증/승인 이후 사후 관리

- 사후 절차
 - 모니터링 검사 (행정 검사): 일본 검역소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샘플링 하여 검사를 마친 후 선 통관 조치되며, 문제 발생 시 사후 회수 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함. 검사 비용은 일본 정부에서 부담함
 - 후생노동성에서 모니터링 검사 관련 연간 계획이 세워지면 전국 검역소로 계획이 통지되며, 이에 근거하여 시행함
- 사후 요구사항
 - 제조 및 수출업체에게 등록 번호가 부여되면 수출 시 등록 번호를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함
- 식품의 용기 포장에 등록 번호를 기재하거나, 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음

4. 라벨링 추가²⁵⁾

- 알레르기 유발물질

특정 원재료 (의무 표시 사항)	특정 원재료에 준함 (표시 권장 사항)
달걀, 우유, 밀, 새우, 게, 메밀, 땅콩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키위, 소고기,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 L-페닐알라닌화합물 함유
 -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르테임을 포함한 식품에는 ‘L-페닐알라닌화합물 포함’등 포함 사실을 표시해야 함
 - 표시 면적 30cm²이하인 경우에 한해 다음 표시가 가능

구분	표시사항
1. 첨가물을 표시하는 경우	‘아스파르테임 (페니알라닌)’
2. 첨가물을 생략하는 경우	‘페니알라닌 포함’

- 원산국명
 - 수입품의 경우 원산국명을 표시

수입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제품 수입) ◦ 벌크 상태로 수입된 것을, 일본 내에서 소분하여 용기 포장한 제품 ◦ 일본 내에서 여러 물건을 한데 섞어 담은 수입된 제품 ◦ 기타, 일본 내에서 ‘상품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수입된 제품
-----	---

25) 참조: 2019 주요국 라벨링 제도 조사 보고서 125P (aT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표시법 (평성 25 <2013>년 법률 제 70호) ◦ 식품표시기준 (2015년 내각 부령 제 10호)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식품 수입 업체 및 제조 업체	
기본 표시사항 ²⁶⁾	일괄 표시 양식	영양 성분 양식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고품량, 내용 총량, 소비 기한, 보존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영양 성분 표시, 식품 단위 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g)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사항 ²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에 포장된 가공 식품 및 첨가물은 모두 유통 단계에서 특정 원재료에 대해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20품목에 대해서도 표시를 권장하고 있음 - 특정 원재료 (의무 표시 사항): 달걀, 우유, 밀, 새우, 계, 메밀, 땅콩 - 특정 원재료에 준함 (표시 권장 사항):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 L-페닐알라닌화합물 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르테임을 포함한 식품에는 ‘L-페닐알라닌화합물 포함’등 포함 사실을 표시해야 함 ◦ 원산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의 경우 원산국명을 표시 - 용기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제품 수입) - 벌크 상태로 수입된 것을, 일본 내에서 소분하여 용기 포장한 제품 - 일본 내에서 여러 물건을 한데 섞어 담은 수입된 제품 - 기타, 일본 내에서 ‘상품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수입된 제품 	
글자 크기 ²⁸⁾	글자 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 가능한 면적이 150cm ² 이하인 경우에 5.5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기할 수 있음	

26) 참조: 2019 주요국 라벨링 제도 조사 보고서 121P (aT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27) 참조: 2019 주요국 라벨링 제도 조사 보고서 125P (aT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28)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 식품 종류별 라벨링 고려사항

<p>특정 보건용 식품²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보건용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인 경우 해당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함 ◦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품 포장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 문서로 대신할 수 없음 ◦ 허가 받은 사항 그대로 표시하여야 함 ◦ 영양 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대하여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한 값) 및 관여 성분을 식품 100g 혹은 100ml, 1포, 1회 제공량 (식품 단위)당 양으로 표시함 ◦ 관여 성분에 대해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섭취 기준량에 포함된 기능을 표시하는 해당 관여 성분의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함 ◦ 1일 섭취 기준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조리 및 보관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 ◦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를 표시해야 함
<p>기능성 표시 식품³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함 ◦ 기능성 관여 성분 및 기능성 내용은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한 바를 표시해야 함 ◦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한 값)의 1일 섭취 기준량 당 함량을 표시하고 그 밖에 규정하는 성분 이외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 1일 섭취 기준량 당 해당 영양 성분의 함량을 나트륨 다음에 표시해야 함 ◦ 가공 식품에는 표시 내용에 책임이 있는 식품 관련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함 ◦ 신선 식품에는 식품 관련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함 ◦ 1일 섭취 기준량 당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 1일 섭취 기준량, 신고 번호,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조리 방법은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 ◦ 기능성 표시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해 국가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문구 -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 - 질병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 표시 -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의사,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는 표시 -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 - 신체에 이상을 느꼈을 때에는 신속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는 표시 ◦ 기능성 표시 식품의 표시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 -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한 기능 관여 성분 이외의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 - 소비자청 장관의 평가,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

29)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57P 특정 보건용 식품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12월 발간)

30)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58P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12월 발간)

영양
기능 식품³¹⁾

- ‘영양 기능 식품’ 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하며, 기능 성분의 명칭도 표시해야 함
- 영양 성분의 기능 성분과 명칭을 표시해야 함
- 1일 섭취 기준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함
- 1일 섭취 기준량에 포함된 영양 성분의 기능 성분량이 ‘영양소 등 표준 기준치’ 에서 차지하는 비율
- 1일 섭취 기준량에 포함되는 기능에 관하여 영양성분의 함량이 영양소 표시 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조리 또는 보관에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주의사항을 표시
- 다만 신선 식품의 경우 상온 보관 또는 유의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
- 영양 기능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
 -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문구
 -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주의사항
- 영양 기능 식품의 표시 금지 사항
 - 영양 성분의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외 성분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
 -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문구

31)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59P 영양 기능 식품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12월 발간)

JAS 유기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JAS 유기 인증	국가명	일본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 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일본 농림수산업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권 장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 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 가 <input type="checkbox"/> 민 간	도입시기	2018년 ³²⁾
		유효기간	1년 ³³⁾

*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인증기관이 아닌 등록 관할 기관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저농약” 등 표시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품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 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 (쇼와 25년 법률 제 175호)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한 제품 생산 여부를 제 3자가 검사하여 인증된 사업자가 JAS 유기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함 ◦ 유기 농산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양 상태 및 재배 시 화학 합성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JAS 인증 미 취득 시 “유기”, “오가닉” 표시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법에서 농림물자는 주류, 의약품을 제외한 음식료품 및 기름, 농림 축산 수산물 원료 및 이를 제조·가공한 물자로 규정하며, JAS 유기 인증의 경우 유기농 법에 의해 재배된 농산물 또는 유기 JAS 규격을 준수한 식품에 대해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농산물 및 유기 축산물, 유기 가공 식품, 유기 사료 등이 해당함

32) 참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5AC000000175> (e-Gov)

33) 참조: 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jsp# (15P_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참조: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jas/specific/Organic_equivalency.html

□ 현황

취득 방법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심사 및 시험을 통해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 현황	-		
타국가 통용 여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 회원국, 영국, 뉴질랜드, 대만의 유기 인증을 인정함 * 국가별 인정 제품 범위는 상이함		
소요기간 ³⁴⁾	2개월 이상	인증 비용	1,200 ~ 2,000만원 갱신 시 200 ~ 300만원 * 시험 비용/컨설팅 비용 제외

* 소요기간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34) 참조: https://m.kati.net/certification/certificationView.do?cert_seq=133 (KATI 농식품수출정보)

2. 세부정보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1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하여 이를 준수하는 제품에 한하여 JAS 유기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함
 -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인증기관 목록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 인증 현황
 - 일본 외 국가의 유기 농산물 및 유기 가공 식품은 2017년 기준 약 270만 톤으로, 이는 일본 JAS 유기인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정되는 해외 국가의 제품을 포함한 값임
 - 이 중 약 10만 톤이 일본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식품제조과 기준인증실 (食料産業局食品製造課基準認証室)에서 JAS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며 JAS 법령에 따라 등록 인증기관에서 개별 인증 신청에 대해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함
 - 2006년 개정된 JAS법을 통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적합 여부를 인증하는 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에 위임함
 - 등록 인증기관은 JAS 유기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기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2019년 9월 현재 일본 내 약 55개 회사와 외국 기관 약 13개 회사가 등록 인증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 비용은 각 인증기관 별로 상이함³⁵⁾

- JAS 유기 인증은 제품 품질 외에도 환경적 요소 등을 함께 평가
 - JAS 규격은 일본의 유기 제품 수입 시 제품 표준으로도 활용됨
 - 유기 농산물의 경우 하기와 같은 생산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파종 및 정식 전 최소 2년 이상 퇴비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작기 중 금지된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생산지와 주변 지역의 유기체 또는 잔류물 퇴비를 사용하여 토양 생산성을 유지할 것
- 비료 및 토양 컨디셔너는 허용되는 일부 경우에만 사용할 것

35) 참조: 일본 농림 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 동등성 인정

- 일본은 해당 국가들과 유기 농산물 및 유기 가공 식품 인증 제도에 대해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2002년 체결된 일본과 미국 간 수출 협정으로 미국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일본 내에서 유기 제품으로 표시하여 유통할 수 있음
- 동등성 인정 국가
 -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회원국, 영국, 뉴질랜드, 대만의 유기 인증은 일본 JAS 유기 인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정됨
 - 생산 및 인증된 유기 축산물, 유기 축산 가공품, 유기 농축산 가공품, 유기농 사료 등이 2005년 11월 이후부터 일본의 유기농 JAS 규격의 15-2항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일본
 - 국내 유기 제품의 경우 일본 농림수산물 등록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만 일본에 유기 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어, JAS 인증 취득이 요구됨
 - 또한, 한국 농림 축산 식품부의 유기농 인증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인증 로고나 일본의 JAS 유기 인증 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양국의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음

□ 인증/승인 이후 사후 관리

- 사후 관리³⁶⁾
 - 인증 후에도 연 1회 이상의 조사가 실시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을 요구 받은 경우 개선 사항이 모두 개선되지 않으면 인증 발급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부적합 항목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함
 - JAS 등록 인증기관인 ECOCERT QAI Japan Ltd.에 따르면 일단 인증 발행이 완료된 이후에 등록 인증기관은 최대 12개월에 한 번 인증 발행 공장에 대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해야 함³⁷⁾
 - 사후 검사는 지정 기한 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인증은 사전 경고 없이 자동으로 무효화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 내용
기관명		일본 농림수산물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j/jas/index.html
연락처	전화번호	+81-03-3502-8111
	팩스번호	-
	이메일	-

36) 참조: 한국무역협회 Trade SOS(<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19803>)

37) 참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s://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JAS.pdf)

3. 인증 절차³⁸⁾

□ 일반적인 인증 절차

절차	단계	주체	준비사항
1	인증 신청서 제출	생산업체	인증 신청서 및 제반 서류 (하기 참조)
2	인증 신청서 수리	등록 인증기관	-
3	인증 신청서 서류 심사	등록 인증기관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현장 실사	등록 인증기관 (심사원)	신청인과 일정 조정 후 식품 생산 시설 등 실사 진행
5	판정	등록 인증기관 (판정 위원회)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등록 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6	인증 발급 및 사후 관리	등록 인증기관	-

- JAS 유기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인증 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정하는 표준규격 부합여부를 심사함
 -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록인증기관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함
- 현장 실사 항목에는 아래의 사항이 있음
 - 관리자 및 담당자 질의
 - 제조 시설 등 현장 검증
 - 생산 관련 기록 및 근거 서류 확인 등
- 현지 실사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나, 현장 실사를 중단하고 시정된 후 재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등록 인증기관은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판정하며 신청인은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 인증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인증 취득 후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며 표준 규격 준수를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 인증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인증기관에 알려야 함

□ 식품 분류별 인증 절차

- 식품 분류: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가공 식품, 신선 식품, 첨가물로 구분
- 식품 분류별 추가 절차

38) 참조: 일본 농림 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_kikan.html)

No.	구분	내용
1	축산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 식품: 생축 (동물)이나 식육, 햄, 소시지 등 농림수산성의 동물 검역소에서 동물 검역을 받아야 함
2	신선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선 농산물: 곡물, 야채, 과일 등 농림수산성의 식물 검역소에서 병충해 등에 대한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함
3	클레라에 오염된 지역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어패류	후생노동성의 방역관리검역소에서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함
4	가공 식품과 검역이 필요한 식품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검역소에서 수입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함

□ 필요 서류

- 일반적으로 JAS 유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구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서 (등록 인증기관 별 서류 양식에 차이 있음) ◦ 신청자명 및 주소 ◦ 인증 대상 품목 종류 ◦ 제조/가공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도면 ◦ 생산 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 및 등급 규정 ◦ 사용 예정 첨가물이 JAS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조 공정도 ◦ 기록 서식
질문서	원활한 서류 심사 진행을 위해 질문 형태의 기재사항이 요구되기도 함

4. 라벨링³⁹⁾

□ 유기 농산물 라벨링 규정

No.	라벨링	내용
1	有機農産物	유기 농산물을 의미
2	有機栽培農産物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었음을 의미
3	有機農産物 + 농산물명	유기 농산물 ‘(농산물 명)’을 의미
4	농산물명 (有機農産物)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농산물 명)’을 의미
5	有機栽培農産物 + 농산물명	유기농 ‘(농산물 명)’을 의미
6	농산물명 (有機栽培農産物)	유기 ‘(농산물 명)’을 의미
7	有機栽培 + 농산물명	유기농 ‘(농산물 명)’을 의미

* 농산물명은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하며, 유기 농산물 생산 요건을 준수하는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에는 (1), (3), (6), (7)과 같은 라벨링을 사용할 수 있음

□ 가공 식품 의무 표시사항⁴⁰⁾

◦ 일괄 표기 양식, 영양 성분 표시 양식에 따른 표시를 기본으로 함

일괄 표시 양식		영양 성분 양식
名称 명칭	内容総量 내용 총량	栄養成分表示 영양 성분 표시
原材料名 원재료명	消費期限 소비 기한	栄養成分表示 식품 단위 당
添加物 첨가물	保存方法 보존 방법	熱量 열량 Kcal
原料原産地名 원료 원산지명	原産国名 원산국명	たんぱく質 단백질 g
内容量 내용량	製造者 제조자	脂質 지질 g
固形量 고형량		炭水化物 탄수화물 g
		食塩相当量 식염상당량 g

39) 참조: 일본 농림 수산성 홈페이지 (www.maff.go.jp/j/jas/jas_kikaku/youuki_kikan.html)

40) 참조: 2019 주요국 라벨링 제도 조사 보고서121P (aT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 라벨링 추가 사항⁴¹⁾

- 알레르기 유발물질

특정 원재료 (의무 표시 사항)	특정 원재료에 준함 (표시 권장 사항)
달걀, 우유, 밀, 새우, 게, 메밀, 땅콩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 L-페닐알라닌화합물 함유
 -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르테임을 포함한 식품에는 ‘L-페닐알라닌화합물 포함’등 포함 사실을 표시해야 함
 - 표시 면적 30cm² 이하인 경우에 한해 다음 표시가 가능
 - ① 첨가물을 표시하는 경우 ‘아스파르테임 (페니알라닌)’
 - ② 첨가물을 생략하는 경우 ‘페니알라닌 포함’
- 원산국명
 - 수입품의 경우 원산국명을 표시

수입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제품 수입) ◦ 벌크 상태로 수입된 것을, 일본 내에서 소분하여 용기 포장한 제품 ◦ 일본 내에서 여러 물건을 한데 섞어 담은 수입된 제품 ◦ 기타, 일본 내에서 ‘상품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수입된 제품
-----	---

41) 참조: 2019 주요국 라벨링 제도 조사 보고서 125P (aT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표시법 (평성 25 <2013>년 법률 제 70호) ◦ 식품표시기준 (2015년 내각 부령 제 10호)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식품 수입 업체 및 제조 업체	
기본 표시사항 ⁴²⁾	일괄 표시 양식	영양 성분 양식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원료 원산지명, 내용량, 고품량, 내용 총량. 소비 기한, 보존 방법, 원산국명, 제조자	영양 성분 표시, 식품 단위 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g)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사항 ⁴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에 포장된 가공 식품 및 첨가물은 모두 유통 단계에서 특정 원재료에 대해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20품목에 대해서도 표시를 권장하고 있음 - 특정 원재료 (의무 표시 사항): 달걀, 우유, 밀, 새우, 게, 메밀, 땅콩 - 특정 원재료에 준함 (표시 권장 사항):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소고기, 호두, 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 L-페닐알라닌화합물 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르테임을 포함한 식품에는 ‘L-페닐알라닌화합물 포함’등 포함 사실을 표시해야 함 - 표시 면적 30cm² 이하인 경우에 한해 다음 표시가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첨가물을 표시하는 경우 ‘아스파르테임 (페닐알라닌)’ ② 첨가물을 생략하는 경우 ‘페닐알라닌 포함’ ◦ 원산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의 경우 원산국명을 표시 - 용기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제품 수입) - 벌크 상태로 수입된 것을, 일본 내에서 소분하여 용기 포장한 제품 - 일본 내에서 여러 물건을 한데 섞어 담은 수입된 제품 - 기타, 일본 내에서 ‘상품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수입된 제품 	
글자 크기 ⁴⁴⁾	글자 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 가능한 면적이 150cm ² 이하인 경우에 5.5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기할 수 있다.	

42) 참조: 2019 주요국 라벨링 제도 조사 보고서 121P (aT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43) 참조: 2019 주요국 라벨링 제도 조사 보고서 125P (aT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44)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구분	내용
<p>특정 보건용 식품⁴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점을 인정받아 ‘콜레스테롤 흡수를 완화합니다.’ 등의 표시가 허가된 식품 - 건강증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심사를 하고 제품별로 소비자청 장관이 허가함 ◦ 특정 보건용 식품의 의무 표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cm²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정 보건용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인 경우 해당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품 포장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며 첨부 문서로 대신할 수 없다. - 허가 받은 사항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양 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대하여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한 값) 및 관여 성분을 식품 100g 혹은 100ml, 1포, 1회 제공량 (식품 단위)당 양으로 표시한다. - 관여 성분에 대해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섭취 기준량에 포함된 기능을 표시하는 해당 관여성분의 영양소등 표시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다. - 1일 섭취 기준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조리 및 보관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표시한다. -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p>기능성 표시 식품⁴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 수유부 등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해 기능성 관여 성분에 따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특정 보건 목적 (질병 감소와 관련된 것 제외)을 기대할 수 있는 취지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포장 용기에 표시한 식품 - 신선 식품인 경우에도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수 표시 사항을 기재한 포장 용기에 넣어 판매하여야 한다. - 특별 용도 식품, 영양 기능 식품,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나트륨과 당류 등을 과잉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제외 - 해당 식품에 관한 표시 내용, 식품 관련 사업자의 기본 정보, 안전성 및 기능성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매일의 60일 전까지 소비자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기능성 표시 식품의 의무 표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cm²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능성 관여 성분 및 기능성 내용은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한 바를 표시해야 한다. -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한 값)의 1일 섭취 기준량 당 함량을 표시하고 그 밖에 규정하는 성분 이외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 1일 섭취 기준량 당 해당 영양 성분의 함량을 나트륨 다음에 표시한다. - 가공 식품에는 표시 내용에 책임이 있는 식품 관련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45)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57P 특정 보건용 식품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12월 발간)

46)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58P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12월 발간)

기능성 표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식품에는 식품 관련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 1일 섭취 기준량 당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 1일 섭취 기준량, 신고 번호,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조리 방법은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능성 표시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해 국가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문구 -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 - 질병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 표시 -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의사,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는 표시 -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 - 신체에 이상을 느꼈을 때에는 신속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는 표시 ○ 기능성 표시 식품의 표시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 -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한 기능 관여 성분 이외의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 - 소비자청 장관의 평가,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
--------------	--

구분	내용
영양 기능 식품 ⁴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영양 성분의 기능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기능 식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1일 섭취 기준량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영양 성분량이 국가가 정한 상/하한 값의 기준 이내여야 한다. -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종류의 영양 성분에 대하여 이미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영양 성분이 규정된 상/하한 값의 범위 내에 있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영양 성분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 영양 기능 식품의 의무 표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cm²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영양 기능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하며, 기능 성분의 명칭도 표시하여야 한다. - 영양 성분의 기능 성분과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일 섭취 기준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일 섭취 기준량에 포함된 영양 성분의 기능 성분량이 ‘영양소 등 표준 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일 섭취 기준량에 포함되는 기능에 관하여 영양성분의 함량이 영양소 표시 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조리 또는 보관에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신선 식품의 경우 상온 보관 또는 유의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영양 기능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잡힌 식생활을 계발하고 보급하고자 함에 대한 문구 -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문구 -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주의사항 ○ 영양 기능 식품의 표시 금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성분의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외 성분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 - 특정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문구

47) 참조: 식품 수출 안내서 - 일본편 59P 영양 기능 식품 관련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_2020년 12월 발간)

중국

AQSIQ 인증	90
중국 유기산품 인증	96
중국 신 원료 등록	104
China HACCP	109

AQSIQ 등록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AQSIQ 등록	국가명	중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 마크</small>	-	등록 관할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AQSIQ)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1년 04월 10일 도입
		유효기간	3~5년(식품 유형별 상이함)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해 2001년 4월 10일 국가품질기술감독총국과 국가출입국검사검역총국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식품안전법 (2021)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2021)) - GACC/AQSIQ Notic No. 248/249
인증 (등록) 내용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생산 및 수출업체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온라인시스템에 회사 정보를 등록해야 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SIQ에서 적용하는 품목은 대부분의 식품이 적용됨 - 수입식품(주류, 설탕 및 감미료 포함),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현황

취득방법	중국 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2021년 10월 기준 65개국 약 27,800개 이상 식품 생산 및 수출업체가 등록함		
타국가 통용 여부	중국 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약 7~8일(일반식품)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당 230~890 USD * 시험 비용/컨설팅 비용 제외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2018년 3월 중국 국무원이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신설되었으며 수입식품 통관 업무가 해관총서(海关总署)로 이관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이 통폐합된 것으로, 관련 부서와 담당 직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 감독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됨⁴⁸⁾
 -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인증 및 인허가 등 업무를 모두 포괄하게 되어 중국으로 식품 수출 후 유통단계까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입식품 통관 및 검역 업무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에서 전담하며 수입식품의 항구 검사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함
 - 신설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함

-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및 해관총서(GACC) 시스템에 전산 등록 후 중문 라벨을 인쇄해야 함
 - 모든 해외 식품 생산업체, 수출업체, 중국 내 수탁인 등은 AQSIQ 수출입식품안전국에 온라인으로 회사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함
 - 온라인을 통해 최초 1회 신청 후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며, 발급받은 등록번호는 해관 총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 가능함
 - 온라인 신청페이지(www.aqsiq.net/application/food-register)에서 등록신청비 결제 후 업체 정보를 제출함
 - AQSIQ 시스템은 중국 세관시스템과 연동되어 업체 정보를 공유하며 발급된 등록 번호는 중국 세관 신고 시 활용됨
 - 이에 따라 중국 AQSIQ는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가 신청인으로 직접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국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가 대신 진행할 경우 통관 및 유통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시스템 등록을 완료한 업체명 및 국가, 등록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기준 65개국의 약 27,800개 업체가 등록됨

- 식품 유형에 따라 등록 요구사항 및 등록 신청비에 차이가 있으나 등록 절차는 동일함
 - 식품 유형별로 제품 검사 및 등록신청비 등의 비용이 상이함

구분	세부내용
수입식품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통조림, 가공식품 등 ◦ 코코넛 음료, 혼합과일주스 등 ◦ 보드카, 위스키, 진, 위스키, 테킬라, 와인, 맥주, 막걸리 등 ◦ 맛설탕, 소다, 베이킹 파우더, 기타 감미료 등

48) 참조: 중국 AQSIQ인증 홈페이지(www.aqsiq.net)

유제품 등록	우유, 분유, 농축 우유 등 유제품
육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냉장, 냉동, 절임 ◦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사슴고기, 가금류 ◦ 몽골산 말고기 ◦ 고유식별자를 통해 생산지를 추적하거나 입국항 및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소고기 ◦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 배송시점까지 식별 및 통제 가능한 죽은 동물,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해산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서양)연어, 청어, 정어리, 참치, 가다랑어, 고등어, 툴라 ◦ 피아, 메기 등 ◦ 생선 및 상어 지느러미 통조림, 철갑상어알 대체품 등 ◦ 게, 새우, 랍스터 등 갑각류 ◦ 굴, 조개, 전복, 해삼, 해파리, 오징어, 수생 무척추동물 등

□ 기관 정보

구분	세부 내용	
기관명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AQSIQ)	
홈페이지	https:// www.aqsiq.net/	
연락처	전화번호	+86-400-665-9988 / +1-662-448-3466(해외인증서비스)
	팩스번호	-
	이메일	info@aqsiq.net

3. 등록 절차⁴⁹⁾

□ 취득 단계(AQSIQ 온라인 등록)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온라인 등록 신청	수입업체	온라인 또는 이메일 지원 양식
2	등록 신청비 결제 및 신청서 제출	수입업체	표준화 문서 + 올바른 방법
3	승인 및 등록번호 발급	AQSIQ	인증서 받기

- 식품 유형에 따라 등록 요구사항 및 등록 신청비에 차이가 있으나 등록 절차는 동일함
- 식품 유형별로 제품 검사 및 등록신청비 등이 상이함

□ 품목별 등록 사항⁵⁰⁾

절차	구분	식품 유형	등록 상세내용
1	수입식품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통조림, 가공식품 등 ◦ 코코넛 음료, 합과일주스 등 ◦ 보드카, 위스키, 진, 스키, 테킬라, 와인, 맥주, 막걸리 등 ◦ 맛설탕, 소다, 베이킹 파우더, 기타 감미료 등 	AQSIQ는 해외 수출업자를 돕기 위해 수입 식품 목록 및 유형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서류 접수 및 접수증 발부	보건부 또는 중앙직할시·성단위 인민 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기관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부 ◦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령 기관은 서면으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요청 가능
3	상품 공표 정보 게시	보건부 또는 중앙직할시·성단위 인민 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수령기관은 기업과 상품명을 기관 웹사이트 및 식품 안전 데이터 베이스에 게시
4	비용 지불	중국 수입업체	수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문서 검토 비용을 지불

49) 참조: 중국 AQSIQ인증 신청 페이지(<https://www.aqsiq.net/application>)

50) 참조: 중국 AQSIQ 수입 식품 목록 (www.aqsiq.net/imported-food-list)

- 중국으로 신규 수입되는 유제품의 경우 2017년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한 하기 국가 표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함
 - AQSIQ 등록 시에는 유제품 검사보고서 또는 인증서, 회사의 상업용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 등록 신청서, 수출국 공식라이센스 등을 제출함
-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첨가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중국으로 수입되는 육류 제품은 성장촉진제, 사료첨가제 및 락토파민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입국항에서 적발 될 경우 원산지로 반송되거나 폐기됨
- 중국으로 처음 수입되는 해산물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검사, 독소 검사, 방사능 탐지, 미생물 검사 등의 검사를 수행해야 함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기업 신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 공업 및 상업 사업자 등록증(사업 범위는 식품 포함), 기관 코드 증명서, 법정 대리인 신분 증명서, 대외 무역 사업자 등록 양식 등 사본 및 검사를 위해 원본 제출 ◦ 기업 품질 및 안전 관리 시스템 ◦ 식품 안전과 관련된 조직 설정, 부서 기능 및 직무 ◦ 유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보관장소(이름, 주소, 담당자, 연락처, 평면도 등 창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대창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관업체 사업자등록증, 식품보관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함) ◦ 2년 이내 식품 수입·가공·판매업에 종사한 자는 관련 설명(식품의 품종,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자가점검 시 자가점검부 등록증 사본 및 원본 제출

- 온라인 등록 시 식품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정보를 제출함
 -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의 이름, 국가, 지역, 주소, 연락처, 식품 카테고리 등 정보를 제출함
- 신청 후 승인까지 일반식품은 약 7~8일이 소요되는 반면 유제품·육류제품·해산물은 약 2-3주가 소요됨
- 등록 유효기간 또한 식품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일반식품 3년, 유제품 5년으로 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라벨링⁵¹⁾

- AQSIQ 고시 No. 59에 따르면, 수입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은 식품 '라벨링'을 모든 라벨 및 기타 물품이나 그 용기 또는 포장지 또는 이러한 물품에 수반되는 기타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으로 정의하며, 포스터, 태그, 팜플렛, 회보, 소책자, 브로셔, 지침, 웹사이트 등이 해당됨
- AQSIQ는 대부분의 식품에 특정 영양 및 성분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영양소 함량 표시 및 특정 건강 메시지가 포함된 식품, 음료 및 건강 보조 식품 라벨을 요구하며, 또한 "건강 보조 식품"을 정의하고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특정 표시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선택적 표시 문구를 제공함
- 표준 템플릿
 - AQSIQ에 중국어 버전의 식품 라벨을 등록하려는 외국 식품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AQSIQ 협회는 다양한 제품 유형의 라벨 템플릿을 제공하여 AQSIQ의 표준에 따른 라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SIQ Notice No. 59 ◦ GB 7718-2011 ◦ GB 28050-2011 ◦ GB 2760-2014 -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기본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성분표 ◦ 규격, 순중량 ◦ 원산국, 생산자 및 판매업자 정보 ◦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조건 ◦ 영양성분표 등
라벨 위치	-
표기 언어	라벨 및 포장지에 중국어로 작성해야 함
보조라벨	-

6. 식품 포장 또는 용기 요구사항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CC Notice No.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SIQ 등록 번호 - AQSIQ 등록 번호 유효 기간 - 제품 취급 업체명 및 주소 - 생산일자 및 생산로트 번호 - 패키징 정보
-------	--

51) 참조: AQSIQ 라벨 표준 (<https://www.aqsiq.net/food-labels.html>)

중국 유기산품 인증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중국 유기산품 인증(有机产品认证)	국가명	중국
인증 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4년 4월(신규정 적용)
		유효기간	1년

* 중국 CNCA에서 인정한 공인 인증기관에서 진행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산품 인증을 통해 중국 내 유통되는 유기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 인증에 대한 관리 조치(AQSIQ No.67) - 유기제품 인증 구현 규칙 - 유기농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GB/T 19630-2019)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 유기농표준 및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에 따라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심사함 ◦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제품의 경우 유기산품 인증을 취득하여 포장 및 라벨링에 ‘유기(Organic)’를 기재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제품인증목록([별첨1] 참조)에 포함된 약 120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채소, 과일, 가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포함함

취득

취득방법	한국 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중국 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4~6개월	인증비용	-

* 소요기간과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중국에서는 유기농 식품,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에 대한 표준을 각각 제정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은 유기산품 인증을 취득해야 함

<중국 유기농 식품 관련 인증>⁵²⁾

	인증명	인증마크	비고
1	유기산품 인증		생산 및 가공 과정에 화학합성 살충제 및 비료, 유전자 조작 유기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표 준에 부합하는 곡물, 채소, 과일, 가금류, 수산물 등 유기농 식품이 해당됨
2	유기농 전환제품 인증		유기농 관리 시작부터 유기농 인증 획득 사이의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 이 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제품은 판매 전에 "중국 유기농 전환 제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3	무공해 농산물 인증		1차 가공 농산물이 무공해 농산물에 관한 국가표준 및 규범에 따라 농약 및 비료 사용을 통제하고 생산환경 및 생산과정, 농산물 품질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4	녹색식품 인증		녹색식품 인증 제품은 우수한 생태환경에서 생산되고 관련 표준에 따라 생산되어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용 농산물 및 관련 제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공해 농산물보다 엄격한 표준이 적용되어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됨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수입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유기농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이 적용됨
 - 이에 따라 한국산 유기농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유기산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중국 유기산품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Organic’ 등 소비자 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기나 도안 사용이 금지됨

52) 참조: 중국 식품 및 농산물 인증 정보 시스템(<http://www.cnca.gov.cn/zt/spncp/>)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유기산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코드를 제품 라벨에 인쇄하여 유기농 식품 이력을 추적하고자 함

- 유기산품 인증코드는 17자리 숫자가 발행되며 인증기관 코드 3자리, 인증마크 발행 연도 코드 2자리, 임의코드 12자리로 구성됨
 - 인증기관 코드(3자리)는 중국 인증기관의 경우 3자리 숫자를 발급받으나 해외 인증 기관의 경우 2자리 숫자 앞에 승인번호 '9'가 함께 발급됨
 - 인증마크 발행연도(2자리) 코드는 발행연도의 마지막 2자리에 따라 발행됨
 - 임의코드의 경우 인증기관이 설정한 번호 생성규칙에 따라 임의로 발급됨
- 유기산품 인증코드는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운영하는 식품 및 농산물 인증정보시스템의 유기산품 인증 검색페이지에 등록됨
 -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및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국가인증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약 1억 개의 유기농 제품이 등록됨

□ 유기산품 인증은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인증기관 및 컨설팅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인증 및 인증 상담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됨

- 인증기관 정보는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⁵³⁾에 고시됨([별첨2] 참조)
 - 2019년 기준 중국 내 23개의 인증기관과 25개의 인증 컨설팅업체가 확인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홈페이지		www.cnca.gov.cn
연락처	전화번호	+86-10-82260777
	팩스번호	+86-10-82260799
	이메일	-

53) 참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nca.gov.cn/zt/spncp/202007/t20200717_60386.shtml)

3. 등록 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인증 신청	생산업체 및 가공업체	제반서류 제출 및 신청비 납부
2	서류심사	공인인증기관	-
3	현장심사 및 샘플테스트	공인인증기관	-
4	검사보고서 검토	인증 발급위원회	-
5	인증 결정 및 발급	인증 발급위원회	-

- 유기산품 인증 발급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이 소요됨
- 유기산품 인증 검사관은 현장검사를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 및 가공시설에 방문하여 시스템 문서 검토, 환경 검사 및 평가, 근로자 인터뷰, 샘플 추출 등을 수행함
 - 검사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 발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기산품 인증 여부를 결정함
- 인증기관은 허위 정보 기재, 금지물질 사용 등 유기농 제품에 대한 중국 표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인증 발급 결정을 내림
- 증명서에는 하기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발급 후 1년간 유효함
 - 인증 신청자명 및 주소
 - 인증 제품 생산업체, 가공업체, 원산지명 및 주소
 - 인증 제품의 수량, 원산지 및 제품 유형
 - 인증 유형
 - 국가표준 또는 기술 사양
 - 인증기관명 및 담당자 서명,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만료 최소 3개월 전 갱신을 신청해야 함

4. 필요 서류⁵⁴⁾

- 인증 신청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며, 유기산품 인증 제품의 중국 통관 시에는 인증서 사본, 판매증명서 사본, 인증마크 및 제품 식별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제품인증조사표 ◦ 유기제품생산관리기준서 ◦ 유기제품인증신청서 ◦ 행정위치도 ◦ 대기환경보고서 ◦ 사업자등록증(영문) ◦ 수질검사보고서 ◦ 법률법규 리스트 ◦ 유기제품 생산계획 ◦ 취득한 경우, 유기인증서 등

5. 라벨링

적용 규정	GB19630-2019
기본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된 유기농 제품의 최소 포장에 다음 정보를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 인증 마크 - 유기농 코드(각 제품 인증 마크의 고유 번호) - 인증 기관 이름 또는 로고
라벨 위치	-
표기 언어	중국어(라벨 및 포장)
보조라벨	-

6. 식품 포장 또는 용기 요구사항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CC Notice No.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SIQ 등록 번호 - AQSIQ 등록 번호 유효 기간 - 제품 취급 업체명 및 주소 - 생산일자 및 생산로트 번호 - 패키징 정보
-------	--

54) 참조: 유기농제품 인증 관리 조치 제3장 22조

[별첨1] 유기산품 인증 대상

□ 생산

식물류(야생식물 포함)	
구분	세부 품목
곡물	1. 밀 2.옥수수 3.쌀 4.기장 5.수수 6.보리 7.귀리 8.잡곡
채소	9.고구마류 10.콩과 11.박과 12.배추과 13.푸른잎 채소 14.신선 뿌리류 15.신선 양배추류 16.신선 겨자류 17.신선 가지류 18.신선 양파·마늘류 19.신선 다년생 채소 20.신선 수생식물류 21.신선 새싹류 22.식용 버섯류
과일 및 견과류	23.감귤류 24.오렌지류 25.유자류 26.레몬류 27.포도류 28.멜론류 29.사과 30.배 31.복숭아 32.대추 33.살구 34.호두 35.밤 36.기타과일 37.기타 견과류
콩류 및 기타 유지작물	38.대두 39.유지작물
화훼	40.화훼
향신료 작물	41.향신료 작물 상품
제당(制糖)식물	42.제당식물
기타 식물류	43.사료식물 44.방직용 식물 45.향료 식물 46.야생 식물 47.차
종자 및 번식 재료	48.종자 및 번식 재료
의학용 식물류	49.의학용 식물류
가축 및 가금류	
구분	세부 품목
살아있는 동물	50.육우 51.젓소 52.겸용우 53.면양 54.산양 55.말 56.당나귀 57.돼지 58.닭 59.오리 60.거위 61.기타동물(토끼, 사슴, 낙타, 칠면조 등)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	62.우유 63.양유 64.마유 65.기타(당나귀우유, 낙타우유) 66.달걀 67.오리알 68.기타 계란(메추라기 알, 타조 알 등) 69.동물부산물(털, 캐시미어)
수산물	
구분	세부 품목
활어류	70.해수어(장어, 메기, 대구, 우럭, 광어, 가자미, 도미, 복어, 장어 등) 71.담수어
갑각류 및 무척추 동물	72.새우류 73.게류 74.무척추 동물(굴, 해삼, 홍합, 조개 등)
수생 척추동물	75.거북이
수생식물	76.해초 및 해조류

□ 가공

가공식품	
구분	세부 품목
육류식품 및 부산물 가공	77.냉동 신선육 78.가공 육제품
수산물 가공	79.냉동 생선 80.가공 생선 제품 81.기타 수산가공제품
가공 또는 보존처리 채소	82.냉동 채소 83.보존처리 채소 84.절임 채소 85.탈수 채소 86.채소 통조림
과일 및 채소 즙	82.냉동 채소 83.보존처리 채소 84.절임 채소 85.탈수 채소 86.채소 통조림
가공 또는 보존 과일 및 견과류	89.보존처리된 과일 및 견과류(대추 포함) 90.냉동 과일 91.냉동 견과류 92.잼 93.건조 혹은 튀긴 견과류 94.기타(견과류 분말, 견과류 편)
식물성 기름 가공	95.식용 식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96.식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가공처리된 액체 우유, 버터	97.가공처리된 액체 우유 및 버터
기타 유제품	98.분유 99.발효우유
곡물 밀링	100.밀(가루) 101.옥수수(가루) 102.쌀(가루) 103.좁쌀(가루) 104.기타 곡물 밀링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105.전분(녹말) 106.전분제품(당면) 107.콩제품
가공 사료	108.식물성 사료 109.동물성 사료
건조식품	110.비스킷 및 빵
파스타 등 곡물 전분 제품	111.쌀면 제품 112.인스턴트 식품
분류불가 식품	113.차 114.차 대용 식품(국화차, 보리차 등) 115.커피 116.껍질 벗긴 계란류 제품 117.향신료 118.식물류 중의약 가공 제품(인삼, 우영, 도라지, 은행, 감잎, 오미자, 달기 등)
맥주	119.맥주
포도주와 과실주 등 발효주	120.포도주 121.과실수 122.황주 123.청주 124.기타 발효주
맥주	125.맥주
방직용 기타 천연 섬유	126.방직용 기타 천연 섬유(대나무 섬유, 실크 등)
복장	127.방직제품(실, 실크제품 등)

[별첨2] 중국 유기산품 관련 공인인증기관

구분	인증기관명
1	중국품질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2	항주만태인증유한공사(杭州万泰认证有限公司)
3	방원지표인증그룹(方圆标志认证集团有限公司)
4	광둥중감인증유한책임공사(广东中鉴认证有限责任公司)
5	절강공신인증유한공사(浙江公信认证有限公司)
6	중식항신(북경)질량인증중심유한공사(中食恒信(北京)质量认证中心有限公司)
7	베이징중안질환인증센터(北京中安质环认证中心)
8	흑룡강성농산품품질인증센터(黑龙江省农产品质量认证中心)
9	중양연합(북경)인증중심유한공사(中环联合(北京)认证中心有限公司)
10	북경오주항통인증유한공사(北京五洲恒通认证有限公司)
11	북경중록화하유기식품인증센터(北京中绿华夏有机食品认证中心)
12	요녕방원유기식품인증유한공사(辽宁方圆有机食品认证有限公司)
13	요녕요원유기식품인증센터(辽宁辽环有机食品认证中心)
14	북경오악화하관리기술센터(北京五岳华夏管理技术中心)
15	신장생산건설연대환경보호과학연구소(新疆生产建设兵团环境保护科学研究所)
16	서북농림과기대학인증센터(西北农林科技大学认证中心)
17	남경국환유기산품인증센터(南京国环有机产品认证中心, 유기제품 수출 인증도 가능)
18	북경동방가화인증유한책임회사(北京东方嘉禾认证有限责任公司)
19	항저우중농품질인증센터(杭州中农质量认证中心)
20	북경ECOCERT인증센터유한회사(北京爱科赛尔认证中心有限公司, 유기제품 수출 인증도 가능)
21	남경영목세인증유한회사(上海英目世认证有限公司, 수출용 유기농 제품 인증만 해당됨)
22	북경중합금락인증센터유한회사(北京中合金诺认证中心有限公司)
23	상하이CERES인증유한회사(上海色瑞斯认证有限公司, 수출용 유기농 제품 인증만 해당됨)

중국 신 원료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중국 신 원료 등록	국가명	중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	등록 관할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NHFPC)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선택 등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87년
		유효기간	-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원자재 공급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 원자재의 종류와 출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식품 원료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어, 중국 정부는 식품 원료의 개발 및 적용을 규제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증제도를 수립함 ◦ 이러한 신 원료는 중국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신고 및 평가되어야 하며 국가 보건 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될 수 있음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신 식품 원료 안전성심사 시행을 위한 조치 - 신 식품 원료 신고 및 수락 규정 - 신 식품 원료 안전성 심사 절차
등록 내용	<p>식품 신 원료는 식품 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독성이 없고 무해해야 하며 급성, 아급성, 만성 또는 기타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p>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식품 원료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식물 및 미생물; - 동물,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된 성분; - 기존 구조가 변경된 식품 성분; - 그 밖에 새롭게 개발된 식품재료;

□ 현황

취득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식품 첨가물 또는 새로운 종류의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FPC)에서 평가 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중국 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3~6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2013년 7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고시한 '신식품 원료 안전성 심사에 관한 행정조치'에 따르면 '신 식품 자원'이 '신 식품 원료'로 명칭 변경됨
 - 2013년 7월 12일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신 식품 원료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고시하고, '신 식품 원료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행정허가 대상이 아닌 물질(유전자 변형 식품 등)
 - 식품 원료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
 -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GB2760) 및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표준"(GB14880)에 포함된 첨가물
 - 기타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
 - 또한 '신식품 원료 승인 서비스 가이드'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신청 자료 혹은 샘플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음
- 신 식품 원료를 신청할 때 식품 또는 고시된 신 원료와 실질적으로 중, 생물학적 특성, 주 원료 등이 동등할 경우 실질적 동등성 등록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등록을 통보함
 - "실질적 동등성"을 획득하고 심사가 종료되는 것은 심사 중이던 원료가 법적 사용을 위해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신 원료 등록은, 신 원료 국가위생건강위원회행정센터⁵⁵⁾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 및 검색은 온라인으로 진행가능 함
 - 행정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료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0여가지의 신 원료가 등록됨
- 식약청은 식품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지 품목과 BPOM 등록이 면제되는 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NHFPC)	
홈페이지	http://www.nhc.gov.cn	
연락처	전화번호	+86-10-68791409
	팩스번호	+86-10-82260799
	이메일	zwtd6879@163.com

55) 참조: 국가위생건강위원회행정센터 (<https://zwfw.nhc.gov.cn>)

3. 등록 절차

□ 취득 절차⁵⁶⁾

절차	절차	주체	비고
1	등록 신청	생산 업체 및 가공 업체	제반서류 제출 및 신청비 납부
2	서류 심사	관할 기관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 문서 평가
3	평가 통과	관할 기관	평가기관의 심사 후 '권고승인'인 경우, 30일 간의 자료 보완 기간이 주어짐
4	최종 결정	관할 기관	최종 결과 통보

4. 필요 서류

□ 등록 신청 시 하기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신 원료 연구개발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신소재 연구보고서 - 신 식품 원료의 연구 개발 배경, 목적 및 근거 - 신 식품 원료명 - 신 식품 원료의 출처 - 신식품원료의 주요영양소 및 함량 및 함유될 수 있는 천연유해물질(천연독소 등) - 새로운 식품원료의 소비 이력 : 국내외 사람들이 소비하는 지역, 소비자, 소비량, 이상반응 등에 대한 자료 - 신 식품 원료의 사용 범위, 사용량 및 관련 판단기준 - 신 식품 성분의 권장 섭취량, 적절한 인구 및 관련 결정 기준; - 신 식품 원료가 식품 또는 승인된 새로운 식품 원료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또한 위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자료 제공 ◦ 안전성 평가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분석 보고서 - 위생 검사 보고서 - 독성 평가 보고서 - 미생물 저항성 시험 보고서 및 독소 생산 능력 시험 보고서; - 안전성 평가 의견 ◦ 생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물리적 가공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그 생산과정과 물리적 가공의 주요 단계와 조건,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기술, (번식 규모, 성장 조건 및 자원 매장량, 가능한 오염원 등)

56)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s://zwfw.nhc.gov.cn/bsp/xsply/202011/t20201124_1510.html)

행정문서

- 미생물: 발효 배지 조성, 배양 조건 및 각 연결의 핵심 기술 매개변수 등, 균주의 보존, 회춘 및 계대 시간, 가축화 또는 돌연변이된 균주의 경우 가축화 또는 돌연변이 유발 방법 및 가축화 방법도 제공되어야 함
-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되어 원래의 구조가 변경된 식품 성분: 원료 가공, 추출, 농축, 건조, 소독 및 살균에 대한 상세하고 표준화된 공정 흐름도 및 지침, 주요 기술 매개변수 및 가공 조건, 사용된 원료,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의 이름, 사양 및 품질 요구 사항 등 (구조가 변경된 식품 성분은 구조 변경의 방법, 원리 및 공정 기술도 제공해야 함)
- 기타 새로 개발된 식품 재료: 세부 공정 흐름도 및 지침, 주요 원료 및 성분 및 첨가제, 가능한 불순물 및 유해 물질 등
- 관련 기준 이행(안전요건, 품질규격, 검사방법 등)
 - 새로운 식품 성분, 테스트 방법 및 편집 지침의 감각, 물리적,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품질 및 안전 지표
- 라벨 및 지침
 - 신규 식품원재료명, 주원료, 사용방법, 사용범위, 권장섭취량, 유통기한, 안전수칙 등 필요한 경고표시
 - 수입된 새로운 식품 원료는 또한 해외 사용을 위한 라벨과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국내외 안전성평가자료 연구 및 활용
 - 국내외에서 승인된 사용 및 시장 판매 신청 상태;
 -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의 원자재 안전성 평가 자료
 - 과학 저널에 발표된 관련 안전 연구 문헌
- 신고위임장(신고위탁 시 필요)
 - 신고를 위탁받은 신식품원료의 명칭, 수탁자명, 수탁품목 및 수탁일자를 기재하고 수탁자의 직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한다.
 - 위임장에 여러 개의 신규 식품원료를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최초 신고 시 원본 서류를 제출한 경우 기타 신규 식품원료 신고 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신고의 내용을 표시해야 함
- 검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미개봉 포장의 샘플 1개 또는 원료 30g
- 해당 국가(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식품 원료의 수출국(지역)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자료
- 수입수출 식품원료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의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생산기업을 심사 또는 인증하기 위해 발급한 인증자료

* 위임장은 반드시 표준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는 중국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CHINA HACCP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CHINA HACCP 인증	국가명	중국
인증 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1년
		유효기간	3~5년(식품 유형별 상이함)

* 중국 CNCA에서 인정한 공인 인증기관에서 진행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HACCP는 중국공인인증원(CNCA)에서 시행하는 국가 인증 제도로, CHINA HACCP 인증을 받으면 외국 식품 생산자가 중국 식품 수입 규정 및 국가 표준을 준수할 수 있음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CA-N-008: 2011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HACCP) 시스템 인증 실시 규칙> - GB/T 27341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HACCP) 시스템 식품 생산기업 통용 요구> - GB/T 27342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HACCP) 시스템 유제품 생산기업 요구>
인증 내용	CHINA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에 대한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임
적용 품목	식품 및 요식업

□ 현황

취득방법	중국CNCA에서 인정한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국가의 개별적 법률체계에 기반을 둔 인증 취득이 필요함 - CHINA HACCP는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GFSI) 규격 승인 받음 		
소요기간	약 3 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1960년대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의 전 단계에 걸쳐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이 통폐합된 것으로, 관련 부서와 책임 및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 감독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됨
 -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 등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생관리체계임
 - 중국의 경우 1997년 중국정부는 수입국인 미국의 의무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출수산물 제조업자들이 HACCP 제도를 수립·시행하도록 도우며 공식 검증을 실시하였음
 - 2001년에는 국가 인증 및 인정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CNCA가 설립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HACCP 인증 기관인 "China Commodity Inspection Corporation HACCP Certification Coordination Center"가 푸저우에 설립되었음
 - 2015년 11월 CHINA HACCP 인증 시스템은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GFSI) 규격 승인 되었음
- CHINA HACCP은 HA(Hazard Analysis, 위해요소분석)과 CCP(Critical Control Point, 중요 관리점)을 규명하여 7원칙 12절차에 따라 인증함
 - 위해요소분석은 원료, 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 관리점은 규명된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HACCP은 7원칙 12절차에 따라 인증체계가 적용됨
 - 7원칙은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계별로 적용되는 주요 원칙임
 - 12절차는 5개의 준비단계와 7원칙의 본 단계로 구성됨
 - 준비단계는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으로 진행됨
 - 7원칙은 위해요소분석, 중요 관리점(CCP) 결정, CCP 한계기준 설정,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방법 수립,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기록유지방법 설정으로 진행됨
- 중국은 수산물, 육류, 냉동 야채, 과일, 야채주스, 고기 및 수산물을 함유한 냉동식품, 통조림 제품 등 6개 식품군의 수출기업에 대해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음

구분	세부내용
유제품 HACCP/ GMP인증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이후, 유제품의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보강하고 법률 보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8일 중국 국무원에서 <유제품 질량 안전 관리 실시조례>를 제정하고 발표하였음. 본 실시조례에서 유제품 생산기업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구에 부합시키고 HACCP을 실시하여 유제품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유제품 생산기업 ⁵⁷⁾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유제품 생산기업 요구>에 근거한 유제품은 원유 및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액체유류(살균 및 멸균유, 요구르트, 조제유), 분유(전지분유, 탈지분유, 전지가당분유, 조미분유, 영유아 배방분유, 및 기타 배방분유), 연유류(전지무당연유, 전지가당연유, 조미/조제연유, 배방연유), 유지방류(크림, 무수크림), 치즈류, 기타 유제품류(카제인, 유당, 유청 분말 등) 등 제품을 포함 함
-------------------------	--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 (CQC)	
홈페이지	https://www.cqc.com.cn/www/english/	
연락처	전화번호	+86-10-83886834
	팩스번호	+86-10-83886823
	이메일	daijunjie@cqc.com.cn

57) 참조: 중국품질인증센터(CCIC) 기준

3. 등록 절차

□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인증 신청 및 서류심사	제조업체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공장심사 및 제품 테스트	인증기관	-
3	심사자료 평가 및 보완	인증기관	-
4	인증서 제작 및 발급	인증기관	-

* 취득단계는 중국CNCA에서 인정한 공인 인증기관 취득절차이며, 식품을 기준으로 작성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조허가증 ◦ HACCP 품질매뉴얼, HACCP PLAN ◦ 조직구성도, 직책 설명서 ◦ 공장위치도면,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 설명서 ◦ 제조공정흐름도 및 공정별 묘사 ◦ 생산 및 계측 설비 리스트 ◦ 첨가제 리스트 등
중요 기술정보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구성 정보 (영문 작성, active, non-active 재료 구분 표기) ◦ 제조 공정 ◦ 제품 저장 정보 ◦ 생산 코드 정보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 코드 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 제품의 포장 디자인 [(컬러판 평면도) 한글 포장 제품의 경우 해당 한글의 중문 번역본 필요] ◦ 완제품 분석 인증서

5. 라벨링

적용 규격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SIQ Notice No. 59 ◦ GB 7718 및 GB 28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기본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전 성분 리스트 (CODEX 기준에 따름) ◦ 성분의 정량화 및 표시 (포장 용기 기준으로 ml/g/kg으로 계산) ◦ 순 함량 및 사양 ◦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 정보 (회사명, 주소) ◦ 생산일 및 생산 코드 ◦ 보관 조건 ◦ 유통기한 ◦ 등록 허가 번호 ◦ 제품 표준 코드 ◦ 기타 로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 조사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 영양 라벨 - 품질 등급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포장식품의 표시내용 ◦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식품명, 규격, 순함량, 제조일자, 최소 내구성 일자 및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함. 기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사용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라벨 위치	-
표기 언어	중국어 (라벨 및 포장)
보조라벨	-

6. 식품 포장 또는 용기 요구사항

적용 규격 및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CC Notice No.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SIQ 등록 번호 - AQSIQ 등록 번호 유효 기간 - 제품 취급 업체명 및 주소 - 생산일자 및 생산로트 번호 - 패키징 정보
---------------	--

베트남

베트남 VFA 식품 적합성 공표 등록 115

VFA 식품 적합성 공표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VFA 식품 적합성 공표 등록	국가명	베트남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 (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7년
		유효기간	-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은 인증기관이 아닌 등록 관할 기관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식약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을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안전 관리를 하고 있음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No. 55/2010/QH12 -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o. 15/2018/ND-CP
인증 (등록) 내용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 (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하여 등록해야 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 생수, 천연미네랄워터, 식용얼음(식품가공용 얼음 포함) ◦ 기능성 식품 ◦ 식품 보충 미량영양소 ◦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 ◦ 기타 산업무역부와 농업 및 농촌개발부 관할 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

□ 현황

취득방법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여,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한 후 등록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베트남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21일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당 1,500,000 또는 500,000 VND * 최초 공표 비용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수입 식품 등록은 베트남 수입/유통업자가 진행하며 한국 수출업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서류 준비 필요

-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여,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한 후 등록해야 하며, 공표 방식은 자체 공표 방식과 상품 공표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자체 공표(Self-Declaration)
 - 기업 자체적으로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한 뒤 관할기관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
 - 포장된 가공 식품
 - 식품 첨가물
 -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 식품 접촉 포장재
 - 상품공표 (Product Self-Declaration)
 - 베트남 관할기관을 통해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한 후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
 - 건강보조식품
 - 의료용 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새로운 용도의 혼합식품첨가물
 - 보건부 허가 식품첨가물 목록에 없는 식품 첨가물

-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가공보조제, 포장 재료,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도구 및 용기까지도 적합성 공표 등록 대상에 포함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식약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홈페이지	www.vfa.gov.vn	
연락처	전화번호	+84 24-38464489, +84 24-38463702
	팩스번호	+84 24-38463739
	이메일	vfa@vfa.gov.vn

3. 공표 절차⁵⁸⁾

□ 자체 공표(Self-Declaration)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베트남 수입업체	대중 매체 및 자사 웹사이트 상에 상품을 공표
2	서류 제출	베트남 수입업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 방식으로 중앙직할시·성단위 인민 위원회에 서류 제출
3	서류 접수 및 상품 공표 정보 공시	중앙직할시·성단위 인민 위원회	수령 기관은 신청 서류와 상품명을 웹사이트에 게시

- 제품명, 원산지 또는 성분이 변경된 경우, 공급자는 별도로 자체 공표서를 제출해야 함
- 그 외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수령 기관에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가능함

□ 상품공표 (Product Self-Declaration)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서류 제출	베트남 수입업체	우편,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관할 기관*에 서류 제출
2	서류 접수 및 접수증 발부	보건부 또는 중앙직할시·성단위 인민 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기관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부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령 기관은 서면으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요청 가능
3	정보 게시	보건부 또는 중앙직할시·성단위 인민 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수령기관은 업체명과 상품을 기관 웹사이트 및 식품 안전 데이터 베이스에 게시
4	비용 지불	베트남 수입업체	문서 검토 비용 지불

- 관할 기관*
 - 보건부: 건강보조식품, 보건부 허가 식품 첨가물 목록에 없는 식품 첨가물
 - 중앙직할시·성 단위 인민 위원회 지정 관할기관: 의약품 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제품명, 원산지 또는 성분이 변경된 경우, 공급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그 외 기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수령 기관에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가능함

58) 참조: Decree No.15/2018/ND-CP

4. 필요 서류⁵⁹⁾

□ 서류 공통 요구사항

-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모든 문서는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공표 별 요구사항

구분	서류 목록
자체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공표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시행령 Decree 15/2018/ND-CP의 부록 I에 첨부된 Form 01 ◦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시험기관 또는 ISO 17025를 준수하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자체 선언을 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발행된 식품 안전 데이트 시트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상품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공표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시행령 Decree 15/2018/ND-CP의 부록 I에 첨부된 Form 02 ◦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시험기관 또는 ISO 17025를 준수하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자체 선언을 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발행된 식품 안전 데이트 시트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수출국에서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제품 또는 성분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관한 문서(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 ◦ 건강보호식품의 경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서

59) 참조: Decree No. 15/2018/ND-CP

5. 라벨링⁶⁰⁾

적용 대상	수입품을 포함해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은 제외)
기본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명 ◦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체 및 개인의 명칭과 주소※ ◦ 원산지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주의사항 (필요 시) ◦ 성분 및 성분의 중량 ◦ 사용 및 보관 안내 <p>※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체 및 개인의 명칭과 주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에는 제조자와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를 표기해야 함 - 외국인 무역업자의 직접 판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베트남으로 수입한 상품의 라벨에는 제조자 및 판매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를 표기해야 함
라벨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은 라벨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고, 라벨이 부착된 상품은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외부 포장을 열 수 없는 경우, 라벨은 외부 포장에 위치하며 해당 라벨에는 필수 표기사항을 기재해야 함
표기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표기사항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 외국어는 베트남어 문자 크기보다 작아야 함 ◦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 중 원문 라벨에서 베트남어 필수 표기사항이 미비한 경우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도록 보조 라벨을 부착하되 본래의 라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
보조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라벨이란 원문 라벨이 외국어인 경우, 라벨의 필수 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표기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라벨은 수입품에 부착해야 함 - 보조 라벨은 성실성, 명확성, 정확성을 보장하며, 식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해 원문 라벨의 내용을 가리지 않게 부착해야 함

60) 참조: Decree No. 43/2017/ND-CP

6. 식품 포장 또는 용기 요구사항⁶¹⁾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물, 수입식품 포장도구, 식품포장 및 용기에 적용되는 관련 기술 규정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이 계약 당사자인 국제협정 또는 조약이 적용됨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따라 도구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이 상이하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CVN 12-1:2011/BYT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합성 플라스틱 포장 및 도구에 대한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 QCVN 12-2:2011/BYT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고무 포장 및 도구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 QCVN 12-3:2011/BYT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금속 포장 및 도구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	---

61) 참조: Decree No.55/2010/QH12, 34/2011/TT-BYT, QCVN 12-1:2011/BYT

홍콩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 121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식품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국가명	홍콩
기관 로고	-	승인기관 (관할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 식품환경위생부 산하 식품안전센터 (Centre for Food Safety)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허가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
		유효기간	품목마다 상이

배경⁶²⁾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이 인체 소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등록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식품안전법 - 공중보건 및 시립의무령/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 - 식품안전령/Food Safety Ordinance (Cap. 612)
인증 내용	홍콩 내 식품환경위생부는 홍콩 내 판매되는 일부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획득할 것으로 요구하며, 획득 시 이에 대한 수입 허가를 승인함
적용 품목	냉동/냉장육 및 가공류, 계란, 우유와 유제품 및 빙과류(frozen confection) 등

현황

취득방법	국내 검사 결과를 인정하여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에서 허가증을 발급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홍콩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약 15일 내외 (국내 위생증명서 발급기간 제외)	소요비용	-

* 소요기간은 국내 위생증명서 발급 소요기간과 신청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62) 참조: 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 홈페이지 : <https://www.fehd.gov.hk/english/index.html>

2. 세부 정보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 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식품 관련 입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수입 시 해당 상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박테리아 검사를 진행하며 식품이 수입된 이후에도 불시검사를 통해 홍콩 내 식품관련 법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식품환경위생부(FEHD) 산하 식품안전센터(Centre of Safety Food)가 식품 안전 관리 및 관련 정책의 시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함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홍콩 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식품(계란, 우유, 유제품 및 병과류 등)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보건 당국이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요구함
 - 이에 따라 홍콩 수입업체는 수입품이 인체 소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위생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해 수입 허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 품목별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음

구분	서류 목록
육류, 가금류 및 수렵육	수렵육, 금지된 육류, 공인된 위생증명서가 없는 육류 또는 가금류가 포함됨 ⁶³⁾
수산물	홍콩 법에 명시된 별도의 보건증명서가 없음에도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인체 소비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위생증명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우유, 유제품 및 병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Frozen Confections Regulation (Cap. 132AC), the Milk Regulation (Cap. 132AQ))에 따라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에서 승인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수입허가 신청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품의 빈 용기 샘플, 관할 당국의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냉동/냉장육 및 가금류	소, 양, 돼지, 송아지에서 생산되는 육류뿐만 아니라 내장도 포함됨
계란	수입 허가 유효기간 동안 수입 계란의 수량을 제한하지 않으나, 수입 예정인 계란의 양이 지난 6개월 동안 동일한 유형의 계란의 실제 수입량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관할 기관에서 수입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품목 및 이외의 해당 품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확인 필요

63) 참조: 홍콩 수렵육,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수입 안내(https://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cfsg_04.html)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 식품환경위생부 산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홈페이지		www.fehd.gov.hk / www.cfs.gov.hk
연락처	전화번호	+852 2868 0000 / 1823
	팩스번호	+852 2893 3547
	이메일	enquiries@feh.gov.hk

3. 발급 절차⁶⁴⁾

□ 국내 위생 증명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통과 시 위생 증명서를 발부함

- 홍콩 수입통관 시에도 홍콩 식품환경위생부가 수입품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통과 시 FEHD 허가를 발급하고 해당 식품은 홍콩 유통이 가능함
 - 수입자는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에 견본으로 제공한 샘플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육류, 가공류 및 수렵육, 계란, 우유/유제품 및 병과류 등의 품목은 식품 무역업자 포털(Food Trader Portal)⁶⁵⁾에서 신청 및 허가증의 확인이 가능함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국내 위생증명서 신청	제조업체	-	제반서류 제출
2	위생증명서 발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3일	-
3	FEHD수입 허가 신청	홍콩 수입업체	-	허가 신청서 및 위생증명서 제출
4	허가 발급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15일	-

* 소요기간은 국내 위생증명서 발급 소요기간과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64) 참조: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홈페이지 : <https://www.cfs.gov.hk/>

65) 참조: 홍콩 식품무역업자 포털 : www.ftp.cfs.gov.hk

4. 필요 서류⁶⁶⁾

□ 수입업자/유통업자 등록 후 홍콩 식품무역업자 포털을 통한 인터넷 제출 혹은 e-form filler 설치 후 전자 양식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우편 또는 직접 홍콩 사무소로 제출이 가능함

구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서 ◦ 위생증명서 ◦ 기타 서류 (필요 시)

5. 라벨링

적용 법령	공중보건 및 시립의무령 / 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
적용 대상	수입품을 포함해 홍콩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항목	설명
제품명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특성과 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함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회사명, 주소지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함
성분 목록	중량이나 양이 많은 순서로 나열해야 함
순 중량	수량, 무게, 부피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 및 사용기한 일자는 한자로 각각 “此日期前最佳”, “此日期或之前食用”로 표기해야 함 ◦ 제품 내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라벨링에 유통기한이 기재된 위치를 기술해야 함
보관방법	품질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표기해야하며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함

* 라벨링에 대한 기준은 제품별로 상이하며, 관련 규정인 식품 의약품(구성 및 표시) 규정(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66) 참조: 홍콩 식품무역업자 포털 (<https://www.ftp.cfs.gov.hk>)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https://www.fehd.gov.hk/english/forms/index_forms.html)

6. 허가증

- 발행된 수입 허가증의 오른쪽 상단에서는 QR코드, 왼쪽 하단에서는 확인코드(Verification Code)를 확인할 수 있음

- 허가증 유효기간⁶⁷⁾
 - 냉동/냉장육 및 가금류 (6주), 계란 (6개월), 우유와 유제품 및 빙과류(Frozen Confection)(12개월) 등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품목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7) 참조: 홍콩식품무역업자 홈페이지 (https://www.ftp.cfs.gov.hk/web/files/tips/tips_en_GB.html)

태국

태국 식약청(FDA) 등록 128

태국 식약청 등록 (FDA Thailand)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태국 식약청 등록	국가명	태국
로고	* 태국 보건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제외하면 로고 사용 불가능	인증기관 (관할기관)	태국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3년
		유효기간	3년

* 태국 보건부 산하 식약청은 인증기관이 아닌 등록 관할 기관임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⁶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 제품의 품질, 안전 및 효과를 감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제법에 따라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준으로 건강 제품을 규제 및 모니터링 함. 또한, 소비자가 건강한 제품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올바른 소비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비 정부 단체의 국제 경쟁력을 증진하고 강화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식품법 Food Act B.E. 2522 (1979) - 태국 공중보건부 통지/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 태국 정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 - 태국 식약청 명령/Order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태국 식약청 고시/Announcement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태국 식약청 규정/Regulations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 일련번호, 라벨링 등)
적용 품목	특별 통제 식품, 표준 식품, 라벨 부착 식품, 일반 식품

현황

취득방법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 허가 (Import License)가 있는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을 태국 식품의약품에 등록 (Product Registration)해야 함		
취득현황	태국은 도시화와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한식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라면, 김치, 고추장, 인삼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수출하는 업체가 많음		
타국가 통용여부	태국에서만 사용 가능		
소요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통제 식품, 표준 식품: 약 28일 ◦ 라벨 부착 식품, 일반 식품: 약 3일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별 상이

* 소요기간 및 비용은 상황과 품목에 따라 상이함

68) 참조: 태국 식약청 법규 (http://food.fda.moph.go.th/law/announ_moph201-250.php)

2. 세부 정보

□ 태국 식약청 등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시판 전 규제 (Pre-marketing Control)과 시판 후 관리 (Post-marketing Control)로 나뉨

- 시판 전 규제에는 식품 제조 및 수입 허가증 발급, 식품 등록, 식품 라벨링 표시, 우수제조관리기준 준수, 광고 승인 등이 해당됨
 - 제조업자는 제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함. 수입 허가증을 받은 수입업자는 태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식품을 수입할 수 있음
 - 등록에 요구되는 식품기준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승인이 필요함
 - 모든 매체를 통한 모든 형태의 식품 광고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의 품질이나 효능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함
- 시판 후 관리로는 식품 검사 및 샘플링, 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등이 있음
 - 목적: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식품이 건강에 좋고 국가식품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을 갖도록 하기 위함
 - 정기 검사(Routine Inspection): 특히 면허를 받은 허가증에 대한 정기 검사
 - 사후 검사(Surveillance Inspection):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사, 수입업자 창고, 판매자를 검사
 - 관문 검사: 항구에 상주하는 식품 검사관이 해당 국가로 들어오는 식품의 안전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됨
 - 의심되거나 청원된 검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 수입국에서 특정 식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수입을 거부할 경우에 실시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태국 식약청 검사관들이 시장에서 식품 샘플을 채취해 유해물질, 농약잔류물, 중금속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함

□ 태국 식약청의 식품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은 태국식품법 B.E. 2522에 따라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임⁶⁹⁾

- 식품 표준 및 specifications, 위생 및 라벨 표시 요건 수립
- 식품의 생산 및 수입 통제
- 특별 통제 식품 등록에 대한 검토/승인
- 광고에 대한 검토/승인
- 포장재에 대한 검토/승인
- 식품 제조시설 및 판매자 검사
- 식품의 샘플링 및 품질 평가 수행
- 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예: 압수, 제품 회수, 기소, 역학 연구 수행)

69) 참조: 태국 식약청 홈페이지 (https://www.fda.moph.go.th/sites/FDA_EN/SitePages/Roles.aspx)

- 식품 제조업체의 소비자 인식 및 자발적 준수 촉진
- GMP를 사용하여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식품 생산공장 관리
- 기술 기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다른 정부 기관, 민간 부문과 협력
-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배포 및 교환(예: 증명서 발급, 판매자 허가증 등)

□ 태국 식약청은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하기 전 해당하는 식품 분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특별 통제 식품 (อาหารควบคุมเฉพาะ / Specifically Controlled Foods):
 -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식품으로 태국 식약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식품의 표준 품질, 규격, 포장, 라벨링, 제조 방식을 규제하는 품목
- 표준 식품 (อาหารกำหนดคุณภาพหรือมาตรฐาน / Standardized Foods):
 - 중간 수준의 위험도이며 등록이 불필요하지만, 품질표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품이 태국 식약청 규정과 품질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
- 라벨 부착 식품 (อาหารที่ต้องมีฉลาก / Food requiring labels):
 - 중간 수준의 위험도이며 품질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라벨링을 부착해야 함
- 일반 식품 (อื่นๆ / General foods):
 - 위험도가 가장 낮은 식품으로 태국 식약청에 등록할 필요 없음

<위험도에 따른 식품 분류>⁷⁰⁾

구분	위험도	적용 품목
특별 통제 식품	높음	식품 첨가물, 조제분유, 유아 식품, 체중 조절 식품, 영유아용 식품 보충제
표준 식품	중간	밀폐 용기에 담긴 두유, 커피, 식용 소금, 알칼리성 보존란, 크림, 초콜릿, 티, 허브티, 얼음, 생선으로 만든 소스, 코코넛 오일, 발효유, 전해질 음료, 로얄젤리 등
라벨 부착 식품	중간	빵, 현미가루, 밀폐 용기에 담긴 소스, 육류제품, 향신료, 젤라틴 및 젤리 디저트, 즉석식품, 견, 사탕 등
일반 식품	낮음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추출물 또는 합성물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영양제, 조미료, 설탕 등

70) 태국 식약청 자료 (<https://www.fda.moph.go.th/sites/food/manual/trader/EngVersion.pdf>)

□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식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의 분류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서류 목록 ⁷¹⁾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수입 신고서 및 허가서 ◦ 제조 시설 증명서 ◦ 제조 과정 설명서 ◦ 원산지 증명서 ◦ 제품 샘플(용량, 식품명) ◦ 제품 카탈로그 ◦ 제품 전성분표 ◦ 제품 패키지(포장지 크기, 라벨 포함) ◦ 실험 분석서

- 아래는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 시 필요한 관련 신청서 양식 이름임
 - Sorbor. 1 =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개수
 - Sorbor. 3 = 식품 라벨 승인 신청서
 - Sorbor. 5 = 식품 등록/식품신고서
 - Sorbor. 6 = 식품등록 정정 신고서
 - Aor. 2 = 식품 생산 면허
 - Aor. 17 = 식품 레시피 등록 신청서

□ 태국 내 유통되는 식품에는 규정에 따라 태국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함

- 2014년에 발표된 공중 보건부 고시 (No.367)와 2017년 고시 (No.383)에 따라 라벨링 규정 준수
- 태국의 포장 식품 라벨링은 CODEX STAN 1-1985을 기반으로 제정됨. 2017년 신규 고시에 의거 알레르기 정보, 식품 첨가제 세부사항, 특정 폰트 사이즈, 식품 성분 리스트, 라벨상의 표시 정보 등이 규제됨
- 라벨에 일반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또한 라벨에 표시해야 함. 또한, 각 품목에 따라 표시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 규정은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No.367) B.E. 2557(2014), (No.383) B.E. 2560(2017) 규정 참고

연번	표기사항 ⁷²⁾	상세 내용
1	식품명	있는 경우 표기
2	식품 일련번호	태국 식약청에서 발급한 등록번호
3	제조·포장·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

71) 참조: 태국 식품법 B.E. 2522

72) 참조: 태국 식약청 라벨링 규정(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No.367) B.E. 2557(2014), (No.383) B.E. 2560(2017))

4	식품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인 경우 중량으로 표기 ◦ 액체인 경우 부피로 표기 ◦ 반 고체 또는 그 외 형태인 경우 중량 또는 부피로 표기
5	중량에 따른 주요 성분 함유량	내림차순 및 % 표기
6	식품 알레르기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 및 글루텐 성분 함유 제품 ◦ 계, 새우, 랍스터 등 갑각류 제품 ◦ 계란 및 계란 함유 제품 ◦ 생선 및 생선 함유 제품 ◦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 대두 및 대두 함유 제품 ◦ 유당을 함유한 우유 및 유제품 ◦ 견과류 및 그 제품 ◦ 10mg/kg 이상 아황산염(sulfite)을 함유한 제품
7	식품첨가물	기능성 등급의 특정 명칭 또는 국제분류번호(INS) 표기
8	식품 향료 문구	향미강화제, 감미료 등 향료명
9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은 남은 기한이 90일보다 적은 경우 일/월/연도를 표기하며, 90일 이상 남은 경우 월/연도를 표기함 ◦ 일, 월, 년 또는 월과 년의 표시는 각각 일, 월, 년 또는 월과 연도로 표시하되, 월은 숫자나 문자로 표기 가능
10	경고 문구	있는 경우 표기
11	보관 방법	있는 경우 표기
12	조리 방법	있는 경우 표기
13	특정 사용지침 및 필수 문구	유아·신생아·특정 개인을 위한 식품에 해당
14	특정 문구	공중보건부 통지 별첨에서 정하는 특정 식품에 적용되는 문구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등록기관명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홈페이지	www.fda.moph.go.th	
연락처	담당 부서	보건부 산하기관 (Ministry of Public Health)
	대표 번호	(+66) 2590 7000
	제품 허가	(+66) 2590-7220
	식품 분류	(+66) 2590-7211
	이메일	food@fda.moph.go.th

3. 취득 절차

□ 태국 식품 수입 절차

연번	상세 내용
1	식품 분류 확인 - 태국 내 업체: 제조 또는 수입 허가 신청
2	제품 등록 (특별 통제 식품의 경우)
3	식품 라벨 및 광고(미디어를 통한 광고) 승인
4	태국 식약청 허가 및 승인
5	식품 일련번호 발급 후 시판
6	시판품에 대한 감시

대만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TFDA) 등록 135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등록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대만 식품의약품청 (TFDA) 등록	국가명	대만
인증마크		승인기관 (관할기관)	대만 위생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청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88년
		유효기간	5년

* 대만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 1988년 01월 04일 제정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품 관리에 있어 행정관리 업무, 검사, 조사 등 업무의 통합을 통해 과학적 실증을 기반으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 건강식품관리법 / 健康食品管理法
인증 내용	특정식품 (건강식품) 수출 시,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과 증명을 거쳐 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 등록 번호를 발급받는 형태의 방식임
적용 품목	건강 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첨가물 등

현황

취득방법	대만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여, 시험(검사) 후 등록을 진행해야 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대만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신청 품목에 따라 다름	등록비용	품목당250,000 TWD ⁷³⁾

* 등록 비용은 심사 비용만 해당되며, 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등은 제외됨

73) 참조: 대만 TFDA 홈페이지 건강식품 등록 수수료 부과기준 (<https://www.fda.gov.tw/ENG/law.aspx?cid=16&cr=1137424990&k=health>)

2. 세부 정보

- 대만 식품의약품청에서 규정하는 특정 식품(건강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을 수출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대만 식품의약품청은 특정 영양소나 법령상 보건 효과(Health Care Effect)를 보유한 식품을 ‘건강식품(健康食品)’으로 지칭해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만 식품의약품청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식품 등록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식품은 제품명에 ‘건강(健康)’ 단어 사용 불가
 - 제품명 이외에도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 등에 ‘건강’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할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규정 위반에 해당됨
 - 건강식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에 대해 입증해야 함
 - 이를 위해 기본 구비서류 이외에 제품이 무해하고 뚜렷한 보건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반드시 대만 중앙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보건평가방법과 안전평가방법에 부합해야 함
 - 건강식품 등록 시 대만 식품의약품청의 공식 심사통지를 받은 후 심사를 위한 샘플을 제출해야 함
- 대만 식품의약품청의 건강식품 등록은 ‘이원화 제도(雙軌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강식품은 제품에 따라 개별 사례/규격 표준 심사 2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1차 문서 심사, 2차 제품 안전성 테스트 완료 후 등록번호가 부여됨

종류	개별 사례 심사(個案審查)	규격 표준 심사(規格標準審查)
내용	해당 제품은 안전, 효능 및 안정성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제품의 건강상의 이점을 검토 및 평가받아야 함	제품 성분이 대만 위생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식품 규격에 적합하며, 제품의 건강 영향에 대해 학술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개별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없음
해당 제품	골밀도 향상, 혈지 조절, 체지방 형성 억제, 간 기능 보호, 면역 조절, 노화 방지, 위장 기능 개선, 혈당 조절, 피로 개선, 혈압 조절, 과민성 체질 조정, 치아 건강 관리, 철분 흡수 촉진 기능성 제품	어유, 홍국
등록 번호	‘衛部健食字第A00000號’ (영문자A+숫자 6자리)	‘衛部健食規字第000000號’ (숫자 5자리)
등록 마크		

□ 등록 유효 기간 및 갱신⁷⁴⁾

- 승인된 건강식품 등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만료 3개월 전 갱신 가능함
- 등록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등록 이후, 1회 이상 갱신이 불가능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등록기관명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
연락처	전화번호	+886 2 2787 8000, +886 2 2787 8200
	팩스번호	-
	이메일	-

* 이메일은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제출 가능

74) 참조 : Guidelines on Registration for Extension, Alteration, Transference and Reissuance of Health Food Permits (<https://www.fda.gov.tw/ENG/lawContent.aspx?cid=16&id=574>)

3. 등록 절차⁷⁵⁾

□ 대만 식품의약품청의 개별 사례 심사 또는 규격 표준 심사 수행 시에는 제출 서류와 정보의 완전성, 신청서, 제품의 포장, 라벨과 상세정보,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의 안전한 섭취량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

◦ 샘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수입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지 내용에 따라 지정 검사기관에 샘플을 제출해야 함

□ 개별 사례 심사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수입업체	-	신청서 및 필요서류
2	1차 문서 심사	지정 검사기관	60일	-
3	샘플 제출	수입업체	-	제품 샘플
4	2차 제품 안전성 테스트	지정 검사기관	180일	신청서 (필요 시 관련 문서)
5	등록번호 발급	식품의약품청	-	-

□ 규격 표준 심사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서 제출 및 비용 납부	수입업체	-	신청서 및 필요서류
2	1차 문서 심사	지정 검사기관	120일	-
3	샘플 제출	수입업체	-	제품 샘플
4	2차 제품 안전성 테스트	지정 검사기관	180일	신청서 (필요 시 관련 문서)
5	등록번호 발급	식품의약품청	-	-

75) 참조 : 대만 식품의약품청 (TFDA) 홈페이지(<https://www.fda.gov.tw/TC/site.aspx?sid=1507&r=1066337537>)

4. 필요 서류⁷⁶⁾

심사 종류	개별 사례 심사	규격 표준 심사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원재료의 상세한 명칭과 특성,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 안전성평가 보고서 ◦ 기능성평가 보고서 ◦ 기능성분에 대한 검증 보고서와 시험방법 ◦ 안정성시험보고서 ◦ 제조공정 요약 ◦ GMP에 대한 증거 서류 ◦ 제품위생관련 규격 및 그 검사보고서 ◦ 일반 영양성분분석 보고서 ◦ 관련 연구 보고서 및 문헌 ◦ 제품 포장, 라벨, 제품 설명서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분목록(템플릿 사용 가능) (필요 시) ◦ 패키징리스트 (필요 시) ◦ 기타 서류 (필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원재료의 상세한 명칭과 특성,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 기능성분에 대한 검증 보고서와 시험방법 ◦ 안정성시험보고서 ◦ 제조공정 요약 ◦ GMP에 대한 증거 서류 ◦ 제품위생관련 규격 및 그 검사보고서 ◦ 일반 영양성분분석 보고서 ◦ 제품 포장, 라벨, 제품 설명서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분목록 (필요 시) ◦ 패키징리스트 (필요 시) ◦ 기타 서류 (필요 시)

76) 참조 : TFDA 온라인 신청 플랫폼 <https://oap.fda.gov.tw/B101?type=1>

5. 라벨링⁷⁷⁾

- 대만으로 수입되는 건강식품은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⁷⁸⁾의 라벨링 표기 및 품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함
 - 대만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통하여 라벨링과 관련한 규정들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제정함
 - 건강식품 라벨링의 내용은 중문 및 국제 단위로 표기되어야 함

적용 법령	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함량의 명칭이 2종 이상 혼합된 경우에는 함량을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표시해야 함 ◦ 순중량, 용량 또는 수량 ◦ 2가지 이상의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는 경우, 첨가물의 명칭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 ◦ 유효일자, 보관방법 및 조건 ◦ 대만 수입업체명과 주소 ◦ 승인된 효과 ◦ 건강식품 등록 마크 ◦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주의사항 ◦ 영양 성분 및 함량 ◦ 그 밖의 관할 기관이 고시하는 사항

77) 참조 :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2>)

78) 참조 : 대만 건강식품관리법(<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12>)

6. 건강식품 등록 허가증⁷⁹⁾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161-2, Kunyang St, Nangang District, Taipei City 115-61, Republic of China (Taiwan)
 Tel:+886-2-2787-8000 Fax:+886-2-2653-1062

CERTIFICATE OF HEALTH FOO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R.O.C. (Taiwan) hereby certifies that the product as described below is registered by MOHW according to Health Food Control Act and issued with health food permit.

Name of licensed health food

License number Wei-Bu-Jian-Shih-Kuei-Tze
 Wei-Bu -Jian-Shih-Tze
 Wei-Shu-Jian-Shih-Kuei-Tze
 Wei-Shu-Jian-Shih-Tze

Expiry date

Appearance

Applicant

Health care effects

Manufacturer

Packing

Ingredients

Issued on _____(Date)

Signature

Director-Gener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中華民國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115-61 台北市南港區昆陽街 161-2 號 電話：+886-2-2787-8000 傳真：+886-2-2653-1062

79) 참조 : 대만 식품의약품청 (T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tw/ENG/siteListContent.aspx?sid=10534&id=3300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BPOM 등록 143

인도네시아 SNI 인증 149

인도네시아 BPOM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인도네시아 BPOM 등록	국가명	인도네시아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등록(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1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식품 관리·등록 시스템을 도입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식품법 No 18/2012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Regulation No.27 of 2013) - No.83/M-DAG/PER/12/2012 - No.61/M-DAG/PER/9/2013 - No.73/M-DAG/PER/10/2014 - No.36/M-DAG/PER/7/2014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하는 모든 시험과 증명을 거쳐 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허가 형태의 방식임 ◦ 인도네시아 식약청 홈페이지(cekbpom.pom.go.id)에서 등록 제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⁸⁰⁾
적용 품목	식품 및 음료 품목군 전체 ⁸¹⁾ (전분류, 당류, 식용 유지류, 어육가공품, 간편 식료, 간식류, 음료류, 조미료 식품, 조림류 등)

□ 현황

취득방법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취득현황	2020년 등록된 식품 및 음료 품목군은 약 3만5982개		
타국가 통용여부	인도네시아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약 14일	인증비용 (등록비용)	식품 카테고리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80) 인도네시아 식약청 홈페이지: <http://cekbpom.pom.go.id>

81)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유통 금지 10가지 품목과 인증 면제 식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2. 세부 정보

- BPOM 등록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제품은 수입을 취소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가공식품관리국은 수입식품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BPOM등록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화학 공해나 오염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함
 - 식약청은 간혹 현지에 유통되는 제품의 일부 품목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DNA 검사 등 라벨 표기 성분과 실제 성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건으로 적발된 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 BPOM 등록은 신청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수입 허가를 취득한 회사만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또는 수입업체를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수입바이어 지정 서한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수입허가를 보유한 파트너사가 사전에 지정되어야 하며, 현지법인 또는 수입업체가 없는 경우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현지 파트너를 등록자이자 제품 소유자로 임명할 수 있음
 - 국내 수출업체는 외교부 영사 인증을 받은 자유판매증명서(CFS)와 공급확인서, 수권서를 현지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하며, 공급확인서와 수권서는 변호사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함

- 식약청은 식품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10가지 품목과 BPOM 등록이 면제되는 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⁸²⁾

구분	세부내용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 특정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개, 근친 교배된 새끼 가축 ◦ 이슬람 교리에 따라 죽임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동물 등의 시체(생선, 메뚜기 제외) ◦ 벌레, 이, 거머리 등과 같이 식용으로 거부감이 드는 생명체 ◦ 엄니 및 송곳니를 가진 동물 ◦ 먹잇감을 급습하거나 덮쳐서 게걸스럽게 먹는 갈고리를 가진 동물 ◦ 후투티, 개구리, 벌, 개미 등과 같은 이슬람 교리에서 살생을 금하는 동물 ◦ 죽기 전의 가축으로 절단돼 나온 살덩이(본 동물의 할랄 여부와 관계없음) ◦ 독이 들어있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동물 ◦ 거북이, 악어 등 육지와 해양 등 2개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 ◦ 혈액, 소변, 대변, 태반
BPOM 등록 면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테스트 및/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된 식품 ◦ 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 최종 고객에게 판매를 안 하는 식품 ◦ 7일 미만의 식량 수명을 가진 식품

82) 참조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HK.00.05.1.23.3516)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Badan Peongawas Obat dan Makanan (BPOM)	
홈페이지	https://www.pom.go.id/new/	
연락처	전화번호	+6221 4244691 / 42883309 / 42883462
	팩스번호	+6221 4263333
	이메일	halobpom@pom.go.id / pengaduanyanblik@pom.go.id

3. 등록 절차⁸³⁾

□ 등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비고
1	온라인 신청서 제출	수입업체	근무일 기준 10일	온라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 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함
2	수수료 지불	수입업체		-
3	제품번호 통보	BPOM	-	-
4	심사	BPOM	-	-
5	승인 및 등록번호 부여	BPOM	3~4개월	-

- 온라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 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함
- 신청자나 신청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수수료 청구서를 통보받으면 근무일 수 기준 10일 안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품번호를 통보하면 됨
 -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미승인이 될 경우 보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BPOM 공시번호를 온라인으로 부여 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 등록 작업 완료까지 일반 가공식품 경우 평균 3~4개월, 전통의약품 및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8~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할 경우 단축 가능함⁸⁴⁾

□ 등록 비용⁸⁵⁾

- 식품(일반 가공 식품)의 경우 300,000루피아 또는 카테고리에 따라 500,000루피아가 식약청에 심사 등록비로 납부해야 심사가 진행 가능하며, 제품의 광고 기능성 표기가 필요할 경우, 광고 대상 기능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3,000,000루피아,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0,000,000루피아이며, 전통의약품의 경우 15,000,000루피아가 납부할 수 있음

83) 참조 : BPOM KOREA(<https://bpomkorea.modoo.at/?link=62o65sjl>)

84) 참조 :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_2020_주인도네시아대한미국대사관 KOTRA

85) 참조 :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_2020_주인도네시아대한미국대사관 KOTRA

4. 필요 서류⁸⁶⁾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서 ◦ 수입업자의 법률 문서 ◦ 보관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인증서: GMP, HACCP, ISO2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P 필수(BPOM No HK.03.1.23.04.12.2206 Year 2012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 기타 인증서 사본(HACCP, ISO 등): HACCP 또는 ISO 22000의 사본 필요 (공증 필요 없음) ◦ 위촉장: 지정된 수입업자 / 판매자가 제품 등록 ◦ 자유 판매 증명서(CFS) ◦ 건강 증명서
중요 기술정보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 구성 정보 (영문 작성, active, non-active 재료 구분 표기) ◦ 제조 공정 ◦ 제품 저장 정보 ◦ 생산 코드 정보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 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 제품의 포장 디자인 [(컬러판 평면도) 한글 포장 제품의 경우 해당 한글의 번역본 필요] ◦ 완제품 분석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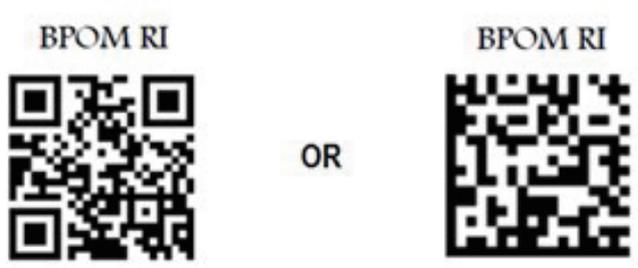
86) 참조 : <https://www.kati.net>, <https://www.khidi.or.kr/ghk>

5. 라벨링

적용 법령	NOMOR 25 TAHUN 2021
적용 대상	수입품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전 성분 리스트 (CODEX 기준에 따름) ◦ 전체 중량 및 용량 (포장 용기 기준으로 mg/kg으로 계산) ◦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 정보 (회사명, 주소) ◦ 생산일 및 생산 코드 ◦ 유통기한 ◦ 등록 허가 번호 ◦ 특정 재료의 원산지 ◦ 할랄 인증 여부 <p>※ 특정 재료의 경우 라벨링에 필수로 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재에 해당 문구와 그림이 표시된 라벨 표시 의무화⁸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함유 식품 단어 “MENGANDUNG BABI” (돼지고기 함유)를 빨간색으로 ‘universe medium corps 12’ 글꼴로 작성 및 돼지 그림과 함께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 대체 식품 경고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당 연유 단어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L” (주의! 아기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빨간색 인도네시아어로 ‘universe medium corps 8’ 글꼴로 작성 및 빨간색 사각형으로 묶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표기 언어	라벨 및 포장지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함

87) 참조 : Nomor HK.03.1.5.12.11.009955 tahun 2011

6. 포장 요구사항

<p>관련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령 2018년 제33호(BPOM No 33 Year 2018)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또는 유통되는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가공식품의 제품 포장지에 바코드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의 법령. (2018년 12월 7일 공포 및 효력 발생)
<p>표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BPOM 등록 번호 ◦ BPOM 등록 번호 유효 기간 ◦ 제품 취급 업체명 및 주소 ◦ 패키징 정보
<p>2차원 바코드 의무 적용⁸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원 바코드는 흰색 또는 기타 색깔 바탕에 검정색으로 인쇄되어야 함(식약청령 2018년 제33호 제17조 1항) ◦ 2차원 바코드는 스캔이 가능해야 하고 BPO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식될 수 있어야 함(제17조 2항) ◦ 2차원 바코드는 최소 0.6cm x 0.6cm 크기 이상으로 해당 제품 크기와 비례해야 함(제22조) ◦ 제품에 2개의 2차원 바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둘 중 한 바코드 상단에는 “BPOM RI”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이 문구는 식약청으로부터 발급된 2차원 바코드에만 해당됨(제23조) <div style="text-align: center;"> <p>1D barcodes:</p>  <p>2D barcodes:</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그림 1>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 이미지 예시⁸⁹⁾</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그림 2> 포장재에 인쇄되는 2차원 바코드 형태⁹⁰⁾</p> </div>

88) 참조 : 식약청령 2018년 제33호(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89) 참조 : PiiComm

90) 참조 : 식약청령 2018년 제33호(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도네시아 SNI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SNI 인증	국가명	인도네시아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87년
		유효기간	3년

* BSN은 인증기관이 아닌 관할 기관이며 SNI 인증은 시험기관인 LSPro에서 수행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인증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관련법령: Nomor 102 Tahun 2000 Tentang Standardisasi Nasional - SNI 마크 정의 및 부착 절차에 대한 BSN 규정: 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인증 내용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인증

□ 현황

취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진행 ◦ 해외 업체의 경우, 수입업체 등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자를 통해 신청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인도네시아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최대 12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당 약 35,600,000루피아 *시험비용 / 컨설팅 비용 제외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SNI 인증에 관한 시험 검사 등의 실무는 시험인증기관 (LSPPro)에서 진행

-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 기관 (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은 제품의 SNI 인증 발급 기관이 아닌 SNI 강제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국제 표준에 대한 국가 정책 평가 및 수립, 국제 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의 국가 표준 포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임

□ SNI 인증 시 제품은 Type 1~6, Type N으로 분류되며, 각 Type 별 수반되는 비용 및 소요기간이 상이함

- SNI 인증 발급 리스트에 등재된 대부분의 품목이 Type 1b 또는 Type 5임
- 장난감, 영·유아용품은 Type 1b에 해당하며 양변기, 시청각용 전자제품, 식용 소금, 카카오가루, 라면, 생수, 타이어, 선풍기 등의 산업용 장비는 Type 5에 해당함
- 품목별 SNI 번호로 확인할 수 있음⁹¹⁾
- SNI 번호 예시

SNI 3719:2014 과일주스 드링크	SNI 3542:2004 커피가루
SNI 3713:2020 우유 기반 얼음	SNI 8984:2021 액체 우유 플레인
SNI 3553:2015 - 미네랄 워터	SNI 2971:2011 가당 연유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유효한 SNI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⁹²⁾

□ SNI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등은 시험인증기관(LSPPro)에서 진행하며, 인도네시아 가인가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함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은 홈페이지⁹³⁾를 통해 정식 인가를 받은 시험인증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시험인증기관 (LSPPro) 신청 시 신청서 및 행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행정 서류는 △공증 받은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증(SIUP) 사본, 납세자 고유 번호(NPWP), 특허청으로 받은 브랜드 등록증명서, 품질 문서 등이 있음
- SNI 인증 신청 시 다음서류 제출 필요
 - 신청서, 상표등록증, 지정 수입업자와의 MoU, 카탈로그 원본 (데이터 자료), 홍보 책자, 사용자 매뉴얼, 설치 매뉴얼, 공인된 인증서 (보유 시)

91) 참조: <https://pembimbingansni.bsn.go.id/>

92) 인도네시아 SNI 인증 검색사이트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93) <http://sispk.bsn.go.id/LPK/LembagaSertifikasi?jns=6>

-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 제조업체가 진행하며, 해외 업체의 경우 수입업체 등 인도네시아 사업자를 통해 신청해야 함

- 사후 관리는 인증서 발급 이후 이뤄지는 별도 시험검사에 해당되며, Type 별로 기한이 다름. SNI 인증 유효기간은 제품별로 다름
 - 사후 관리의 경우 인증서 발급 이후 이뤄지는 별도의 시험 검사를 말하며, Type 1은 매 선적 시 배치 당 실시, Type 2, Type 4, Type 5는 매년, Type 3는 매 6개월, Type N은 정해진 기한이 없음
 - SNI 인증 유효기간은 제품별로 다르며 관련 규정 확인 필요
 - 기 등록 제품의 경우 대부분 인증 유효기간이 3년임

- SNI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 유통 전 물품에 반드시 SNI 인증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재해야 함

□ 관련기관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홈페이지	https://www.bsn.go.id/	
연락처	전화번호	+62 21 3927422
	팩스번호	+62 21 3927527
	이메일	bsn@bsn.go.id / dokinfo@bsn.go.id

3. 취득 절차 및 필요서류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비고
1	기 등록된 SNI 인증 품목 확인	수입업체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 홈페이지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2	시험인증기관(LSPPro) 확인	수입업체	-	KAN에서 인가된 시험인증기관 확인
3	서류 제출	수입업체	-	공인된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 사본, 납세자 고유번호, 브랜드 등록증명서 등
4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 완성도, 기업 검토 실시	시험인증기관 (LSPPro)	-	공인된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 사본, 납세자 고유 번호, 브랜드 등록증명서 등
5	제조공정 및 샘플 검사, 운영 시스템 평가	시험인증기관 (LSPPro)	약 40일	-
6	최종 검토	시험인증기관 (LSPPro)	최대 12개월	-
7	SNI 인증 발급 및 사후 관리	시험인증기관 (LSPPro)		-

□ 소요비용⁹⁴⁾

- 인도네시아 외 국가에서 취득할 경우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샘플 평가원 등급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음

항목		비용	
		인도네시아 현지	인도네시아 외 국가
신청비		건당 500,000 루피아	건당 500,000 루피아
타당성 평가비	일반품목	건당 1,000,000 루피아	건당 1,800,000 루피아
	특수품목(압연강 등)	건당 2,000,000 루피아	건당 3,600,000 루피아

94) 출처: 인도네시아 산업부(www.kemenperin.go.id)

샘플링 비용 (평가원 등급)	평가책임자	일일 2,000,000 루피아	일일 5,400,000 루피아
	평가자(Assessor)	일일 1,500,000 루피아	일일 4,050,000 루피아
	전문가(Expert)	일일 1,500,000 루피아	일일 3,600,000 루피아
	일반 사무원(Officer)	일일 1,000,000 루피아	건당 2,700,000 루피아
	서비스 수수료	건당 200,000 루피아	건당 1,800,000 루피아
인증비	기술위원회	건당 300,000 루피아	건당 1,125,000 루피아
	평가위원회	건당 1,000,000 루피아	건당 1,575,000 루피아
	인증 발급 검토 수수료	인증당 2,000,000 루피아	인증당 1,800,000 루피아
시험인증기관 수수료	ISO 9000 취득 시	-	업체당 10,000,000 루피아
	ISO 9000 미취득 시	-	업체당 13,500,000 루피아
	감독비	-	업체당 4,500,000 루피아
자문비	-	건당 4,500,000 루피아	

4. 인증마크 사용

□ SNI 인증마크 부착은 SNI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부착할 수 있음⁹⁵⁾

- SNI마크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인력에 대한 일정 기준에 대해 품질 적합성 평가기관(Lembaga Penilaian Kesesuaian, LPK)이 주관하는 적합성 평가 과정을 통과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증거로 사용됨
- SNI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제품, 포장, 라벨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SNI 인증마크 하단에 SNI 규격 번호 및 인증기관 번호 기재 필요함

95) SNI 인증마크 사용 절차에 관한 국가표준화기관(BSN) 규정(Peraturan BSN nomor 2 tahun 2017)

필리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등록 155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	국가명	필리핀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63년
		유효기간	2~5년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은 인증기관이 아닌 등록 관할 기관임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도입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시설 허가에 관한 규칙 및 규정: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29 - 2009년 식품의약품청(FDA) 법: Republic Act No. 9711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등록 시스템 ◦ 식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업체 및 제품에 대한 등록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 전반 ◦ 가공식품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됨

현황

취득방법	필리핀 소재의 제조, 수입, 유통 거래 또는 재포장 등에 종사하는 업체가 신청하여 등록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필리핀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20일	인증비용 (등록비용)	저위험 식품 - 2,500 PHP 중, 고위험 식품 - 3,000 PHP 식품보조제 - 15,000 PHP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정보

-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품관리 시스템을 확립을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함
 - 모든 가공 식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를 취득한 수입 업체만이 해당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 필리핀에 식품을 수입,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 및 상품등록이 필수로 요구되며, 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청에서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을 발급받은 후 수입업자는 상품등록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해당 물품의 수입 적합 여부는 수입서비스국(Bureau of Import Services, BIS)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사후 관리⁹⁶⁾
 - 등록된 가공식품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리핀 식약청(FDA)에서 실시하는 검사 대상이 됨
 - 영업허가증(LTO, License to Operate)은 최초 발급 시 2년간 유효하며, 갱신 후에는 5년간 유효함
 - 상품등록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은 최초 발급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유효하며, 갱신 후에는 5년간 유효함

관련기관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식품의약품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홈페이지		www.fda.gov.ph
연락처	전화번호	+ 632 8 857-1900
	이메일	info@fda.gov.ph

96) 참조: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29

3. 등록 절차

□ 상품등록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은 하기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CFRR ⁹⁷⁾ 전자 등록 시스템 (E-registration system) 사용자 계정 발급	수입업체	기존 CFRR 사용자 계정이 없는 경우, 전자 등록 시스템 (E-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FDA 사용자 계정을 발급받아야 함
2	상품등록증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포털⁹⁸⁾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서류 업로드 - 관련 절차는 FDA Advisory No. 2020-1655 참고 - 가공 식품 유형(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른 필요 서류는 FDA Circular No. 2020-003 (ANNEX D) 참고
3	사전 평가(Pre-assessment) 단계	필리핀 식약청	온라인 포털을 통해 업로드 된 서류에 대해 사전 평가가 진행됨
4	비용 지불	수입업체	사전 평가를 통해 요구되는 문서의 제출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스템 생성 이메일이 전송되며, FDA에 오프라인 납부 또는 BancNet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도록 지불이 게시됨
5	검토 완료 후 상품등록증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발급	필리핀 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며, 결과를 안내하는 시스템 생성 이메일이 발송됨 검토를 통해 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상품등록증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이 첨부된 시스템 생성 이메일이 발송됨

□ 등록, 표준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 거부서(Letter of Denial/LOD)가 사용자 계정으로 발송되며, 최대 6개월이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그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모두 최초 신청서로 간주됨⁹⁹⁾

97) CFRR(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식품 규제 및 연구 센터

98) <https://portal.fda.gov.ph/>

99) 참조 : FDA-Circular-No. 2020-033 / FDA-Circular-No. 2020-003-A

4. 필요 서류

식품 등록 필요 서류¹⁰⁰⁾

서류	설명
제품 라벨 또는 삽화	모든 포장 크기/단위의 라벨이 필요
제품 사진	모든 각도에서 촬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소2개 각도에서 등록하려는 제품과 사진 속 제품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술, 영양, 의학, 건강 관련 주장을 입증할 서류	예: 기술/영양 관련 연구보고서, 시장조사 자료, 과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등
견적 송장 (Proforma Invoice)	수출업체 제공
해외대리점 계약서 (Foreign Agency Agreement)	수출업체 제공
대리점 임명장 (Appointment Letter)	수출업체 제공
판매대리권 계약서 (Distributorship Agreement)	수출업체 제공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위생/검역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를 증명하는 유효한 제조업체의 등록인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 ◦ 유효한 동식물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 유효한 HACCP 인증서 또는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유효한 LTO	수출업체 제공
라벨링 요구사항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 참고

중위험, 고위험에 포함되는 식품의 경우,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행된 COA(Certificate of Analysis)¹⁰¹⁾ 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100) 참조: FDA Circular No. 2020-033

101) 참조: COA 관련 요구사항 - FDA Circular No. 2020-033(Page 33-43)

5. 라벨링

- 필리핀은 식품 첨가물의 라벨링에 대해 Codex 표준 지침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Food Additives When Sold as such - CODEX STAN 107-1981)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
- 상품 등록 절차 진행 시, 라벨링 요구사항도 평가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
- 식품 라벨은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혼용 가능) 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기된 정보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해야 함
-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 필수 정보¹⁰²⁾

	항목	설명
1	제품명	제품명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식품의 본질은 나타내야 함
2	상표명 또는 상표	등록된 상표명 또는 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표명을 라벨에 표기
3	성분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나열 [첨가제, 착향료, 보존제 포함] - 성분의 명칭은 AO No. 2014-0030 (부록A)을 참고하여 표기
4	중량	실 중량, 건조 중량
5	업체 상호 및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 표기 ◦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도 표기
6	제품번호 (Lot identification)	제품 포장 용기에 양각으로 새기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표기
7	보관조건	실온보관 이외의 조건이 필요한 제품은 보관조건을 분명하고 눈에 띄도록 표기
8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월, 연도 순으로 눈에 잘 띄고 읽기 쉽게 표시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월은 문자로 표기
9	식품 알레르기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알레르기 정보는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 ◦ 과민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은 항상 표시
10	사용(섭취)방법	식품의 적절한 활용 또는 섭취방법에 대해 설명
11	영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칼로리를 표의 형태로 표시 - 표의 형태는 AO No. 2014-0030 (Figure 1. Sample Format for Nutrition Facts Declaration) 참고

102) 참조: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3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국가정보 아세안 기초세우기, 2018

6. 기타 - 미생물학적 위해도에 따른 가공식품 분류¹⁰³⁾

분류	정의	제품
Low Risk (LR) Foods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낮은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오일, 유화제 ◦ 과일, 야채 가공식품, 식용 균류(버섯, 콩, 알로에베라, 줄기 등), 해조류, 견과류, 씨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과일, 야채, 잼, 젤리, 냉동과일 등 ◦ 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캔디, 껌, 마지팬 등 ◦ 곡류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전분, 시리얼, 버터, 대두가공품 등 ◦ 가공육, 가공육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시지 케이싱(sausage casings) ◦ 베이커리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래커, 번, 롤 등 ◦ 감미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 꿀 등 ◦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 향신료, 머스타드, 생강 등 ◦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맥주, 와인 등 ◦ 즉석섭취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낵(감자, 생선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
Medium Risk (MR)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식품의 특징 때문에 생육하지 못하는 식품 ◦ 식품의 유형, 제조과정으로 인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없는 식품이지만 독소 또는 병원성 미생물 생육의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유, 분유 등 ◦ 빙과류 ◦ 과일, 야채 가공제품, 식용균류(버섯, 콩, 알로에베라, 줄기 등), 해조류, 견과류, 씨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 제품, 냉동과일, 발효과일제품 등 ◦ 곡류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발효제품(낫또, 발효두부 등) ◦ 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코아, 초콜릿 등 ◦ 가공육, 가공육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임육, 건조육 등 ◦ 가공어류, 가공어류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제, 발효어제품 등 ◦ 달걀, 난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단, 디저트(커스타드 포함)

103) 참조: 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29 (ANNEX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커리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익, 쿠키, 파이, 페스츄리 등 ◦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프, 액상소스, 샐러드 등 ◦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제외, 과일주스 등 ◦ 식품보충제, 식물성 영양 보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 즉석섭취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견과류제품 등
<p>High Risk (HR) Foo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며, 독소 또는 병원성 미생물 생육을 발생시키는 식품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버터밀크, 발효유, 크림, 치즈 등 ◦ 과일, 야채 가공제품, 식용균류(버섯, 콩, 알로에베라, 줄기 등), 해조류, 견과류, 씨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과일, 채소 등 ◦ 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과류 포함 초콜릿 ◦ 베이커리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과류 쿠키, 상하기 쉬운 음식(설탕코팅), 크림, 우유 등이 채워진 빵 ◦ 가공육, 가공육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처리가공육, 냉동가공육 등 ◦ 가공어류, 가공어류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어류, 생선전 ◦ 달걀, 난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상난제품, 냉동난제품, 건조난제품 ◦ 특수영양용도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용 조제분유, 식이요법제품, 이유식 등 ◦ 생수 ◦ 식품보충제, 식물성 영양 보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초, 이외의 영양물질로 이루어진 제품 ◦ 새로운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또는 지역 내 시장에서의 새로운 제품

싱가포르

싱가포르 식품청(SFA) 등록 163

싱가포르 식품청(SFA)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싱가포르 식품청(SFA) 등록	국가명	싱가포르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싱가포르 식품청* (SFA, Singapore Food Agency)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9년 * SFA 기관이 해당 업무 진행
		유효기간	1년 * 라이선스 및 등록 유지기간

* 싱가포르 식품청은 인증기관이 아닌 등록 관할 기관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싱가포르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식품 수입업체의 수입면허 및 등록 제도를 운영함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ol of Plants Act(Chapter 57A)(2000 Ed) - Sale of Food Act(Chapter 283)(2002 Ed) - Wholesome Meat and Fish Act(Chapter 349A)(2000 Ed) - Animals and Birds Act(Chapter 7)(S 27/2011)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정보: 모든 상업용 식품 수입은 승인된 국가의 공인 식품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SFA에서 라이선스를 부여받거나 등록된 거래자만 식품 수입이 가능함 ◦ 육류 및 달걀: 육류, 육가공품 및 달걀 수출국'에서 생산 및 제조된 제품만이 가능함 ◦ 수산물: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 가능하나 고위험 제품군 또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열거된 수산물의 수입을 위해 수출국 및 싱가포르 공원청 (Npark)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나, 금지 농약 성분 및 유해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거나 싱가포르 식품 규정 (Food Regulations)에 따른 허용 기준 또는 Codex (국제 식품 규격) 등의 국제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입이 불가함 ◦ 가공 식품 및 식기류: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나, 싱가포르 식품청의 별도 요구 시 수입업자들은 수출국 규제 기관으로부터 생산 시설의 식품 안전 관리 수준 평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적용 품목	모든 수입 식품 -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신선란, 가공 식품 등을 포함한 식품 전반

□ 현황

취득유형	싱가포르 소재 수입업체가 신청		
취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총 16,378개사 수입 면허 및 등록 승인 ◦ 육류 및 어류 수입 업체 2,853개사 면허 취득 ◦ 과일 및 채소류 수입 업체 1,424개사 면허 취득 ◦ 계란 및 가공식품 수입 업체 12,101개사 등록 승인 		
타국가 통용여부	싱가포르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1~5일	인증비용 (등록비용)	연간 약 S\$84~378 * 품목별 상이함

2. 세부 정보¹⁰⁴⁾

- 싱가포르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식품 수입 업체의 수입 면허 및 등록 제도를 운영함
 - 모든 식품을 수입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완료해야만 식품 수출이 가능함
 - 식품의 유형에 따라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식품과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 구분됨
 - 가공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업체 등록 (Registration)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입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은 용이하나, 이후 식품 수입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식품의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식품 유형	관련 법령
육류 및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lesome Meat and Fish Act ◦ Sale of Food Act
과일 및 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ol of Plants Act ◦ Sale of Food Act
신선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mals and Birds Act ◦ Sale of Food Act
가공 식품	Sale of Food Act

-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식품의 판매에 있어 안전하고 적합하며 공공보건을 보장할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내의 하위 규정 (Subsidiary legislation)에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요건, 허용 첨가물 및 최대 허용치, 오염 물질 최대 한계, 식품 기준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개의 하위 규정을 두고 있음
- Sale of Food Act (Chapter 283)
 - 육류 및 수산물 관련 규정으로 도축 및 가공, 포장, 검사, 수입, 유통, 판매, 운송, 수출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6개 하위 규칙을 두고 있음
- Control of Plants Act (Chapter 57A)
 - 과일 및 채소류 관련 규정으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재배 및 병충해로부터의 보호, 수입, 운송, 수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Animals and Birds Act (Chapter 7)
 - 신선란 관련 규정으로 동물 및 조류의 질병, 복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04)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imports>

-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에 함유된 모든 첨가물과 성분이 SFA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함¹⁰⁵⁾
- 기존 AVA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농식품수의청)에서 수행하였으나 2019년 4월 식품 관리 체계를 통합하면서 싱가포르 식품청이 식품 안전 및 수입 식품 관리를 총괄함
 -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담당 기관이 SFA 또는 HSA (보건과학청)으로 상이하며 한국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건강식품의 수출¹⁰⁶⁾
 - 건강식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관할기관이 싱가포르 식품청(SFA) 또는 보건과학청(HSA)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정해진 복용량 없이 섭취하는 건강 보조제인 경우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규제를 받음
 - 의약품 및 기타 건강 관련 식품은 보건과학청(HAS)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일부 서양 의약품, 중국 독점 의약품 및 화장품이 포함될 수 있음
- 사후 요구사항
 -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류 및 특정 가공 식품 (영 유아용 식품, 유제품 등)을 제외한 일반 가공 식품에 대해서 별도의 검사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시판 후 감독과 안전성 모니터링은 수행하고 있음

□ 한국 수출 가능 품목¹⁰⁷⁾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신선란	가공란	보존란	그 외
미승인	미승인	가공육, 통조림 승인	승인	승인	통조림 가능하나 승인 기관 없음	미승인	미승인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싱가포르 식품청 (SFA, Singapore Food Agency)	
홈페이지	www.sfa.gov.sg	
연락처	전화번호	+65-6805-2871
	팩스번호	-
	이메일	-

105) 참조: 허용되는 식품 첨가물 목록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list-of-food-additives-permitted-under-food-regulations.pdf>)

참조: 식품첨가물 검색 (<https://www.sfa.gov.sg/tools-and-resources/food-additives-search>)

106)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imports>

107) 참조: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list_of_approved_countries_regions.pdf

3. 취득 단계 및 필요 서류¹⁰⁸⁾

□ 일반적인 취득 절차

- 수입 전 준비 단계

절차	단계	비고
1	식품 분류 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efore Importing Foo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heck what your food product is classified as  2.  Apply for a trader's licence or register with SFA 3. Comply with relevant food legislation  4.  Satisfy SFA's labelling requirements 5. Meet SFA's conditions for specific food types  6.  Apply for an import permit 7. Book inspection for the food products to be imported </div>
2	무역업자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SFA에 등록 (육류, 수산물 또는 가공된 계란의 수출용)	
3	관련 식품 법규 준수	
4	SFA의 라벨링 요구사항 충족	
5	특정 식품 유형에 대한 SFA의 조건 충족	
6	수입 허가 신청 ¹¹⁰⁾	
7	수입될 식품에 대한 검사 예약	

108)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imports>
 109) 출처: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imports>
 110) 참조: 수입허가 신청 링크(<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 식품 분류(2021.10 기준)

구분	내용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및 조류의 전체 혹은 일부 ◦ 냉장·냉동 및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는 식육 가공품을 포함 (육류 함량 5% 이상인 제품과 동물성 기름 및 지방이 포함)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 기수, 담수에서 잡히는 생선, 갑각류, 연체 동물, 해면 동물, 해삼 및 그 외 수생 생물(새끼와 알을 포함) ◦ 냉장·냉동 및 통조림 형태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포함 (관상용 어종 제외)
과일 및 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 절단, 박피, 냉동 및 통조림으로 가공된 과일과 채소는 가공 식품으로 분류됨
신선란	식용 계란 (SFA 승인 농장에서만 수출 가능하며 2021년 10월 기준 한국은 4개 농장이 등록되어 있음)
가공란	염지란, 계란분말, 액상란, 삶은 계란 및 오믈렛 형태로 조리된 계란 포함 (SFA 승인 제조시설에서만 수출 가능하며, 한국은 캔가공한 계란에 대해서만 승인)
가공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가공 식품과 보조 식품 포함 ◦ 예시 : 와인, 유제품, 비스킷, 식용유, 음료수, 견과류
식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음료와 접촉하며 작동 시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품목 ◦ 예시 : 그릇, 컵, 접시, 팬, 냄비, 물병 및 젓가락, 포크, 숟가락 등

◦ 업체 등록 단계(필요 시)¹¹¹⁾

절차	단계
1	법인명 승인
2	법인 등록
3	사업자등록번호 (UEN) 발급
4	싱가포르 CPF Medisave 등록 (싱가포르 저축 계좌 시스템)
5	비용 납부를 위한 GIRO 계좌 개설
6	LisenceOne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선스 발급 및 등록 신청

111)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licensing-registration-of-traders>

- 싱가포르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모든 무역업자는 취급 품목, 취급 형태에 따라 무역 허가 취득 및 등록을 진행해야함¹¹²⁾
- o 싱가포르 식품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 회계기업청(ACRA)에 법인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UEN) 발급, 싱가포르 CPF Medisave 등록, 비용 납부를 위한 GIRO 계좌 개설이 필요함 (*GIRO 계좌가 필요한 경우 : 육류 및 수산물 수입/수출/환적 허가, 신선한 과일 및 채소의 수입/환적 허가, 신선란 수입허가)

구분	소요기간	수수료
DBS/POSB iBanking 고객인 경우	약 5근무일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육류(냉장, 냉동 및 가공) : 100kg 당 S\$4.60 o 고기(통조림) : 화물당 S\$77 o 수산물 : 화물당 S\$3 o 신선한 과일과 채소 : 화물당 S\$3
DBS/POSB iBanking 고객이 아닌 경우	약 4~6주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선란 : 화물당 S\$62 o 가공란(소금/보존란) : 화물당 S\$62 o 기타 계란 가공품 : 화물당 S\$22 o 가공 식품 및 식기류 : 해당 없음

- 그 이후 LicenceOne 웹사이트¹¹³⁾ 를 통해 라이선스 발급 및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 License (허가): 육류, 수산물, 신선 과일, 채소류, 신선 식용 계란
- Registration (등록): 가공 식품, 식기류

구분	무역 허가/등록 요건 ¹¹⁴⁾
육류 및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육류 및 수산물 수출입·수송업자 라이선스 취득 필요 o 연간 S\$84 o 약 1근무일 소요 o Express 서비스 : 당일 처리 가능하나 추가 비용 지불 필요
과일 및 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선과일 및 야채 수출입·수송업자 라이선스 취득 필요 o 연간 S\$378 o 약 1근무일 소요 o Express 서비스 : 당일 처리 가능하나 추가 비용 지불 필요
신선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선란 수입업자 라이선스 취득 필요 o 무료 o 약 5근무일 소요
가공 식품 및 식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가공식품 및 식기류 수입업자 등록 필요 o 무료 o 약 1근무일 소요

112)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import-export-transshipment-of-live-poultry-livestock>

113) 참조: 온라인 라이선싱 웹사이트 (<https://www.gobusiness.gov.sg/licences/>)

114)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imports>

◦ 사전 준비 후 취득 단계

절차	단계	주체	준비사항
1	수입 신고	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통관 시스템 (Trade Net¹¹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수입 전 준비 단계 후 진행) 제출 서류: 상업 송장, 선하 증권, 포장 명세서, 화물 통관 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필요 시), 검역 증명서 (필요 시) 등
2	관세 납부	수입업체	일반적으로 주류 제외하고 식품에 무관세 적용, 상품 및 서비스세 (GST) 납부, Inter-Bank GIRO 통해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
3	통관 및 검역	수출 국가/지역 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식품청의 온라인 시스템 (SFA Inspection & Laboratory e-Services¹¹⁶)을 통해 수입 식품 검사 신청 수입 식품 검사 대상인 경우, 화물이 “보류 및 테스트”상태로 표시됨
4	면허 취득/등록 완료	SFA	제출 서류: 화물 통관 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상 제품 등
5	물품 반출	수입 업체	통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 허가

□ 품목별 추가 절차¹¹⁷⁾

- 싱가포르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수입, 수출, 운송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업자 라이선스 (License) 발급 또는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상이함
- SFA로부터 무역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SFA에 의해 규제 받지 않으며, 무역업자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절차	구분	준비사항
1	SFA로부터 무역업자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기, 수산물 또는 가공된 계란을 수출하거나 환적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환적 식품 소비를 위한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 (예: 가금류, 소)
2	SFA에 의해 규제 받지 않으며, 무역업자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된 계란의 수출 가공된 식품 및 주방 기기를 수출하거나 환적

- 식품의 유형에 따라 사전 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 절차와 규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 국가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분류되어 있으며, SF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15) 참조: 수입허가 신청 링크(<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116) 참조: 식품 검사 신청 링크(<https://ifast.sfa.gov.sg/eserviceweb/>)

117)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imports>

- 수출 식품 유형별 절차

절차	구분	준비사항
1	육류 및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육류는 열처리한 돼지고기, 가금류 및 캔가공한 돼지고기, 가금류 수출 가능 (SFA 승인 국가 및 시설만 가능) - 2021년 10월 기준 한국은 7개의 가금류 가공 시설¹¹⁸⁾이 등록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건강 증명서의 발급(일반적으로 약 \$20)이 요구되며 SFA의 수의학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건강 증명서를 받지 않으며 모든 국가 및 지역 제품 수출 가능 - 단, 고위험 품목(굴, 게 포함) 및 멸종위기 종 예외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과일 및 채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농산물: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 물질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신선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록 필요 (생산 업체는 SFA에 수출 의향서를 제출, SFA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현지 실사를 거친 생산 업체에 인증서 발급) ◦ 식용란을 수출 가능 (SFA 승인 국가 및 시설만 가능)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를 위해 최소 검사 하루 전 오후 12시 이전에 창이 동물 및 식물 검역소(CAPQ)에서 검사를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 필요
4	가공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식품: 수출국 식품 당국의 감독 하에 제조되어야 함. 일부 품목은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한국은 4개 농장이 등록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더 상세한 사항은 각 식품 유형별 법규 확인 필요함

118) 참조: <https://www.sfa.gov.sg/tools-and-resources/accredited-overseas-meat-and-egg-processing-establishment>

- 특별 관리 품목
 - 특별 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특별 관리 품목의 요구조건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싱가포르에서 관리하는 특별 관리 품목은 아래와 같음

- 구제역 감염 국가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 구제역 청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온 살균 액체 우유
- 유아식 (생후 1년)
- 유아용 시리얼
- 전통 케이크 (말레이 케이크, 말레이 전통 식사류)
- 코코넛 식품 (코코넛 우유, 코코넛 젤리 등)
- 최소 수준으로 가공된 까거나 잘린 과일, 야채류
- 최소 수준으로 가공된 잘린 사탕수수
- 월병 (Mooncakes)
- 가공된 달팽이, 달팽이 알
- 쇠고기 진액 및 진액이 함유된 식품
- 생수 및 얼음
- 간장 소스
- 굴 소스
- 압상트

4. 라벨링¹¹⁹⁾

□ 일반적인 표시사항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49 of the Sale of Food Act ◦ Regulation 261 of the Food Regulations ◦ 가이드 문서 : A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ements(11/2020)¹²⁰⁾
적용 대상	식품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기본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 및 식품 분류(상표 및 브랜드명의 경우, 식품명 및 식품 분류와 함께 표기 필요) ◦ 영양표시 ◦ 순중량(음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표기 필요하며 절대값이어야 함) ◦ 원료: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및 첨가제를 중량 비율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명시해야 함. (성분 및 첨가제의 정확한 명칭 및 허용된 용어 표시 필요) ◦ 현지 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 경고 표시 : 알레르기 등
추가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료일(필요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BY (dd/mm/yy) - EXPIRY DATE (dd/mm/yy) - SELL BY (dd/mm/yy) - BEST BEFORE (dd/mm/yy) ◦ 조리 방법(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ipe” 또는 “Serving Suggestion” 명시하여야 하며 그림 삽화는 제품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 사용에 대한 식품 범주 및 최대 허용 수준 확인 필요 - 특정 감미료가 최대 허용 수준으로 추가되는 경우, 어린이 소비에 관한 권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해당 식품은 라벨링 요구사항 확인 필요 - 예시 : Warning: This product may not be suitable for asthma and allergy sufferers, Contains fluoride ◦ 특수 목적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저염 음식, 글루텐 프리 식품, 저칼로리 식품, 탄수화물 변형 식품, 유아용 등 - 특수 적합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영양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허용된 영양 강조 표시 (nutrition claims) 및 건강 강조 표시 (health claims)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정보(nutrition information)가 제공되어야 함 - 예시: ¹²¹⁾

119) 참조: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labelling-packaging-information/labelling-guidelines-for-food-importers-manufactur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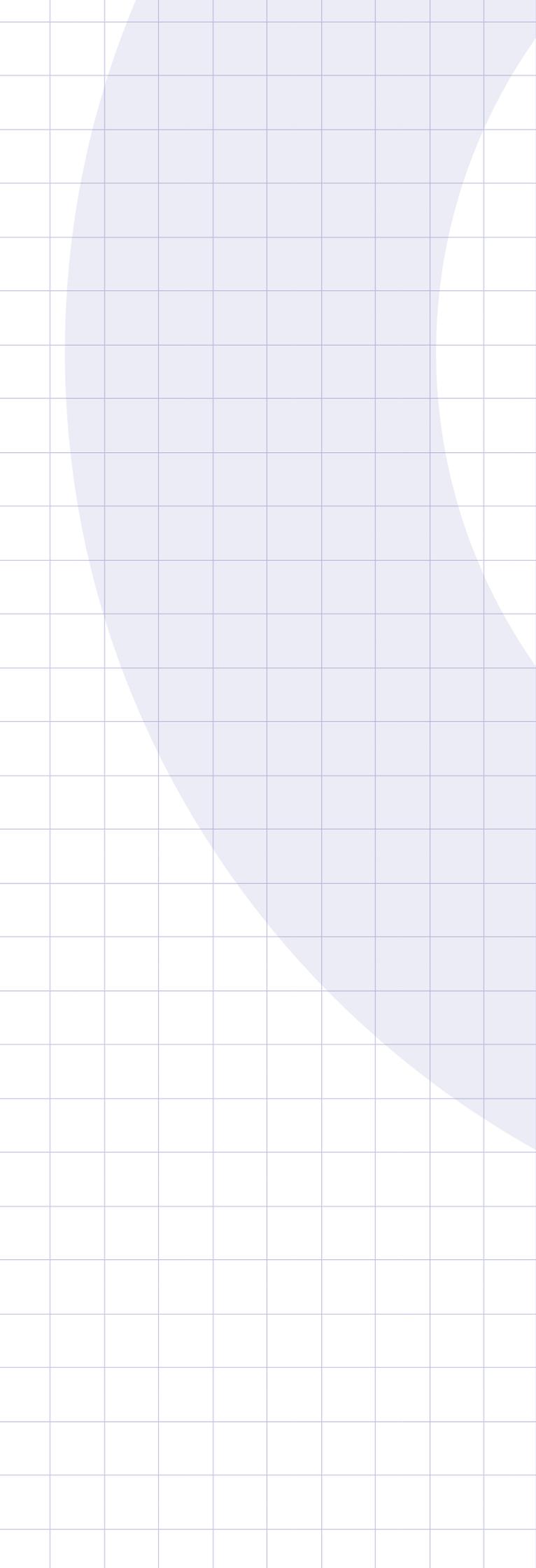
120) 참조: <https://www.sfa.gov.sg/food-import-export/commercial-food-imports#conditions-for-specific-types-of-food>

121) 출처: A Guide to Food Labelling and Advertisements

표기 언어 및 글자크기	표기 언어는 영어로 하며, 글자의 최소 높이는 소문자 기준으로 1.5mm 이어야 함
--------------	--

□ 식품 종류별 라벨링 고려사항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이름 (있는 경우), 제품 설명, 원산지, 가공된 날짜 ◦ 개별 포장 및 외부 상자에 포함된 육류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중량, 처리 시설 이름 및 지정 번호, 포장 시설 이름 및 지정 번호, 날짜 ◦ 육가공품의 경우 도축장 명칭 및 지정 번호, 도축 일자, 로트 번호 ◦ 통조림의 경우 통조림 코드
과일 및 채소류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제품 성명, 수출 및 포장일자
가공 식품	제품명, 제품 설명, 제조업체 또는 수입 업체의 이름 및 주소, 순중량, 구성성분, 원산지, 유통기한 등



3.

북미권 인증

미국

미국 FDA 등록	177
공정무역인증	190
USDA Organic 인증	195

미국 FDA 등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미국 FDA 등록	국가명	미국
로고	-	관할기관	미국 식품의약국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등록 (수출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3년(FFR) *규정 발효일
		유효기간	FFR: 매 짝수년 10월 1일 ~ 12월 31일 갱신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식품안전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규제하고 있음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규정 제 21편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415조 / FD&C Act(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section 415 - 미국 식품 안전 현대화법 / FSMA(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미국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비 및 대응 법률 305조 / Bioterrorism Act section 305 - 공정포장 및 표시법 /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외 시설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FDA에 FFR(식품시설등록)을 해야 함 ◦ 매 짝수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FFR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FFR이 만료됨 ◦ 2020년 10월 1일부터 FDA에 FFR 제출시, ‘국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통용되는 DUNS number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미국에서 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해외 시설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하여 FFR을 진행해야 함 ◦ 산성화 식품(AF)과 저산성 식품(LACF)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별도로 FDA에 FCE(식품제조공장 등록)과 SID(공정등록)을 해야 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FR(식품시설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미국 내 소비되는 동물사료,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식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시설 (육류, 가금류, 육가공품, 달걀 등의 경우,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위생검역국(FSIS, Food Safety & Inspection Service)에서 검사 및 규제를 시행함) ◦ FCE(식품제조공장등록, Food Canning Establishment): 산성화식품(Acidified food) 및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 제조 시설 ◦ SID(공정등록, Scheduled process Identification): 산성화식품(Acidified food) 및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
------	--

□ 현황

등록방법	FFR(식품시설등록)은 국내 기업이 온라인 FDA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록이 가능하나, 반드시 미국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하여 FFR을 진행해야 함		
등록현황	미국 내 소비되는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2021년 1월 11일 기준 약 3천여개의 한국식품시설이 FDA 시스템에 등록됨		
타국가 통용여부	미국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	등록비용	-

2. 세부 정보

-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 FFR(식품시설등록), 라벨링, 식품성분 등 FDA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D&C Act)에 따라 FDA는 식품안전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비 및 대응 법률(Bioterrorism Act)에 의해 미국 내 소비되는 식품 및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식품시설은 반드시 미국 FDA에 등록해야 함
 - 또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품시설 등록 요건이 개정됨
 - 식품 라벨링의 경우, 미국 공정포장표시법에 의거하여 포장된 식품에 적용됨
 - 일반 식품의 경우, 별도의 FDA 사전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나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샘플조사 등을 거쳐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유통이 금지됨
 - FDA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약 80% 이상을 규제하고 있으나 육류, 가금류, 육가공품, 달걀 등의 경우,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위생검역국(FSIS, Food Safety & Inspection Service)에서 별도로 감독하는 품목임에 주의해야 함

-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외 시설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FDA에 FFR(식품시설등록)을 해야 함
 - FFR은 미국 내 소비 목적으로 시설이 제조/가공, 포장, 또는 저장을 개시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함
 - FDA에 식품시설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로는 식품시설 정보(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식품 유형, 담당자 정보, 미국 대리인 정보 등이 있음¹²²⁾
 - 2020년 10월 1일부터 FDA에 식품시설 등록 시, ‘국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통용되는 DUNS number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온라인 FDA 시스템을 통해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식품시설 등록이 가능하나 반드시 미국 내 상주하는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하여 진행해야 함
 - 미국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FDA는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미국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데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를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검증함
 - 이 때 미국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30 역일의 답변 기간을 부여함. 동 기간 내에 검증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등록, 등록갱신, 정보변경 등의 신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며, 신청인은 새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 미국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FDA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 시설의 미국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한 경우, FDA는 (시설 소유자, 운영자, 또는 담당 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시설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동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미국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데 동의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등록을 수정할 것을 요청함
 - 등록갱신 시, 해당 미국 대리인이 해당 시설의 미국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과거에 검증하였던 경우, 해당 대리인의 미국 내 대리인 활동 동의 여부는 다시 검증하지 않음

122) 자세한 사항은 하기 ‘3. 등록절차(FFR)’ 참조

-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이는 오직 해당 시설이 FDA에 등록되었음을 의미함. 등록번호는 FDA가 해당 시설 또는 제품을 승인하였거나 보증함을 의미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함¹²³⁾
- FDA 정식 로고 또는 이를 모방한 로고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¹²⁴⁾
- FDA 로고와 더불어 FDA 등록 사실에 대하여 FDA 승인(approved)/허가(cleared)/인증(certifie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통관 시 보류, 경고장 및 리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FDA에 최초로 1회 FFR을 제출한 이후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 FFR 갱신은 매 짝수 연도 10~12월 중에 접수하며, 해당 기간동안 FFR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FFR은 자동 만료됨
- 온라인 FDA 시스템 계정은 추후 FFR 갱신 시에도 필요하므로 대행기관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였더라도 기존 계정 정보를 잃어 버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산성화식품 및 저산성식품은 FFR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FCE(식품제조공장등록) 과 제품별로 SID (공정등록) 등록이 요구됨

산성화식품 (AF, Acidified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또는 산성식품(Acid Food)를 첨가하여 최종 평형 pH를 농도 4.6 이하로 낮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 ◦ 예시: 초절임 야채 및 달걀 ◦ 탄산음료, 잼, 젤리, 과일청과 같이 보존 처리된 식품, 냉장·냉동 식품은 제외
저산성식품 (LACF, Low-Acid Canned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 농도 4.6 초과,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 ◦ 밀폐된 용기에 제품 내용물을 넣기 전 열처리를 거친 식품 ◦ 완제품 평형 pH가 4.7 미만인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은 제외 ◦ 예시: 통조림 콩

- 산성화식품 및 저산성식품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제조시설등록 및 공정등록을 필수로 수행하여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번호 및 SID(Submission Identifier)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FCE의 경우, 식품제조시설에 대해 최초 1회 등록이 요구되나, SID의 경우 제품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내용물이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용량이 다를 경우, 용량별로 각각 등록해야 함
- SID 등록 시 pH 농도, 수분활성도, 용기 크기, 성분, 살균공정 및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등을 온라인 FDA 시스템에 등록함

□ 2021년 1월 11일 기준 약 3천여개의 한국식품시설이 FDA 시스템에 등록됨¹²⁵⁾

- 등록된 시설이 제조 및 보관 등 여러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시설로 취급됨
- 한국을 포함한 해외(미국 외) 시설은 약 10만 개가 등록되어 있음
- 미국 내 시설은 약 8만 개가 등록되어 있음

123)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it-really-fda-approved>

124) <https://www.fda.gov/about-fda/website-policies/fda-logo-policy>

125) 미국 FDA 시설등록 현황: www.fda.gov/food/registration-food-facilities-and-other-submissions/food-facility-registration-statistics

□ FFR 제출 대상인 식품은 하기와 같음

대상 식품/사료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조식품 및 식이원료 ◦ 유아용 조제유 ◦ 음료 (주류 및 병입생수 포함) ◦ 과일 및 채소 ◦ 어류3 및 해산물 ◦ 낙농제품 및 껍질 있는 달걀 ◦ 식품/사료 또는 식품/사료 재료로 쓰이는 미가공 농산물 ◦ 통조림 및 냉동식품/사료 ◦ 제빵제과 제품, 스낵 식품, 사탕 (씹는 검 포함) ◦ 생식품용 동물 ◦ 사료(반려동물 사료, 간식, 사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촉물질 ◦ 제조제

□ FFR 제출 대상이 아닌 시설은 하기와 같음

FFR 제출 제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거주지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경우 ◦ 병입 생수 외 집수/배수시설 및 구조물 ◦ 통상적 운송업무 과정에서만 식품을 저장하는 운송차량 ◦ 1차 및 2차 생산 농가 ◦ 소매 식품/사료 판매 사업장 및 음식점 ◦ 비영리 식품시설 ◦ 어류 가공 이외의 조업, 운송, 선상 보관활동만 수행하는 어선의 경우 ◦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규제하는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fda.gov	
연락처	전화번호	FFR: +1-240-247-8804 / FCE, SID: +1-240-402-2411
	팩스번호	+1-301-436-2804 / + 1-866-573-0846
	이메일	FFR: furls@fda.gov / FCE, SID: LACF@fda.hhs.gov

3. 등록절차(FFR)

□ 등록 단계

순서	절차	주체	비고
1	시스템 로그인 및 시설등록 페이지 접속	수출업체	FDA시스템(www.access.fda.gov)에 계정 생성 및 고유시설식별번호(UFI) 제출
2	식품시설정보 기재	수출업체	하기 기재사항 참조
3	미국 대리인 검증	FDA	미국 대리인의 확인 필요
4	등록 정보 검증	수출업체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가능함
5	등록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	FDA	수출업체는FDA에서 발급한 시설등록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함

□ 기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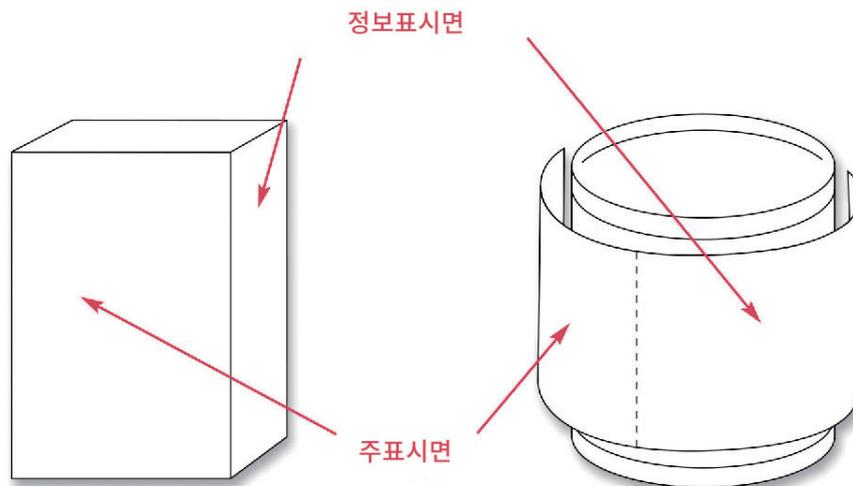
- 미국 FDA온라인 시스템(www.fda.gov/furls)을 통해 국내 기업 자체적으로 식품 시설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기재해야 할 사항은 하기와 같음

구분	항목	세부내용	필수여부
1	등록 유형	시설 위치(미국 내 소재/해외 소재), 시설 소유자 변경사항 등	필수
2	시설명 및 상세주소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수
3	선호하는 우편 주소 정보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선택
4	모회사 업체명 및 주소	항목2에서 등록한 시설의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업체명(시설 소유업체), 주소, 전화번호 등	선택
5	비상연락정보	담당자명(또는 미국 대리인명), 전화번호	필수
6	대체 상호명	항목2에서 등록한 시설명 이외에 대체 상호명을 사용하는 경우	필수
7	미국 대리인 정보	미국 대리인 유형(개인, 기업, 협회 등), 대리인 정보	필수
8	시설 운영시기	시설이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개시월과 종료월	선택
9	제품 유형	식품 유형 (9a: 인간용 식품의 종류, 9b: 동물용 식품의 종류), 시설 활동 유형(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필수
10	담당자 정보	소유자/운영자(또는 대리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수
11	FDA검사 승인란	FDA가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에 동의함	필수
12	본인 확인란	등록 제출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함	필수

4. 라벨링

- 포장식품(packaged foods) 수출 시 FDA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미국 FDA는 식품 라벨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빵, 시리얼, 통조림 및 냉동식품, 스낵, 디저트, 음료 등 포장된 식품으로 규정함
 - 농산물(과일 및 채소)과 수산물 등에 대한 영양성분 라벨링은 자발적으로 수행함
 - FDA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라 글꼴 종류, 활자 최소크기, 기재 위치, 언어, 단위 등을 고려하여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함
 - 식품 포장의 주 표시면(PDP, Principal Display Panel)에는 △식품명, △(순)중량을 기재해야 함
 - 식품 포장의 정보표시면(Information Panel)에는 △Nutrition Facts, △원재료명 목록,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의 이름과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미국 식품 알레르기 항원 표시 및 소비자보호법¹²⁶⁾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항원을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콩(대두)’ 8가지로 규정함
 - 식품 라벨링에 주요 알레르기 항원을 표기할 경우 ‘성분명(항원명)’ 또는 ‘Contains 항원명’의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함¹²⁷⁾

식품 라벨링 표시면 예시¹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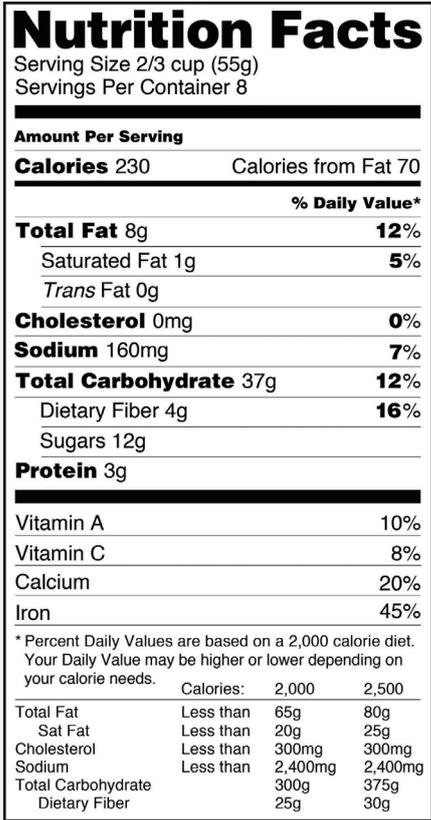
126) Food Allergen Lab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FALCPA)

127) 예시: 'lecithin (soy), flour (wheat), whey (milk)' 또는 'Contains soy, wheat, and milk.'

128) 출처: 미국 FDA <식품 라벨링 안내서(A Food Labeling Guide)>

- 2016년 Nutrition Facts 표시 규정이 개정됨
 - 연간 판매 실적이 천만 달러 이상인 식품 제조업체는 2020년 1월 1일, 천만 달러 미만인 식품 제조업체는 2021년 1월 1일까지 Nutrition Facts 표시 개정안을 적용해야 함
 - 꿀, 메이플 시럽과 같은 대부분의 단일 성분 설탕 및 특정 크랜베리 제품의 제조업체는 2021년 7월 1일까지 Nutrition Facts 표시 개정안을 적용해야 함. 즉, 2021년 7월부터 모든 포장식품 제조업체는 Nutrition Facts 표시 개정안에 맞춰 Nutrition Facts 라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함
 - 기존 영양정보표시와 달라진 점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 변경, △글자 크기 확대(1회제공량, 총 제공 횟수, 열량 등), △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 %Daily Value), △의무 표시 영양성분(비타민D, 칼슘, 철분, 칼륨), △첨가당(Added Sugars) 추가 기재, △주석 등이 있음
 - FDA는 Nutrition Facts 표시 내 ‘1회 제공량(Serving size)’을 소비자의 실제 식품 소비 행태를 고려하여 새롭게 규정함

Nutrition Facts 표시 형식 대조¹²⁹⁾

개정 전 기존 Nutrition Facts 표시	개정 후 신규 Nutrition Facts 표시																												
 <p>Nutrition Facts Serving Size 2/3 cup (55g) Servings Per Container 8</p> <hr/> <p>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Calories from Fat 70</p> <hr/> <p style="text-align: right;">% Daily Value*</p> <p>Total Fat 8g 12%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p> <p>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2% Dietary Fiber 4g 16% Sugars 12g</p> <p>Protein 3g</p> <hr/> <p>Vitamin A 10% Vitamin C 8% Calcium 20% Iron 45%</p> <p><small>*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Your Daily Value may be higher or lower depending on your calorie needs.</small></p> <table border="0"> <tr> <td></td> <td>Calories:</td> <td>2,000</td> <td>2,500</td> </tr> <tr> <td>Total Fat</td> <td>Less than</td> <td>65g</td> <td>80g</td> </tr> <tr> <td>Sat Fat</td> <td>Less than</td> <td>20g</td> <td>25g</td> </tr> <tr> <td>Cholesterol</td> <td>Less than</td> <td>300mg</td> <td>300mg</td> </tr> <tr> <td>Sodium</td> <td>Less than</td> <td>2,400mg</td> <td>2,400mg</td> </tr> <tr> <td>Total Carbohydrate</td> <td></td> <td>300g</td> <td>375g</td> </tr> <tr> <td>Dietary Fiber</td> <td></td> <td>25g</td> <td>30g</td> </tr> </table>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p>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p> <hr/> <p>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p> <hr/> <p style="text-align: right;">% Daily Value*</p> <p>Total Fat 8g 10%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p> <p>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3% Dietary Fiber 4g 14% Total Sugars 12g Includes 10g Added Sugars 20%</p> <p>Protein 3g</p> <hr/> <p>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40mg 6%</p> <p><small>*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small></p>
	Calories:	2,000	2,500																										
Total Fat	Less than	65g	80g																										
Sat Fat	Less than	20g	25g																										
Cholesterol	Less than	300mg	300mg																										
Sodium	Less than	2,400mg	2,400mg																										
Total Carbohydrate		300g	375g																										
Dietary Fiber		25g	30g																										

129) 출처: 미국 FDA <식품 라벨링 안내서(A Food Labeling Guide)>

- ‘Serving size(1회 제공량)’ 기재 시, 수출하는 제품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FDA가 제공하는 ‘1회 섭취 참고량 (RACC, 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을 이용하여 ‘Serving size(1회 제공량)’을 산출해야 함
- Nutrition Facts 표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열량(Calories), 지방(Total 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지방(Trans Fat), 콜레스테롤(Cholesterol), 나트륨(Sodium), 탄수화물(Total Carbohydrate), 식이 섬유(Dietary Fiber), 당(Total Sugars), 첨가당(Added sugars), 단백질(Protein),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 등이 있음

신규 Nutrition Facts 표시 예시¹³⁰⁾

기본 수직형	수평형																																																						
<div data-bbox="167 703 555 142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Nutrition Facts</p> <p>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p> <hr/> <p>Amount per serving</p> <p>Calories 230</p> <hr/> <p style="text-align: right;">% Daily Value*</p> <p>Total Fat 8g 10%</p> <p>Saturated Fat 1g 5%</p> <p>Trans Fat 0g</p> <p>Cholesterol 0mg 0%</p> <p>Sodium 160mg 7%</p> <p>Total Carbohydrate 37g 13%</p> <p>Dietary Fiber 4g 14%</p> <p>Total Sugars 12g</p> <p>Includes 10g Added Sugars 20%</p> <p>Protein 3g</p> <hr/> <p>Vitamin D 2mcg 10%</p> <p>Calcium 260mg 20%</p> <p>Iron 8mg 45%</p> <p>Potassium 240mg 6%</p> <hr/> <p><small>*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small></p> </div>	<div data-bbox="592 674 735 696"> <p>◦ 기본 수평형</p> </div> <div data-bbox="592 719 1430 88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able border="1"> <thead> <tr> <th>Amount/serving</th> <th>% Daily Value*</th> <th>Amount/serving</th> <th>% Daily Value*</th> </tr> </thead> <tbody> <tr> <td>Total Fat 1.5g</td> <td>2%</td> <td>Total Carbohydrate 36g</td> <td>13%</td> </tr> <tr> <td>Saturated Fat 0.5g</td> <td>3%</td> <td>Dietary Fiber 2g</td> <td>7%</td> </tr> <tr> <td>Trans Fat 0.5g</td> <td></td> <td>Total Sugars 1g</td> <td></td> </tr> <tr> <td>Cholesterol 0mg</td> <td>0%</td> <td>Includes 1g Added Sugars</td> <td>2%</td> </tr> <tr> <td>Sodium 280mg</td> <td>12%</td> <td>Protein 4g</td> <td></td> </tr> </tbody> </table> <p>10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 slices (56g)</p> <p>Calories per serving 170</p> <p><small>Vitamin D 0mcg 0% • Calcium 80mg 6% • Iron 1mg 6% • Potassium 470mg 10% Thiamin 15% • Riboflavin 8% • Niacin 10%</small></p> </div> <div data-bbox="592 920 735 943"> <p>◦ 중소 포장용</p> </div> <div data-bbox="592 965 1430 122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able border="1"> <thead> <tr> <th>Nutrition Facts</th> <th>Amount/serving</th> <th>% DV</th> <th>Amount/serving</th> <th>% DV</th> </tr> </thead> <tbody> <tr> <td>Total Fat 2g</td> <td>3%</td> <td></td> <td>Total Carb. 15g</td> <td>5%</td> </tr> <tr> <td>Sat. Fat 1g</td> <td>5%</td> <td></td> <td>Fiber 0g</td> <td>0%</td> </tr> <tr> <td>Trans Fat 0.5g</td> <td></td> <td></td> <td>Total Sugars 14g</td> <td></td> </tr> <tr> <td>Cholesterol 10mg</td> <td>3%</td> <td></td> <td>Incl. 13g Added Sugars</td> <td>26%</td> </tr> <tr> <td>Sodium 200mg</td> <td>9%</td> <td></td> <td>Protein 3g</td> <td></td> </tr> </tbody> </table> <p>about 3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1/3 cup (56g)</p> <p>Calories per serving 90</p> <p><small>Vitamin D 0% • Calcium 6% • Iron 6% • Potassium 10%</small></p> </div> <div data-bbox="592 1256 783 1279"> <p>◦ 중소 포장용 선형</p> </div> <div data-bbox="592 1301 1430 144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Nutrition Facts Servings: 12, Serv. size: 1 mint (2g), Amount per serving: Calories 5, Total Fat 0g (0% DV), Sat. Fat 0g (0% DV), Trans Fat 0g, Cholest. 0mg (0% DV), Sodium 0mg (0% DV), Total Carb. 2g (1% DV), Fiber 0g (0% DV), Total Sugars 2g (Incl. 2g Added Sugars, 4% DV), Protein 0g, Vit. D (0% DV), Calcium (0% DV), Iron (0% DV), Potas. (6% DV).</p> </div>	Amount/serving	% Daily Value*	Amount/serving	% Daily Value*	Total Fat 1.5g	2%	Total Carbohydrate 36g	13%	Saturated Fat 0.5g	3%	Dietary Fiber 2g	7%	Trans Fat 0.5g		Total Sugars 1g		Cholesterol 0mg	0%	Includes 1g Added Sugars	2%	Sodium 280mg	12%	Protein 4g		Nutrition Facts	Amount/serving	% DV	Amount/serving	% DV	Total Fat 2g	3%		Total Carb. 15g	5%	Sat. Fat 1g	5%		Fiber 0g	0%	Trans Fat 0.5g			Total Sugars 14g		Cholesterol 10mg	3%		Incl. 13g Added Sugars	26%	Sodium 200mg	9%		Protein 3g	
Amount/serving	% Daily Value*	Amount/serving	% Daily Value*																																																				
Total Fat 1.5g	2%	Total Carbohydrate 36g	13%																																																				
Saturated Fat 0.5g	3%	Dietary Fiber 2g	7%																																																				
Trans Fat 0.5g		Total Sugars 1g																																																					
Cholesterol 0mg	0%	Includes 1g Added Sugars	2%																																																				
Sodium 280mg	12%	Protein 4g																																																					
Nutrition Facts	Amount/serving	% DV	Amount/serving	% DV																																																			
Total Fat 2g	3%		Total Carb. 15g	5%																																																			
Sat. Fat 1g	5%		Fiber 0g	0%																																																			
Trans Fat 0.5g			Total Sugars 14g																																																				
Cholesterol 10mg	3%		Incl. 13g Added Sugars	26%																																																			
Sodium 200mg	9%		Protein 3g																																																				

130) 출처: <https://www.fda.gov/food/food-labeling-nutrition/changes-nutrition-facts-label>

2열 형식(Dual Columns)

◦ 2열 형식 (제공량별, 용기별)

Nutrition Facts			
2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1 cup (255g)	
Calories	Per serving	Per container	
	220	440	
	% DV*	% DV*	
Total Fat	5g	6%	13%
Saturated Fat	2g	10%	20%
Trans Fat	0g		
Cholesterol	15mg	5%	10%
Sodium	240mg	10%	21%
Total Carb.	35g	13%	25%
Dietary Fiber	6g	21%	43%
Total Sugars	7g		
Incl. Added Sugars	4g	8%	16%
Protein	9g		
Vitamin D	5mcg	25%	10mcg 50%
Calcium	200mg	15%	400mg 30%
Iron	1mg	6%	2mg 10%
Potassium	470mg	10%	940mg 20%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 2열 형식(제공량별, 유닛별)

Nutrition Facts			
12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1/2 muffin (144g)	
Calories	Per 1/2 muffin	Per 1 muffin	
	380	760	
	% DV*	% DV*	
Total Fat	16g	21%	32g 41%
Saturated Fat	3g	15%	6g 30%
Trans Fat	0g		
Cholesterol	50mg	17%	100mg 33%
Sodium	480mg	21%	960mg 42%
Total Carb.	56g	20%	112g 41%
Dietary Fiber	2g	7%	4g 14%
Total Sugars	32g		64g
Incl. Added Sugars	30g	60%	60g 120%
Protein	3g		6g
Vitamin D	0.1mcg	0%	0.2mcg 2%
Calcium	40mg	4%	80mg 6%
Iron	2mg	10%	4mg 20%
Potassium	190mg	4%	380mg 8%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 2열 형식(제품 형태별)

Nutrition Facts			
12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1/4 cup dry mix (44g)	
Calories	Per 1/4 cup dry mix	Per baked portion	
	170	300	
	% DV*	% DV*	
Total Fat	1.5g	2%	16g 21%
Saturated Fat	1g	5%	5g 2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60mg 20%
Sodium	300mg	13%	375mg 16%
Total Carb.	36g	13%	36g 13%
Dietary Fiber	<1g	2%	<1g 2%
Total Sugars	18g		18g
Incl. Added Sugars	18g	36%	18g 36%
Protein	2g		3g
Vitamin D	0mcg	0%	0mcg 0%
Calcium	100mg	8%	100mg 8%
Iron	1mg	6%	1mg 6%
Potassium	40mg	0%	40mg 0%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 2열 형식(RDI¹³¹) 그룹별)

Nutrition Facts			
12 servings per container (age 4+ years)			
16 servings per container (age 1-3 years)			
Serving size		1 cup (28g) (age 4+ years)	
		3/4 cup (21g) (age 1-3 years)	
Calories	Age 4+ years	Age 1-3 years	
	100	80	
	% DV*	% DV**	
Total Fat	2g	3%	1.5g 4%
Saturated Fat	0.5g	3%	0g 0%
Trans Fat	0g		0g
Polyunsaturated Fat	0.5g		0.5g
Monounsaturated Fat	0.5g		0.5g
Cholesterol	0mg	0%	0mg 0%
Sodium	140mg	6%	105mg 7%
Total Carb.	20g	7%	15g 10%
Dietary Fiber	3g	11%	2g 14%
Soluble Fiber	1g		1g
Total Sugars	1g		1g
Incl. Added Sugars	1g	2%	1g 4%
Protein	3g		2g 15%
Vitamin D	2mcg	10%	1.5mcg 10%
Calcium	130mg	10%	100mg 15%
Iron	8mg	45%	6mg 90%
Potassium	240mg	6%	180mg 6%
Vitamin A	90mcg	10%	70mcg 25%
Vitamin C	9mg	10%	7mg 45%
Thiamin	0.3mg	25%	0.2mg 40%
Riboflavin	0mg	0%	0mg 0%
Niacin	4mg	25%	3mg 50%
Vitamin B ₆	0.4mg	25%	0.3mg 60%
Folate (folic acid)	50% (120mcg)	50%	100% (90mcg)
Vitamin B ₁₂	0.5mcg	25%	0.4mcg 45%
Phosphorus	130mg	10%	100mg 20%
Magnesium	35mg	8%	25mg 30%
Zinc	3mg	25%	2.3mg 80%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1,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for children 1-3 years.

5. 식품 성분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첨가물에 주의하여야 함

- 식품첨가물의 유형은 크게 (1) 허가제로 운영되는 성분과 (2) 자율 신고제로 운영하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성분으로 양분됨
 - 1997년 FDA가 더 이상 ‘GRAS 확증 청원 절차(GRAS affirmation petition process)’에 자원 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GRAS 신고(GRAS notification)’ 절차를 도입함
 - 업체는 식품 성분의 사용이 GRAS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FDA에 알리기 위해 시장 출하 전 FDA에 청원을 제출하는 GRAS 신고 절차를 이용하거나, 업체 자체 판단 하에 신고하지 않아도 됨
 - FDA에 GRAS 신고 시 21 CFR 570.225 ~570.255에 따라 요구되는 7가지 부문의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함¹³²⁾
 - FDA에서는 GRAS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알려주고, 180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검토함
 - FDA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응답함 (1) GRAS 상태에 대해 이견이 없다, (2) GRAS로 판정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3)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평가를 중단한다.
- 식품에 첨가되는 색소의 경우 FDA의 승인을 받은 색소를 사용하여야 함

미국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관련 규정			
종류		설명	연방규정번호
식품 첨 가 물	직접첨가물	식품 직접첨가물로 허용된 성분	21CFR172
	2차 직접첨가물	식품처리를 위해 첨가 허용이 된 성분(이온교환수지, 추출용매 등)	21CFR173
	간접첨가물	포장 또는 가공기기의 일부로,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성분이나 식품에 직접 첨가하지 않는 성분. 우리나라 식품 접촉 성분과 유사함	21CFR174~178
	잠정 직/간접 식품첨가물	잠정적으로 사용 또는 접촉이 잠정적으로 허용된 식품첨가물	21CFR180
색소첨가물(착색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착색할 때 사용됨 FDA의 허가를 받은 색소이어야 하며, 일부 색소의 경우 Batch Certification 등의 특이 조항을 적용 받을 수도 있음	21CFR70, 71, 73, 74, 80~82
사전허가된 식품성분		식품첨가물법 개정 전(1958년) FDA 또는 농무부(USDA)에 의해 비공개 문서에서 사용이 허가된 성분(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는 성분)	21CFR181
G R A S	GRAS 성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	21CFR182
	GRAS 직접성분	FDA의 검토 후 의도된 사용에 대하여 GRAS로 확인된 직접 첨가 성분	21CFR184
	GRAS 간접성분	FDA의 검토 후 의도된 사용에 대하여 GRAS로 확인된 간접 첨가 성분	21CFR186
식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	21CFR189

132)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generally-recognized-safe-gras-notification-program/how-submit-gras-notice-cvm>

- 미국 FDA에서 제공하는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 및 미국 연방규정집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분규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일례로 미국 FDA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제가공 유지(부분경화유, PHOs)를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판 전 FDA에 안전성을 입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식품첨가물 및 GRAS에 관한 정보 및 성분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미국 연방규정집 전자시스템¹³³⁾을 이용할 수 있음

FDA에서 제공하는 식품첨가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		
구분	항목	세부내용
1	식품첨가물 (구 EAF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 식품첨가물, 색소첨가물, GRAS, 사전허가된 식품성분, 식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 등 약 4천여개의 식품성분이 알파벳 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 각 성분의 독성 검토 정보 현황과 해당 규정번호를 알 수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라 업체가 GRAS로 자체 판단해 FDA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성분들은 누락되었을 수 있음 ◦ 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index.cfm?set=FoodSubstances
2	GRAS 신고 목록 (GRAS Not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S 규정 외 성분 신고 목록 ◦ GRAS 신고 성분의 진행 현황 및 FDA 의견 열람 가능 ◦ 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index.cfm?set=GRASNotices
3	직접 식품첨가물 목록 (Food Additive Status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식품첨가물이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음 ◦ 성분별 용도, 사용규격, 해당 규정번호 등 확인이 가능함 ◦ https://www.fda.gov/food/food-additives-petitions/food-additive-status-list
4	연방규정 내 식품접촉성분(FCS) 목록 ¹³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A는 성분의 의도된 사용 및 사용조건에 따라 식품접촉성분을 허가함 ◦ 성분별 규정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규정에서 성분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set=IndirectAdditives
5	식품접촉성분(FCS) 신고 목록 ¹³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한 용도에 안전한 것으로 입증된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유효 사전 신고 목록 ◦ 성분별 사전 신고자, 제조사, 의도된 사용, 사용규격, 유효일 등 확인이 가능함 ◦ 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index.cfm?set=FCN

133) www.ecfr.gov

134) Inventory of Food Contact Substances Listed in 21 CFR

135) Inventory of Effective Food Contact Substance (FCS) Notifications

6	색소첨가물 목록 (Color Additive Status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대상인 색소첨가물은 리스트 1번에 열거되어 있음 ◦ 식품에 사용할 수 있고 인증제외 대상인 색소첨가물은 리스트 4번에 열거되어 있음 ◦ 성분별 규격과 해당 규정번호 확인이 가능함 ◦ https://www.fda.gov/industry/color-additive-inventories/color-additive-status-list
7	SCOGS ¹³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1980 년 사이에 발표된 115개의 SCOGS 보고서에서 370 개 이상의 GRAS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과 결론 ◦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의 1969년 백악관 지침에 대한 응답으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에 의해 GRAS성분이 검토됨 ◦ 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set=SCOGS

136) Select Committee on GRAS Substances

공정무역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공정무역 인증	국가명	미국
마크		인증기관	국제공정무역기구 (Fairtrade International)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권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공인 <input type="checkbox"/> 국가공인	도입시기	1980년대 후반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무역거래에서 배제된 저개발국가의 농민 및 생산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조성하고자 도입됨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정무역기구 공정무역 표준(Fairtrade Standards)
인증(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한 식품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공정무역 식품은 원재료 사용에서부터 공정무역 기준이 적용됨 인증 취득과 별개로 인증마크 사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나나, 코코아, 커피, 목화, 꽃, 과일, 꿀, 금, 주스, 쌀, 허브, 설탕, 차, 와인, 견과류, 퀴노아, 채소 등

□ 현황

취득방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3개국 1,880개 생산업체에서 공정무역인증을 취득함 국내 약 450개의 기업이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마크를 취득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적인 인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함		
소요기간	약 2주	인증비용 (등록비용)	신청비 550유로 연회비 2,870유로 *컨설팅 비용 제외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¹³⁷⁾

- 공정무역이란 기존의 무역질서에서 소외된 생산자 및 노동자를 보호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무역제품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 거래되는 제품을 의미함
 - 기존 무역질서에서는 저개발국가의 농민, 생산자, 노동자들이 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이익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민운동으로 공정무역의 개념이 등장함
 - 따라서 공정무역제품이란 생산 및 제조, 유통, 수입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기준을 준수하고 독립감사기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적인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 무역인증 제품을 의미함
 - 공정무역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어야 하며, 국제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채 공정무역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대안 무역(alternative trade)제품으로 정의함

- 공정무역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FLO)는 각 국가의 공정무역기관들을 통솔하며 산하에 독립적인 인증담당기관(FLOCERT)를 두어 공정무역 규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함
 - 한국에는 2011년 개소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Fairtrade Korea)가 있으며, 국내 소비자에게 공정무역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며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모니터링을 담당함

-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사용에서부터 공정무역기준을 준수해야 함
 - 커피, 바나나 등 단일재료 식품의 경우 제품 재료구성이 공정무역기준에 100% 부합해야 함
 - 쿠키,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복합제품의 경우 생산 및 제조에 투입된 재료 중 공정무역 범주에 해당하는 재료는 공정무역기준에 부합해야 함
 - 각 공정무역 재료 함유율은 제품 후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전체 20% 이상의 원료가 인증을 받아야 함

- 제품 제조에서 포장까지 전 단계를 관여하는 기업은 FLOCERT 인증을 취득하여 ID를 발급받아야 함
 - FLOCERT ID란 공정무역 인증원료를 국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며 해당 ID가 있어야만 공정무역 원료를 통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음
 -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금액 및 프리미엄은 분기별로 FLOCERT에 보고하며, FLOCERT는 ID를 보유한 생산자 및 기업을 모니터링하여 공정무역 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함
 - 인증 신청 시 550유로(한화 약 71만 원)가 발생하며, 신청 승인 후 연회비로 2,870유로(한화 약 373만 원)를 납부해야 함
 - 소분포장, 로스팅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가 있을 경우 하청업체 비용(업체당 330유로, 한화 약 43만 원)이 추가로 발생함
 - 인증 신청기업은 ID당 하청업체를 3개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는 독립된 ID를 보유하지 않으나 인증기관의 감사 대상에 해당됨
 - 또한 신청 제품군이 1개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제품군부터 제품당 330유로(한화 약 43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 자세한 인증절차는 ‘3. 취득절차’를 참조할 수 있음

137) 한국공정무역협의회(<http://fairtrade.or.kr>),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http://fairtradekorea.org>)

- FLOCERT ID는 제조 및 생산, 유통, 수출입 등 거래를 위한 자격이며, 인증마크 부착은 별도 신청을 통해 사용을 승인받아야 함

□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를 통해 라이선스 인증 신청 후 라벨 디자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신청에 앞서 FLOCERT 인증 신청을 통한 FLOCERT ID 발급이 우선되어야 함
 - FLOCERT ID 발급 신청과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신청은 각각 독립된 절차임
- 라이선스 인증은 올바른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FLOCERT ID가 있고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 오너기업은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함
 - 공정무역 원료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FLOCERT ID를 확인하며 공정무역 원료 함량 기준 등을 평가하여 승인함
 - 인증마크 사용 시 라이선스비가 발생하며 매 분기마다 제품 납품액의 2%를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납부해야 함
- 제품별로 라이선스비에는 차이가 있음
 -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신규 제품을 출시할 경우 보고가 필요하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라이선스 인증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서류 및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 디자인 시안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에는 제품 정보(제품명, 사이즈, 브랜드명 등), 공정무역 원료 함유량, 제품의 전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생산자 및 기업의 FLOCERT ID 등이 있음
- 제품 디자인 시안에는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 설명(선택사항), 공정무역 인증마크(전면), 공정무역 성명(후면)이 포함되어야 함

<제품 디자인 시안 예시>¹³⁸⁾



138) 참조: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www.fairtradekorea.org)

□ 기관정보

구분		세부내용
인증 기관명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http://fairtradekorea.org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82 (0)2 725 0381
	팩스번호	+82 (0)2 725 0383
	이메일	info@fairtradekorea.org
기타		-

3. 취득절차¹³⁹⁾

□ 취득 단계(FLOCERT ID)

절차	단계	주체	소요기간	준비사항
1	신청	생산업체	-	온라인 신청 (www.flocert.net)
2	1차 검토(온라인 신청서)	공인인증기관	약 2주	신청비 납부
3	신청서 제출	생산업체		필요서류 하기 참조
4	검토	공인인증기관		-
5	연회비납부	생산업체		연회비 납부 후 송금영수증 제출
6	승인	공인인증기관		-

- FLOCERT 홈페이지(www.flocert.net)를 통해 1차 신청을 하며, 인증기관(FLOCERT)은 접수된 온라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서 패키지를 발송하며 신청비(550유로) 납부를 요청함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영문), 신청비 송금영수증, 계약서 사인본을 스캔하여 함께 제출함
-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연회비(2,870유로) 인보이스를 발송하며, 신청기업은 연회비 납부 후 송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연회비는 인증기관의 방문감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송금 확인 후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및 ID를 발급하며, ID를 발급받은 신청기업은 공정무역 원료를 거래할 수 있음
- ID 발급 후 6개월~1년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첫 방문감사를 실시하며, 이후 3년마다 방문감사를 실시함
 - 감사 시 기준 미달 및 불이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이행 사항을 시정하고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소요비용

항목		비용
취득비	신청비	품목당 550유로
	연회비	품목당 2,870유로
라이선스 이용 수수료		없음

139)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www.fairtradekorea.org)

USDA Organic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USDA Organic 인증	국가명	미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미국 농무부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2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되는 원료와 생산 공정에 대해 유기농업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연방규정집 제7권(농업) 205장(7 CFR Part 205) - 유기농식품 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 1990) - 미국 농무부 국가유기프로그램(NOP)
인증(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 토지 상태 및 작물의 영양관리, 금지물질 사용 등에 관한 미국 농무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Organic’, ‘100% Organic’, ‘Made with Organic’ 등의 표기를 위해서는 국가유기프로그램 (NOP)에 따라야 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 축산물 ◦ 야생 작물 ◦ 가공식품

□ 현황

취득방법	미국 농무부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서 유기농 인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유럽 연합, 캐나다, 일본, 스위스, 대만, 영국 ◦ 2014년 7월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발효 		
소요기간	6~10주	인증비용 (등록비용)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2. 세부정보

- 미국 유기농인증(USDA Organic)은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 유제품, 축산물, 수산물 등에 발급함
 - 제품에 ‘Organic’, ‘100% Organic’, ‘Made with Organic’ 등으로 표기된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등 과정에서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미국 국가유기인증프로그램(NO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유기농 라벨을 부착하거나 판매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미국 유기농인증은 미국 농무부가 공인한 미국 내 인증기관 및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은 온라인을 통해 공인 인증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기준 해외 공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4개의 한국 인증기관이 확인됨¹⁴⁰⁾

- 유기농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원료 함유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문구에 차이가 있음
 - 미국 국가유기프로그램은 농작활동 수행 전(前) 단계를 포함하며, 작물 생산농장이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년간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여 유기농 농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농산물을 재배하는 동안 합성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조사 또한 허용되지 않음
 - 유기농 원료 함유비율이 70% 이상인 제품은 유기농 인증을 취득해야 하나, 유기농 인증마크 사용은 95% 이상부터 가능함

□ USDA Organic 인증 라벨 구분

100% Organic	Organic	Made with Organic	Organic Ingredients
100% 유기농	95% 이상 유기농	70% 이상 유기농	70% 미만 유기농
인증 필요	인증 필요	인증 필요	인증 불필요
인증마크 사용 가능	인증마크 사용 가능	인증마크 사용 불가	인증마크 사용 불가

140)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 홈페이지(<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aspx>)

- 2014년 7월 발효된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하지 않아도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음¹⁴¹⁾
 - 한국(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상의 정의에 따름
 - 특히 유기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하여 인정함
 - 라벨 표시사항은 각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항생제 및 농약 등은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함
 - 한국에서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를 사용한 사과·배를 원료로 한 제품은 유기로 표시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는 항생제 사용 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에 유기 표시가 불가함
 - 화학합성 농약, 유전자변형 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 또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입국 규정에 따라 통관 및 유통 시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한국 유기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수입증명서 (NOP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국내 인증기관은 유기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함
 -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 인증마크 중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인증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한국 외에 유럽 연합, 캐나다, 일본, 스위스, 대만, 영국과 유기농 인증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홈페이지		https://www.ams.usda.gov
연락처	전화번호	+1-202-720-3252
	이메일	NOP.Guidance@usda.gov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3. 취득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USDA 공인인증기관 검색	수출업체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청 홈페이지 참고
2	인증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수출업체	-
3	서류심사	공인인증기관	-
4	현장실사 실시	공인인증기관	-
5	조사결과 종합 및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

- 현장실사 시 금지물질 사용여부 확인, 시설 및 장비 검사, 생산물 품질 및 관리방법 평가 등을 진행하며 필요 시 농작물 재배토양 및 제품 샘플을 채취함
- USDA Organic 인증을 취득한 후에도 매년 유기농 규정 준수여부에 관한 정기심사를 통과해야 함
 - 정기심사 시 전년도 유기시스템 계획과 달라진 사항에 관한 설명자료, 신규 유기 시스템 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인증서에는 인증 대상 정보(이름 및 주소), 인증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작물·축산물·가공식품 등, 인증기관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됨
 - 인증을 취득한 후에는 유기농 생산방식을 포기하거나 인증 대리인 또는 국가유기 프로그램 담당자 등에 의해 중단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함

4. 필요 서류

- 인증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하기와 같음
 - 신청인 정보(사업자명, 주소 및 연락처, 대리인 정보 등)
 - 제품 정보
 - 이전에 신청한 모든 유기인증제 정보(인증명, 신청연도, 인증 거부사유 등)
 - 최근 3년간 재배 등에 사용한 화학물질 이력
 - 유기농 생산 또는 취급 시스템 계획서

캐나다

SFC 라이선스	200
노블푸드	206

SFC 라이선스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SFC 라이선스 (SFC licence)	국가명	캐나다
로고	-	관할기관	캐나다 식품검역청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9년 * 규정 발효일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식품 관련 기존 4개의 법과 14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캐나다 식품 안전규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이 2019년 1월 15일부로 발효됨
발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에 수출입,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인 SFCR(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을 시행함에 따라 캐나다 내 식품 관련 업체는 SFC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식품 업체의 핵심 활동에는 수입(import), 수출(export), 도축(slaughter), 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 처리(treat), 보존(preserve), 등급분류(grade), 포장(package), 라벨부착(label) 등이 포함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제품, 알류, 가공란 제품, 가공 과일 또는 채소 제품, 수산물, 육류제품 및 식용동물, 신선 과일 및 채소, 꿀 및 메이플 제품, (곡물, 기름, 콩류, 설탕, 음료로 사용되는) 비가공 식품, 기타 제조 식품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음료 수입업체는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아님¹⁴²⁾

□ 현황

발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에 수출입,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캐나다 내 식품 관련 업체는 CFIA로부터 SFC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시에는 CFIA로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함 캐나다 내 식품 수입업체는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의 식품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함
발급현황	2021년 10월 22일 기준 SFC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전 세계에 총 17,137개 ¹⁴³⁾

142) 단, 2020년 7월 15일부터 식품추적관리(traceability) 대상에 해당됨
 143) <https://inspection.canada.ca/webapps/foodlicenceregistry/en/>

타국가 통용여부	캐나다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15일 이상 ¹⁴⁴⁾	발급비용	260.61 CAD * 시험비용/컨설팅 비용 제외

2. 세부정보

- 2019년 1월 신규 시행된 캐나다 식품안전법(SFCA)은 캐나다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행정절차를 축소하되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예전에는 14개의 규정 운영으로 시간 소모가 컸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식품안전규정 (SFCR,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으로 통합돼 행정적 간소화가 예상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신규 규정에는 △생산 및 수출입 라이선스 발급 도입,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변경, △교차오염·식중독·세균감염 등 식품안전 관련 규정 변경, △예방적 관리계획(PCP) 및 식품추적관리(Traceability) 도입 등의 내용이 담김
 - 신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예방관리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을 준비, 유지, 관리 및 시행해야 함
 - 증명하는 예방관리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 식품에 대한 위험이 어떻게 식별되고 방지,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면 문서로, 도축 시 식용동물에 대한 인도적 취급 요건과 소비자 보호(라벨 부착, 포장, 등급 분류 등) 관련 요건 등을 포함하여 식품 위험 요소를 설명함
 - 2020년 7월 15일자로 식품추적관리(Traceability)가 수입 품목 전체에 발효됨. 공급망을 따라 식품의 이전단계 또는 후속단계를 추적함
 - 식품추적관리(Traceability): 캐나다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수출입 식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은 식품 정보, 공급업체 정보, 고객 정보 등을 포함하여 원산지부터 유통까지의 전반적인 식품 과정은 최소 2년간 기록 및 보관해야 함

- 식품안전규정(SFCR)이 도입됨에 따라 캐나다의 식품산업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식품 품질을 개선하고 식인성 질환을 예방함
 -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시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음
 - 규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시정 조치 요구, 라이선스 정지 및 취소와 같은 집행 조치 실행 가능
 - 식품 기업에 중요한 식품 안전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음
 - 식품 안전 기준을 개선하면 세계 식품 시장에서 캐나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짐

144) <https://inspection.canada.ca/importing-food-plants-or-animals/food-imports/food-import-notices-for-industry/2019-12-13/eng/1576248674974/1576248675536> 참조

□ 캐나다 식품 수입업체는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함

- 캐나다 내에서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거나 생산 및 수출입을 희망하는 캐나다 업체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 수출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 캐나다 당국이 식품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SFC라이선스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 한국 수출업체는 캐나다로 식품 수출 전 바이어의 면허 취득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함
 - CFIA에서는 시설의 물리적 위치 당 단일 SFC 라이선스를 권장함
- 품목 및 업종에 따라 SFC라이선스 발급 기한이 상이하므로 식품 관련 업체는 사전에 SFC 라이선스 발급 필수 대상 해당 여부 와 발급 기한을 확인해야 함¹⁴⁵⁾

수입업체 식품안전규정(SFCR) 적용일			
품목	라이선스	예방관리계획(PCP)	식품추적관리 (Traceability)
유제품, 알류, 가공란 제품, 가공 과일 또는 채소 제품	2019.1.15	2019.1.15	2019.1.15
수산물	2019.1.15	2019.1.15	2019.1.15
육류제품 및 식용동물	2019.1.15	2019.1.15	2019.1.15
신선 과일 및 채소	2019.1.15	2020.1.15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해당 없음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2019.1.15
꿀 및 메이플 제품	2019.1.15	2019.1.15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해당 없음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2019.1.15
(곡물, 기름, 콩류, 설탕, 음료로 사용되는) 비가공 식품	2020.7.15 (소매용(consumer prepackaged) 식품이 아니며 가공의 의도가 있고 “추가 준비 한정(For Further Preparation Only)” 라벨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발급 의무 해당 없음)	2020.7.15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초과) 2021.7.16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이하) 해당 없음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2020.7.15
기타 제조 식품	2020.7.15	2020.7.15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초과) 2021.7.16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초과 및 직원수 4명 이하) 해당 없음 (연간 판매액 10만 달러 이하)	2020.7.15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음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20.7.15

145) 라이선스 발급 대상 및 기한: <https://inspection.canada.ca/food-safety-for-industry/timelines/eng/1528199762125/1528199763186>

SFC 라이선스 면제 조건¹⁴⁶⁾

- 개인 사용을 위한 목적이며, 그 수량이 제한 수량 이하일 경우
- 동물용 식품
- 항공기, 기차, 유람선, 군함 등 수송용 식품
- 운송업만을 단독업으로 행하는 경우
- 연방 교도소 간 무역용 식품
- Akwesasne 보호 구역의 영주권자가 사용을 위해 미국에서 Akwesasne 보호 구역으로 수입하는 식품
- 분석, 평가, 연구, 무역 박람회용 식품 중 100kg 이하이거나 계란의 경우 5케이스 이하인 경우

◦ SFC라이선스는 만료일 전에 부정한 사실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발행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함

SFC 라이선스 정지 사유	SFC 라이선스 취소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의 요구 조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관련 수수료 지불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라이선스 보유자가 면허에 명시된 행위를 계속 실시할 경우 사람의 건강에 상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가 정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단, 서면 요청 시, CFIA는 90일을 초과한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정지기간 동안 면허에 명시된 활동을 계속 수행한 경우 ◦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업체의 이사 또는 임원 중 한 명이 SFCA 또는 FDA에 의거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라이선스 발급 또는 갱신 이후 2회 정지되었으며, 계속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요구사항에 대한 특정 위반으로 인해 라이선스가 일시 중지되었으며, 계속해서 동일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라이선스 보유자가 라이선스 발급, 갱신 또는 수정 신청과 관련하여, 또는 라이선스 유효기간 중에 SFCA 15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홈페이지	https://inspection.gc.ca	
연락처	전화번호	+1-800-442-2342 (캐나다 및 미국)/+1-613-773-2342 (현지 또는 국제)
	이메일	cfia.media.acia@canada.ca

146) 참조: https://ca1se.voxco.com/SE/93/SFCR_licence/?&lang=en

3. 발급절차

순서	절차	주체	비고
1	CFIA 계정 생성	수입업체	식품검역청 홈페이지 접속
2	라이선스 유형 결정	수입업체	-
3	라이선스 신청서 작성	수입업체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4	라이선스 발급	CFIA	-

- CFI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정과 비즈니스 프로필을 생성해야 하며, 이 계정을 통해 라이선스 신청, 수출 증명서 신청, 전자 지불 설정을 할 수 있음
 - 라이선스 보유를 위해서는 예방관리계획(PCP)을 준비하고 구현해야 함
- 식품안전규정(SFCA)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 가능한 라이선스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유 중인 각 라이선스를 위한 예방관리 계획(PCP)을 준비하고 구현해야 함
 - 복수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우에 CFIA가 1개의 라이선스에 대해 부적합 또는 강제 조치를 발견하면 다른 라이선스에 따라 후속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SFC 라이선스 신청서 작성 시, 라이선스 신청 활동, 시설 위치, 식품 범주, (해당 시)PCP 등을 제출해야 함
- 발급된 SFC라이선스는 2년간 유효함
- 2021년 3월 31일 SFC 라이선스 발급비용은 250 CAD에서 260.61 CAD로 인상됨¹⁴⁷⁾

147) <https://inspection.canada.ca/about-cfia/acts-and-regulations/list-of-acts-and-regulations/cfia-fees-notice/eng/1582641645528/1582641871296?chap=0>

4. 라벨링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약품법(FDA, Food and Drugs Act) 및 식품의약품규정(FDR, Food and Drug Regulations) ◦ 캐나다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 및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FCR,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 경쟁법(Competition Act) ◦ 상표법(Trade-marks Act) ◦ 방송법(Broadcasting Act)에 따른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규정(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및 규정(Weights and Measures Act and Regulations)
적용 대상	수입품을 포함해 캐나다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실중량 ◦ 감미료 및 식품첨가물 ◦ 딜러(제조업체, 수입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이름과 업체 주소(Dealer name and place of business) ◦ 보관 지침(Storage instruction) (냉장 또는 냉동식품) ◦ 품질유지기한 ◦ 원재료명 목록 ◦ Nutrition Facts¹⁴⁸⁾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p>※ 라벨링 요구사항에는 주요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폰트, 그래픽,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품 종류에 따라 방사선 조사(Irradiation) 여부, 원산지, 포장일자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재사항이 있으므로 규정에 유의하여 라벨링 해야 함¹⁴⁹⁾</p>
표기 언어	영어와 프랑스어 병기 ¹⁵⁰⁾

148) Nutrition Facts 작성방법: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labelling-changes.html>

149) 라벨링 요구사항: <https://inspection.canada.ca/food-label-requirements/labelling/industry/eng/1383607266489/1383607344939>

150) <https://inspection.canada.ca/food-label-requirements/labelling/industry/bilingual-food-labelling/eng/1328121549968/1328121616816?chap=0> 참조

노블푸드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노블푸드	국가명	캐나다
로고	-	관할기관	캐나다 보건부 (HC, Health Canada)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9년 * 규정 발효일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10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자국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블 푸드(Novel food) 관련 규정을 도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의약품법 및 규정 / Food & Drugs Act and Regulations (PART B/Division 28: Novel Foods¹⁵¹⁾)
승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노블푸드의 시판 전 통지 및 검토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여 GM식품 (GM food, genetically-modified foods)과 함께 노블푸드를 관리하고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블푸드는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미생물을 포함한 물질 ◦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생산, 처리, 보관 또는 포장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사용되지 않았던 생산방법 - 식품의 구조나 구성이 크게 변하게 하는 경우 ◦ 식물, 동물 혹은 미생물의 유전적 변화에서 파생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식물, 동물 혹은 미생물의 성질에서 관찰되지 않은 새로운 성질 - 과거 식물, 동물 혹은 미생물의 성질이 현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 - 식물, 동물 혹은 미생물의 하나 이상의 성질이 더 이상 예측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현황

승인방법	기존 음식에 비해 새롭고 변화된 식품에 대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캐나다 시판 전 보건부에 필수 통지		
승인현황	2021년 07월 19일 기준 총 노블푸드(GM 식품 포함) 수: 230개		
타국가 통용여부	캐나다에서만 인정		
소요기간	45일 이상	승인비용	-

151)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870/page-93.html#h-574622

2. 세부 정보

□ 1999년 10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노블푸드와 관련된 규정을 도입함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GM식품(genetically-modified foods, 유전자 변형 식품)과 노블푸드(기존 음식에 비해 새롭고 변화된 식품)를 규정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음
- 공식적으로 승인된 GM 식품 및 노블푸드 수는 230개¹⁵²⁾

분류		설명
GM 식품	의미	의도적으로 형질이 하나 이상 변경된 유기체(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식품
	유기체 변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육종 기술(ex. 이종교배) ◦ 유전 공학과 같은 현대 생명 공학 기술 ◦ 유전자 가위 ◦ 돌연변이(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한 유기체의 유전적 구성 변화)
	유전자 변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저항 ◦ 해충 저항성 ◦ 잡초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제초제 내성 ◦ 숙성 과정을 지연시켜 장거리 운송 가능 ◦ 물이 부족한 가뭄 조건 저항성 ◦ 맛 향상 ◦ 영양 개선

□ 캐나다에 GM 식품 또는 노블푸드를 수출하기 전, 국내 생산업체 또는 캐나다 수입업체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통지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노블푸드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는 캐나다 보건부에 노블푸드 판매 및 판촉활동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식품 제조업체/대리인 또는 식품 수입업체/대리인은 사전에 보건부(Health Canada)에 ‘신규성(novelty)’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 수출하려는 식품이 노블푸드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음¹⁵³⁾
 - 식품이 노블푸드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hc.smiu-ugdi.sc@canada.ca에 이메일로 신규성 결정 정보 양식을 요청 후 양식을 제공받아 작성 및 제출
 - 캐나다 보건부는 양식과 정보의 완전성 검토 (필요한 경우, 보건부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5일 내 답변을 제공해야 함)

152)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genetically-modified-foods-other-novel-foods/approved-products.html>

153) 신규성 판단 요청 방법: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genetically-modified-foods-other-novel-foods/requesting-novelty-determination.html>

- ‘신규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시판 전 보건부(HC)와 식품검사청(CFIA)에서 ‘시판 전 평가(pre-market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함
 - 보건부(HC): 식품으로 이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평가
 - 식품검사청(CFIA): 재배 및 환경방출을 위한 식물의 안전성과 사료로 이용되는 제품의 안전성/효과 평가
- 시판 전 통지 절차 전 통지 방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전제출상담 (Pre-submission consultation)가능¹⁵⁴⁾

사전제출상담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자가 원하는 상담일의 8-12주 전 사전제출상담 요청
2	사전 제출 상담 요청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담당자가 사전상담 관계부처 및 검토자를 구성
3	상담 4주 전까지 신청자는 주관부처(HC 또는 CFIA)에서 요구하는 정보 제공
4	상담 4주 전 담당자는 관련검토자에게 정보 배포
5	상담 후 1개월 이내 상담요약문서 초안 발급 → 3주 이내에 신청자는 초안 확인 및 확정 → 최종본 발급

- 캐나다 보건부에 통지한 식품이 노블푸드로 최종 승인되면, 보건부 사이트에 결정문(Decision document)이 게재되고, 캐나다 내 노블푸드로 판매 및 판촉이 가능해짐

□ 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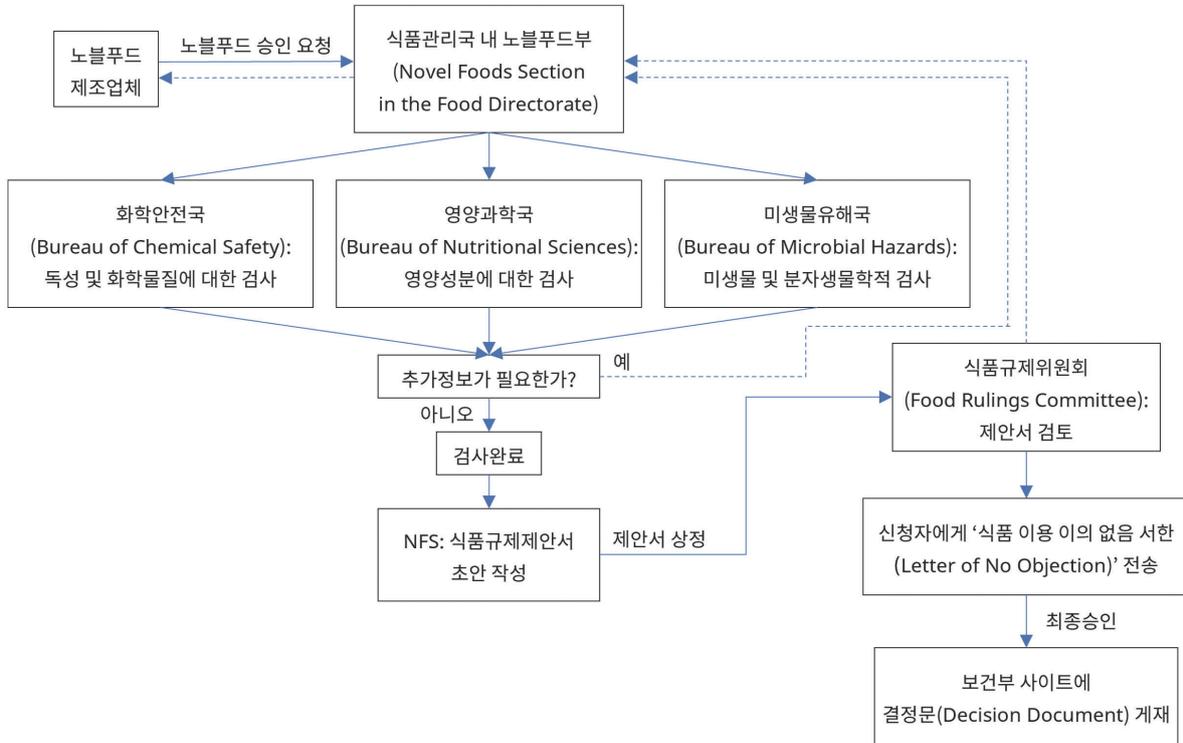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HC (Health Canada)	
홈페이지	https://www.hc-sc.gc.ca/	
연락처	전화번호	+1-613-957-2991 / +1-866-225-0709 (수신자부담)
	팩스번호	+1-613-941-5366
	이메일	hcinfo.infosc@canada.ca

154) 사전제출상담(Pre-submission consultation) 가이드라인: <https://inspection.canada.ca/plant-varieties/plants-with-novel-traits/applicants/pre-submission-consultation/eng/1368394145255/1368394206548>

3. 승인절차¹⁵⁵⁾

□ 노블푸드 승인 절차는 하기와 같음

노블푸드 통지(notification) 절차



- 제조업체가 시판 전 노블푸드 통지를 보건부에 제출하면, 시판 전 규제절차(pre-market regulatory)에 따라 보건부는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를 거쳐 노블푸드로 승인 후 보건부 사이트에 결정문(Decision document)을 게재함
- 일반적으로 노블푸드 승인 기간은 45일이며, 추가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통보 및 검토에 90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155)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legislation-guidelines/guidance-documents/guidelines-safety-assessment-novel-foods-derived-plants-microorganisms/guidelines-safety-assessment-novel-foods-2006.html>

□ 기재 사항

- 노블푸드 승인 신청서 내 기재해야 할 사항은 하기와 같음

노블푸드 승인 신청서 내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블푸드로 시판하고자 하는 식품의 일반명(common name) ◦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와 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 노블푸드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생산 및 개발 정보 - 제조, 처리, 보관, 포장, 저장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 식품의 주요 변화(major change)에 대한 세부사항 - 의도된 용도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 -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안전사용 이력에 관한 정보 - 해당 노블푸드가 소비하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 ◦ 해당 노블푸드의 예상 소비량과 관련한 정보 ◦ 해당 노블푸드에 사용될 모든 라벨의 텍스트 ◦ 통지서에 서명한 사람의 이름, 직함, 서명날짜

4. 라벨링

□ GM 식품 라벨링(labeling)

-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 Act)의 ‘생명공학 유래 식품에 대한 자발적 표시제’(Voluntary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that are and are not products of genetic engineering)에 따라 제품에 GM 식품 표기는 자율적임
-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 Act)과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은 캐나다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됨
 - GM 식품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은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성, 식품 구성(composition) 변화, 식품 영양품질(nutritional quality) 변화에 대한 표기가 요구됨

유럽 공통

유럽 식품안전관리제도 213

유럽 노블푸드 등록 217

EURO LEAF 인증 221

유럽 식품안전관리제도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유럽 식품안전관리제도	국가명	유럽 (EU 회원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유럽 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2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도입 취지 및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도입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설립됨 ◦ EU 내 식품 유통을 위해 준수해야함 ◦ EU 모든 회원국에 식품 안전과 품질에 관한 일관된 규칙 적용 ◦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식품안전기본법(Regulation (EC) No.178/2002) -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1169/2011) -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1333/2008)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물질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1935/2004)
EU 회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27개국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가공,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 ◦ 제외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살아있는 동물, 수확 전 식물, 의약품, 화장품, 담배, 마약, 잔류물, 의료기기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¹⁵⁶⁾

156) 참조: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hapter 1 Article 2

□ 취득

취득방법	국내 식품기업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전 식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EU 회원국 내 통용가능		
소요기간	별도의 소요기간 없음 (유럽 식품안전 규정 준수)	인증비용 (등록비용)	비용 발생하지 않음 (유럽 식품안전 규정 준수)

2. 세부 정보

□ EU 회원국 수출 시 식품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 또는 판정하는 별도의 인증 및 등록 제도는 확인되지 않으나 불시 검사를 통해 수입거부 및 반송,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자문을 참고하여 유럽연합 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식품관련 규칙이 제정되므로 식품 수출 업체는 EU 식품안전기본법을 유념해야함

□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식품안전기본법(EC No 178/2002)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및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임

- EU 내에서 식품안전을 감독하며 EU정책 보조를 위해 영양, 식이요법, 위해성 사안을 다루는 과학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식품첨가물, 유아용 식품, 유기농 식품 등 특정용도 식품과 기능 식품,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
- 새롭게 발생하는 식품안전 위해성 식별
- 식품안전 위기 발생 시, 유럽위원회 보조
- 과학적 자문과 위해성 평가 내용 등의 정보를 EU 소비자들에 전달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홈페이지	www.efsa.europa.eu https://connect.efsa.europa.eu/RM/s/contactus	
연락처	전화번호	+39-0521-036-111
	팩스번호	-
	이메일	-

3. 라벨링

- 라벨링 규정¹⁵⁷⁾에 따라 EU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전반에 적용
- 라벨 표기 시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공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함
- 자세한 사항은 라벨링 규정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¹⁵⁸⁾를 참고

항목	요약 내용
식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은 실명(legal name)을 사용함. 없는 경우, 관습적인 이름 (customary name)또는 설명적인 이름(descriptive name) 사용 ◦ 상표와 브랜드는 표기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으로 보호되는 명칭, 상품명(브랜드명)으로 사용 불가함
성분(Ingredient)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 내림차순으로 식품의 모든 성분 포함¹⁵⁹⁾ ◦ 성분표를 생략하거나 특정 성분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규정 참조¹⁶⁰⁾
알레르기 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 포함 곡물(밀, 보리, 귀리 등) ◦ 갑각류 제품 ◦ 계란 제품 ◦ 어류제품 (일부 예외 있음) ◦ 땅콩과 같은 제품 (일부 예외 있음) ◦ 대두 제품 (일부 예외 있음) ◦ 유당을 포함한 유제품 (일부 예외 있음) ◦ 견과류 및 그 제품 (아몬드, 호두, 캐슈넛, 마카다미아 등) ◦ 셀러리와 같은 제품 ◦ 겨자, 참깨 및 동제품 ◦ 총 SO 2 기준으로 10 mg/kg 또는 10mg/1ℓ 이상 농도의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염 ◦ 루피너스(콩과 식물) 제품 ◦ 연체동물 제품
순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 단위로 "킬로그램"또는 "그램"으로 표시 사용 ◦ 액체 제품의 경우 부피단위로 표시하며, 부피 단위는 ml(밀리리터), cl(센티리터), l(리터) 사용 중 하나를 표시함 ◦ 특정한 경우에 순 용량 표시는 생략 가능¹⁶¹⁾

157) Regulation (EU) No.1169/2011

15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ood-safety-and-quality/labelling-and-standards_en

159) Regulation (EU) No.1169/2011 SECTION 2 Article 18 및 ANNEX VII

160) Regulation (EU) No.1169/2011 SECTION 2 Article 19, 20

161) Regulation (EU) No.1169/2011 Annex IX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 ◦ 최종 제품의 원산지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하거나 ‘(주원료)는 (최종 제품의 원산지)에서 유래 하지 않음’을 기재해야함¹⁶²⁾ ◦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 참조¹⁶³⁾
영양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kj 및 kcal를 모두 기재) ◦ 지방 (g) ◦ 포화 지방산 (g) ◦ 탄수화물 (g) ◦ 당류 (g) (단당류 및 이당류의 총 가치) ◦ 단백질 (g) ◦ 염분 (g) ◦ 비타민, 미네랄 (µg 또는 mg)¹⁶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에 대해 100g 또는 100ml 당 영양소를 표시해야 함. - 1인분 또는 한 끼 당 영양소를 표시 할 수 있고, 영양 표시는 가능한 표 형식으로 기재.
유통기한 (Date of Minimum Durability ¹⁶⁵⁾ 또는 소비기한 (use by d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종류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다름. 관련 규정 참조¹⁶⁶⁾
보관조건 및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보관 조건, 사용조건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기재함. ◦ 보관 조건 및/또는 소비 기한을 기재함.

4. 포장물질 및 용기

□ 관련 법령 Regulation (EC) No.1935/2004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포장재, 이미 식품과 접촉하고 있는 포장재에 적용
- 식품의 일부를 형성하고, 해당 식품과 함께 섭취가능한 코팅 재료는 제외¹⁶⁷⁾ (치즈껍질, 가공육 등)
- 제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물질 목록¹⁶⁸⁾ 참조, 목록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신청 후 승인을 받을 수 있음.¹⁶⁹⁾

162) Regulation (EU) No.1169/2011 Article 26
 163) Regulation (EU) No.1169/2011 Article 26 및 Regulation (EU) No.2018/775
 164) Regulation (EU) No.1169/2011 Annex XIII
 165) Regulation (EU) No.1169/2011 Article 2, 2. (r)
 166) Regulation (EU) No.1169/2011 Annex X
 167) Regulation (EC) No.1935/2004 Article 1
 168) Regulation (EC) No.1935/2004 Annex I
 169) Regulation (EC) No.1935/2004 Article 8, 9, 10

노블푸드 Novel Food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유럽 노블푸드 등록	국가명	유럽 (EU 회원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유럽 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7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도입 취지 및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에 없던 새로운 식품들이 생겨남에 따라 EU 시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1997년 노블푸드 규정(Novel Food Regulation)을 마련하였다. 규정은 1997년 5월 15일 이전까지 유럽연합에서 상당한 수준(significant degree)으로 이용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성분을 노블푸드(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식품)로 정의하고, 시장 출시 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함 ◦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블푸드에 관한 법령 (Regulation (EU) 2015/2283) - 노블푸드 등록 절차에 관한 법령 (Regulation (EU) 2018/456) -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1169/2011)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에서 수입된 노블 푸드를 포함한 EU 내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노블 푸드¹⁷⁰⁾ ◦ 제외식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EC) No 1829/2003의 범위에 속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 Regulation (EC) No 1332/2008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효소; - Regulation (EC) No 1333/2008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첨가물; - Regulation (EC) No 1334/2008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향료; - Directive 2009/32/EC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추출 용매.

□ 취득

취득방법	노블푸드 범위에 속하는 식품군 제조회사는 유럽으로 수출하기 전 노블푸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취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초기 Union list에 등록된 노블푸드는 총 125개 항목 ◦ 이 후 2021년 8월까지 약 65개의 노블푸드가 추가로 등록됨

170) Regulation (EU) 2015/2283 Article 2 and 3

타국가 통용여부	EU 회원국 내 통용가능		
소요기간	약 10개월 ¹⁷¹⁾	인증비용 (등록비용)	없음

*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은 길어질 수 있음

2. 세부 정보

□ 노블 푸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인간이 상당한 수준(significant degree)으로 소비하지 않은 식품,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식품,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그리고 전통적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먹거나 먹어온 식품을 말함.¹⁷²⁾

◦ 예시

- 곤충
- 새로운 분자 구조 또는 의도적으로 변형된 분자 구조를 가진 식품
- 미생물, 균류 또는 조류로 구성, 분리, 생산된 식품
- 광물성 물질로, 구성, 분리, 생산된 식품
- 비전통적인 번식 방법으로 얻은 식물의 식품
- 미셀이나 리포솜으로 구성된 식품
- 가공된 나노물질 engineered nanomaterial 로 구성된 식품
- 식품의 구성이나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영양가, 대사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물질이 가공된 나노물질을 포함하거나 구성하는 식품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홈페이지	www.efsa.europa.eu https://connect.efsa.europa.eu/RM/s/contactus	
연락처	전화번호	+39-0521-036-111
	팩스번호	-
	이메일	-

171) EFSA 가이드: <https://www.efsa.europa.eu/sites/default/files/applications/apdeskapplworkflownutrinovel2018.pdf>

172) Regulation (EU) 2015/2283 Article 3 Definitions

3. 등록 절차

□ 관련 규정 Regulation (EU) 2018/456

No.	설명	비고
1	노블푸드 도입 이전에 EU 내에서 소비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
2	EU 시장에 출시하려는 식품이 노블푸드 규정 ¹⁷³⁾ 적용을 받는 물질을 포함하는지 여부 확인 ¹⁷⁴⁾	-
3	Union List 확인 ¹⁷⁵⁾	Union List에 있는 노블푸드 식품군이라면, 새로 식품군 등록 할 필요없이 시장 출시 가능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등록해야하는 노블푸드 식품군이라면, Regulation (EU) 2018/456 절차에 따라 등록 ◦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nsultation request (협의요청서)¹⁷⁶⁾ · 커버 레터; a cover letter; (Annex I) · 기술 문서; a technical dossier; (Annex II) · 증빙 서류; supporting documentation · 제출된 문서의 목적과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설명 an explanatory note clarifying the purpose and relevance of the submitted docu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수출하려는 (EU회원국) 국가에 제출,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한 국가에만 제출 ◦ 신규 식품의 허가 신청서에는 신규 식품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안전성 데이터와 (독성학) 연구가 포함되어야 함

4. 라벨링 및 포장재

□ 노블푸드의 라벨링 및 포장재 또한 유럽 식품안전관리법을 준수해야함

항목	관련 규정
라벨링	Regulation (EU) No.1169/2011
포장재	Regulation (EC) No.1935/2004

173) Regulation (EU) 2015/2283 Article 4 and 5

174) Novel Food Catalogue: https://ec.europa.eu/food/safety/novel_food/catalogue/search/public/index.cfm

175) Union List: Regulation (EU) 2017/2470

176) Regulation (EU) 2018/456 Article 4

5. EU 연합국 외 유럽 국가의 규제사항

□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유럽국가도 EU 규정을 참고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 기관에 따로 문의 필요함.

<p>영국¹⁷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EU에 신청했으나 승인이 되지 않은 신청 건 ◦ EU 노블푸드 규정 (Regulation (EU) 2015/2283)을 기반으로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으나, 따로 신청하여 안내를 받아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vel Food 목록 https://www.legislation.gov.uk/eur/2017/2470/annex/2017-12-20 ◦ 북아일랜드의 경우 출시할 노블푸드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EU 규칙과 승인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함 ◦ 신청서 https://www.food.gov.uk/apply-for-a-regulated-product-authorisation ◦ 관할기관 FSA (Food Standards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regulatedproducts@food.gov.uk
<p>스위스¹⁷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5월 1일 이후 스위스 식품법이 개정됨 ◦ 관할기관 FSVO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https://www.blv.admin.ch/blv/en/home.html

6. 포장물질 및 용기

□ 관련 법령 Regulation (EC) No.1935/2004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포장재, 이미 식품과 접촉하고 있는 포장재에 적용
- 식품의 일부를 형성하고, 해당 식품과 함께 섭취가능한 코팅 재료는 제외¹⁷⁹⁾ (치즈껍질, 가공육 등)
- 제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물질 목록¹⁸⁰⁾ 참조, 목록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신청 후 승인을 받을 수 있음.¹⁸¹⁾

177) 참조: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regulated-products/novel-foods-guidance>

178) 참조: <https://www.blv.admin.ch/blv/en/home/lebensmittel-und-ernaehrung/rechts-und-vollzugsgrundlagen/bewilligung-und-meldung/bewilligung.html>

179) Regulation (EC) No.1935/2004 Article 1

180) Regulation (EC) No.1935/2004 Annex I

181) Regulation (EC) No.1935/2004 Article 8, 9, 10

EURO LEAF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EURO LEAF 인증	국가명	유럽 연합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유럽 집행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8년
		유효기간	1년

* 유럽 집행 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아닌 관할 기관임

□ 배경

도입취지 및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834/2007) - 유기농 생산, 라벨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칙(Regulation (EC) No 889/2008) - 제3국에서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세부 규칙(Regulation (EC) No 1235/2008) -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18/848)¹⁸²⁾
인증(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유기농인증을 부여함 ◦ 생산 및 가공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 제한, 방사선조사 및 유전자변형성분 사용 금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적용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등을 포함한 농작물, 가축류, 사료, 농식품 등

□ 현황

취득방법	EU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O LEAF 인증은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유기농 인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튀니지 ◦ 2015년 2월 1일 한국-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발효 ◦ 최초 동등성 인정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으나, 2018년 1월 동등성 인정 협정 만료를 앞두고 한국과 EU 집행위원회는 협정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 		
소요기간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인증비용 (등록비용)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182) 2022년 1월 부로 Regulation (EC) No 834/2007에서 대체되어 시행 예정

2. 세부 정보

□ EURO LEAF 인증은 유기농 기준 및 규정을 준수했다는 의미로 유기농 제품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임을 보증함

- EURO LEAF 인증을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가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되어야 하며, 유전자변형(GMO)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유전자변형 성분이 고의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함량이 0.9%¹⁸³⁾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유기농 제품 생산 및 가공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물 등은 사용이 금지됨¹⁸⁴⁾
 - 이외에도 전리 방사선 사용금지, 인공비료 및 살충제 사용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유기농 생산자는 품목에 따른 생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생산 규칙
유기농 식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작 ◦ 천연 해충방제 기술 사용 ◦ 미네랄 질소 비료 사용금지 등
유기농 가축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복지 및 건강을 위한 사육 조건 충족 ◦ 성장 촉진제 사용 금지 ◦ 사료, 영양, 시설의 청소 및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정
유기농 사료 생산 및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유기농 사료의 생산과 분리 ◦ 화학적으로 합성된 용매를 통하여 처리된 재료 사용 불가 등

- 2022년 1월 EU 유기농 제품 규정이 Regulation (EU) 2018/848로 대체됨에 따라 이스트, 소금, 밀랍, 에센셜 오일과 같이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제품¹⁸⁵⁾의 생산, 가공, 유통에 EU 유기농 제품 규정이 적용됨
-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생산업체는 ‘전환기’를 거쳐야 하며, 전환기 동안 유기농 생산방식을 유지해야 하나 생산된 제품을 유기농 제품 또는 전환 중인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전환 기간은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의 품목에 따라 상이함¹⁸⁶⁾

183) Directive 2001/18/EC, Regulation (EC) No 1829/2003, Regulation (EC) No 1830/2003

184) Regulation (EC) No 834/2007 Article 16, Regulation (EU) 2018/848 Article 24

185) Regulation (EU) 2018/848 Annex I Other Products Referred to In Article 2(1)

186) Regulation (EC) No 889/2008 CHAPTER 5, Regulation (EU) 2018/848 Annex II

- EURO LEAF 인증을 위한 검사는 EU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Control bodies)에서 실시함
 - EU로부터 승인된 인증기관은 제3국 유기농 제품 수입을 위한 EU 규정¹⁸⁷⁾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 유기농정보 시스템¹⁸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URO LEAF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함

- 2015년 2월 1일 한국과 유럽연합 간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발효되어 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취득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로 표시하여 유럽 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음
 - 해당 협정은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이며 유기 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유기인증 취득한 식품에 대해 인정됨
 - 가공식품의 범위 및 라벨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기준을 적용함
 -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 농산물, 방사선 조사 등 금지된 물질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통관 및 유통 시 수입국 규정에 따라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가 시행됨
 - 최초 동등성 인정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으나, 2018년 1월 동등성 인정 협정 만료를 앞두고 한국과 EU 집행위원회는 협정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함
 - 한국 유기가공식품 인증 절차는 신청 접수 - 심사계획 통보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됨
 - 인증품 생산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 지도 또는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관련 교육 이수 증명 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함
 - 한국 유기인증 취득하여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EU TRACES(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에서 검사 증명서(COI, Certificate of Inspection)를 발급받아야 함
 -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유럽연합 도착항에서 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 2021년 3월 기준 EU로부터 승인된 국내 인증기관은 31곳이 있음¹⁸⁹⁾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c.europa.eu	
연락처	전화번호	+32 2 299 90 75 / +32 2 296 33 03
	팩스번호	-
	이메일	Miriam.garcia-ferrer@ec.europa.eu / therese.lerebours@ec.europa.eu

187) Regulation (EC) No 1235/2008 Annex IV

188) EU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IS (Organic Farming Information System): ec.europa.eu/agriculture/ofis_public

189) Regulation (EC) No 1235/2008 Annex III

3. 인증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신청 및 인증 계약 체결	생산업체	-
2	서류심사	인증기관	-
3	현장실사	인증기관	-
4	최종 검토 및 인증 결정	인증기관	-
5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4. 필요 서류

서류 목록

- 회사의 행정 정보
- 유기농 생산 단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상세 설명
- 유기농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록 문서
- 유기농 생산 및 관리 계획
- 기타 서류
 - 유기농 생산 단위, 저장, 보존 및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의 지도

5. 라벨링

적용 법령	Regulation (EC) No 889/2008, Regulation (EU) 2018/848
적용 대상	유럽 연합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명 및 주소 ◦ 유기농 생산 방법 ◦ 제품명 ◦ 유기농 인증기관명 및/또는 코드 번호 ◦ 로트 식별 표시 ◦ 성분 목록 ◦ 원산지 <p>※ 유럽 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라벨링 요구사항¹⁹⁰⁾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 ◦ 성분 목록 ◦ 알레르기 항원 ◦ 영양정보 ◦ 성분 함유량 ◦ 실제 중량 ◦ 보관조건 또는 사용조건 ◦ 원산지 ◦ 유효기간 ◦ 알코올 강도
로고 사용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고 크기는 13.5mm x 9mm보다 커야 하며, 해당 크기로 표시가 불가능한 포장일 경우 9mm x 6mm 크기가 허용됨 ◦ 로고는 녹색(Green Pantone No 376) 및 흰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단색 인쇄만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색상 변경이 허용됨 ◦ 투명한 배경을 사용하거나 3D 효과를 추가하는 등 스타일을 설정할 수 없음 ◦ 로고가 눈에 띄지 않을 경우 outer line을 적용할 수 있음 ◦ 코드번호 및 원산지는 로고와 동일한 시야에 표시되어야 하며, 원산지는 코드번호 바로 아래에 위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부터 유기농 제품 총 중량의 5% 이상 함유된 유기 원료의 원산지는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함¹⁹¹⁾
표기 언어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EU 회원국의 공용어

190) Regulation (EU) No 1169/2011 Section 2 Detailed provisions on mandatory particulars

191) Regulation (EU) 2018/848 Article 32(2)

6. EU 외 유럽 내 기타 국가의 유기농 인증

국가	규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유기농 제품 규정이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 유통되는 유기농 제품에는 GB(Great Britain) COI(Certificate of Inspection)가 요구됨 ◦ 북아일랜드 의정서(The Northern Ireland Protocol)에 따라 EU의 유기농 제품 규정은 북아일랜드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TRACES NT를 통한 EU COI가 요구됨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dinance on Organic Farming and the Labelling of Organically Produced Products and Foodstuffs (Organic Farming Ordinance (910.18)) - FOAG Ordinance on Organic Farming (910.184) ◦ EU TRACES NT를 통해 발행된 COI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로부터 승인된 제3국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유기농 제품은 스위스에서 유통될 수 있음 - EU 제3국 인증기관은 제3국 유기농 제품 수입을 위한 EU 규정¹⁹²⁾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농촌 개발 유기농정보시스템¹⁹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EU COI가 요구됨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c Agriculture Law No.5262 - Turkish Organic Regulation No. 27676 ◦ 터키 식품 농업 축산부(MoFAL)에서 승인한 관리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승인된 기관은 41곳으로, 터키 식품 농업 축산부 식물 생산 총국(General Directorate of Plant Produc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업체명 및 주소,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시작 날짜, 이전에 적용된 생산 방법, 비즈니스 계획, 토지 계획 등의 정보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함

192) Regulation (EC) No 1235/2008

193) EU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IS (Organic Farming Information System): ec.europa.eu/agriculture/ofis_public

5.

기타 권역 인증

유라시아

TRCU(EAC) 인증 229

국가위생등록(SGR) 235

우즈베키스탄 인증 241

TRCU(EAC)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TRCU 인증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국가명	EEU 회원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법령발효일: 2011년 12월 9일, 인증 적용일: 2013년 7월 1일
		유효기간	연속인증1~5년 (인증별 상이), 단일인증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피하기 위해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기존의 러시아 인증제도였던 GOST-R 제도에서 2011년 12월 9일에 결정된 N880에 따라 2013년 7월 1일 도입에 식품 관련 규정이 도입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기술규정 채택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동맹 결정(CCC No.880, 2011.12.09.) (Решение KTC от 09.12.2011 № 880)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 CU 인증 취득 시에는 유라시아 공통 인증마크(EAC 마크)를 부착. TR CU 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를 EAC 마크로 칭함 ◦ 식품과 관련된 12개 규정을 기반으로 적합성을 증명하여 TR CU 인증을 취득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일반 식품, 야채 및 과일, 지방 및 유제품, 다이어트 식품을 포함한 특정 유형 식품, 식품첨가물, 향료,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제품, 어류 및 어류제품, 생수, 광천수, 주류 ◦ TR CU 021/2011 규정 및 기타 11개의 식품 관련 규정은 가공식품에만 해당되며, 비가공 제품 경우에 발행되지 않음 ◦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동물 생해산물 생산자 식품은 DoC 대상이 아닌, 국경에서 수의학 증명서 (Veterinary Certificate) 발행 대상임. 수의학 증명서는 수입자가 직접 발행해야하며, Rosselkhoznadzor (러시아 정부 기관)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현황

취득방법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소재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소속된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통용됨		
소요기간	인증서 준비 및 발행 약 2~3주 (샘플 발송기간 제외)	인증비용 (등록비용)	인증기관별 상이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 및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2013년 국가별 인증 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협력을 목표로 TR CU 인증을 도입함

- 기존에는 유라시아 각 국가별로 기술적합성평가 인증제도(GOST)를 시행하여 국가별 규격에 맞추어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했으나, 통일된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TR CU(Technical Regulation of the Customs Union)인증제도로 변경됨
- TR CU 인증 도입을 통해 관세동맹 지역 내 수출입절차가 간소화됨
- 현재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TR CU 기술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기존 GOST-R 인증제도가 적용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이 출범하며 TR CU 인증으로 통합되었으며 인증 취득 시 EAC 마크를 부착함. EAC 마크는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의 약자로 '유라시아 국가 간 통일성'을 의미하며 TR CU 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를 EAC 마크로 칭함

□ 기존 GOST-R 인증과 TR CU 인증의 비교

구분	GOST-R	TR CU
신청자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현지법인(지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현지법인(지사)
준비서류	러시아어 문서	러시아어 문서
소요기간	적합성인증(CoC) Voluntary 와 적합성선언(DoC), 약 2주 (샘플 발송기간 제외)	적합성선언(DoC) 인증서 준비 및 발행 약 2~3주 (샘플 발송기간 제외)
샘플 시험	필수	필수
인증서 유효기간	단일인증, 연속인증 - 1, 3년	단일인증, 연속인증 - 1, 3, 5년

□ 식품류는 TR CU 강제인증 대상에 해당되며 각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함

- 통합 적합성평가 대상목록은 러시아 연방정부명령 98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총 49개 이상의 우선순위 규정이 관세동맹에 채택되어 매년 개정되고 있음
- 식품은 12개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하기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품, 주류, 사료, 곡물 등의 제품은 필수인증 대상에 해당됨
 - 강제인증 대상이지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관세동맹 회원국 내 통관이 불가하며 미인증 상태로 판매 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됨
 - 일부 신선 및 가공식품은 제품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적합성을 증명하고 검역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TR CU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식품 관련 통합 적합성평가 규정

규정	세부내용
TR CU 015/2011	곡물 안전성 관련 기술규정
TR CU 021/2011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TR CU 022/2011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TR CU 023/2011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TR CU 024/2011	유지제품 기술규정
TR CU 027/2012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TR CU 029/2012	식품 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TR CU 033/2013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TR CU 034/2013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TP EAEU 040/2016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TP EAEU 044/2017	천연 광천수 포함한 포장된 생수 안전 관련 기술규정
TP EAEU 047/2018	주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 TR CU 인증은 제품 품목에 따라 적합성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과 적합성인증(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으로 구분되며 식품은 적합성 선언을 통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적합성선언이란 신청자 스스로 제품이 유라시아 공통 기술규정기준에 부합함을 알리고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서류심사 및 샘플 시험으로 인증 취득이 가능함

□ TR CU 인증은 유효기간에 따라 단일(ONE-SHIPMENT)인증과 연속(SERIAL PRODUCTION)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일인증은 제품 1개의 배치에 해당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유효하므로 일회성 계약에 적합하며 인증서는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발행됨
 - 수출업체는 실질적인 수출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의미하며 수입업체는 관세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또는 지사 등을 포함함
- 연속인증은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수의 딜러 또는 수입업자와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며 1년에서 5년까지 유효함

□ TR CU 인증은 권한을 위임받은 시험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속한 국가 내에만 해당 기관이 존재하여, 국내에서는 국내지사 또는 대행기관을 이용해야 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홈페이지	https://eec.eaeunion.org	
연락처	전화번호	+7-495-669-24-00
	팩스번호	+8-495-669-24-15
	이메일	dept_techregulation@ecommission.org

3. 인증 절차¹⁹⁴⁾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적합성 선언서 초안 준비	신청자	-
2	인증서 발행에 필요한 자료 준비	신청자, EEU 영토에 승인된 시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 및 신청자 간의 계약서 ◦ 해당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 가능한 자료 ◦ 제품 샘플에 대한 시험성적서
3	해당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러시아 인증을 위한 연방 서비스(FSA) 사이트에 직접 등록 진행	신청자, 인증기관	-
4	서류 평가 수행	인증기관, FSA	-
5	인증서 발행 또는 거부	FSA	-

- 적합성 선언서를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 제조사 및 EEU 국가 영토의 대리인이나 제조업체 현지 법인과 직접 등록
 -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등록

4. 필요 서류

□ 인증신청서와 제품관련 서류, 시험성적서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함

- 인증 취득 시 현지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러시아 대리인이나 제조업체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하며 대리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함

구분	서류 목록
필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 CU 인증 신청서 ◦ 국/영문 제조자 정보 (회사명,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등) ◦ 제품정보 (HS Code, 제품명 국/영문, 필요 시 러시아어 제품명, 브랜드명) ◦ 제품설명서 (사용목적, 사용방법, 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 ◦ 제품 시험 성적서 ◦ 대리인 계약서 (승인된 대리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추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기타 식품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단일인증(One-shipment)을 위한 러시아 수입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194) 참조: 인증기관 기본 절차 및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 2012년 2월 21일 명령N 76

5. 라벨링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CU 021/2011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 TRCU 022/2011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в части ее маркировки)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시장에 제품 단일 마킹 및 적용 절차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동맹 결정 (CUC No.711, 2011.07.15.) (Решение КТС от 15.97.2011 № 711)
적용 대상	EEU 회원 국가에 수입 및 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된 식품의 표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 함량/성분 - 용량 - 제조일 - 유통기한 - 제조업체 또는 관세 동맹의 기술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식품의 보관 조건. 포장을 개봉한 후의 품질 및 안전성 변화는 식품인 경우 포장을 개봉한 후의 보관 조건도 표시 - 제조사 명칭, 주소 및 제조사로 승인된 대리인/수입자 업체의 명칭, 주소 - 권장 사항 (해당 시) - 영양지표 - 유전자 변형 유기체 (이하 GMO) 사용 여부 - 단일 유통 표시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EAC</div>
표기 언어	러시아어 및/또는 회원국 국가의 언어(들)로 적용되어야 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동맹 회원국 시장에서 단일 제품 유통 마크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함 ◦ 관세 동맹 회원국의 시장에서 제품 유통의 단일 표시는 각 제품 단위(소비자 포장 및(또는) 라벨) 및(또는) 선적 문서에 적용됨. 관세 동맹 회원국의 시장에서 제품 유통의 단일 표시는 제품의 전체 유효 기간 동안 명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에는 식품이 생산되고 식별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 식품의 발명된 이름, 상표, 독점 소유자, 상표권, 식품의 원산지 이름, 라이선스 제공자의 이름 및 위치, 자발적 인증 시스템의 표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국가위생등록(SGR)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국가위생등록(SGR)	국가명	EEU 회원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Rospotrebnadzor¹⁹⁵⁾ ◦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 및 역학 관리 위원회¹⁹⁶⁾ ◦ 벨라루스: 공화당 위생 및 역학센터¹⁹⁷⁾ ◦ 아르메니아: 보건부¹⁹⁸⁾ ◦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질병예방 및 국가위생 역학감시부¹⁹⁹⁾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0년 7월 1일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2010년 5월 28일 №299)
		유효기간	영구 또는 5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결정. 2019년 6월 18일 №102에 따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록을 통해 인체 건강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어 사용 조건에 따라 대량 비전염성 질병(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음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위생 조치 적용에 대하여»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299 (Решение КТС от 28.05.2010 №299) - «제품의 국가 위생 등록 인증서 관하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 No.80 (Решение Коллегии ЕЭК от 30.06.2017 №80)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 2017년 6월 30일 №80 개정에 대하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결정 No.102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ЕЭК от 18.06.2019 № 102)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록은 각 EEU회원국의 관할 기관에서 수행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 안전 요구 사항, 통합 위생-역학 및 위생 요구 사항 및 기술 규정 준수에 대한 국가 평가의 유일한 형태임. 이는 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인구의 안전을 보장함

195) 러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https://www.rospotrebnadzor.ru/>
 196) 카자흐스탄 보건부 홈페이지: <https://www.gov.kz/>
 197) 벨라루스 공화당 위생 및 역학 센터 홈페이지: <https://rceph.by/>
 198) 아르메니아 보건부 홈페이지: <https://www.gov.am/>
 199)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홈페이지: <https://dgsen.kg/>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유형의 식품은 TRCU(EAC) 인증이 아닌 국가 등록 대상임 - 이유식용 식수를 포함한 이유식용 식품 - 의료용 다이어트 및 질병 예방용 다이어트 식품 - 천연 미네랄 수, 질병 치료용 수, 질병 치료용 미네랄 수, 미네랄이 1 mg/dm³ 이상이거나 미네랄이 더 낮은 치료용 미네랄 워터, 생물학적 활성 물질을 balneological 표준 이상의 양으로 포함 - 운동선수, 임산부 및 수유부의 영양을 위한 식품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BAA)
-------	---

□ 현황

취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소재한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발행 가능 ◦ 각 EEU 회원국의 국가 등록 관할 기관에서만 발행 가능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소속된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내에서 통용됨		
소요기간	약 12주	인증비용 (등록비용)	5,000 RUB (러시아 기준 등록비) * 대리인비용/시험비용/컨설팅비용 제외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적용규정 및 관련 내용 요약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2010년 5월 28일 №299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위생 조치 적용에 대하여»
 -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국경 및 관세 영역에서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통제) 대상 제품의 통합 목록 설립
 - 위생 및 역학 감독(관리) 대상 제품(상품)에 대한 균일한 위생 및 역학 및 위생 요구사항 설정
 -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국경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영역에서 국가 위생 및 역학 감시(통제)를 수행하는 절차 설립
 - 관할 기관을 통해 2010년 7월 1일부터 다음 규정에 따라 국가 등록 증명서 발급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 2017년 6월 30일 №80 - «제품의 국가 위생 등록 인증서 관하여»
 - 국가 등록증의 통일 양식 설정
 - 국가 등록증의 발급 규칙 정의
 - 국가 등록증의 통합 레지스트리 형성 및 유지 절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결정 2019년 6월 18일 №102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 2017년 6월 30일 №80 개정 문서»
 - 국가 등록증의 통일 양식의 개정
 - 국가 등록증의 발급 규칙에 일부 내용 변경: 국가등록증의 발행 형태, 시험성적서 발행 가능한 시험소 명단, 유효 기간 등

□ 국가 등록증의 발행 규칙

- 국가등록증은 연합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승인된 관할 기관에서만 설정된 양식 맞게 발행 가능. 2019년부터 시작하여 등록 증은 전자 문서 형태로 발행 가능하게 되었음
- 연합 회원국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된 제조사, 판매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신청자로 될 수 있음.
- 제품에 적용 규정에 따라 해당 문서 준비하여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관할 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 관할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신청자가 제출된 문서의 검토
 - 이상 없을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국가등록 레지스트리에 추가
 - 국가등록증 등록 및 발행
- 국가등록증 발행을 위한 필요한 시험성적서는 국가로부터 승인된 공인 시험소에서만 발행된 것만 수용 가능
- 등록의 대상인 제품의 샘플링은 적용 규정에 따라 제조사/판매자/승인 신청자 또는 관할 기관으로 승인된 책임자 또는 시험소의 책임자가 실시할 수 있음
- 등록증 발행 허용은 제출된 자료 및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에서 결정됨
- 제품에 대한 자료는 회원국의 공식적 언어 외에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회원국의 공식적 언어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증 발행이 거부될 수 있음
 - 적용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 필요 서류 중 일부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제출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 제품의 제조, 유통 및 사용 중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제품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입증된 정보가 있을 경우

□ 국가 등록증 유효기간

- 최대 5년
 - 제품이 기술 규정(TR CU)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등록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등록증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함 (기술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이때, 발행된 등록증은 시험된 샘플 제조 때 제조된 제품에 해당됨. 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제조된 제품배치 경우에 해당 제품배치는 유효할 때까지 유통 가능
- 영구
 - 제품이 통합 위생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등록증을 발행하는 경우 등록증은 발행일로부터 회원국 영토에 제조, 판매 및 유통이 끝날 때까지 유효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러시아 Rospotrebnadzor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홈페이지	https://www.rospotrebnadzor.ru/	
연락처	전화번호	8-499-973-26-49, 8-499-973-13-90
	팩스번호	8-499-973-26-43
	이메일	depart@gse.ru

3. 인증 절차²⁰⁰⁾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국가 등록증 발행 위한 필요 서류 준비	제조사/승인 대리인 (신청자,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정보 - 제조사 정보 - 대리인 정보 (해당 시) ◦ 공인시험소에 실시된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해당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에 대한 기타 증빙서류 ◦ 등록되는 식품의 용도
2	필요 서류 관할 기관에 제출	제조사/승인 대리인 (신청자,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서류는 필요서류 목록문서와 비교되며, 목록 문서에 접수 날짜 기입, 사본을 제조사에게 전달 ◦ 필요서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가능
3	서류 검토	관할 기관	-
4	국가 등록 레지스터에 제품에 대한 정보 등록	관할 기관	-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필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록증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정보 - 제조사 정보 - 대리인 정보 (해당 시) ◦ 공인시험소에 실시된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안전성 및 기술규정 요구사항 충족하는 증빙 서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200) 인증기관 기본 절차 및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 2012년 2월 21일 명령N 76

5. 라벨링

□ 식이 의료 및 식이 예방 영양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과한 특정 유형의 특수 식품은 단일 제품 유통 마크 (EAC)를 표시해야 하며, 위생등록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별도의 인증마크는 없음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CU 021/2011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 TRCU 022/2011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в части ее маркировки)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시장에 제품 단일 마킹 및 적용 절차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동맹 결정 (CUC No.711, 2011.07.15.) (Решение КТС от 15.97.2011 № 711)
적용 대상	EEU 회원 국가에 수입 및 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표시사항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된 식품의 표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 함량/성분 - 용량 - 제조일 - 유통기한 - 제조업체 또는 관세 동맹의 기술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식품의 보관 조건. 포장을 개봉한 후의 품질 및 안전성 변화는 식품인 경우 포장을 개봉한 후의 보관 조건도 표시 - 제조사 명칭, 주소 및 제조사로 승인된 대리인/수입자 업체의 명칭, 주소 - 권장 사항 (해당 시) - 영양지표 - 유전자 변형 유기체 (이하 GMO) 사용 여부 - 단일 유통 표시 </div> <div style="flex: 0.5; text-align: center; font-size: 48px; font-weight: bold; margin-left: 20px;">EAC</div> </div>
표기 언어	러시아어 및/또는 회원국 국가의 언어(들)로 적용되어야 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동맹 회원국 시장에서 단일 제품 유통 마크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함 ◦ 관세 동맹 회원국의 시장에서 제품 유통의 단일 표시는 각 제품 단위(소비자 포장 및(또는) 라벨) 및(또는) 선적 문서에 적용됨. 관세 동맹 회원국의 시장에서 제품 유통의 단일 표시는 제품의 전체 유효 기간 동안 명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에는 식품이 생산되고 식별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 식품의 발명된 이름, 상표, 독점 소유자, 상표권, 식품의 원산지 이름, 라이선스 제공자의 이름 및 위치, 자발적 인증 시스템의 표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우즈베키스탄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우즈베키스탄 국가 인증 (National certification)	국가명	우즈베키스탄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	인증기관 (관할기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자무역부 산하 기술규제 기관 (Узбек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3년 (우즈베키스탄 법률 1993년 12월 28일 №1006-XII)
		유효기간	3년 또는 1년 또는 제품의 유효기간에 따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자무역부 산하 기술 규제 기관(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은 2021년 6월 2일자 “기술 규제 분야의 행정 개선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УП-6240에 의하여 Uzstandart 기관을 기반으로 설립됨²⁰¹⁾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 (ЗРУ 1006-XII 28.12.1993) (최신 개정판: 2014년 12월 11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No. ЗРУ-381에 따름) -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т 07.06.2004 № 318, Приложение № 1) (최신 개정판: 2020년 5월 20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결의 제302호에 따름²⁰²⁾) -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 No. №483-I (ЗРУ №483-I 30.08.1997) (최신 개정판: 2021년 4월 26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No. ЗРУ-685에 따름²⁰³⁾)
인증 내용	◦ 국가 인증은 관할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기본 안전 요구 사항, 통합 위생-역학 및 위생 요구 사항 및 기술 규정 준수에 대한 국가 평가의 유일한 형태임
적용 품목	◦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국가 인증 대상임

201) 참조: 우즈베키스탄 법률 데이터베이스 (<https://www.lex.uz/docs/99887>)
 202) 참조: 우즈베키스탄 법률 데이터베이스 (<https://www.lex.uz/docs/337775#338157>)
 203) 참조: 우즈베키스탄 법률 데이터베이스 (<https://lex.uz/docs/18673>)

□ 현황

취득방법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우즈베키스탄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약 2-3주	인증비용 (등록비용)	인증기관별 상이

2. 세부 정보

□ 우즈베키스탄 인증 식품관련 규격 목록²⁰⁴⁾

67 식품기술	
67.020 식품 산업의 공정	
Uz DSt 3286:2018	할랄 식품 일반 가이드
67.040 일반 식품	
Uz DSt 3290:2017	유기농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생산, 보관 및 운송 규칙
67.060 곡물, 콩류 및 가공 제품	
Uz DSt 458:2017	베이커리 및 패스트리 제품. 기술규정
Uz DSt 880:2015	밀. 조달 및 배송 요구 사항.
Uz DSt 992:2018	파스타 제품. 일반 기술규정
Uz DSt 1219:2014	케이크와 패스트리. 일반 기술규정
Uz DSt 1313:2009	베이킹 밀가루. 일반 기술규정
Uz DSt 2996:2015	즉석 열수 가공 파스타. 면. 일반 기술규정
Uz DSt 3112:2016	쌀가루. 기술규정
Uz DSt 3113:2016	보리가루. 기술규정
Uz DSt ISO 7970:2016	밀. 기술규정
67.080 과일, 야채	
67.080.01 총 과일, 야채 및 가공 제품	
Uz DSt ISO 1956-1:2017	과일 및 야채. 형태론적 및 구조적 용어. 1 부
Uz DSt ISO 1956-2:2017	과일 및 야채. 형태론적 및 구조적 용어. 2 부
Uz DSt ISO 7558:2011	과일 및 야채 포장 지침

204) 참조: 우즈베키스탄 기술 규제 기관 (<https://www.standart.uz/ru/page/view?id=151>)

67.080.20 야채 및 야채 가공 제품	
Uz DSt 2810:2014	케첩. 일반 기술규정.
Uz DSt ISO 949:2011	콜리플라워. 냉장 보관 및 냉동기 운송 지침
Uz DSt ISO 1673:2011	양파. 보관 지침
Uz DSt ISO 2165:2011	감자. 보관 지침
Uz DSt ISO 2166:2011	당근. 보관 지침
Uz DSt ISO 5524:2017	토마토. 냉장고 보관 및 냉동기 운송 지침
Uz DSt ISO 6659:2017	피망. 냉장 보관 및 냉동기 운송 지침
Uz DSt ISO 7560:2011	오이. 보관 및 냉동기 운송 지침
67.100 우유 및 유제품	
67.100.10 우유 및 가공유 제품	
Uz DSt 1083:2011	우유. 기술규정
Uz DSt 3037:2015	요거트. 기술규정
67.100.30 치즈	
Uz DSt 628:2011	절인 치즈. 기술규정
Uz DSt 3024:2015	크림치즈. 기술규정
67.100.40 아이스크림 및 냉동 과자	
Uz DSt 961:2010	아이스크림. 기술규정
67.120 육류, 육류 제품 및 기타 동물성 제품	
67.120.10 육류 및 육류 제품	
Uz DSt 367:2015	고기만두 및 감자만두. 기술규정
Uz DSt 994:2017	훈제 삶은 제품. 기술규정
Uz DSt 2987:2015	조리된 소시지 제품, 소시지 및 브라우우르스트. 기술규정
Uz DSt 2988:2015	반훈제 소시지 제품. 기술규정
Uz DSt 3083:2016	육류 반제품. 기술규정
67.120.20 가금류 및 계란	
Uz DSt 626:2014	식용 달걀. 기술규정
Uz DSt 3188:2017	가금류 내장. 기술규정
Uz DSt 3308:2018	닭고기(닭, 육계 및 닭고기 부위)

67.160 음료	
67.160.10 알코올 음료	
Uz DSt 939:2016	코냑 증류액. 기술규정
Uz DSt 942:2016	와인 및 가공 와인 재료. 일반 기술규정.
Uz DSt 944:2016	포도액. 기술규정
67.160.20 무알코올 음료	
Uz DSt 540:2010	광천수, 식수, 약수, 식용수. 일반 기술규정
Uz DSt 925:2019	무알코올 음료. 기술규정
67.180 설탕. 설탕 제품. 녹말	
67.180.10 설탕 및 설탕 제품	
Uz DSt 2979:2015	카라멜, 견과류 등의 과자. 기술규정
67.200 식용유 및 지방. 유지종자	
67.200.10 동물성과 식물성 기름 및 지방	
Uz DSt 816:2015	정제된 면실유. 기술규정
Uz DSt 2824:2014	해바라기유. 포장, 라벨링, 운송 및 보관
Uz DSt 2901:2014	마요네즈. 기술규정
Uz DSt 3093:2016	콩기름. 기술규정
Uz DSt 3335:2018	식물성 면실 해바라기유. 기술규정
67.220.20 영양 보충제	
Uz DSt 1091:2017	요오드화된 식품 소금. 기술규정
Uz DSt 2796:2013	식초. 일반 기술규정.

□ 유효 기간

- 수입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 유효기간은 제품의 유효기간만큼의 기간으로 발행되며, 유효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영구적으로 발행됨
- 수입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유효기간은 제품의 유효기간만큼의 기간으로 발행되며, 유효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영구적으로 발행됨. 연속생산품의 경우, 3년 기간으로 발행됨. 연속생산 적합성 인증서 유효기간 동안 제조된 제품은 인증된 제품으로 간주됨
- 하나의 대외 무역 협정(계약)에 포함된 동일한 제품에 대한 위생허가/적합성인증서는 1년 기간으로 한 번 발행됨

□ 특이사항

◦ 인증 거절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서 발행이 거절될 수 있음

- 동일한 이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식품을 등록할 경우
- 동일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같은 유형의 식품을 여러 번 등록할 경우
- 마약성 물질을 함유한 식품, 식품 첨가물, 사료 첨가물 및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을 등록할 경우

◦ 해외 적합성 인증서의 인정

- 인증 기관은 인정 계약이 체결된 CIS 국가 및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인정할 권리가 있음
- 인증서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설정된 유사한 요구 사항보다 열등하지 않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인정됨
- 규제 문서에 명시된 인증에 필수 요구 사항 또는 계약에 명시된 추가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이 이러한 요구 사항에 준수한다는 것이 시험되어야 함
- 받은 문서 및 자료의 분석과 제품 식별을 기반으로 인증 기관은 외국 적합성 인증서의 인정(인정 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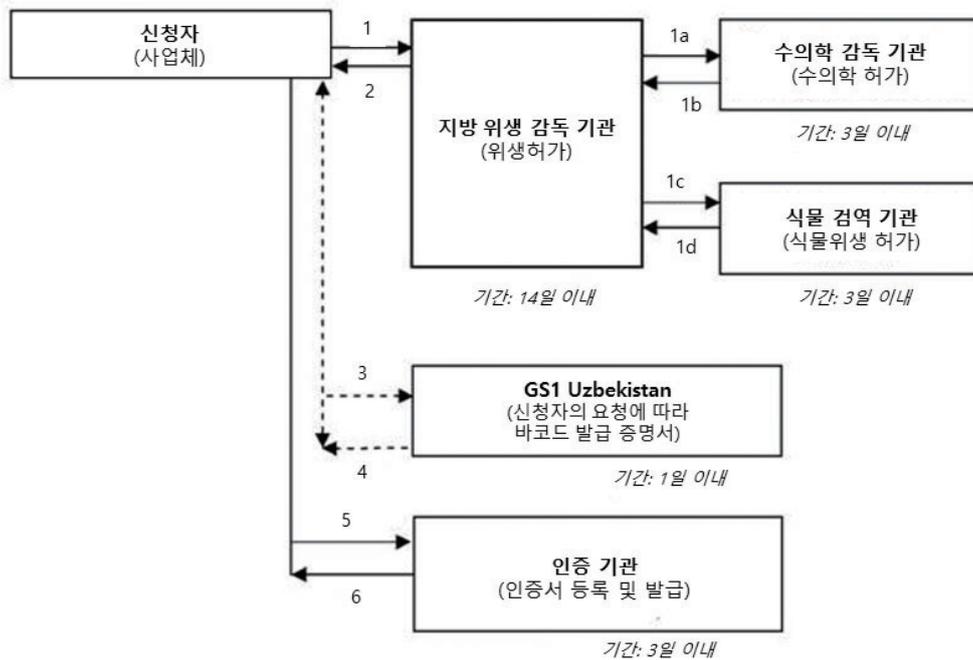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자무역부 산하 기술규제 기관 (Узбек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홈페이지		https://www.standart.uz/
연락처	전화번호	+(998-71) 202-00-11 (1031), (998-78) 150-23-00
	팩스번호	+(998-71) 246-17-63
	이메일	uzst@standart.uz

3. 인증 절차²⁰⁵⁾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허가 발행 수의학 및 식물위생 허가 발행 적합성 인증서 발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 위생 감독 기관 국가 수의학 감독 기관 및 식물 검역 기관 공인 인증기관 	-
2	인증 기관에서 적합성 인증서 발행	공인 인증기관	-

□ 제품 인증 절차 계획²⁰⁶⁾



1. 관련 위생 감독 기관에 필요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 관련 위생 감독 기관은 정의된 절차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실험실 연구를 위해 제품 샘플을 선택하고 시설을 검사함

1a. 동물성 제품의 경우 관련 위생 감독 기관은 신청자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지방(도시) 수의학 감독 기관에 신청서를 발송함

1b. 수의학 감독 기관은 3일 이내에 관련 위생 감독 기관에 수의학 허가 또는 특정 입법 규범을 명시한 허가 거부한다는 서면 답변을 발송함

수의학 감독 기관은 정의된 절차에 따라 최대 20일 동안 격리 및 제한 조치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수의학 허가 발급 절차는 격리 기간 종료 시까지 중단함

1c. 식물성 제품의 경우 관련 위생 감독 기관은 신청자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지방(도시) 식물 검역 기관에 신청서를 발송함

1d. 식물 검역 기관은 2일 이내에 식물위생 허가 또는 허가 거부 결론을 발행함

205) 참조: 우즈베키스탄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т 07.06.2004 № 318, Приложение № 1)

206) 참조: 우즈베키스탄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т 07.06.2004 № 318, Приложение № 1)

2. 시험소에서 실시한 시험의 긍정적인 결과와 수의학 및 식물 위생 허가 발행의 경우 국가 위생 감독 기관은 신청자에게 위생 허가를 발행함
- 3,4. 신청자는 선택에 따라 GS1 우즈베키스탄에 제조된 제품 바코드에 사용되는 조직 및 제품의 코드를 요청할 수 있음
5.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 받기 위해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
6. 인증 기관은 영업일 3이내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하거나 특정 법적 규범을 명시한 인증서 발행을 거부한다는 서면 답변을 발송함

4. 필요 서류²⁰⁷⁾

구분	서류 목록
위생허가 발행 수의학 및 식물위생 허가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위생 및 역학, 수의학, 식물위생 또는 환경 기준 및 요구사항 포함한 규제 문서 ◦ 기술 지침 및 조리법
적합성 인증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제품에 대한 규제 문서 사본 ◦ 제품 라벨링 초안 (제품 상세 정보) ◦ 위생허가 사본

207) 참조: 우즈베키스탄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т 07.06.2004 № 318, Приложение № 1)

5. 라벨링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 No. №483-I (3PY №483-I 30.08.1997) (최신 개정판: 2021년 4월 26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No. 3PY-685에 따름)
적용 대상	우즈베키스탄에 수입 및 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된 식품의 표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식품의 이름 ◦ 식품 사용 목적 (어린이용 및 다이어트용 특성 제품 대상) ◦ 제조업체 이름 ◦ 상표 (있는 경우) ◦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에 포함된 성분 목록 ◦ 영양가, 등급 ◦ 보관 조건 ◦ 제조일, 만료일 ◦ 제조 방법 (반제품 및 어린이용 및 다이어트용 특정 제품 대상) ◦ 용량 ◦ 사용 방법(생물학적 활성 첨가물, 식품 첨가물, 어린이용 및 다이어트용 특정 제품 대상) ◦ 적합성 마크 (제품 적합성 마크 허가 있는 경우) ◦ 규범 또는 기술 문서 번호
표기 언어	우즈베키스탄 언어

호주

호주 수입식품 관리제도 250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1. 개요

□ 기본정보

등록명	호주 수입식품관리제도	국가명	호주
관할기관	호주 농림수산환경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필수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1년
		유효기간	무기한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농림수산환경부는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법률, 정책, 표준 및 프로세스를 구성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보안법 (Biosecurity Act 2015) - 수입식품관리법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 원산지 라벨 정보에 관한 기준법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 - 식품기준코드 (Food Standards Code) - 수입식품관리규정 (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1993) - 수입식품관리명령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농림수산환경부는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 및 검역을 담당하며, 식품기준청은 호주 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청과, 고기, 계란 및 생선류, 식용유, 유제품, 무알콜 음료, 주류, 설탕과 꿀, 특수 목적 식품, 기타 음식(식초, 소금, 껌 등) 등

□ 현황

방법	국내 식품기업은 호주로 수출하기 전 식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함		
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호주 및 뉴질랜드 내에서만 인정됨		
소요기간	별도의 소요기간 없음 (호주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인증비용	별도의 비용 없음 (호주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소요 기간 및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호주 내에서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기관은 농림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DAWE)와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이 있으며, 농림수산환경부는 수입허가 및 검역을 담당하며 식품기준청은 식품과 관련된 위생 및 안전 표준을 제시함
 - 수입식품에 대해 요구되는 별도의 인증은 없으나 식품업체는 호주 수출 시 식품안전기준, 라벨링, 첨가물 기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호주 농림수산환경부는 수입식품검사체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서류심사 및 기본 검사를 실시함
 - 농림수산환경부는 수입식품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식품관리증명서(Food Control Certificate)를 발행하며, 이를 통해 검사 또는 검사 및 분석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식품관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부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필요 정보> ²⁰⁸⁾	
수입자와 식품 수입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을 수입하는 선박의 이름 ◦ 선박의 선적항에 대한 세부사항 ◦ 식품이 호주에 도착하는 날짜 ◦ 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수입과 관련된 대리인
식품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에 대한 설명 ◦ 원산지 ◦ 식품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세부정보 ◦ 식품의 브랜드 이름 ◦ 화물에 수입될 포장의 수 및 각 포장의 무게 ◦ 화물의 총 중량 ◦ 화물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로트 코드의 세부사항 ◦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소

-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은 위험 식품(Risk food), 감시 식품(Surveillance food) 등으로 분류되며, 식품 분류 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함

208) 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1993 Part 2 - 5

<위험도에 따른 식품 분류>	
위험식품 ²⁰⁹⁾ (Risk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보건에 높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 위험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은 위해요소에 대한 추가 검사가 요구됨²¹⁰⁾ ◦ 최초 수입 시 100% 검사 대상이며 5회 연속 검사 통과 시 화물 중 25%, 25회 연속 검사 통과 시 화물 중 5%가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선택됨
감시식품 (Surveillance 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식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저위험군 식품으로 농림수산업부 생물보안국 검사 결과 확인 전 판매가 가능하나 검사 결과 위험성이 있는 경우 회수해야 할 수 있음²¹¹⁾

- 육안 검사 및 라벨링 검사가 진행되며, 식품 종류에 따라 미생물 시험, 화학시험, 알레르기 시험 등이 진행됨

□ 호주로 수입되는 특정 식품은 해당 식품이 HACCP 기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 안전 관리 인증서(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s)가 필요함

- 식품 안전 관리 인증서는 공인된 인증 기관에서 발행되어 유효한 제3자 인증서 또는 공인된 외국 정부 증명서여야 함
-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식품의 1차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의 식품 안전 위해요소를 식별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장해야 함
- 2022년 11월 9일부터 베리류(Berries that are ready-to-eat) 및 석류(Pomegranate arils that are ready-to-eat)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됨

□ 호주 식품기준청의 식품기준코드(ANZFS) ²¹²⁾ 는 호주 내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됨

- 식품기준코드는 1장 일반 식품기준(General Food Standards), 2장 식품별 세부 기준(Food Product Standards), 3장 식품 안전성 기준(Food Safety Standards), 4장 미가공 농식품 생산 기준(Primary Production Standards)으로 이루어짐
- 1장에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제품 라벨링, 식품 첨가물 기준, 미생물 및 오염물질 허용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
- 2장에서는 식품 품목 별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식품 품목별 표준 현황>		
품목	식품기준코드	세부 표준
곡물	2.1.1	Cereal and cereal products
고기, 계란 및 생선	2.2.1	Meat and meat products
	2.2.2	Egg and egg products
	2.2.3	Fish and fish products

209)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Schedule 1

210) 호주 농림수산업부 홈페이지: <https://www.aw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inspection-compliance/risk-food>

211) 호주 농림수산업부 홈페이지: <https://www.aw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inspection-compliance/inspection-scheme#how-is-surveillance-food-tested>

212) 식품기준청 홈페이지: <https://www.foodstandards.gov.au/>

청과	2.3.1	Fruit and vegetables
	2.3.2	Jam
식용유	2.4.1	Edible oils
	2.4.2	Edible oils spreads
유제품	2.5.1	Milk
	2.5.2	Cream
	2.5.3	Fermented milk products
	2.5.4	Cheese
	2.5.5	Butter
	2.5.6	Ice cream
	2.5.7	Dried milk, evaporated milk and condensed milk
무알콜 음료	2.6.1	Fruit juice and vegetable juice
	2.6.2	Non-alcoholic beverages and brewed soft drinks
	2.6.3	Kava
	2.6.4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s
주류	2.7.1	Labelling of alcoholic beverages and food containing alcohol
	2.7.2	Beer
	2.7.3	Fruit wine, vegetable wine and mead
	2.7.4	Wine and wine product
	2.7.5	Spirits
설탕과 꿀	2.8.1	Sugar and sugar products
	2.8.2	Honey
특수 목적 식품	2.9.1	Infant formula product
	2.9.2	Food for infants
	2.9.3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2.9.4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2.9.5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9.6	Transitional standard for special purpose foods

기타 식품	2.10.1	Vinegar and related products
	2.10.2	Salt and salt products
	2.10.3	Chewing gum
	2.10.4	Miscellaneous standards for other foods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홈페이지	www.awe.gov.au	
연락처	전화번호	+61 3 8318 6700
	팩스번호	-
	이메일	-

3.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수입허가 신청 (필요한 경우)	수입업체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을 통해 생물 보안 요건 등 확인
2	수입허가 발급	DAWE	-
3	서류 제출	수입업체	-
4	식품 검사 실시	DAWE	식품 분류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또는 검사 및 분석 실시
5	적합 판정	DAWE	-

* 일부 상품의 수입 시 수입허가가 요구되며, BICON에서 확인할 수 있음²¹³⁾

4. 필요 서류²¹⁴⁾

구분	서류 목록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하 증권 ◦ 항공 운송장 ◦ 상업 송장 ◦ 포장 목록 ◦ 수입 허가 ◦ 포장 신고서 ◦ 세척과 관련한 증명서 (Cleanliness declaration) ◦ 방제/방역 처리 증명서 (Treatment certificates) 등
수입 식품 검사 체계 (IF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검사/분석을 수행하는 실험실 지명 양식 (Laboratory nomination form) ◦ 로트 코드 목록 (Lot code list) ◦ 수입 식품 검사 제도 수입업자 신고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mporter declarations) ◦ 공인 식품 안전 관리 인증서

213) 호주 농림수산환경부 홈페이지: <https://www.awe.gov.au/biosecurity-trade/import/before/how-to-import>

214) Minimum documentary and import declaration requirements policy V4.0

5. 라벨링

적용 법령	◦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Standard 1.2.1 - Requirements to have labels or otherwise provide information
적용 대상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이름, 로트 식별 정보, 공급업체 및 위치 ◦ 원료 성분 표시 ◦ 원산지 표시 ◦ 유통기한 또는 소비 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사용방법 및 저장방법(필요한 경우) ◦ 알레르기 성분 등에 관한 경고·주의 환기·고지 ◦ 기타 특정 함유 성분 ◦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한 가공(해당하는 경우) ◦ 영양 정보 패널
표기 언어	영어

6. 원산지 표시 기준²¹⁵⁾

해당 기관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적용 법령	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
적용 대상	모든 수입 식품에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표시 요건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식품, 비우선 식품 여부* -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 포장된 식품 여부 - 식품 포장 여부 ◦ 다음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사료 등 식용이 아닌 식품 - 식당, 케이터링 업체, 병원, 교도소, 학교에서 판매되는 식품 - 모금 행사에서 판매되는 식품 - 식품이 만들어지고 포장된 동일한 장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개인 베이커리에서 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경우) - 특수 의료 목적 - 호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식품

215) ACCC Guide: <https://www.accc.gov.au/publications/country-of-origin-food-labelling>

<p>식품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는 자체 평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식품이 우선식품인지 비우선 식품인지 식별해야 한다. ◦ 우선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우선 식품이 아닌 모든 식품 ◦ 비우선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asonings (e.g. salt, spices and herbs but excluding mustards, sauces and chutneys) - Confectionery (e.g. chocolate, lollies, ice cream, popcorn but excluding sugar and sugar mixes, jams, honey and other non-chocolate based spreads) - biscuits and snack food (e.g. chips, crackers and ready to eat savoury snacks but excluding cakes, muesli bars and processed nuts) - bottled water - soft drinks and sports drinks (excluding non-carbonated fruit or vegetable drinks, milk and milk substitute drinks) - tea and coffee (in dry, or ready to drink, form) - alcoholic beverages
<p>원산지 라벨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 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wn in: 해당 식품이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재배되었음을 의미한다. - Product of: 모든 가공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 Made in: 지정된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상당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 Packed in: 특정 국가에서 재배, 생산, 제조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장된 위치에 따라 표기한다. ◦ 표준마크(Standard Mark)²¹⁶⁾ 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성분 표준마크(Three component standard m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캥거루 마크 + 막대 차트 + 원산지 문구 - 호주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되거나 제조된 우선 식품에 해당 (수입식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2. 2성분 표준마크(Two component standard m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대 차트 + 원산지 문구 - 호주에서 포장되는 우선 식품, 호주 재료가 포함된 수입 우선 식품에 해당 3. 원산지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우선 식품에 해당 4. 원산지 표시 (a country of origin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문구만 기재함 (우선 식품의 경우, 박스 안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 - 수입 비우선 식품에 해당 <p>※ 수입 식품은 캥거루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p>

216) ACCC 홈페이지: <https://www.accc.gov.au/business/advertising-promoting-your-business/country-of-origin-claims/country-of-origin-food-labelling>



인증별 식품인증 가이드

할랄

말레이시아 JAKIM	260
인도네시아 MUI(BPJPH)	264
아랍에미리트 ESMA	268
싱가포르 Warees(MUIS)	273
미국 IFANCA	278
한국 KMF	281
카자흐스탄 AHİK	287

말레이시아 JAKIM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JAKIM 할랄 인증	국가명	말레이시아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4년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의 인구 60%이상이 무슬림인 거대 할랄 시장이며, 무슬림 인구의 올바른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서 인증을 도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식품표준(MS1500:2019) - 식품 및 음료 가이드라인 - 할랄 육류 및 가공육 생산을 위한 말레이시아 의정서 (2011)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후에 수수료납부가 완료되면 서류검토, 현장실사,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됨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 식품·음료류(장·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 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 농·축·해산물류(우·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육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 원재료류(당·염류, 향신료·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현황

취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검사기관의 결과를 인정하나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최종 발급받을 수 있음 ◦ JAKIM 규격에 따라 JAKIM 으로부터 승인받은 국외 인증기관 (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y)을 통한 교차인증을 허용함으로써 동등성을 인정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KMF, AHIK 등을 포함한 약 48개국 84개의 할랄인증과 교차 인정됨		
소요기간	2 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업체의 규모, 산업 분야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 및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 인증은 1953년 동물법에 근거하여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만이 의무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음
- JAKIM 할랄 인증 신청 대상자로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도축업장, 물류업체 등이며 인증대상으로 모든 식품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도축장이나 식당·연회 서비스업체 까지도 적용됨
 - 술을 제조하는 목적으로 생산된 품목은 할랄 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며, 알코올 허용 수치는 식음료 0.5%, 청량음료 1%임

구분	세부내용
인증신청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생산자 ◦ 유통업자/상인 ◦ 하청 제조업체 ◦ Food premise ◦ 도살장/도축장
인증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할랄) ◦ 쇠고기, 버팔로, 양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 가공 생선제품, 우유 및 유제품, 유아식품, 계란 제품, 식물 및 가공식물 제품, 과일류, 밀가루, 전분 제품, 밥과 반찬, 파스타제품, 빵과 케이크, 유화제, 베이커리용 설탕, 연화제, 간식 및 스낵류, 초콜릿, 아이스크림, 물과 음료, 젤라틴, 해초가루, 곤약, 껌, 조미료, 식초, 감미료, 카페인, 방부제, 유산균, 단백질 및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소

-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들은 JAKIM인증 또는 JAKIM과 교차인정 되는 할랄 인증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 JAKIM 인증과 교차인정이 가능한 외국 할랄 인증기관은 약 40여개국 80여개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할랄 인증 신청 시 제품의 원재료 증빙 서류로서 타 할랄 인증서를 평가하며, 인정되지 않는 기관의 할랄 인증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 할랄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JAKIM 인증을 취득하거나 교차인정되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교차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JAKIM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JAKIM의 할랄 인증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음

□ 할랄 인증 기준은 말레이시아 표준관리부 산하의 표준개발청에서 규정한 할랄 관련 MS표준을 따르며, 할랄 식품 생산에서부터 배달까지의 지침이 존재함

-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율법과 관련사항에 대한 말레이시아 지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할랄 인증 기준 MS표준	
MS 1500:2019	할랄 식품: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 관련 지침
MS 2594:2015	식수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요건
MS 1900:2014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MS 2610:2015	할랄 관광 및 서비스 제공 시 관리지침
MS 2300:2009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조직 설립 및 관리 시스템 기준
MS 2400: part1:2010	제품 및 화물의 운송 요건
MS 2400: part2:2010	배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창고 저장 관련 지침
MS 2400: part3:2010	소매 단계에서 할랄 무결성 관리 요건
MS 2953:2013	이슬람 및 할랄 원칙
MS 2565:2014	할랄 포장
MS 2424:2012	건강 보조제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 취급기준
MS 2200: part1:2008	이슬람 소비자 제품

- 할랄 식품 표준을 바탕으로 할랄 인증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였고, 현재 할랄 인증서 발급을 위한 업무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할랄보장시스템(HAS)이란 식품을 생산하고 운송·보관함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할랄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이며,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의 할랄보장시스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음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홈페이지	https://www.halal.gov.my	
연락처	전화번호	+60-03-8892 5000
	팩스번호	+60-03-8892 5005
	이메일	pr_halal@islam.gov.my

3. 인증 절차²¹⁷⁾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신청 및 서류 제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추가서류 하기 참조
2	수수료 청구서 발송 및 납입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3	현장실사 및 샘플링 분석	인증기관	-
4	심사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
5	인증서 승인 및 발급	인증기관	-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홈페이지(<http://apps.halal.gov.my>)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사를 시행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함
- 서류심사 통과 및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현장실사 스케줄이 정해지고 현장실사가 진행되는데,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샘플링을 통해 실험실 분석이 진행됨
- JAKIM은 인증기간 동안 모든 할랄 표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 식품 취급 사업장 및 도축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 갱신의 경우, 신청서는 인증서 유효기간(2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승인 신청 후 동일한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쳐 인증 기간을 연장해줌

4. 필요 서류²¹⁸⁾

구분	서류 목록
필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공장 등록증 등 ◦ 제품명과 제품설명 ◦ 사용된 원료의 시험 성적서 ◦ 원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 식품원료의 할랄 상태, 필수 식품원료의 설명서 또는 할랄 인증서 (인증서 보유 시) ◦ 포장재의 종류 ◦ 제조 공정도 및 생산 절차 ◦ 공장 및 부지 지도, 작업장 평면도 ◦ 샘플 및 제품 라벨 ◦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 법에 위배되는 소재/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 주정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경우, 원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 제조공정 중 효소를 사용할 경우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 균주 기탁서 ◦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Halal Assurance System) ◦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 ◦ 원재료 리스트 등

217) 참조: JAKIM 홈페이지 (<https://www.halal.gov.my>)

218) 참조: JAKIM 홈페이지 (<https://www.halal.gov.my>)

인도네시아 BPJPH

1. 개요

기본정보

명칭	BPJPH 할랄 인증	국가명	인도네시아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 수 <input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88년
		유효기간	4년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내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식품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을 도입함 ◦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규 법령이 시행되어 할랄 인증기관이 민간인증기관(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으로 변경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S 23000 할랄보증 시스템 (KRITERIA SISTEM JAMINAN HALAL DALAM HAS 23000) - LPPOM MUI를 통한 할랄 인증 프로세스를 위한 제품 그룹 및 유형에 대한 규정 (SK08/Dir/LPPOM MUI/V/21) - 중요하지 않은 성분 목록 (SK12/Dir/LPPOM MUI/IV/XII) - 중요하지 않은 재료 목록 회람 (LN11/Dir/LPPOM MUI/VI/20, DN29/Dir/LPPOM MUI/VI/20) - 할랄제품 보증 (Government Regulation No. 39/2021) - 옴니버스 법 (Government Regulation No. 11 / 2020) - 할랄제품 보증의 이행 (PP No. 31 / 2019)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은 계도기간(5년)을 거쳐 2024년부터 할랄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임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음료류 (장·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 농·축·해산물류 (우·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 (당·염류, 향신료·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현황

취득방법	할랄인증청(BPJPH)을 통한 인증 신청은 할랄인증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²¹⁹⁾
취득현황	전 세계적으로 2021년 9월 기준 기존의 MUI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1만6천여 개 이상이며, 인증 제품 수는 약 120만개임

219) <https://ptsp.halal.go.id/>

타국가 통용여부	할랄인증청(BPJPH)이 상호 인정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증 가능		
소요기간	1~2 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제품유형, 수량, 기업 위치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신규 법령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업무는 기존 비정부 기관 인도네시아올라마 위원회(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으로 이관 되었으며 할랄 인증 적용대상이 수입식품으로 확대됨

- 식음료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5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기존처럼 할랄 미취득 제품도 수입 가능함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 변경 내용

변경 전 (LPPOM MUI 할랄 인증)	변경 후 (할랄인증청(BPJPH) 할랄 인증)
◦ MUI 지정 인증대행기관을 통한 신청 후 인증 취득	◦ 직접 할랄인증청(BPJPH)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4년
◦ 식품 및 음료 제품의 할랄 인증은 선택사항	◦ 식품 및 음료 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 기존 할랄 인증기관인 LPPOM MUI는 할랄 인증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인증 진행 중에 있는 제품의 경우에만 LPPOM MUI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은 BPJPH, 할랄 평가 기관(LPH)인 LPPOM MUI, MUI의 3개 기관이 포함됨
 - BPJPH에 신청서 제출 후 LPPOM MUI는 문서 적절성 검사, 감사 일정, 감사 구현, 감사 회의 실시, 감사 각서 발행, MUI Fatwa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 의사록 제출 등을 수행
 - MUI는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의 할랄성을 결정하고 MUI Halal Decree를 발행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 할랄 로고 사용을 허가하며 할랄 인증을 받기 전 식약청에 할랄 제품을 등록해야 함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수입제품의 유통허가와 등록과 함께 할랄 로고 부착에 대한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할랄인증청(BPJPH) 할랄 로고가 만들어지지 않아 기존에 MUI 할랄 로고를 활용하며, MUI 할랄 로고는 이 정부 규정의 발효 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Regulation No. 39/2021에 따라 MUI 할랄 로고는 최대 5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LPPOM-MUI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홈페이지	www.halalmui.org/mui14	www.halal.go.id
연락처	전화번호	+62-251-835-8748 +62-021-3483-3020/ 081-1117-1091(Whatsapp)
	팩스번호	+62-251-835-8747 -
	이메일	services@halalmui.org sertifikasihalal@kemenag.go.id

3. 인증 절차²²⁰⁾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인증 신청	제조 및 가공업체	서류 제출
2	수수료 납부	제조 및 가공업체	-
3	서류검토	할랄검사소(LPH)	-
4	현장실사	할랄검사소(LPH)	-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할랄검사소(LPH)	-
6	할랄인증청 보고	MUI	-
7	할랄 인증 심사	파트와위원회	-

- 할랄인증청(BPJPH)을 통한 인증 신청은 할랄인증 신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²²¹⁾
-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할랄 인증 실사원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제품의 모든 라인(입고, 생산, 보관 및 출고)을 실사함

구분	서류 목록
실사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증 원료에 한하여 돼지미사용 시설증명서 ◦ 에탄올 증명서 ◦ 제조공정도 ◦ 품목제조보고서 ◦ 제품스펙 ◦ 시험성적서 ◦ 수입신고필증 ◦ 원산지 증명서

- 파트와위원회- 이슬람법학자 5명이 모인 의사결정 기구는 할랄 유효성을 판단하여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시 해당 제품정보 및 유효기간 등은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됨

220) 참조: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

221) 참조: https://ptsp.halal.go.id/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가공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증 원료에 한하여 돼지미사용 시설증명서 ◦ 할랄 인증을 받을 모든 제품에 대한 재료 목록 ◦ 할랄 인증을 받을 각 제품의 재료 일람표 ◦ 원료 근거서류 ◦ 이전 제품의 할랄 인증서 사본(갱신 인증의 경우) ◦ 신규 업체의 경우 HAS 매뉴얼 또는 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개정 HAS 매뉴얼 (해당되는 경우) ◦ HAS 지위 또는 HAS 인증서 사본 (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 인증 받을 제품의 생산 공정 흐름도 ◦ 공장 위치 지도(신규 업체·공장의 경우) ◦ 공장 배치도 ◦ 돼지 무사용 시설 증명서 ◦ 공장, 위탁 제조, 창고, 생산 전 준비 시설의 주소 목록 ◦ 업체 소개
도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인 목록, 도축 방법, 마취 방법 ◦ 이전 제품의 할랄 인증서 사본(갱신 인증의 경우) ◦ 신규 업체의 경우 HAS 매뉴얼 또는 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개정 HAS 매뉴얼(해당되는 경우) ◦ HAS 지위 또는 HAS 인증서 사본(할랄 인증 보유 업체의 경우) ◦ 인증 받을 제품의 생산 공정 흐름도 ◦ 도축장 위치 지도 ◦ 도축장 건물 배치도 ◦ 도축장 시설이 할랄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확인서 ◦ 도축장, 독립 발골실, 창고 주소 목록 ◦ 업체 소개신규

- 일반적으로 하기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기업명, 주소, 담당자,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등
 - 인증상태 (신규·갱신)
 - 전체 직원 수 및 생산능력
 - 제조공장 정보,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담당자
 - 제품 정보 입력. 명칭, 제품군, 제품 유형
 - 각 제품의 제조 공정시 사용된 원료를 세부적으로 기술한 제품 정보

아랍에미리트 ESMA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ESMA 할랄 인증	국가명	UAE(아랍에미리트)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UAE 표준측량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4년
		유효기간	3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UAE.S/ GSO2055-1:2015) -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UAE.S 2055-1) -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 식품 사슬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 사항 (GSO ISO 22000) - 식품 위생의 일반 원칙 organization in the food chain (UAE.S /GSO 1694) - UAE Scheme to control halal products (no. 10 of 2014)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은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기 쉬운 동식물성 가공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및 가금류 도축, 계란, 유제품 및 어류 제품 ◦ 상하기 쉬운 식물성 가공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과일, 신선주스, 보존과일, 신선채소, 보존채소 ◦ 실온보관·유통기한이 긴 가공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조림, 스낵, 음료,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등

□ 현황

취득방법	국내 승인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C 6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정부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은 대부분 통용이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도 ESMA 할랄 인증을 인정하고 있음 		
소요기간	3~6 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신청업체 별로 상이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UAE로 수출하는 식품에 육류 및 가금류가 포함된 경우 지정된 이슬람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 2014년 1월 할랄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제정된 이후 할랄 인증범위가 비(非)육류제품까지 확대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육류를 제외한 식품은 임의인증 대상임
 - 돼지고기 제품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수입과 판매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알코올음료는 라이선스를 가진 몇몇 회사들만 수입과 판매를 할 수 있음

- UAE는 「No.10/2014」 를 통해 ‘UAE 할랄 제품에 대한 규제’를 확정함으로써 할랄 식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 도축장에 대한 특별 요구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UAE 할랄 제품에 대한 규제 No.10/2014’에 따라 할랄 식품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ESMA 이사회 결의 「No.36/2014」 에 의거하여 ‘국가할랄마크 National Halal Mark’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할랄 인증 기관에 대한 표준 「UAE.S 2055-2」 ’ 및 ‘할랄 인증기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표준 「UAE.S 2055-3」 ’을 개정함으로써 할랄 인증에 대한 기준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UAE의 할랄 제품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서로 규제되고 있음

할랄 인증 기준 MS표준	
UAE.S 2055-1	할랄 제품-파트1: 할랄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UAE.S 2055-2	할랄 제품-파트2: 할랄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UAE.S 2055-3	할랄 인증기관을 승인하는 할랄 인정기관의 요구사항
UAE.S 993	이슬람법에 따른 도축에 대한 요구사항
UAE.S GSO 713	가금류 도축에 대한 위생 규칙
UAE.S GSO 21	식품 기반시설 및 인력에 대한 위생 규칙
UAE.S GSO 1694	식품위생의 일반원칙
UAE.S GSO CAC RCP 58	육류를 위한 위생실습 계획
UAE.S GSO 9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

-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제품과 제조시설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로 이루어지며, 할랄 마크는 이러한 평가를 거친 제품에만 부여됨

- 할랄 식품을 UAE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UAE ESMA 할랄 인증 또는 ESMA에서 인정하는 타국가 할랄 인증이 있어야 함
 - 중동의 UAE, 사우디, 쿠웨이트 등의 6개 국가는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만을 승인하고 있으나, 비용과 소요기간 및 절차의 측면에서 타 인증보다 까다로워 많은 기업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음
 - 인증 신청 시 영문 매뉴얼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음

- 표준측량청은 UAE 할랄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권장하며, 할랄 인정기관(HABs, Halal Accreditation Bodies)에 공인인증기관(HCBs, Halal Certification Bodies)을 평가 및 인정 하는 권한을 위임함
 - ESMA 할랄 인증 발급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담당하며, 할랄 인정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임
 - UAE 표준측량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한 할랄 인정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을 발표함
 - UAE,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2021년 기준 80여개 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발급을 담당하며, 한국 내 한국인정지원센터가 등재됨
 - UAE의 대표적인 할랄 인증기관인 RACS(지역인증센터)를 통해서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RACS는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정부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기관임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UAE 표준측량청(ESMA)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	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
홈페이지		www.esma.gov.ae http://www.halal.ae	www.ihcc.co.kr	www.kohas.or.kr
연락처	전화번호	+971-60-056-5554	02-2088-5632	02-553-7801
	팩스번호	+971-4294-4428	02-2088-5647	-
	이메일	eservice@esma.gov.ae	ihc@ihchalal.com	info@kohas.or.kr

3. 인증 절차²²²⁾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필요서류 구비여부 확인
2	신청서 검토	공인인증기관	-
3	계약 검토	공인인증기관	-
4	심사	공인인증기관	-
5	부적합사항 시정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
6	시정조치 확인 및 재심사	공인인증기관	-
7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

- 현장방문 심사는 서류심사(1단계) 및 생산현장 평가(2단계)로 진행되며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생산현장 평가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심사 시에는 할랄 제품 목록을 식별하고 원재료, 가공보조제, 첨가물 등의 할랄 여부를 판단함
 - 생산현장 평가는 제조·저장·위탁제조시설 등 인증 제품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실시됨
- 공인인증기관은 할랄 인증조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2개월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는데, 생산현장 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심사 주기가 결정됨

222)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http://www.ihcc.co.kr>)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ES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지원서 ◦ 유효한 사업자등록/면허 ◦ 성분 목록표 ◦ 재료 목록표 ◦ 성분/원재료 할랄인증서 또는 제품사양서 사본 ◦ 제조공정 플로우차트 및 생산절차 ◦ 라벨 디자인 ◦ 시험성적서 ◦ FSMS/GMP/ GHP or QMS 증명서 ◦ 자기증명서 (자유양식)
국제할랄인증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또는 영업등록증 ◦ Halal, HACCP, GMP, ISO 9001 그리고/또는 ISO 22000 인증서 ◦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분분석검사 (CoA) ◦ 기술사양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 설비배치도 ◦ 제조공정도 ◦ 제조프로세스설명서 ◦ 제품라벨내용 ◦ 라벨디자인 (외관 디자인 볼 수 있는 이미지) ◦ 공장주변지도 ◦ HACCP 혹은 ISO 매뉴얼
사단법인 할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회사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 HACCP, ISO, FSSC, GMP 등 기타 인증서 ◦ 공장 도면 (전체, 생산라인) ◦ 제품 스펙/ 품목제조보고서 ◦ 제품제조공정도 ◦ 제품포장디자인 (제품라벨 포함) ◦ 알코올시험성적서 (제품생산 시, 알코올이 첨가되는 경우) ◦ 재료의 할랄 인증서 (제품생산 시, 할랄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기타서류 (요청 시, 제출요망)

싱가포르 WAREES(MUIS)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WAREES(MUIS) 할랄 인증	국가명	싱가포르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Warees Halal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78년
		유효기간	2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는 젊은 무슬림 층의 비율이 높고 무슬림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비이슬람 국가로서,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함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할랄 표준(Singapore MUIS Halal Standard)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종류의 할랄 인증이 가능함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 Warees Halal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상하기 쉬운 식물성 가공제품 식품·음료류(장·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농·축·해산물류(우·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원재료류(당·염류, 향신료·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현황

취득방법	승인받은 국내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인증 취득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안 이슬람 국가와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의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MUI와 말레이시아의 JAKIM과 모두 교차인정이 가능함		
소요기간	-	인증비용 (등록비용)	신청비용, 발급비용, 기타 비용(θ): 심사단의 현장실사 비용으로 구분됨 품목에 따라 상이 심사단의 현장실사 비용 발생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MUIS(싱가포르 이슬람종교위원회)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할랄 식품은 이슬람 종파별로 ‘할랄’ 인정기준이 달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어려움
 - 알코올·도축방식 등에서 각 나라별·종파별로 차이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 내 콜레스테롤 함 유량이 0%, 알코올(에탄올) 0.1%(원재료 내 0.5% 미만) 미만이어야 하고 기계식 도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할랄이 아닌 원·부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라인, 창고, 작업자, 이동수단 등에 할랄 라인을 별도로 갖춰야 함
- MUIS 할랄 인증은 2013년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과 교차인증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 내 KMF인증을 취득하여 싱가포르로의 할랄 식품 수출이 가능함
 - MUIS 할랄 인증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안 이슬람 국가와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의 교차인증 을 인정하고 있음. 걸프협력회의(GCC)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이 속함
-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개 유형의 할랄 인증이 발급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스토랑, 푸드코트 등 식당 ◦ 해외 할랄 인증을 받은 외국산 수입·수출품 ◦ 주방 등의 음식 조리 공간 ◦ 도축장 ◦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 ◦ 제조시설 ◦ 창고 및 보관시설

- 싱가포르 지역사회개발 및 법적 정부기관인 MUIS에 의해 할랄 인증관련 표준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적용범위에서부터 할랄 식품의 취급과 가공까지 다루고 있음

- 싱가포르 할랄 표준의 구성(Singapore MUIS Halal Standard)

구성	세부내용
1조	할랄의 적용범위
2조	일반지침 및 위생관련 타 규정
3조	용어 정의 1)식품 2)할랄 3)할랄 인증 4)할랄 인증 마크 5)취급 6)장소/위치 7)나지스8)가공 9)샤리아 법
4조	할랄 식품의 취급과 가공에 대한 일반 요건 및 시설요건

- 할랄 표준에서는 제품의 원로나 시설, 도구의 오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 2명의 이슬람교도가 할랄 식품의 모든 취급, 가공 과정에 입회하거나 감독해야 함
- 모든 할랄 식품은 현지 위생상태 및 위생시설 요건과 기타 관련 Codex 규격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 및 보관을 실시하여야함
 - 비할랄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샤리아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도축된 동물의 성분의 함유가 없는 제품이어야 함
 - 비할랄 식품 및 나지스 품목과 섞이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들과 관련된 장소와 분리되어야 함

- MUIS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Warees Halal의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야 함

- 싱가포르가 아닌 외국에 위치한 시설이나 제품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Warees Halal을 통해 할랄 인증 신청이 가능함
 - 국내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Warees Halal의 할랄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대행기관 활용 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사전심사 시 필요한 서류에는 공장등록증, ISO인증서, 공정도, 원재료 목록 등이 있음
 - 취득 선(先)조건으로 ISO 9001, ISO 22000 혹은 HACCP 인증 중 최소 1종류 이상은 취득을 완료해야 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Warees Halal (MUIS 산하 비영리 기관)	
홈페이지	www.wareeshalal.sg	
연락처	전화번호	+65-6291-2702
	팩스번호	+60-03-8892 5005
	이메일	info@wareeshalal.sg

3. 인증 절차²²³⁾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온라인 신청	제조업체	LicenceOne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2	신청 수수료 지불	제조업체	-
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공인인증기관	-
4	승인 및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
5	정기 감사/사후관리	공인인증기관	-

- 할랄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MUIS 할랄 원칙에 따라 원료·직원·시스템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하며 빠른 인증취득을 위해서는 사전확인이 필요함
 - 원료 요구사항: 사용된 모든 원료는 할랄이어야 하며 증빙 서류로 입증되어야함
 - 직원 요구사항: 할랄 인증을 신청한 각 구내에 최소 2명 또는 3명의 무슬림 직원이 있어야함(요식업 또는 중앙 주방의 경우 3명)
 - 시스템 요구사항: 싱가포르 MUIS 할랄품질관리시스템(HalMQ)의 10가지 원칙을 준수함
-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LicenceOne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²²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 신청과 빠른 신청이 있으며,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정보와 할랄 담당자 정보, 보조문서(메뉴/제품 목록, 재료 목록, 평면도, 레이블 등)를 입력함
- 신청 이후에 각 업체 내에서의 할랄 담당자 및 보조직원이 MUIS가 임명한 교육 제공 기관인 Warees Halal의 할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인증 발급 2년 동안 유효하며, 취득 이후에도 사후관리 및 인증 갱신이 필요함
- 갱신은 할랄 인증서 소유업체는 인증서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실시하여야하고, 정기적으로 불시 감사를 시행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인증 취득을 취소할 수 있음

223) 참조: MUIS 홈페이지 (https://eservices.muis.gov.sg/ifaq/apps/fcd_faqlmain.aspx#FAQ_155736)

224) 참조: <https://licence1.business.gov.sg>

4. 필요 서류²²⁵⁾

구분	서류 목록
MU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메뉴 항목 및 원료의 목록 ◦ 제품 레이블 그림 (제품/전체 공장 구성표) ◦ 배달 차량 사진 (요식업/제품/전체 공장 구성표) ◦ 인증을 받을 건물의 평면도 ◦ 할랄 인증, 규격 및 시험 분석 보고서와 생산 원료의 할랄 인증사본 ◦ 무슬림 직원(할랄 팀)이 승인한 모든 원료의 구매송장 및 배달 주문서 ◦ 할랄팀 구성원의 임명장 또는 공고장 ◦ 할랄팀 관리 회의록 ◦ 무슬림 직원과 할랄팀 구성원 한명의 할랄 교육인증서 ◦ 제품 생산과정 플로우차트 ◦ Halal Assurance Points(HAP)s의 목록과 허용한계 및 처방지침 ◦ 각 HAP에 대한 승인 모니터링 절차 및 기록 ◦ 각 HAP에 대한 승인 시정조치 절차 및 기록 ◦ 내부 감사 보고서 할랄 시스템 변화에 대한 기록 ◦ 무슬림 직원 2명의 고용증명서

225) 참조: MUIS 홈페이지 (www.muis.gov.sg)

IFANCA 할랄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IFANCA 할랄 인증	국가명	미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회)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82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식품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할랄 표준 준수 여부를 감독함 ◦ 근거규정 - HAS 23000 할랄보증 시스템 (KRITERIA SISTEM JAMINAN HALAL DALAM HAS 23000)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ANCA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허용된 할랄 식품 - 신선농산물, 유제품, 생선, 밀, 쌀, 호밀 등 곡물류 -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된 육류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닭, 오리 등, 돼지제외)

□ 현황

취득방법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 3000여개의 기업이 IFANCA 할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내 100여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함		
타국가 통용여부	세계 이슬람협력기구 (OIC) 57개 회원국 및 타 지역에 제한 없음		
소요기간	-	인증비용 (등록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등록비 - USD 1,500.00 ~ USD 2,000.00 ◦ 공장 심사비 - USD 1,000.00 ~ USD 1,500.00 ◦ 제품 등록비 - USD 350.00 ~ USD 750.00 ◦ 품목에 따라 상이 ◦ 심사단의 현장실사 비용 발생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합법적이거나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이슬람 율법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할랄 식품이란 이슬람 율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하람) 어떤 재료도 포함하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시설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조·가공·운반·저장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 식품은 일반적으로 할랄 식품에 포함되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기준이 다름
 - 식품 원재료 및 조리·가공 과정에서 까다로운 할랄 규정을 준수한 경우 할랄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반대로 하람(HARAM)은 불법이거나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하람 식품을 제외한 식품은 할랄로 간주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및 부산물 ◦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 동물 및 도살 전 죽은 동 ◦ 양서류 및 비늘이 없는 생선 ◦ 중독성이 있는 식물 ◦ 알코올성 음료 ◦ 피 및 부산물 ◦ 상기 재료로 오염된 식품

- IFANCA는 말레이시아 정부 할랄 인증기관(JAKIM) , 인도네시아 민간 할랄 인증 기관(MUI LPPOM), 싱가포르 정부 할랄 인증기관(MUIS), 태국 중앙 이슬람 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월드리그, 아랍 에미리트 연합(GSM) 등의 인정을 받는 공신력 있는 할랄 인증기관임
- IFANCA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이슬람 식품기준에 부합될 것
 - 모든 서류요건을 충족할 것
 - 할랄 인증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모든 식재료가 할랄일 것
 - 식재료 준비, 생산가공, 포장, 보관, 저장, 운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하람 식품이 제외될 것
 - 이슬람 방식의 청결과 위생 절차를 따를 것
- IFANCA 한국 지사에서 IFANCA 할랄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IFANCA 한국지사는 2017년 3월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국내 약 100여 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IFANCA	IFANCA Korea
홈페이지		www.ifanca.org	www.ifanca.co.kr
연락처	전화번호	+1-773-283-3708	+82-070-7530-2290
	팩스번호	+1-773-283-3973	+82-02-553-0021
	이메일	contact@ifanca.org	desk@ifanca.co.kr

3. 인증 절차²²⁶⁾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홈페이지 신청 가능
2	서류심사 및 비용산정	공인인증기관	-
3	현장실사	공인인증기관	별도 서류제출
4	평가서 작성	공인인증기관	-
5	할랄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	-

- 인증 신청 시 신청서와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 인증 취득 후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지속해서 준수해야 하며, 6개월마다 해당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함

4. 필요 서류²²⁷⁾

구분	서류 목록
IFAN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소개서 ◦ 제품 홍보자료 ◦ 제품별 공정흐름도 ◦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 제조 관련 기록물 ◦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226) IFANCA 홈페이지 <https://ifanca.org/Pages/HalalApplication.aspx>

227) IFANCA 한국지사 홈페이지 <https://www.ifanca.co.kr/>

한국 KMF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KMF 할랄 인증	국가명	대한민국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KMF (Korea Muslim Federation Halal Committee,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4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제조, 유통된 제품만을 섭취 및 사용할 수 있으며, 할랄 인증은 이러한 제품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이슬람교 할랄 규정 (KMF-BS2016)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의 과정을 거쳐서 인증서가 발급됨 ◦ 원료입고에서부터 포장·보관·운송까지 모든 생산라인은 할랄 전용이어야 하고 교차오염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음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류(장·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등) ◦ 농축산물 및 해산물류(우·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묵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당·염류, 향신료·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현황

취득방법	국내에서 제품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MUIS, 대만 THIDA, 태국 CICOT와 교차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소요기간	-	인증비용 (등록비용)	1. 서류심사비: 품목당 10만원 2. 현장 심사비 (공장별 부과) 1) 서울 30만원 2) 경기 40만원 3) 충청 50만원 4) 강원,영남,호남 60만원 5) 제주 및 도서지역 80만원 3. 할랄인증료 1) 블록체인 실시간 할랄인증 (QR코드 발행) : 품목당 110만원 2) 기존 할랄인증 : 품목당 60만원
------	---	----------------	--

* 소요기간과 비용은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는 1994년도부터 원재료 수출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기초원료 위주로 인증을 발급하기 시작함
- 현재 KMF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싱가포르 MUIS 인증, 대만 THIDA 인증 등과 교차인증을 시행함
- KMF 할랄 인증은 한국 이슬람교 할랄 규정 (KMF-BS2016)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 이슬람교 할랄 규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인용표준을 포함하고 있음

규정	세부내용
MS 1500:2019	식품 생산, 준비, 취급 및 보관 일반 지침
Gulf Standards Specification GSO 0000/2008	할랄 식품 일반 요구사항
GSO 993/1998	이슬람율법에 따른 가축 도살 조건
CODX STAN 1	포장된 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표준
CAC/RCP 1	식품위생 일반원칙에 관한 권장 국제 실행기준
CAC/RCP 58	식육의 위생기준규약
KS Q 8001	제품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KS Q 8002	서비스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KS Q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KS Q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사슬의 모든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KS Q ISO/TS 22002-1	식품안전에 관한 선행요건 프로그램- 제1부: 식품제조
KS Q ISO/TS 22004	식품안전경영시스템-22000:2005 적용지침
KS Q ISO 22005	사료 및 식품사슬의 이력추적 - 시스템 설계와 이행에 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
KS Q ISO 22006	품질경영 시스템 - 농작물 생산에서의 ISO 9001 :2008 적용지침

□ 제조공장 내에서 할랄과 하람 원료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원료 입고에서부터 포장·보관·운송까지 모든 생산라인은 할랄 전용이어야 함

- 할랄 식품에는 하람으로 규정되는 원료가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된 모든 화학물 질과 원료는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알코올(와인, 럼주 등)은 할랄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식품 첨가물로서 알코올은 제조공정 중 0.5%이하로만 사용가능함

□ 할랄 인증서 발급 6개월 후 불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생산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주관하는 할랄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할 경우 중간 모니터링이 대체될 수 있음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KMF(한국이슬람중앙회)	
홈페이지	www.koreaislam.org	
연락처	전화번호	+82-2-793-6908
	팩스번호	+82-2-798-9782
	이메일	kmfhalal@koreaislam.org

3. 인증 절차²²⁸⁾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할랄 인증 신청	제조업체	KMF 할랄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서류 접수
2	심사비 납부	제조업체	-
3	서류심사	KMF	-
4	현장실사	KMF	-
5	최종보고서	KMF	-
6	샤리아평가	KMF	-
7	인증료 납부	제조업체	-
8	인증서발행	KMF	-
9	인증서 원본 발송	KMF	-

- 현장실사 시 2인1조의 실사위원이 방문하며 현장 책임자, 현장실무자, 행정실무자 등 실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함께 진행함
- 현장실사 항목

구분	서류 목록
현장실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소개 및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프레젠테이션) ◦ 창고실사: 할랄 원료와 비할랄 원료의 별도보관 검토 ◦ 제조과정 실사: 원료 투입부터 포장단계까지 실사 (포장 후 출고까지도 할랄 상품과 비할랄 상품이 구별 및 별도 보관되어야 함) ◦ 서류심사: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제출한 서류의 원료를 비교 검토 ◦ 완제품보관창고 실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비할랄 제품과의 분리여부 검토 ◦ 공장주변 실사: 폐수처리, 이물질 등 환경상태, 근처 축사유무 검토

- 필요 시 하람 원료 포함여부에 대한 시험이 실시되며 분석을 통해 하람 원료 불포함이 증명되어야 함
- 샤리아위원회의 최종 승인 후 인증서가 발행되고 발급 후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 짐
- 인증 갱신은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규 신청 시와 절차, 서류, 비용은 동일함
- KMF 할랄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이전 발급 이력이 있는 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단, KMF 할랄 교육을 이수하고 할랄 전용 라인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무슬림을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함

228) KMF 홈페이지(www.koreaislam.org)

4. 필요 서류²²⁹⁾

- 할랄 인증 신청서는 KMF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표자 직인과 회사명, 주소, 상품의 이름은 반드시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해야 함
- 동일 배합비와 제조 방식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조보고서가 다르면 각기 다른 제품으로 신청해야 하며,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구분	필수 기재사항
K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명(한글회사명, 인증서에 기재될 영문 회사명) ◦ 판매, 제조회사 주소(한글 주소, 인증서에 기재될 영문회사 주소) ◦ 상품명(한글상품명, 인증서에 기재될 제품의 영문명) ◦ 신청인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p style="text-align: center;">서류 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F할랄인증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 생산허가서 또는 영업허가서(영업신고증) ◦ 공장등록증 ◦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공정도 ◦ 제품사진 및 표시사항 ◦ 시험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 시험성적서 - 잔류에탄올 시험성적서(0.5%이하) (한국식품연구원의 성적서만 인정) - 돼지종 시험성적서(한국식품연구원의 성적서만 인정) ◦ 포장재 시험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 ◦ KMF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전 교육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할랄인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함 ◦ HACCP, ISO, GMP, FSSC 등 기타 인증서 사본 ◦ 할랄관리기준서(HAS Manual) & 할랄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 시 내부 할랄 교육일지 첨부 필요 ◦ 방출방서 보고서 및 사용된 약품 MSDS 자료 ◦ 세척관리기준서 및 생산라인(공정)에 사용된 세제, 세정제 등 세척 관련 제품들의 MSDS 자료 ◦ 사용재료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된 모든 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1차, 2차 등 모든 원료 및 공급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공장 내, 생산되는 총 제품 리스트 ◦ 원재료 관련서류

229) KMF 홈페이지(www.koreaislam.org)

- 제품의 따라 농산물 및 가공식품, 육류 및 가공식품, 수산물 및 가공식품, 도계/도축,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류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음
- 원재료 관련 서류

사용 소재가 할랄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 소재가 할랄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의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후 접수 요망) ◦ 사용된 원료의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신고확인증 ◦ 사용된 원료의 시험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된 원료의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신고확인증 ◦ 사용된 원료의 제조공정도 ◦ 사용된 원료의 시험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잔류농약 · 중금속 시험성적서 - 수산물: 방사능 · 중금속 시험성적서 ◦ 제조공정 중 효소 ·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조 · 추출공정도 - 배지배양액에 대한 원료 리스트 및 원료 관련 서류

카자흐스탄 AHIK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AHIK 할랄 인증	국가명	카자흐스탄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AHIK (Association of Halal Industry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할랄산업협회)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0년
		유효기간	1~2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종교로, 무슬림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할랄 식품의 섭취를 위해 인증을 도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HIK) Regulation of permitted foods by Muslims - MS 1500-2019 - IHIA-0200:2010 - IHIA-0600:2010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은 식품 및 원료가 신중하게 분석되고 이슬람 규범, 할랄 표준 및 절차를 준수함을 보장함 ◦ 인증 신청 제출 후 할랄 적합성이 검토 완료되면, 계약 체결, 수수료납부, 서류 심사, 현장심사, 해당 시 부 적합 시정조치, 내부 직원 교육이 실시되며, 인증서는 샤리아 부서의 최종 검토 후 발급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Haram), 음료 및 재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 가능 ◦ 가공식품류 (장·소스류, 생수, 음료, 냉동식품, 가공식품, 제과제빵, 전통식품, 유아식, 보존식품, 건조식품, 캔가공품 등) ◦ 농축산물 및 해산물류(우·계육, 유제품, 소시지류, 어육류, 과일가공품, 곡물제품) ◦ 원재료류(당·염류, 향신료·색소, 밀가루, 조미료, 용매제, 식용류)

□ 현황

취득방법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가 신청하며,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하여 제품 심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		
타국가 통용여부	유라시아 국가 및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 JAKIM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인증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됨		
소요기간	1~2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별 상이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²³⁰⁾

- AHIK(Association Halal Industry of Kazakhstan)은 CIS 국가의 인증 기관이자 평가, 심사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인증 기관으로, 2005년부터 육류, 재료, 유제품, 식품 생산의 모든 측면과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 AHIK 법인으로서 할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함
 - 1995년 처음 이슬람 협력 기구(OIC)에 가입했으며, 2006년 카자흐스탄 할랄 산업 협회(AHIK) 할랄 인증 기구를 설립함
 - 2012년 4월부터 OIC(이슬람 협력 기구)를 대표하고 있는 IHIA 준회원이며, 국제 할랄 연합의 채택에 대한 허가를 받아 ICCI-IHI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발행하고 있음
 - 할랄 분석을 위한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규정	세부내용
AHIK Regulation	무슬림의 허용 식품 규제
MS 1500:2019	할랄 식품: 생산, 제조, 처리 및 저장 관련 지침
MS 2300:2009	이슬람 관점에서 요구하는 조직 설립 및 관리 시스템 기준
IHIA-0200:2010 및 IHIA-0600:2010	식품 서비스

- 할랄 기준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일본 등 많은 기업의 생산에 도입되고 있으며, 6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인증했으며, 그 중 120여개는 할랄 제품 생산을 시작한 국제 기업임

□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 JAKIM으로부터 인증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받아 교차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 2006년부터 AHIK는 CIS 국가에서 말레이시아 표준을 획득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인증 기관임

□ AHIK 할랄 인증서 및 내부할랄위원회(IHC) 수수료증²³¹⁾



230) 참조: AHIK 홈페이지 (<http://halal-kz.kz/about-us-en.html>)

231) 참조: AHIK 홈페이지 (<https://halal-kz.kz/en/sertifikaciya>)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AHIK (Association of Halal Industry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할랄산업협회)
홈페이지		www.halal-kz.kz
연락처	전화번호	+7-495-669-24-00
	팩스번호	+8-495-669-24-15
	이메일	info@halal-kz.kz

3. 인증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할랄 인증 신청 및 1차 필요서류 제출	신청자	-
2	할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류검토	AHIK	-
3	계약 체결 및 비용납부	신청자	-
4	추가 필요 서류 제출	신청자	-
5	IHC(내부 할랄 위원회) 교육 및 시험	AHIK	-
6	현장 심사 실시	AHIK	현장 심사 이후 필요 시, 보완 서류 요청 가능
7	부적합 안내 및 시정조치 요구	AHIK	-
8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제출	신청자	제출된 증거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재심사가 실시될 수 있음
9	샤리아의회 최종 결정	AHIK	-
10	인증서 발행	AHIK	-

- 제출한 신청서 및 필요 서류/원료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 기술심사원이 검토 후 이상이 없어야 심사 등 추후절차 진행 가능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회사 기본정보; 제품명; 브랜드명; 모델명; 보유 인증서; 시험성적서; 해당 카테고리; 문서 Checklist ◦ 회사 소개서 (회사 로고 이미지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제조 등록증명서 / 자유판매증명서 (영업등록증, 제조등록증명서, Trade license 등 식품 제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품 설명서 (기준 제품 카탈로그) ◦ 성분/원료 목록, 함량 ◦ 성분(원자재)에 대한 Technical Specifications /MSDS 파일 /COA/원산지증명서, 할랄 인증서 (있을 경우) ◦ 완제품 사양 및 시험성적서 (주정미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된 경우: 원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 HACCP, GMP, GHP, ISO 또는 기타 보유 인증서 사본 (있을 경우) ◦ 제조공정도 ◦ 공정흐름도, 생산절차서 ◦ 인도관리절차서 ◦ 공장 레이아웃 플랜, 공장 위치 및 공장 구내지도 ◦ 원재료의 제조자/공급자 업체 정보 (업체명, 주소, 연락처, 계약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 포장재의 원재료, (재질), 시험성적서 ◦ 제품 디자인 및 라벨지 영문

코서

OU	292
OK	296
COR.....	300

OU코셔(Kosher)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OU코셔(Kosher) 인증	국가명	미국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OU (Orthodox Un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23년
		유효기간	최초 2년 이후 연간 계약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대인의 유대교 율법에 기반을 둔 올바른 식품 소비를 위해 도입함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대교 경전 ‘토라’, 유대인 식품 금지법 ‘카슈루트(Kashrut)’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대교의 율법에 기반을 둔 식품과 그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인증이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제품, 설비 등 전 제조공정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코셔 인증기관 중 세계적 인지도를 지닌 OU의 인증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류, 유제품 파르브(Pareve, 중성제품) 제조공정, 생산설비

□ 현황

취득방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 105개국에 위치한 13,0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된 1,000,000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함		
타국가 통용여부	전세계 통용 가능		
소요기간	3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당 USD 5000~7000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코셔는 유대인의 식품 금기법인 ‘카슈루트(Kashrut)’에 근거하여 생산된 식품인증으로 OU, Star-K, OK Kosher 등 다수의 사설 인증기관이 존재함

- 카슈루트는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법·조리법·섭취방법 등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의 경우 육류, 유제품, 파르브(중성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코셔라이징(Kosherizing)은 주방시설 및 조리도구를 코셔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임
- OU(Orthodox Union)은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코셔 인증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 OU코셔인증은 기본 OU코셔인증, 유제품 인증, 유월절 인증, 파르브(육류나 유제품이 아닌 중립성 제품, 채식주의자 및 비건들이 선호하는 인증), 어류 및 육류인증(Glatt)으로 나뉘어져 있음. 인증 진행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인증판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원료합격이 진행된 제조사의 한해서 원하는 인증이 부여될 수 있음.
 - 미국 시장의 코셔 인증 제품 중 약 70%가 OU 인증제품으로 조사됨
 - OU코셔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호주, 중국, 아프리카, 한국 등에 지부를 둠

□ 코셔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원료, 제조공정, 제품, 포장 등 전 과정에서 코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코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료, 조리법, 제조공정 등을 모두 공개하여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함
 -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모두 코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제조공정 중에는 육류와 유제품의 동시 취급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취급하는 제조 시설은 코셔 인증 취득이 불가함
 - 비코셔 제품을 취급하는 라인이 있으면 인증 취득이 불가하며, 시설 전체가 코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시설 심사를 담당하는 랍비의 성향에 따라 심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인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랍비가 방문하여 시설의 코셔 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함

□ 카슈루트는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명시하고 있음²³²⁾

구분	세부내용
코셔에 부합하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 (O 소, 양, 염소, 사슴, 가젤, 기린 등 / *비코셔: 돼지, 쥐, 박쥐, 토끼 등) ◦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해산물 (연어, 도미, 조기, 일부 고등어 및 참치 등 / *비코셔: 상어, 고래, 오징어, 문어, 게, 메기, 장어, 조개 등) ◦ 특정 채소, 꿀, 견과류 등은 기본적으로 코셔인 경우가 많음 ◦ 음주를 허락하여 와인의 코셔와인이 존재함 ◦ 절대적으로 육류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금함 ◦ 모든 제품들은 코셔화(Kosherization)을 거쳐야 진정한 코셔품목으로 인정

232) 코셔 기본 규정 (kosher-101-handout.pdf)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OU Kosher	Kosher Asia (OU코셔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s://oukosher.org/	https://www.oukosher.kr/
연락처	전화번호	+1 212 613-8372	+82 070-8098-1805
	팩스번호	-	-
	이메일	newapp@ou.org	hongs@ou.org

3. 인증 절차²³³⁾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
2	담당 랍비 배정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를 추가제출 - 추가서류 예시: 영문 공정도, 원료 리스트 디테일, 기타 인증서
3	시설 심사	인증기관	코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준비
4	서류 및 시설심사 보고서 검토	인증기관	-
5	계약서 서명 및 비용 납부	제조업체 및 인증기관	-
6	인증서 송부 및 최종 승인	제조업체 및 인증기관	-

- OU 인증은 6단계의 절차를 통해 코셔 인증 취득이 가능함
- 업체의 정보와 제품 및 원료 정보 등을 기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담당 랍비가 배정됨
- 업체정보, 공장정보, 원재료 목록, 제품허가요청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33) OU Kosher 홈페이지(<https://www.oukosher.kr>)

4. 필요 서류²³⁴⁾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회사의 기본정보
중요 기술정보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책임자, 원재료 책임자, 포장 디자이너, 마케팅 담당자 등의 구체적 정보 요구 하나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정보를 모두 요구 제품 상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및 브랜드 정보 성분 정보: 각 성분의 성분명, 브랜드명, 제조사명, 출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든 원료 제품허가요청서

- 담당 랍비 배정 후 약 1~2일 간의 시설 심사가 진행되며, 해당기간은 제품과 시설에 따라 상이하게 소요될 수 있음
 - 시설 심사 진행을 원할 시, 초기비용을 입금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출장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임
- 현장 실사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OU에서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여 코셔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업체에 계약서를 송부함
 - 계약서 내용은 표준조항, 인증비용, 특별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케줄 A, B를 포함함
 - Schedule A는 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목록이며, Schedule B는 인증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목록으로 구성됨
- 계약서 서명 후 제품에 부착될 라벨을 송부하여 이에 대해 최종승인을 득하여 코셔 인증 취득을 완료함. 라벨에는 코셔에 금지된 식품의 이미지가 사용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또는 OU코셔 한국지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변경

234) 참조: OU Kosher 홈페이지(<https://www.oukosher.kr>)

OK코셔(Kosher)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OK 코셔(Kosher) 인증	국가명	미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OK Kosher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35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인의 유대교 율법에 기반을 둔 올바른 식품 소비를 위해 도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교 경전 ‘토라’, 유대인 식품 금지법 ‘카슈루트(Kashrut)’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교의 율법에 기반을 둔 식품과 그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인증이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제품, 설비 등 전 제조공정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유제품 파르브(Pareve, 중성제품) ◦ 제조공정, 생산설비

□ 현황

취득방법	국내에서 시험(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OK KOSHER 인증은 전세계 1500개 기업과 30만개이상의 제품을 인증함		
타국가 통용여부	전세계 통용 가능		
소요기간	2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당 USD 4000~8000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코셔는 유대인의 식품 금기법인 ‘카슈루트(Kashrut)’에 근거하여 생산된 식품인증으로 OU, Star-K, OK Kosher 등 다수의 사설 인증기관이 존재함
 - 카슈루트는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법·조리법·섭취방법 등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의 경우 육류, 유제품, 파르브(중성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코셔라이징(Kosherizing)은 주방시설 및 조리도구를 코셔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임
 - OK 코셔는 6개 대륙에 걸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의 제품을 인증 중

- 코셔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원료, 제조공정, 제품, 포장 등 전 과정에서 코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코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료, 조리법, 제조공정 등을 모두 공개하여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함
 -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모두 코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제조공정 중에는 육류와 유제품의 동시 취급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취급하는 제조 시설은 코셔 인증 취득이 불가함
 - 비코셔 제품을 취급하는 라인이 있으면 인증 취득이 불가하며, 시설 전체가 코셔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시설 심사를 담당하는 랍비의 성향에 따라 심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인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랍비가 방문하여 시설의 코셔 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함

- 카슈루트는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명시하고 있음²³⁵⁾

구분	세부내용
코셔에 부합하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 (O 소, 양, 염소, 사슴, 가젤, 기린 등 / *비코셔: 돼지, 쥐, 박쥐, 토끼 등) ◦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해산물 (연어, 도미, 조기, 일부 고등어 및 참치 등 / *비코셔: 상어, 고래, 오징어, 문어, 게, 메기, 장어, 조개 등) ◦ 특정 채소, 꿀, 견과류 등은 기본적으로 코셔인 경우가 많음 ◦ 음주를 허락하여 와인의 코셔와인이 존재함 ◦ 절대적으로 육류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금함 ◦ 모든 제품들은 코셔화(Kosherization)을 거쳐야 진정한 코셔품목으로 인정

235) 참조: 코셔 기본 규정 (kosher-101-handout.pdf)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OK Kosher	OK Kosher 한국지사
홈페이지		https://www.ok.org/	www.okkosher.co.kr
연락처	전화번호	+1 718 907 9558	+82 031 815 8710
	팩스번호	-	-
	이메일	nad@ok.org	simon@okkosher.co.kr

3. 인증 절차²³⁶⁾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https://www.ok.org/companies/get-certified/apply/
2	신청서 검토	인증기관	제품이 코셔인증 기준에 부합 시 Initial 비용을 본사로 송금 필요
3	최초방문검사	인증기관	코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준비
4	인증진행 및 계약	인증기관	1차년도의 인증 비용 납부확인
5	인증확인	제조업체	-
6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https://www.ok.org/companies/get-certified/apply/

- 신청서 제출
 -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청서 내용에 근거하여 인증에 필요한 비용 견적을 제시함.
 - 견적은 각 회사의 인증범위 등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서 검토
 - OK Kosher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인증희망 제품이 Kosher (코셔)인증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한 후 공장 방문검사를 시행함, 이를 위해 방문 전, Initial Fee(착불수수료 별도)가 OK Kosher본사로 송금되어야 함.
- 최초방문검사
 - 최초 인증 검사는 해외본부에서 파견한 Kosher인증 전문가가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증진행 및 계약
 - 계약서 및 인증확인 검사보고서, 1차년도의 인증 비용 납부확인 후 본부에서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함. 심사 완료 후 OK Kosher인증서 (OK Kosher Certification)를 발급하게 되며 원본증서를 우편으로 송부
- 인증확인
 - 인증을 정식으로 통과 후 회사명과 제품을 미국 본사 홈페이지 www.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236) 참조: OK Kosher 홈페이지 (<http://www.okkosher.co.kr/page.php?menu=0201>)

4. 필요 서류²³⁷⁾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회계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등 회사의 기본정보 온라인 접수
중요 기술정보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상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브랜드 정보 ◦ 공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명, 주소, 전화, 이메일, 가까운 공항, 담당자, 공장 관리자 - 공장 내 작업 유무: 라벨 재부착, 재포장, 완제품 외주, OEM, 원재료 출처 - 제조 공정, 성분 목록(성분 정보: 각 성분의 성분명, 브랜드명, 제조사명, 출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든 원료) ◦ 제품허가요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분류에 대하여 지정(육류, 유제품, 파르브, Passover)을 요구 - 브랜드명을 고지해야하며, PB상품의 경우 유통업체의 업체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237) 참조: OK Kosher 홈페이지 (<http://www.okkosher.co.kr>)

COR 코셔(Kosher)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COR 코셔(Kosher) 인증	국가명	캐나다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캐나다 카슈루트 협의회 (Kashruth Council of Canada)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56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인의 유대교 율법에 기반을 둔 올바른 식품 소비를 위해 도입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교 경전 ‘토라(Torah)’, 유대인 식품 금기법 ‘카슈루트(Kashrut)’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대교의 율법에 기반을 둔 식품과 그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인증이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제품, 설비 등 전 제조공정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COR은 캐나다 최대의 코셔 인증 기관인 캐나다 카슈루트 협의회(Kashruth Council of Canada)에서 사용하는 코셔 인증 상표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품 등

□ 현황

취득방법	국내 대형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COR은 65년 이상 동안 식품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북미와 전 세계의 1,000개 이상의 시설에서 70,000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전세계 통용 가능		
소요기간	-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별 상이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코셔는 유대인의 식품 금기법인 ‘카슈루트(Kashrut)’에 근거하여 생산된 식품인증임

- 카슈루트는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법·조리법·섭취방법 등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의 경우 육류, 유제품, 파르브(중성식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코셔라이징(Kosherizing)은 주방시설 및 조리도구를 코셔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온으로 처리하는 과정임
- COR 코셔 제품은 4가지 일반 범주로 분류됨²³⁸⁾
 - D: 유제품
 - M: 육류
 - Pareve: "중립", 즉 고기도 유제품도 아닌 식품
 - P: 유월절의 경우, 즉 유월절에 소비하기에 적합한 제품

□ 카슈루트는 허용된 식품과 허용되지 않는 식품을 명시하고 있음²³⁹⁾

구분	세부내용
코셔에 부합하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 (O 소, 양, 염소, 사슴, 가젤, 기린 등 / *비코셔: 돼지, 쥐, 박쥐, 토끼 등) ◦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해산물 (연어, 도미, 조기, 일부 고등어 및 참치 등 / *비코셔: 상어, 고래, 오징어, 문어, 게, 메기, 장어, 조개 등) ◦ 특정 채소, 꿀, 견과류 등은 기본적으로 코셔인 경우가 많음 ◦ 음주를 허락하여 와인의 코셔와인이 존재함 ◦ 절대적으로 육류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금함 ◦ 모든 제품들은 코셔화(Kosherization)을 거쳐야 진정한 코셔품목으로 인정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Kashruth Council of Canada	
홈페이지	https://www.cor.ca/	
연락처	전화번호	+1 416 635-9550
	팩스번호	-
	이메일	info@cor.ca

238) COR 코셔 홈페이지: https://www.cor.ca/view/54/what_is_kosher.html

239) 참조: 코셔 기본 규정 (kosher-101-handout.pdf)

3. 인증 절차²⁴⁰⁾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신청서 제출	제조업체	-
2	신청서 검토 및 담당 랍비 배정	인증기관	제품 성분 정보 제출
3	최초방문검사	인증기관	코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준비
4	인증진행 및 계약	인증기관	1차년도의 인증 비용 납부확인
5	인증서 발행	제조업체	-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및 담당자 정보 등 회사의 기본정보
중요 기술정보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상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및 브랜드 정보 공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명, 주소, 전화, 이메일, 담당자, 공장 관리자 공장 내 작업 유무: 라벨 재부착, 재포장, 완제품 외주, OEM, 원재료 출처 제품, 생산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공정, 성분 목록(성분 정보: 각 성분의 성분명, 브랜드명, 제조사명, 출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든 원료) 등 제품 및 생산 관련 서류

240) 출처: COR Kosher 홈페이지 (https://www.cor.ca/view/90/certified_industrial.html)

비건(Vegan) 인증

Vegan Society 304

V-Label 307

EVE VEGAN 311

Vegan Society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Vegan Society 인증 (Vegan Trademark)	국가명	영국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영국 비건 협회 (The Vegan Society)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44년
		유효기간	12개월 또는 24개월 선택 가능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기준으로 부여함 ◦ 소비자들이 세부 원재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쉽게 비건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규정 - http://www.vegansociety.kr/vegan_trademark.php 참조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선택부터 제품의 제조 및/또는 전체 생산 단계에 걸쳐 그 어떠한 동물성 원료 및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 제품의 제조 및 개발 시 어떠한 종류의 동물에게도 실험을 하거나 실험을 했던 적이 없음을 증명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를 변형시키거나 가공 처리한 모든 가공식품, 모든 알코올 또는 비알코올 음료,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 제품의 제조 및 개발 시 어떠한 종류의 동물에게도 실험을 하거나 실험을 했던 적이 없음을 증명함

□ 현황

취득방법	국내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세계 30,000개 이상의 제품이 Vegan Trademark에 등록되어 있음. (*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등록 수는 이 중 약 50% 차지부여됨)		
타국가 통용여부	전세계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국제마크임		
소요기간	평균 6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회사의 규모, 제품 등록 수, 제품의 종류 등에 따른 비용 격차가 다양함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영국 비건 협회(The Vegan Society)는 1944년 11월, 창립자 Donald Watson과 6명의 창립 멤버들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VEGAN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단체임
 - 비건 상표는 1990년부터 사용자가 제품에 동물성 성분이 없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됨. 화장품, 의류, 식품, 음료, 가정용품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55,000개 이상의 제품에서 비건 트레이드마크가 사용됨
- 제조 라인이나 설비에 대한 현장 실사 없이 100%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됨
- 동물성 원료
 - 제품과 그 성분의 제조 및/또는 개발에는 동물성 제품, 부산물 또는 파생물의 사용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어서는 안됨
- 동물 실험
 - 제품과 그 성분의 개발 및/또는 제조는 회사의 주도로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또는 회사가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당사자가 수행한 동물에 대한 모든 종류의 테스트를 포함하거나 관련되어서는 안됨
-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
 - GMO의 개발 및/또는 생산에는 동물 유전자 또는 동물 유래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GMO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을 위해 제출된 제품은 그러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주방 및 위생 기준
 - Vegan 라벨이 붙은 모든 요리는 비Vegan 요리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이것은 최소한 비건 요리에 사용하기 전에 표면과 기구를 철저히 세척하는 것을 의미함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The Vegan Society	
홈페이지	www.vegansociety.com/	
연락처	전화번호	+44 (0) 121 523 1730
	팩스번호	-
	이메일	trademark@vegansociety.com

3. 인증 절차²⁴¹⁾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상담/문의	제조업체	-
2	견적제공	인증기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견적 제공
3	신청서 접수	신청인 인증기관	-
4	비용 입금	제조업체	-
5	제품확인(서류확인)	인증기관	회사 및 제품 정보 제출
6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	제조업체	-
7	인증서 발행	인증기관	-
8	로고 발송	인증기관	-

- 온라인을 통해 인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100% 문서 심사로 진행됨
- 회사 규모, 제품 수, 매출액에 따라 견적이 차등 제공됨

4. 필요 서류²⁴²⁾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 회사 기본정보, 제품유형, 제품수, 회사규모 등이 작성된 사전 질문지
중요 기술정보문서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 중 동물성 성분이 의심되는 성분들에 한해 비건(비동물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추가 증명서류 ◦ 동물 실험 및 교차 오염에 대해 제조사의 서명이 필요한 확인서

241) 참조: The Vegan Society 홈페이지 (www.vegansociety.com)

242) 출처: The Vegan Society 홈페이지 (www.vegansociety.com)

V-Label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V-Label 인증	국가명	유럽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인증기관 (관할기관)	유럽채식협회 (EVU, European Vegetarian Un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1996년
		유효기간	1년(만료 3개월 전 자동연장)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채식식품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식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채식협회 규정 (2018.05)²⁴³⁾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식식품 및 채식 외식서비스에 대해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 사용된 재료 및 함유 성분에 따라 완전채식식품과 일반 채식식품을 구분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를 변형시키거나 가공 처리한 모든 가공식품, 모든 알코올 또는 비알코올 음료,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 차, 향신료, 미네랄워터 등 단일식품 및 가공되지 않은 채소류 등은 식물성 제품이므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 현황

취득방법	국내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3,500명 이상의 라이선스 소유자가 제공하는 30,000개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에 V-Label이 부착됨		
타국가 통용여부	현재 5개 대륙에 걸쳐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등록		
소요기간	2~8주	인증비용 (등록비용)	최초 취득 시 약 250유로 연간 라이선스 비용 약 300유로

243) V-Label 홈페이지: https://www.v-label.eu/regulations_text

2. 세부 정보

- 유럽채식협회(EVU, European Vegetarian Union)에서 도입한 V-Label 인증은 채식 식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증하는 대표적인 인증임
 - 1996년 Swissveg라는 제품에 V라벨 처음 도입하여 스위스 시장에 출시하였고, 2019년 10월 기준 전 세계 약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음
 - 인증마크는 1970년대 이탈리아 채식주의협회에서 처음 개발하였고, 1985년 제1회 유럽채식총회에서 공식 발표된 이후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 2008년부터 스위스의 V-Label Gmbh에서 인증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V-label italia srl의 한국 서비스가 시작 됨

- V-Label 인증은 식품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채식 식당 등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식품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 원재료 및 첨가물의 원산지과 제품 생산주기 각 단계 재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전 생산과정에 걸친 교차오염 여부를 확인함
 - 식품 서비스의 경우 식당, 식음료 판매점뿐만 아니라 호텔 및 리조트, 이벤트 케이터링에 대해서도 인증 적용이 가능함. 이 경우 직원 교육에 대해서도 V-Label 기준을 적용해야 함

- V-Label 인증은 가이드라인(2018년 5월 버전)에 따라 완전채식(Vegan) 식품 및 채식(Vegetarian) 식품으로 구분함
 - 완전채식식품이란 비동물성 식품 및 동물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며 모든 생산 및 가공과정에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채식식품 또한 마찬가지로 비동물성 식품이지만 살아있는 동물이나 동물성 성분이 일부 함유될 수 있음

- V-Label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제품의 전체 구성 및 전 과정에 사용된 첨가제 등을 밝혀야 하며 제한 성분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증 취득이 거부됨
 -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인증 심사가 이루어지며 자료는 완전채식식품 및 채식식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됨
 - 원칙적으로 인증 취득이 거부되는 제품과 특히 완전채식식품이 포함하지 않아야 할 동물성 성분은 하기와 같음

구분	서류 목록
거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살된 제품 ◦ 생선, 생선 부위 또는 기타 해산물에서 유래한 지방 ◦ 동물성 향미료 (유제품 기반 제외) ◦ 캐비아 등 가금류의 달걀 이외의 알 ◦ 동물성 레닛(응고제)이 사용되는 유제품 ◦ 로열젤리 ◦ 코치닐 등 동물성 색소 ◦ 동물 뼈를 연료(animal bone char)로 정제한 설탕 ◦ 동물성 운반체 물질 및 첨가제 ◦ 젤라틴, 부레 풀(isinglass) 등 동물성 물질을 이용한 청정(Clarification)
완전채식(Vegan) 식품 포함 금지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걀 ◦ 꿀 ◦ 유제품 ◦ 동물성 왁스 ◦ 동물성 색소 ◦ 동물성 운반체 물질 및 첨가제 ◦ 난백 등 동물성 물질을 이용한 청정(Clarification)

- 완전채식 및 채식주의자 정의는 생산 및 가공의 모든 단계를 의미하므로 성분 또는 물질의 추출 과정 또한 포함. 성분의 생산 또는 변형을 위해 박테리아, 진균, 조류, 진핵생물 단세포 유기체 또는 세포 배양물을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일컬음.
- 비채식적이거나 비채식적 물질이 의도하지 않게 포함되는 경우 최종 제품에서 0.1%(1g/kg) 미만이어야 함. 기준치인 0.1%를 초과하면 생산자는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개선해야 함.
- 제품에는 유전자 변형 DNA가 포함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최대 0.9% 허용됨).
- 동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시험은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개별 성분, 보조제 및 제품과 관련하여 가공에 사용되는 기타 물질에 대해 수행되거나 수행되어서는 안 됨.

□ 기관 정보 (인증기관)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V-Label KOREA	
홈페이지	www.vlabel.kr	
연락처	전화번호	+82-70-7011-3131
	팩스번호	-
	이메일	info@vlabel.kr

3. 인증 절차²⁴⁴⁾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인증 신청	제조업체	회사 및 제품 정보 제출
2	제안	인증기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계약 제안 선행됨
3	라이선스 계약	신청인 인증기관	-
4	인증 심사	인증기관	신청 내용 검토
5	인증 발급	인증기관	-

- 온라인을 통해 인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100% 문서 심사로 진행됨.
 - 회사 규모, 제품 수, 매출액에 따라 견적이 차등 제공됨.
-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채식협회 본부에서 인증을 발급하며, 제조업체의 본사 및 지사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유럽채식협회 사무소에서 인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온라인을 통해 인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회사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V-Label 홈페이지(www.v-label.eu)에 접속하여 회사명 및 주소, 연간 총 매출액 및 순 매출액(인증 제품에 한함), 담당자 정보, 인증대상이 되는 제품 수를 필수 적으로 기입해야 함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 회사 기본정보, 제품정보 온라인 기입
중요 기술정보문서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 중 동물성 성분이 의심되는 성분들에 한해 비건(비동물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추가 증명서류 ◦ 동물 실험 및 교차 오염에 대해 제조사의 서명이 필요한 확인서

244) 참조: V-Label 홈페이지 자료 (www.v-label.eu/wp-content/uploads/2019/01/v-label-flyer-dinlang-en-korr-0905.pdf)

이브비건 인증 (EVE VEGAN)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EVE VEGAN 인증	국가명	프랑스
로고 *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	*EVE와 계약(인증)을 맺은 회사만 로고 사용 가능.	인증기관 (관할기관)	EXPERTISE VEGANE EUROPE S.A.S.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수출 시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6년
		유효기간	18개월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및 환경적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VEGAN 제품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해짐 ○ EVE VEGAN은 VEGAN FRANCE 협회가 2016년 설립한 EXPERTISE VEGANE EUROPE S.A.S.의 서비스 인증브랜드 ○ 자체 요구사항: 인증을 받는 데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nical Referential: EVE VEGAN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Certification Procedure: 제품 또는 서비스가 TF를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 Graphic Charter: 로고의 사용 규칙에 대한 설명 ○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Vegan Standard 2019 (유럽 비건 협회 기준)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출장 요식업자, 여행사 등 - 공급업체의 생산 현장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지 않음 - 제조, 케이터링, 숙박 또는 컨설팅 서비스 등(식품 및 비식품 서비스가 될 수 있음) ○ 제품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 기준(프로토타입은 불가) - 화장품, 식품보조제, 패션 악세서리, 식품 등 - 검사는 수확 후 이뤄지며 완제품, 작업자 및 가공업자(있는 경우)에 적용됨 - 공급업체의 생산 현장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지 않음 - 제품 인증은 미리 정의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함. 통제(control)는 제조에서 아웃소싱 작업을 포함한 포장까지 이뤄짐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제품,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 ○ 식품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 화장품, 섬유 부문의 원료 또는 기타 모든 유형의 제품과 관련됨

□ 현황

취득방법	EVE VEGAN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심사를 통해 인증 취득 가능		
취득현황	2021년 9월 기준 5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 취득		
타국가 통용여부	전세계적으로 통용 가능		
소요기간	최소 30일 이상	인증비용	품목별 상이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상황과 품목에 따라 상이함

2. 세부 정보²⁴⁵⁾

□ Certification File

- 완제품에 대한 설명(제조방법, 원재료 및 공급업체명, 제품의 정확한 이름, 라벨링, 제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코드 이름 또는 제조방법 이름)과 제3국의 입법 또는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수행하거나 다른 유럽 법률/규정(예. REACH)에 따라 수행되는 동물 실험과 관련된 데이터도 포함해야 함.

□ 허용가능한 서류의 유효기한

-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날짜와 서명이 있는 필수 서류를 제공해야 함.

운영자(operator) 신분증	6개월 미만
완제품 기술 시트	18개월 미만
원료 원산지 기술 시트	5년 미만, 공급업체 언급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원료 공급업체의 인증서	5년 미만, 공급업체 언급
원자재 물질안전보건 자료	5년 미만, 공급업체 언급

□ 허용 기준

- 동물성 가공 보조제는 완제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됨(예: 추출 방법, 시약, 용매, 효소 등).
- 완제품의 개발 및/또는 제조는 회사 자체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동물 실험 또는 생체 해부를 포함해서는 안됨.
- 원료(raw materials)는 사전에 제 3자로부터 유효한 비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인증을 획득하면 등록 절차가 빨라질 수 있음.
- 완제품은 시판 승인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생체 해부 또는 실험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판매되거나 수출되어서는 안됨.

245) 참조: EVE VEGAN 요구사항(TECHNICAL REFERENTIAL V2-01.09.2021-EN)

□ 포장재

- 완제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은 동물성 재료(가죽, 실크, 모피 등)와 동물성 접착제(카제인, 돼지풀, 가공 지방산 등)를 포함해서는 안됨.
- 포장재는 사전에 제3자로부터 유효한 비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인증을 획득하면 등록 절차가 빨라질 수 있음.
 - 주의: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물류 포장 품목은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인증마크 사용방법

-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포장 및 서비스 참고, 자사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픽 현장을 준수하는 기타 판촉 자료에 넣어 사용할 수 있음.
- 인증마크가 인증 자체와 관련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제품을 보증·홍보하거나 추천한다는 언급은 금지.
- 인증마크와 관련된 문구는 사용자를 오도해서는 안 됨. 따라서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기호 형태의 문구는 인증된 제품 및 서비스가 소유하지 않은 특성 또는 기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됨.
- 인증 마크는 제조업체, 즉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로 판매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만 발급 및 소지할 수 있음. 제조사는 제품에 부착된 인증마크의 법적 소유자이거나 인증을 신청하는 서비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제품의 수입업자, 유통업자 또는 end-user는 인증을 취득할 수 없음. 또한, 인증마크는 EVE와 계약하지 않는 한 하청 업체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인증서

- 인증서의 가장 최근 유효날짜는 EVE 본사에서 인증서 파일 및 심사 보고서를 처리한 날짜임. 이 날짜 이전에는 인증 마크가 있는 인증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음.
- EVE는 인증 절차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발행된 인증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회사 및 계약 기간당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서만 발급됨. 인증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인증서로 업데이트 됨.
- 고객은 계약 종료 시 인증을 자유롭게 갱신할 수 있음. 인증서가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 새로운 인증 계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공식 통지서가 발행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할 때까지 인증 마크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지정된 기한 동안 인증 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철회하거나 식별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 부적합(Non-conformity)로 해당되는 항목:
 - EVE VEGAN의 Graphic Charter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²⁴⁶⁾
 - 사전 승인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
 - 제한된 기한 내에 규정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246) 참조: EVE VEGAN 요구사항(GRAPHIC CHARTER-V2-EN.01092021)

-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는 최대 6개월 내로 완료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 있음:
 - 요구사항 준수 요청 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수수료 미납인 경우

□ 하청 업체(Subcontracting)

- 인증을 신청하는 완제품의 제조 및 포장에 대한 하청 업체는 사전에 EVE VEGAN 인증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운영자는 EVE VEGA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하청 업체의 신원과 관리 책임자를 전달해야 함. 또한, 하청 업체의 능력을 사전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하청 업체에 준수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하청업자는 계약한 작업을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안됨.
-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운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3자와 하청 업체 간에 계약이 이뤄져야 함.
- 하청 업체는 시행 전에 제공된 서비스 또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운영자에게 알려야 함.

□ 필요 서류

- 인증 받으려는 분야, 품목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며, EVE VEGAN에 직접 문의하고 신청서 작성 후 관련 필요 서류를 받을 수 있음.

항목	필요 서류	상세 내용
운영자 (Operator)	정보 시트	EVE에서 제공한 문서를 작성 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6개월 미만 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회사 로고	PDF, JPG,GIF 또는 PNG 파일로 제공
	인증 계약서	EVE에서 제공한 문서를 작성 후 제출
	회사 소개서 파일	선택 사항
완제품 (Finished Product)	형태 또는 레시피 (기술 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 상품명 ◦ 제조사 이름 및 주소 ◦ 제품 형식(예: 20g) ◦ 원료 (재료명) ◦ 안전 데이터 시트 ◦ 벌크 상품 코드(등록할 레퍼런스가 많을 시 유용)

완제품 (Finished Product)	완제품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 라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디지털 모형을 제공 가능 ◦ 최종 버전은 마케팅 승인 후 최대 1개월 이내에 PDF, JPG, GIF 또는 PNG 버전으로 제공되어야 함
	완제품 사진	
	포장 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1차 및 2차 포장지 ◦ EVE에서 제공한 문서를 작성 후 제출
	브랜드 로고	PDF, JPG, GIF 또는 PNG 파일로 제공
	완제품에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EVE에서 제공한 문서를 작성 후 제출
	기타 제품 인증서	있는 경우 제출(Organic, Ecocert 등)
원료 (Raw Materials)	원료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의 문서이어야 함 ◦ 성분 출처 ◦ 생명공학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재배 기질의 원료 ◦ 제조사 이름 및 주소 ◦ REACH CAS 번호 또는 등록 번호(법적 신고 의무가 있는 물질의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해당 시)
	원료는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의 문서(날짜 포함) ◦ 제조사 이름 및 주소 ◦ 해당 원료의 상품명 ◦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마지막으로 수행한 날짜(해당 시) ◦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EVE에서 제공한 문서를 작성 후 제출
하청 업체 (Sub-contracting)	하청 업체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이 사업자 이외의 업체에서 제조된 경우 ◦ EVE에서 제공한 문서를 작성 후 제출

□ 기관 정보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EXPERTISE VEGANE EUROPE S.A.S.	
홈페이지	https://www.certification-vegan.org/	
연락처	전화번호	+33 (0)2 34 40 11 50
	팩스번호	-
	이메일	contact@certification-vegan.org

3. 인증 절차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인증 신청	제조사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증명
2	문서 평가	EVE VEG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별로 상이함 ◦ EVE 심사원에게 위탁 ◦ 평가 보고서 전달
3	현장 평가	EVE VEGAN	제품별로 상이함
4	인증 결정	EVE VEGAN	-
5	인증서 발행	EVE VEGAN	-

□ 사후 관리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증 제품을 신속하고 시기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recall)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 또는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의 회수 및 취소(withdrawal)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의심되는 제품만 시장에서 정확한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만(complaints) 조사 및 후속 조치에는 결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실행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불만 처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력을 기록하고, 충돌을 관리해야 함.

글루텐프리 인증

GFCO 318

글루텐프리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글루텐프리 인증	국가명	미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 (GFCO)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05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글루텐프리 식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는 글루텐프리 식품에 대해 정의하고, 올바른 라벨링 방법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글루텐프리 식품 기준을 마련하였음 ◦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 글루텐프리 라벨링에 대한 규정(FDA 21 CFR 101.91)
인증 (등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 성분함량이 10ppm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인증을 취득하여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음 ◦ 글루텐 성분 시험과 설비감사가 진행되며, 기관에서 승인하고 있는 타 인증기관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함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함량 곡물(밀, 호밀, 보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성분의 모든 식품 원재료 혹은 가공제품 ◦ 글루텐이 10ppm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모든 식품 원재료 및 가공제품

□ 현황

취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제품 검사 및 인증 취득이 진행 - 인증기관에서 승인한 타인증기관을 통해서 검사와 인증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체 글루텐프리제품의 약 26%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였고, 약 22,000제품, 27개 국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타국가 통용여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통용되고 있음		
소요기간	약 6~18주	인증비용 (등록비용)	품목당 약 180만원

* 소요 기간 및 인증 비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세부 정보

- 글루텐(Gluten)은 밀, 보리, 귀리 등에 존재하는 글루테닌(Glutenin)과 글리아딘(Gliadin)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성분으로 밀가루, 호밀, 보리, 귀리 또는 그것들의 교배나 파생 품종이 포함된 물에 용해되어 풀어지지 않는 성질을 갖는 불용성 단백질을 의미함
 - 밀가루의 종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나뉘는데, 이 단백질의 대부분을 글루텐이 차지하고 있음.

- 글루텐프리(Gluten-free) 인증은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식품에 사용 가능한 효소 첨가 혹은 물리적 방법으로 글루텐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생산한 식품에 적용 가능한 인증입니다. 글루텐프리 인증은 셀리악병을 진단 받았거나 글루텐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대체식품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라벨을 제공함
 - 밀 기반 식사를 하는 미국 및 유럽에서의 글루텐프리 식품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 또한 건강한 식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2021년 8월 31일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식품의 글루텐프리 라벨링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함. FDA 최종 규칙에는 두 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 다 GFCO의 현재 인증 요구 사항과 일치함
 - 미국은 2004년 식품 알레르기 항원 라벨링 및 소비자보호법(FALCPA)을 통해 ‘글루텐 프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2013년부터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규칙이 시행됨
 - 모든 원재료 및 가공식품을 글루텐프리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규정 (FDA 21 CFR 101.91)을 준수해야 함
 - 북미 지역에서 글루텐프리 인증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GFCO, GFCP, Celiac Support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이 중 GFCO의 규모가 가장 크고 글루텐 프리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

- 글루텐프리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GFCO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글루텐을 제거하는 처리과정을 거친 모든 식품(완제품)은 글루텐 성분을 10ppm 이하로 함유해야 함
 - 10ppm 이하 함량은 전체 1,000g 중 글루텐 성분은 10mg 함유한 것을 의미함
 - 보리 기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은 인증을 취득할 수 없음
 - 완제품 및 고위험 원자재 및 장비는 지속적인 테스트를 받아야 함
 -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 공장은 최소한 연간심사를 받아야 하고 완제품을 인증 기관(GFCO)으로 제출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받아야함
 - 인증 취득을 위해서 제조업체는 알레르기 및 우수제조관리기준에 관한 모든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기관 정보 (인증기관)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GFCO
홈페이지		https://gfco.org
연락처	전화번호	+1-253-833-6655
	팩스번호	+1-253-833-6675
	이메일	admin@gluten.org

3. 인증 절차²⁴⁷⁾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제조공장 등록	제조업체	-
2	인증기관 확인	제조업체	GFCO에서 인정한 인증기관 확인
3	인증 신청	제조업체	신청서와 제품리스트 제출
4	신청서 검토 후 견적	인증기관	-
5	견적승인 및 수수료 납부	제조업체	-
6	공장실사 실시	인증기관	-
7	감사보고서 수령	제조업체	-
8	부적합 사항 시정	제조업체	-
9	인증 결정	인증기관	-

- GFCO 자체적으로 공장실사와 성분 테스트를 통한 인증을 발급하며, GFCO에서 승 인한 타 인증기관에서도 동일한 감사와 인증 발급을 진행하나 인증 신청 전 홈페이지²⁴⁸⁾에서 제조공장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 후 8~12주 이내 공장실사가 실시되며 공장실사는 최소 3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제품의 성분이나 공장 설비에 관한 서류를 검토함
- 이후 제조업체(신청인)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 및 감사원의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사본을 수령하며 60 일의 기간 동안 부적합 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
- 제조업체는 적어도 2년 동안 글루텐프리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함

247) 참조: GFCO Certification Body Manual Rev. 2021.1

248) GFCO 홈페이지: www.gfco.org/plant-registration

4. 필요 서류²⁴⁹⁾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 선행: 회사 기본정보, 대표자정보, 공장정보, 제품유형 등 온라인 접수
중요 기술정보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 프리 생산과 관련된 (SOP)작업지시서 ◦ 글루텐 프리 제품의 현재 제품 및 성분 목록 ◦ 조직도 ◦ 직업 세부설명 ◦ 구매 문서 ◦ 승인된 공급 업체 목록 ◦ 글루텐에 대한 공급 업체 명세서 ◦ 교육 자료 ◦ 직원 교육 기록 ◦ 입고 검사 확인 문서 ◦ 글루텐에 대한 위험 분석 ◦ 포장 / 라벨 점검 문서 ◦ 작년의 시정 조치 보고서 ◦ 지난 1년간의 모의 또는 실제 회수 보고서 ◦ 지난해의 내부감사 보고서 ◦ 지난 1년 동안의 테스트 데이터

249) 참조: GFCO Certification Body Manual Rev. 2021.1

Non-GMO 인증

Non-GMO Project 323

NON-GMO 인증

1. 개요

□ 기본정보

명칭	NON-GMO 인증	국가명	미국
로고 <small>* 해당되는 경우 인증마크</small>		인증기관 (관할기관)	인증기관: Non-GMO Project 기술관리기관: Where Food Comes From Inc. SCS Global Services FoodChain ID NSF International
구분	<input type="checkbox"/> 필 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유형	기능성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제 <input type="checkbox"/> 국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	도입시기	2010년
		유효기간	1년

□ 배경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Non-GMO Project는 Non-GMO 식품, 음료, 이유식과 분유, 개인 위생 용품, 애완동물 제품, 사료, 건강 보조 식품, 동물 사료 및 식물 종자에 대한 복미 독립 검증 기관임.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GMO)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Non-GMO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Non-GMO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
인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에 대해 GMO변형 물질이 일정 이상으로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받은 후, 인증마크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인증기관과 기술 관리기관 두 곳에 각각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발급 후 인증기관 에서는 마케팅활동을 지원함²⁵⁰⁾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식 및 유아용 조제식, 디저트류(사탕·초콜릿) 및 감미료, 오일류, 소스류, 주류, 유제품, 과일 및 채소, 곡물, 육류, 생선, 계란, 두부, 포장된 냉동식품, 파스타, 스프, 비타민 및 보충제, 허브·향신료 및 기타 성분 등

□ 현황

취득방법	Non-GMO Project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취득현황	전 세계적으로 1,758개 소매 업체와 5,000개 이상의 브랜드, 67,000개 이상의 제품이 Non-GMO 마크를 취득함 ²⁵¹⁾		
타국가 통용여부	미국과 캐나다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복미 시장에서 통용가능		
소요기간	3~6개월	인증비용 (등록비용)	제품당 약 200만 원~500만 원

250) Non-GMO Project 홈페이지: <https://www.nongmoproject.org>

251) 참조: Non-GMO Project(www.nongmoproject.org/product-verification/verification-faqs/)

2. 세부 정보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회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Non-GMO 라벨링이 중요한 마케팅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식품정보위원회(IFIC)의 2019 Food and Health Report에 따르면 소비자의 40%가 GMO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 50%의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Non-GMO마크를 꼽음
- Non-GMO 인증관리기관인 Non-GMO Project는 5,000개가 넘는 브랜드의 67,000개 이상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약 2,000개의 브랜드와 17000개 이상의 제품이 추가로 등록됨으로써 인증 검증 제품의 연간 매출이 2019년 300억 달러를 돌파함
 - 소비자를 비롯하여 식품 공급업체들 역시 매출 증대를 위해 인증마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계적인 유전자변형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 농무부는 2018년 12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포함된 일부 제품의 경우 2022년까지 해당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NFDS(국가생명공학 식품공시표준) 최종 규정을 발표함
 - 캐나다는 판매되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해 자발적인 라벨표시를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품은 유전자 변형 정도에 따른 3단계 위험수준으로 구분됨

- 유전자변형(GMO) 식품은 자연적인 교배 방법이 아닌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유전자 구성이 변형된 식물·동물·박테리아 등을 이용한 식품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포장식품에는 옥수수, 대두, 카놀라 및 사탕무에서 추출한 성분이 포함되며 미국 총 재배면적의 약 70%의 면적에서 GMO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짐²⁵²⁾

□ 위험수준에 따른 상품작물 분류²⁵³⁾

구분	서류 목록
고위험군	알팔파(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속씨식물), 옥수수, 면, 파파야, 사탕무, 노란 여름 호박/호박, 동물성 제품, 미생물 및 효소
저위험군	렌틸콩, 시금치, 토마토, 참깨, 아보카도
추적관찰 위험군	아마, 겨자, 쌀, 밀, 사과, 버섯, 오렌지, 파인애플, 카멜리나(가짜 아마), 연어, 사탕수수, 토마토

252)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수입 GMO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253) 참조: Non-GMO Project 홈페이지 (www.nongmoproject.org/gmo-facts/what-is-gmo)

□ Non-GMO 인증은 유전자변형 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0.9~5% 수준까지 유전자 변형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시험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법적 및 과학적으로 유전자변형 물질 함유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0.9~5% 함유량 수준을 허용하고 있음
- 완제품이나 가공된 투입물이 아닌 원재료 물질에 대해서도 시험을 수행하며 승인된 실험실에서만 수행해야 함

□ 기관 정보 (인증기관)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Non-GMO Project
홈페이지		www.nongmoproject.org
연락처	전화번호	+1-360-255-7704
	팩스번호	-
	이메일	verification@nongmoproject.org

□ 기관 정보 (기술관리기관)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SCS Global Services	FoodChain ID
홈페이지		www.scsglobalservices.com/services	www.foodchainid.com
연락처	전화번호	+1-800-326-3228	+1-641-469-6181 / +1-888-229-2011
	팩스번호	+1-510-452-8001	-
	이메일	info@SCSglobalservices.com	enroll@foodchainid.com
구분		세부내용	
기관명		NSF Korea (한국지사)	Where Food Comes From Inc
홈페이지		http://nsfkorea.org	www.wherefoodcomesfrom.com
연락처	전화번호	서울사무소: +82-2-511-8311 부산사무소: +82-51-441-6109	+1-866-395-5883
	팩스번호	+82-02-511-8305	-
	이메일	foodkorea@nsf.org	info@wherefoodcomesfrom.com

3. 인증 절차²⁵⁴⁾

절차	단계	주체	비고
1	기술관리기관(TA) 선택	제조업체	승인된 기관 확인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제조업체	제출 서류 목록은 하기 참조
3	서류 검토	기술관리기관	-
4	사전평가 및 견적	기술관리기관	-
5	현장심사	기술관리기관	-
6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제조업체	인증기관과 계약 체결
7	인증마크 부여	인증기관	-

- Non-GMO 인증마크 부여는 인증기관(Non-GMO Project)에서 주관하며 성분 검증은 기술관리기관에서 담당함
 - 기술관리기관은 인증기관에서 승인한 기관으로, 제품 제조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고위험 작물과 그 파생물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함
 - 제품이 고위험군 성분을 함유한 경우 GMO 테스트 및 현장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검증을 완료한 제조업체는 인증기관(Non-GMO Project)과 이름·로고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Non-GMO Project Verified seal의 아트 파일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매년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검증 수수료가 발생함

4. 필요 서류

구분	서류 목록
행정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장 ◦ 구매 증명서 ◦ 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중요 기술정보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리스트, 생산 설비 정보, 검사 결과 등 ◦ 재료에 대한 분석 증명서

254) 참조: Non GMO project 자료 (www.nongmoproject.org/wp-content/uploads/Verification-Overview-Flowchart-graphic.pdf)

IV

해외인증 상호교차인증 (동등성 협약) 현황

해외인증 상호교차인증 (동등성 협약) 현황

일본

인증명	JAS 유기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 회원국, 영국, 뉴질랜드, 대만의 유기 인증을 인정함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현재 한국과 일본은 유기 식품 동등성 인정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임

미국

인증명	USDA Organic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한국, EU, 캐나다, 일본, 스위스, 대만, 영국
발효날짜	2014년 7월
만료날짜	-
비고	2014년 7월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발효

유럽

인증명	EURO LEAF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튀니지
발효날짜	2015년 2월
만료날짜	-
비고	2015년 2월 한국-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발효

□ 말레이시아 JAKIM

인증명	JAKIM 할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KMF, AHİK 등을 포함한 약 48개국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제조공정에서 생산되지 않은 알코올을 0.5%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함량 기재된 자료 및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인도네시아 BPJPH

인증명	BPJPH 할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약 45개국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5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기존처럼 할랄 미취득 제품도 수입 가능함

□ 아랍에미리트 ESMA

인증명	ESMA 할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GCC 6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하여 인증 취득이 가능함

□ 싱가포르 WAREES(MUIS)

인증명	WAREES(MUIS) 할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안 이슬람 국가와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

□ IFANCA

인증명	미국 IFAMCA 할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세계 이슬람협력기구 (OIC) 57개 회원국 및 타 지역에 제한 없음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하여 인증 취득이 가능함

□ 한국 KMF

인증명	KMF 할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

□ 카자흐스탄 AHİK

인증명	AHIK 할랄 인증
타국가 통용여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교가 위주인 CIS 국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등등
발효날짜	-
만료날짜	-
비고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하여 제품 심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본 자료집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기획하고

(주)아이지씨인증원이 수행한 '2021년 해외인증, 등록정보 종합가이드 조사' 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기획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업육성부

수행기관 : (주)아이지씨인증원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www.at.or.kr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